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5. 9

본 연차보고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추진내용을 수록한 것이며, 201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 | |
|---------------------------------------|-----------|
| I. 특수교육의 개요 | 1 |
| 1. 특수교육의 정의 | 1 |
|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 |
|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 3 |
| II. 2015년 특수교육 현황 | 6 |
| 1. 주요 현황 | 6 |
| 2. 특수학교 현황 | 9 |
|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 12 |
| 4. 순회교육 및 병원학교 현황 | 13 |
|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14 |
|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현황 | 14 |
| III. 2015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 15 |
|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15 |
| 1) 특수교육기관 현황 | 15 |
| (1)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5 |
| (2)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9 |
| 2)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23 |
| (1) 특수학교 학생 | 23 |
| (2) 특수학급 학생 | 25 |
| (3) 일반학급 학생 | 26 |
| (4)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 27 |

| | |
|---------------------------------------|-----------|
| 3)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28 |
|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31 |
| 5)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운영 강화 | 33 |
| 6)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제 실시 | 36 |
| 7)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37 |
| 8)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 40 |
|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 40 |
|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 45 |
|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48 |
| 1) 장애발견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 48 |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 55 |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57 |
|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59 |
| 5)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64 |
|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70 |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 70 |
| 2) 장애학생 안전 지원 강화 | 73 |
| 3) 장애학생 체육교육 지원 강화 | 75 |
| 4)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 76 |
| 5)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77 |
|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78 |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78 |
| 2)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87 |
|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87 |
|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및 평가 | 91 |
| (3) 장애성인교육 지원 | 93 |

| | |
|--|-----|
|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96 |
|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 96 |
|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99 |
| 3)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 102 |
|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104 |
| 5)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 105 |
| 6) 교육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109 |
| 7)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 112 |

| | |
|---------------------------------------|-----|
| 부 록 I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 115 |
|---------------------------------------|-----|

| | |
|---------------------------------------|-----|
| 부 록 II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07 |
|---------------------------------------|-----|

표 차 례

| | |
|---|----|
| <표 1·1> 특수교육 관련 법령 | 2 |
| <표 1·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 3 |
| <표 1·3> 연도별 특수학교 수 | 3 |
| <표 1·4>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 |
| <표 1·5> 연도별 특수학급 수 | 3 |
| <표 1·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 3 |
| <표 1·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 4 |
| <표 1·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배치기관별) | 4 |
| <표 1·9>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장애영역별) | 4 |
| | |
| <표 3·1> 연도별 특수학교 수 | 16 |
| <표 3·2> 연도별 특수학교 신설 계획 | 16 |
| <표 3·3>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 16 |
| <표 3·4> 시·도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 17 |
| <표 3·5> 시·도별 및 설립별 특수학교 수 | 18 |
| <표 3·6> 연도별 특수학급 수 | 19 |
| <표 3·7>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 20 |
| <표 3·8>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 21 |
| <표 3·9>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 22 |
| <표 3·10>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23 |
| <표 3·11> 시·도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23 |
| <표 3·12>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학생 수 | 24 |
| <표 3·13> 시·도별 및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 24 |

| | |
|--|----|
| <표 3·14>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 25 |
| <표 3·15>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25 |
| <표 3·16> 시·도별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26 |
| <표 3·17>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 27 |
| <표 3·18>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 28 |
| <표 3·19> 유아특수교육기관 학생 수 | 29 |
| <표 3·20> 공·사립 일반유치원 특수교육 대상 유아 교육비 지원 현황 | 29 |
| <표 3·21> 의무교육 가능 학교 및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현황 | 30 |
| <표 3·22> 시·도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 32 |
| <표 3·23> 병원학교 현황 | 33 |
| <표 3·24> 병원학교 운영 현황 | 34 |
| <표 3·25> 화상강의 운영 현황 | 35 |
| <표 3·26>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제 실시 현황 | 36 |
| <표 3·27> 시·도별 일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현황 | 38 |
| <표 3·28> 통합학급 담임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 38 |
| <표 3·29> 시·도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현황 | 39 |
| <표 3·30>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 41 |
| <표 3·31>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원) | 43 |
| <표 3·32>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현황 | 44 |
| <표 3·33>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 46 |
| <표 3·34>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 47 |
| <표 3·3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 50 |
| <표 3·36> 시·도별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현황 | 51 |
| <표 3·37> 시·도별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 연령 분포 현황 | 52 |
| <표 3·38>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 53 |
| <표 3·39>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54 |
| <표 3·4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56 |

| | |
|--|----|
| <표 3·41>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수 | 57 |
| <표 3·42>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자 수 | 58 |
| <표 3·43>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대상자 수 | 58 |
| <표 3·44> 치료지원 현황 | 59 |
| <표 3·45> 시·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수 | 60 |
| <표 3·46>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 현황 | 61 |
| <표 3·47> 시·도별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 62 |
| <표 3·48>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 63 |
| <표 3·49>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 65 |
| <표 3·50> 특수교육 총예산 | 66 |
| <표 3·5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 66 |
| <표 3·52>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 67 |
| <표 3·53> 시·도별 사립특수학교 지원 비율 | 68 |
| <표 3·54>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수 및 위원 수 | 71 |
| <표 3·55>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모니터링 학교 수 | 71 |
| <표 3·56> 특수교원 대상 연수과정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실시 수 | 72 |
| <표 3·57> 일반교사 대상 연수과정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실시 수 | 73 |
| <표 3·58>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현황 | 74 |
| <표 3·59> 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현황 | 75 |
| <표 3·60>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 76 |
| <표 3·6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77 |
| <표 3·62>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 79 |
| <표 3·63>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 80 |
| <표 3·64> 2015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취업 현황 | 82 |
| <표 3·65> 2015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취업 현황 | 83 |
| <표 3·66> 2015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생 취업 현황 | 84 |
| <표 3·67> 2015년도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 85 |

| | |
|---|-----|
| <표 3·68>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 86 |
| <표 3·69> 2015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 88 |
| <표 3·70>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 89 |
| <표 3·7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장애학생 재학 및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현황 | 90 |
| <표 3·72> 대학(원) 장애학생 도우미 영역별 지원 현황 | 90 |
| <표 3·73>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가 영역(4년제 및 전문대학) | 92 |
| <표 3·74>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가 영역(사이버대학) | 92 |
| <표 3·75> 장애성인교육(야학) 지원 현황 | 94 |
| <표 3·76>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 95 |
| <표 3·77>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 97 |
| <표 3·78>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사업 | 100 |
| <표 3·79>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 102 |
| <표 3·80>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 103 |
| <표 3·81>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104 |
| <표 3·82>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 106 |
| <표 3·83>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 109 |
| <표 3·84>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111 |
| <표 3·85>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고등·평생교육팀 연구 및 사업 | 113 |

I.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1>

특수교육 관련 법령

| 법 령 | 관 련 조 항 |
|--------------------------|--|
| 헌법 | 제31조 |
| 교육기본법 |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
| 유아교육법 | 제15조(특수학교 등) |
| 유아교육법시행령 |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제12조(의무교육),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원의 자격),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특수학급), 제57조(진공과의 설치),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3조(교과), 제45조(수업일수), 제57조(분교장),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 전체 |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 전체 |
| 장애인복지법 | 제2장 제20조(교육)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 제2장 제2절 교육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표 1·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교, 학급, 명)

| 구분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A) | '15(B) | B-A | |
|----------|---------------|---------------|---------------|---------------|---------------|---------------|---------------|---------------|---------------|------------|--------|
| 특수학교수 | 144 | 149 | 150 | 150 | 155 | 156 | 162 | 166 | 167 | 1 | |
| 특수학급수 | 5,753 | 6,352 | 6,924 | 7,792 | 8,415 | 8,927 | 9,343 | 9,617 | 9,868 | 251 | |
| 계 | 65,940 | 71,484 | 75,187 | 79,711 | 82,665 | 85,012 | 86,633 | 87,278 | 88,067 | 789 | |
| 학생 수 | 장애영아 | - | - | 288 | 290 | 356 | 403 | 578 | 680 | 742 | 62 |
| | 유치원 | 3,125 | 3,236 | 3,303 | 3,225 | 3,367 | 3,675 | 4,190 | 4,219 | 4,744 | 525 |
| | 초등학교 | 32,752 | 33,974 | 34,035 | 35,294 | 35,124 | 34,458 | 33,518 | 33,184 | 33,591 | 407 |
| | 중학교 | 15,267 | 16,833 | 17,946 | 19,375 | 20,508 | 21,535 | 22,241 | 22,159 | 21,108 | -1,051 |
| | 고등학교 | 13,349 | 15,686 | 17,553 | 19,111 | 20,439 | 21,649 | 22,466 | 22,973 | 23,422 | 449 |
| | 전공과 | 1,447 | 1,755 | 2,062 | 2,416 | 2,871 | 3,292 | 3,640 | 4,063 | 4,460 | 397 |
| 교원수 | 12,249 | 13,165 | 13,997 | 15,244 | 15,934 | 16,727 | 17,446 | 17,922 | 18,339 | 417 | |

<표 1·3>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 연도 | '62 | '67 | '72 | '77 | '82 | '87 | '92 | '97 | '02 | '03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
| 학교수 | 10 | 22 | 38 | 51 | 65 | 95 | 103 | 114 | 136 | 137 | 143 | 144 | 149 | 150 | 150 | 155 | 156 | 162 | 166 | 167 |

<표 1·4>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 연도 | '67 | '72 | '77 | '82 | '87 | '92 | '97 | '00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
| 학생수 | 3,121 | 5,188 | 7,342 | 10,679 | 17,373 | 20,690 | 22,789 | 24,196 | 23,291 | 22,963 | 23,400 | 23,606 | 23,776 | 24,580 | 24,720 | 25,138 | 25,288 | 25,531 |

<표 1·5>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 연도 | '71 | '76 | '80 | '85 | '90 | '95 | '00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
| 학급수 | 1 | 350 | 355 | 1,601 | 3,181 | 3,440 | 3,802 | 5,204 | 5,753 | 6,352 | 6,924 | 7,792 | 8,415 | 8,927 | 9,343 | 9,617 | 9,868 |

<표 1·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 명)

| 연도 | '71 | '82 | '86 | '91 | '96 | '00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
| 학생수 | 30 | 7,665 | 30,876 | 28,735 | 26,087 | 26,627 | 32,506 | 35,340 | 37,857 | 39,380 | 42,021 | 43,183 | 44,433 | 45,181 | 45,803 | 46,351 |

<표 1·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단위 : 급)

| 구분 | 2008 | | | 2011 | | | 2012 | | | 2013 | | | 2014 | | | 2015 | | | |
|--------------|--------------|---------------|------------|-----------|---------------|------------|-------------|---------------|------------|-------------|---------------|------------|-------------|---------------|------------|-------------|-----|-----|-----|
| | 학급수 | 학급수 | 증설수 | 증가율 | 학급수 | 증설수 | 증가율 | 학급수 | 증설수 | 증가율 | 학급수 | 증설수 | 증가율 | 학급수 | 증설수 | 증가율 | 학급수 | 증설수 | 증가율 |
| 특수학교 학급 | 3,488 | 3,842 | 65 | 2% | 4,086 | 244 | 6.4% | 4,269 | 183 | 4.3% | 4,396 | 127 | 2.9% | 4,454 | 58 | 1.3% | | | |
| 일반학교 특수학급 | 6,352 | 8,415 | 623 | 8% | 8,927 | 512 | 6.1% | 9,343 | 416 | 4.5% | 9,617 | 274 | 2.9% | 9,868 | 251 | 2.5% | | | |
| 특수교육 지원센터 | - | 41 | - | - | 48 | 7 | 17.1% | 46 | -2 | -4.2% | 62 | 16 | 34.8% | 61 | -1 | -1.6% | | | |
| 계 | 9,840 | 12,298 | 688 | 6% | 13,061 | 763 | 6.2% | 13,668 | 597 | 4.6% | 14,075 | 417 | 3.0% | 14,383 | 308 | 2.1% | | | |

<표 1·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배치기관별)

(단위 : 명, %)

| 연도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수 | 일반학교 배치학생수 | | | 전체학생수 |
|-------------|-----------------------------|---------------|---------------|--------------------------|-------------------------|
| | | 특수학급 | 일반학급 | 소계 | |
| 2010 | 23,944 (30.0) | 42,021 | 13,746 | 55,767 (70.0) | 79,711 (100) |
| 2011 | 24,741 (29.9) | 43,183 | 14,741 | 57,924 (70.1) | 82,665 (100) |
| 2012 | 24,932 (29.3) | 44,433 | 15,647 | 60,080 (70.7) | 85,012 (100) |
| 2013 | 25,522 (29.5) | 45,181 | 15,930 | 61,111 (70.5) | 86,633 (100) |
| 2014 | 25,827 (29.6) | 45,803 | 15,648 | 61,451 (70.4) | 87,278 (100) |
| 2015 | 26,094 (29.6) | 46,351 | 15,622 | 61,973 (70.4) | 88,067 (100) |

<표 1·9>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장애영역별)

(단위 : 명, %)

| 연도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장애 |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전체학생수 |
|-------------|------------------------|------------------------|--------------------------|--------------------------|------------------------|--------------------------|------------------------|------------------------|------------------------|------------------------|-------------------------|
| 2011 | 2,315 (2.8) | 3,676 (4.4) | 45,132 (54.6) | 10,727 (13.0) | 2,817 (3.4) | 6,809 (8.2) | 1,631 (2.0) | 5,606 (6.8) | 2,229 (2.7) | 1,723 (2.1) | 82,665 (100) |
| 2012 | 2,303 (2.7) | 3,744 (4.4) | 46,265 (54.4) | 11,279 (13.3) | 2,713 (3.2) | 7,922 (9.3) | 1,819 (2.1) | 4,724 (5.6) | 2,195 (2.6) | 2,048 (2.4) | 85,012 (100) |
| 2013 | 2,220 (2.6) | 3,666 (4.2) | 47,120 (54.4) | 11,233 (13.0) | 2,754 (3.2) | 8,722 (10.1) | 1,953 (2.3) | 4,060 (4.7) | 2,157 (2.5) | 2,748 (3.2) | 86,633 (100) |
| 2014 | 2,130 (2.4) | 3,581 (4.1) | 47,667 (54.6) | 11,209 (12.8) | 2,605 (3.0) | 9,334 (10.7) | 1,966 (2.3) | 3,362 (3.9) | 2,029 (2.3) | 3,395 (3.9) | 87,278 (100) |
| 2015 | 2,088 (2.4) | 3,491 (4.0) | 47,716 (54.2) | 11,134 (12.6) | 2,530 (2.9) | 10,045 (11.4) | 2,045 (2.3) | 2,770 (3.1) | 1,935 (2.2) | 4,313 (4.9) | 88,067 (100) |

□ 통계 자료 분석

○ 특수학교수 및 특수학급수 변화 추이

- '15년에 특수학교 1개교가 신설되었으며, 특수학급은 251학급이 증설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415학급이 증가함
 ※ 특수학급 : ('14) 9,617학급 → ('15) 9,868학급, 251학급 증설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생은 장애정도가 심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학생수 변화 추이

- '15년 특수교육대상자는 88,067명으로 '14년보다 789명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 서비스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특수교육 지원내용 : 무상교육 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치료지원 제공, 병원학교 설치 운영,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등 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학교기업 운영 등 진로직업교육 지원,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

○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수

- '15년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수는 4.8명임
 ※ '11년 5.2:1 → '12년 5.1:1 → '13년 5.0:1 → '14년 4.9:1 → '15년 4.8: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배치 기준을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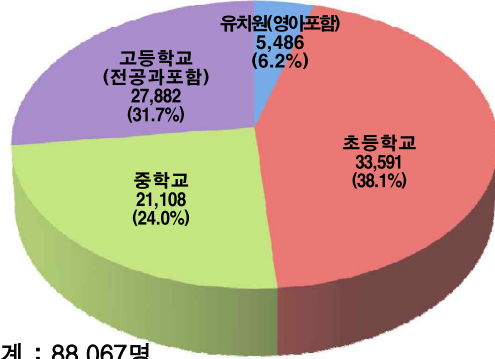
II. 2015년 특수교육 현황

※ 기준일 : 201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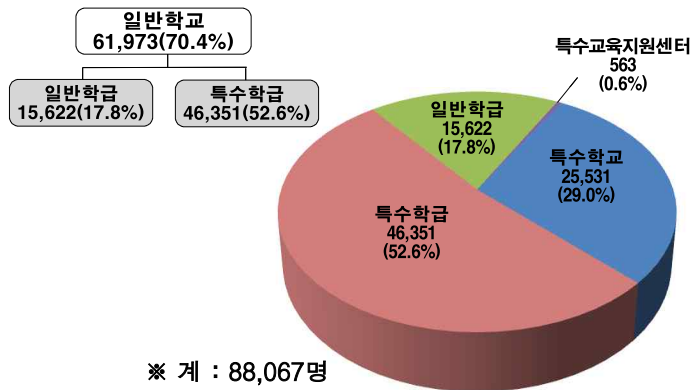
1. 주요 현황

| 배치별 | 특수학교 | 일반학교 | | 특수교육 지원센터 | 계 | | |
|-----------------|----------|--------|-----------------------|--------------|--------|--------|--------|
| | | 특수학급 | 일반학급 (전일제통합 학급) | | | | |
| 특수교육대상자수 | 25,531 | 46,351 | 15,622 | 563 | 88,067 | | |
| 학생수 | 장애영역별 | 시각장애 | 1,353 | 291 | 435 | 9 | 2,088 |
| | | 청각장애 | 952 | 765 | 1,752 | 22 | 3,491 |
| | | 정신지체 | 14,891 | 28,744 | 4,001 | 80 | 47,716 |
| | | 지체장애 | 3,707 | 4,246 | 3,010 | 171 | 11,134 |
| | | 정서행동장애 | 199 | 1,624 | 707 | - | 2,530 |
| | | 자폐성장애 | 4,000 | 5,363 | 675 | 7 | 10,045 |
| | | 의사소통장애 | 85 | 997 | 961 | 2 | 2,045 |
| | | 학습장애 | 13 | 1,891 | 866 | - | 2,770 |
| | | 건강장애 | 48 | 238 | 1,649 | - | 1,935 |
| | | 발달지체 | 283 | 2,192 | 1,566 | 272 | 4,313 |
| | 계 | 25,531 | 46,351 | 15,622 | 563 | 88,067 | |
| 학교과 정별 | | 장애영아 | 179 | - | - | 563 | 742 |
| | | 유치원 | 883 | 2,039 | 1,822 | - | 4,744 |
| | | 초등학교 | 6,472 | 20,991 | 6,128 | - | 33,591 |
| | | 중학교 | 6,142 | 11,312 | 3,654 | - | 21,108 |
| | | 고등학교 | 7,581 | 11,823 | 4,018 | - | 23,422 |
| | 전공과 | 4,274 | 186 | - | - | 4,460 | |
| | 계 | 25,531 | 46,351 | 15,622 | 563 | 88,067 | |
| 학교 및 센터 수 | | 167 | 7,397 | 6,972 | 196 | 10,908 | |
| | | | 10,528 | | | | |
| 학급 수 | | 4,454 | 9,868 | (14,580) | 61 | 28,963 | |
| 특수학교(급)교원 수 | | 7,863 | 10,185 | - | 291 | 18,339 | |
|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 | | 3,386 | 6,483 | 471 | - | 10,340 | |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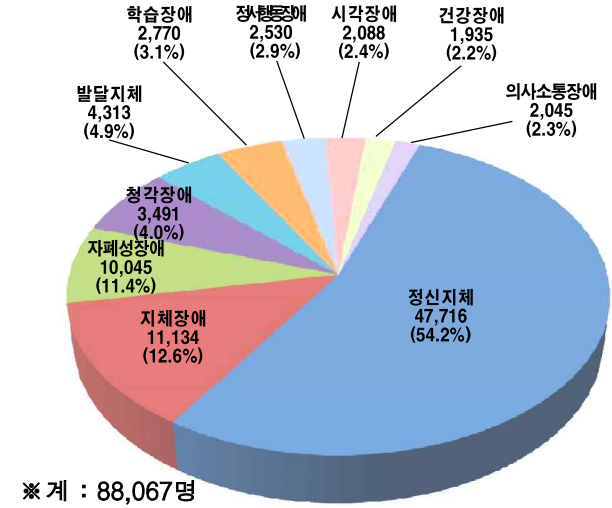
[교육기관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 명, %)

| 특수학교 | 일반학교 | | | 특수교육지원센터 | 전체학생수 |
|---------------|---------------|---------------|---------------|-----------|--------------|
| | 특수학급 | 일반학급 | 소계 | | |
| 25,531 (29.0) | 46,351 (52.6) | 15,622 (17.8) | 61,973 (70.4) | 563 (0.6) | 88,067 (100) |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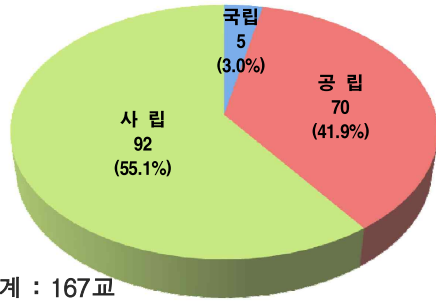


(단위 : 명, %)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전체학생수 |
|-------------|-------------|---------------|---------------|-------------|---------------|-------------|-------------|-------------|-------------|--------------|
| 2,088 (2.4) | 3,491 (4.0) | 47,716 (54.2) | 11,134 (12.6) | 2,530 (2.9) | 10,045 (11.4) | 2,045 (2.3) | 2,770 (3.1) | 1,935 (2.2) | 4,313 (4.9) | 88,067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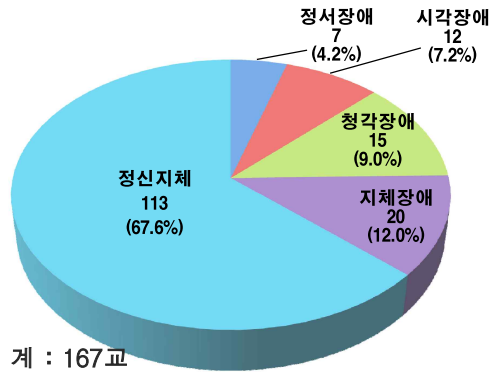
2. 특수학교 현황

[특수학교 설립별 현황]



| 구분 | 학교수 | 학급수 | 학생수 | 교원수 |
|----------|------------|--------------|---------------|--------------|
| 국립 | 5 | 172 | 856 | 317 |
| 공립 | 70 | 2,273 | 13,087 | 3,973 |
| 사립 | 92 | 2,009 | 11,588 | 3,573 |
| 계 | 167 | 4,454 | 25,531 | 7,863 |

[특수학교 장애영역별 현황]



| 장애영역 | 장애영역별 학교수 | | | | | 계 |
|------|-----------|------|------|------|------|-----|
|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장애 | |
| 학교수 | 12 | 15 | 113 | 20 | 7 | 167 |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 시·도 | 설립별 학교 수 | | | | 장애영역별 학교 수 | | | | | |
|----------|----------|-----------|-----------|------------|------------|-----------|------------|-----------|----------|------------|
|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장애 | 계 |
| 서울 | 3 | 7 | 19 | 29 | 2 | 4 | 15 | 5 | 3 | 29 |
| 부산 | - | 8 | 7 | 15 | 1 | 2 | 11 | 1 | - | 15 |
| 대구 | - | 3 | 6 | 9 | 1 | 1 | 4 | 2 | 1 | 9 |
| 인천 | - | 3 | 4 | 7 | 1 | 1 | 4 | 1 | - | 7 |
| 광주 | - | 3 | 2 | 5 | 1 | - | 3 | 1 | - | 5 |
| 대전 | - | 3 | 2 | 5 | 1 | - | 3 | 1 | - | 5 |
| 울산 | - | 2 | 2 | 4 | - | 1 | 3 | - | - | 4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 2 | 9 | 21 | 32 | - | 2 | 28 | 1 | 1 | 32 |
| 강원 | - | 5 | 2 | 7 | 1 | 1 | 5 | - | - | 7 |
| 충북 | - | 2 | 7 | 9 | 2 | 1 | 3 | 2 | 1 | 9 |
| 충남 | - | 4 | 2 | 6 | - | - | 5 | 1 | - | 6 |
| 전북 | - | 6 | 5 | 11 | 1 | 1 | 7 | 2 | - | 11 |
| 전남 | - | 3 | 5 | 8 | 1 | 1 | 6 | - | - | 8 |
| 경북 | - | 3 | 5 | 8 | - | - | 7 | - | 1 | 8 |
| 경남 | - | 7 | 2 | 9 | - | - | 7 | 2 | - | 9 |
| 제주 | - | 2 | 1 | 3 | - | - | 2 | 1 | - | 3 |
| 계 | 5 | 70 | 92 | 167 | 12 | 15 | 113 | 20 | 7 | 167 |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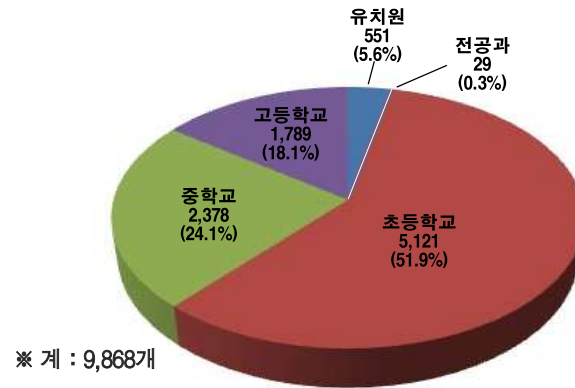
| 시·도 | 학교수 |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수 | | | | | |
|-----------|------------|--------------|------------|------------|------------|------------|------------|
| | | 영아학급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공과 |
| 서울 | 29 | 7 | 20 | 26 | 26 | 26 | 22 |
| 부산 | 15 | 7 | 9 | 12 | 13 | 11 | 9 |
| 대구 | 9 | - | 4 | 9 | 9 | 9 | 9 |
| 인천 | 7 | 1 | 6 | 7 | 7 | 7 | 6 |
| 광주 | 5 | 1 | 2 | 5 | 5 | 5 | 3 |
| 대전 | 5 | 1 | 5 | 5 | 5 | 5 | 5 |
| 울산 | 4 | 1 | 3 | 4 | 4 | 4 | 4 |
| 세종 | - | - | - | - | - | - | - |
| 경기 | 32 | 1 | 27 | 27 | 29 | 28 | 22 |
| 강원 | 7 | - | 7 | 7 | 7 | 7 | 6 |
| 충북 | 9 | 2 | 9 | 9 | 9 | 9 | 7 |
| 충남 | 6 | 1 | 3 | 6 | 6 | 6 | 5 |
| 전북 | 11 | 1 | 4 | 10 | 10 | 10 | 5 |
| 전남 | 8 | - | 6 | 8 | 8 | 8 | 5 |
| 경북 | 8 | - | 4 | 8 | 8 | 8 | 8 |
| 경남 | 9 | - | 6 | 9 | 9 | 9 | 8 |
| 제주 | 3 | - | 3 | 3 | 3 | 3 | 3 |
| 총계 | 167 | 23 | 118 | 155 | 158 | 155 | 127 |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특수학급>

| 학 교 급 | 학 교 수 | 학 급 수 | 학 생 수 | 교 원 수 |
|----------|--------------|--------------|---------------|---------------|
| 유 치 원 | 480 | 551 | 2,039 | 551 |
| 초등학교 | 4,095 | 5,121 | 20,991 | 5,107 |
| 중 학 교 | 1,801 | 2,378 | 11,312 | 2,407 |
| 고등학교 | 1,002 | 1,789 | 11,823 | 2,068 |
| 전 공 과 | 19 | 29 | 186 | 52 |
| 계 | 7,397 | 9,868 | 46,351 | 10,185 |

[학교급별 특수학급 현황]



<일반학급>

| 학 교 급 | 학 교 수 | 학 급 수 | 학 생 수 |
|----------|--------------|---------------|---------------|
| 유 치 원 | 1,221 | 1,567 | 1,822 |
| 초등학교 | 2,784 | 5,846 | 6,128 |
| 중 학 교 | 1,644 | 3,413 | 3,654 |
| 고등학교 | 1,323 | 3,754 | 4,018 |
| 계 | 6,972 | 14,580 | 15,622 |

4. 순회교육 및 병원학교 현황

<순회교육 운영 현황>

(단위 : 명, 급)

| 구 분 | 학 생 수 | | | | | | | | | | 학 급 수 | 교 사 수 |
|-----------------|--------------|--------------|-----------|--------------|--------------|---------------|--------------|--------------|--------------|--------------|------------|--------------|
| | 기관 | | | | | 학교과정 | | | | | | |
| | 가정 | 시설 | 병원 | 일반 학교 | 계 | 유치원 (장애영아 포함)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 특수학교에서 순회·과건 | 484 | 400 | 13 | - | 897 | 80 | 279 | 227 | 311 | 897 | 241 | 243 |
| 특수학급에서 순회·과건·겸임 | 479 | 817 | 20 | 191 | 1,507 | 37 | 698 | 407 | 365 | 1,507 | 315 | 457 |
| 특수교육 지원센터 | 380 | 104 | 55 | 2,298 | 2,837 | 767 | 964 | 604 | 502 | 2,837 | - | 670* |
| 계 | 1,343 | 1,321 | 88 | 2,489 | 5,241 | 884 | 1,941 | 1,238 | 1,178 | 5,241 | 566 | 1,370 |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강사 348명 포함

<병원학교 현황>

(단위 : 교, 명)

| 학교수 | 월평균 학생수 | 교사 및 담당자수 | 병 원 명 | |
|-----|---------|-----------|---|--|
| | | | 교육청 소속 병원학교 (23개) | 교육청과 병원간 협약 및 병원자체 운영 병원학교 (10개) |
| 33 | 680 | 43 |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영남대의료원병원, 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공주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국립나주병원, 화순전남대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부곡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서울병원, 한국원자력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서울고대구로병원 |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 명, 급, 백만원)

| 특수교육 지원센터 수 | 장애영아수 | 장애영아 학급수 | 교사 수 | | | 지원인력 수 | 예산 |
|-------------|-------|----------|------|-----|-----|--------|--------|
| | | | 정규 | 비정규 | 계 | | |
| 196 | 563 | 55 | 299 | 417 | 716 | 550 | 96,628 |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현황

(단위 : 명, %)

| 구분 | 졸업자 수 | 진학 | | | | 취업 | | 비진학·미취업자 수 | |
|------------|--------------|--------------|--------------|--------------|--------------|--------------|--------------|--------------|--------------|
| | | 전공과 | 대학 (전문대 포함) | 소계 | 진학률 (%) | 취업자 수 | 취업률 (%) | | |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2,385 | 1,250 | 122 | 1,372 | 57.5 | 185 | 18.3 | 828 |
| | 특수학급 | 3,673 | 914 | 477 | 1,391 | 37.9 | 767 | 33.6 | 1,515 |
| | 일반학급 | 1,053 | 48 | 534 | 582 | 55.3 | 99 | 21.0 | 372 |
| | 계 | 7,111 | 2,212 | 1,133 | 3,345 | 47.0 | 1,051 | 27.9 | 2,715 |
| 전공과 | 1,868 | 13 | 13 | 0.7 | 659 | 35.5 | 1,196 | | |
| 전체 | 8,979 | 2,212 | 1,146 | 3,358 | 37.4 | 1,710 | 30.4 | 3,911 | |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100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100

* 진로 현황 조사 방법 개선 : ① 진학과 취업 직종을 단순 수치로만 조사하던 방식에서 졸업생별로 검증 가능하도록 자료 수합, ② 취업자의 경우, 개별 취업확인을 위한 근거자료(4대 보험 가입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확보, ③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취업자 인정 기준 개선 등

Ⅲ. 2015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1) 특수교육기관 현황

(1)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관련 법규

-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초·중등교육법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5년 4월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67개교로 1962년의 10개교에 비해 16.7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3·1>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 연도 | '62 | '67 | '72 | '77 | '82 | '87 | '92 | '97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
| 학교수 | 10 | 22 | 38 | 51 | 65 | 95 | 103 | 114 | 141 | 142 | 143 | 144 | 149 | 150 | 150 | 155 | 156 | 162 | 166 | 167 |

- 2015년 9월 특수학교 1교(세종 공립 1교)가 신설되었으며, 2019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20개교와 사립학교 1개교 총 21개교가 추가로 신설될 예정임

<표 3·2>

연도별 특수학교 신설 계획

(단위 : 교)

| 구분 | 2015년도 신설 특수학교 | 특수학교 신설 수 | | | | |
|----------|----------------------|-----------|----------|-----------|----------|-----------|
| | | 2016 | 2017 | 2018 | 2019 | 계 |
| 공립 | 1 | 3 | 2 | 10 | 5 | 20 |
| 사립 | - | 1 | - | - | - | 1 |
| 계 | 1 | 4 | 2 | 10 | 5 | 21 |

- 전국 167개 특수학교를 설립별로 구분하면 국립 5개교, 공립 70개교, 사립 92개교로 사립학교 비율이 전체의 55.1%임
- 전국 167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2개교, 청각장애학교 15개교, 정신지체학교 113개교, 지체장애학교 20개교, 정서장애학교 7개교로 정신지체학교가 전체의 67.7%임

<표 3·3>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 구분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장애 | 소 계 |
|----------|-----------|-----------|------------|-----------|----------|------------|
| 국립 | 1 | 1 | 1 | 1 | 1 | 5 |
| 공립 | 2 | 3 | 57 | 7 | 1 | 70 |
| 사립 | 9 | 11 | 55 | 12 | 5 | 92 |
| 계 | 12 | 15 | 113 | 20 | 7 | 167 |

※ 장애영역별 구분은 주 장애영역을 말함

- 전국 167개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 29교, 부산 15교, 대구 9교, 인천 7교, 광주 5교, 대전 5교, 울산 4교, 경기 32교, 강원 7교, 충북 9교, 충남 6교, 전북 11교, 전남 8교, 경북 8교, 경남 9교, 제주 3교임

<표 3·4> 시·도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 시·도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장애 | 계 |
|----------|-----------|-----------|------------|-----------|----------|------------|
| 서울 | 2 | 4 | 15 | 5 | 3 | 29 |
| 부산 | 1 | 2 | 11 | 1 | - | 15 |
| 대구 | 1 | 1 | 4 | 2 | 1 | 9 |
| 인천 | 1 | 1 | 4 | 1 | - | 7 |
| 광주 | 1 | - | 3 | 1 | - | 5 |
| 대전 | 1 | - | 3 | 1 | - | 5 |
| 울산 | - | 1 | 3 | - | - | 4 |
| 세종 | - | - | - | - | - | - |
| 경기 | - | 2 | 28 | 1 | 1 | 32 |
| 강원 | 1 | 1 | 5 | - | - | 7 |
| 충북 | 2 | 1 | 3 | 2 | 1 | 9 |
| 충남 | - | - | 5 | 1 | - | 6 |
| 전북 | 1 | 1 | 7 | 2 | - | 11 |
| 전남 | 1 | 1 | 6 | - | - | 8 |
| 경북 | - | - | 7 | - | 1 | 8 |
| 경남 | - | - | 7 | 2 | - | 9 |
| 제주 | - | - | 2 | 1 | - | 3 |
| 계 | 12 | 15 | 113 | 20 | 7 | 167 |

- 특수학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국·공·사립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그 외 시·도교육청에는 공·사립 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3·5> 시·도별 및 설립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 시·도 | 국 립 | 공 립 | 사 립 | 계 |
|----------|----------|-----------|-----------|------------|
| 서울 | 3 | 7 | 19 | 29 |
| 부산 | - | 8 | 7 | 15 |
| 대구 | - | 3 | 6 | 9 |
| 인천 | - | 3 | 4 | 7 |
| 광주 | - | 3 | 2 | 5 |
| 대전 | - | 3 | 2 | 5 |
| 울산 | - | 2 | 2 | 4 |
| 세종 | - | - | - | - |
| 경기 | 2 | 9 | 21 | 32 |
| 강원 | - | 5 | 2 | 7 |
| 충북 | - | 2 | 7 | 9 |
| 충남 | - | 4 | 2 | 6 |
| 전북 | - | 6 | 5 | 11 |
| 전남 | - | 3 | 5 | 8 |
| 경북 | - | 3 | 5 | 8 |
| 경남 | - | 7 | 2 | 9 |
| 제주 | - | 2 | 1 | 3 |
| 계 | 5 | 70 | 92 | 167 |

□ 향후 과제

-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 추진
- 장애영역별 특수학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정 장애영역보다는 종합특수 학교로 운영형태 전환

(2)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관련 법규

-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항)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56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음
 1.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현황 및 추진실적

- 1971년부터 설치·운영을 시작한 특수학급은 2015년 4월 현재 9,868개 학급으로 2014년보다 251개 학급이 증가함

<표 3·6>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 연도 | '71 | '76 | '80 | '85 | '90 | '95 | '00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
| 학급수 | 1 | 350 | 355 | 1,601 | 3,181 | 3,440 | 3,802 | 5,204 | 5,753 | 6,352 | 6,924 | 7,792 | 8,415 | 8,927 | 9,343 | 9,617 | 9,868 |

- 2015년 4월 현재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평균 비율은 35.9%이며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 5.4%, 초등학교 67.0%, 중학교 55.8% 고등학교 42.7%임

<표 3·7>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단위 : 학급, %)

| 시·도 | 유치원 | | | 초등학교 | | | 중학교 | | | 고등학교 | | | 계 | | |
|----------|--------------|------------|------------|--------------|--------------|-------------|--------------|--------------|-------------|--------------|--------------|-------------|---------------|--------------|-------------|
| | 전체 학교수 | 설치 교수 | 비율 | 전체 학교수 | 설치 교수 | 비율 | 전체 학교수 | 설치 교수 | 비율 | 전체 학교수 | 설치 교수 | 비율 | 전체 학교수 | 설치 교수 | 비율 |
| 서울 | 887 | 53 | 6.0 | 599 | 410 | 68.4 | 384 | 200 | 52.1 | 318 | 84 | 26.4 | 2,188 | 747 | 34.1 |
| 부산 | 408 | 18 | 4.4 | 307 | 282 | 91.9 | 172 | 116 | 67.4 | 145 | 61 | 42.1 | 1,032 | 477 | 46.2 |
| 대구 | 392 | 11 | 2.8 | 221 | 172 | 77.8 | 124 | 71 | 57.3 | 92 | 28 | 30.4 | 829 | 282 | 34.0 |
| 인천 | 413 | 30 | 7.3 | 243 | 205 | 84.4 | 134 | 102 | 76.1 | 123 | 74 | 60.2 | 913 | 411 | 45.0 |
| 광주 | 306 | 13 | 4.2 | 153 | 117 | 76.5 | 89 | 49 | 55.1 | 67 | 23 | 34.3 | 615 | 202 | 32.8 |
| 대전 | 268 | 34 | 12.7 | 148 | 118 | 79.7 | 88 | 64 | 72.7 | 62 | 34 | 54.8 | 566 | 250 | 44.2 |
| 울산 | 193 | 9 | 4.7 | 119 | 81 | 68.1 | 62 | 41 | 66.1 | 56 | 30 | 53.6 | 430 | 161 | 37.4 |
| 세종 | 42 | 10 | 23.8 | 35 | 23 | 65.7 | 17 | 12 | 70.6 | 13 | 6 | 46.2 | 107 | 51 | 47.7 |
| 경기 | 2,190 | 149 | 6.8 | 1,213 | 927 | 76.4 | 613 | 418 | 68.2 | 460 | 277 | 60.2 | 4,476 | 1,771 | 39.6 |
| 강원 | 386 | 16 | 4.1 | 394 | 204 | 51.8 | 162 | 69 | 42.6 | 117 | 45 | 38.5 | 1,059 | 334 | 31.5 |
| 충북 | 343 | 24 | 7.0 | 273 | 176 | 64.5 | 128 | 76 | 59.4 | 83 | 43 | 51.8 | 827 | 319 | 38.6 |
| 충남 | 503 | 30 | 6.0 | 419 | 261 | 62.3 | 189 | 105 | 55.6 | 119 | 61 | 51.3 | 1,230 | 457 | 37.2 |
| 전북 | 531 | 11 | 2.1 | 421 | 208 | 49.4 | 209 | 63 | 30.1 | 133 | 31 | 23.3 | 1,294 | 313 | 24.2 |
| 전남 | 552 | 33 | 6.0 | 426 | 259 | 60.8 | 250 | 133 | 53.2 | 145 | 50 | 34.5 | 1,373 | 475 | 34.6 |
| 경북 | 711 | 10 | 1.4 | 476 | 280 | 58.8 | 275 | 112 | 40 | 193 | 64 | 33.2 | 1,655 | 464 | 28.1 |
| 경남 | 679 | 27 | 4.0 | 516 | 318 | 61.6 | 272 | 146 | 53.7 | 192 | 80 | 41.7 | 1,659 | 571 | 34.4 |
| 제주 | 117 | 4 | 3.4 | 112 | 54 | 48.2 | 45 | 24 | 53.3 | 30 | 11 | 36.7 | 304 | 93 | 30.6 |
| 계 | 8,921 | 482 | 5.4 | 6,075 | 4,095 | 67.0 | 3,213 | 1,801 | 55.8 | 2,348 | 1,002 | 42.7 | 20,557 | 7,378 | 35.9 |

* 일반학교 전공과 설치교 제외(대구, 인천, 경기, 충북)

- 학교과정별 특수학급은 유치원 551학급, 초등학교 5,121학급, 중학교 2,378학급, 고등학교 1,789학급, 전공과 29학급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51.9%를 차지함
- 2015년 4월 현재 설립별 특수학급은 국립 46학급, 공립 9,590학급, 사립 232학급으로 총 9,868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97.6%를 차지함

<표 3·8>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 시·도 | 유치원 | | | | 초등학교 | | | | 중학교 | | | | 고등학교 | | | | 계 | | | |
|----------|----------|------------|----------|------------|-----------|--------------|----------|--------------|----------|--------------|-----------|--------------|-----------|--------------|------------|--------------|-----------|--------------|------------|--------------|
|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 서울 | - | 54 | - | 54 | 2 | 665 | - | 667 | 2 | 289 | - | 291 | 3 | 216 | 25 | 244 | 7 | 1,224 | 25 | 1,236 |
| 부산 | - | 18 | - | 18 | 1 | 325 | - | 326 | - | 125 | - | 125 | 1 | 77 | 11 | 89 | 2 | 545 | 11 | 558 |
| 대구 | - | 14 | 1 | 15 | 2 | 221 | - | 223 | 1 | 96 | - | 97 | 1 | 71 | - | 72 | 4 | 402 | 1 | 407 |
| 인천 | - | 54 | - | 54 | 1 | 289 | - | 290 | - | 113 | 1 | 114 | - | 88 | 7 | 95 | 1 | 544 | 8 | 553 |
| 광주 | - | 13 | - | 13 | 1 | 131 | - | 132 | 1 | 67 | 1 | 69 | 2 | 44 | 8 | 54 | 4 | 255 | 9 | 268 |
| 대전 | - | 36 | - | 36 | - | 153 | - | 153 | - | 72 | 2 | 74 | - | 41 | 6 | 47 | - | 302 | 8 | 310 |
| 울산 | - | 11 | - | 11 | - | 117 | - | 117 | - | 56 | - | 56 | - | 45 | - | 45 | - | 229 | - | 229 |
| 세종 | - | 10 | - | 10 | - | 27 | - | 27 | - | 15 | - | 15 | - | 10 | - | 10 | - | 62 | - | 62 |
| 경기 | - | 172 | 3 | 175 | - | 1,222 | 3 | 1,225 | - | 624 | 27 | 651 | - | 538 | 24 | 562 | - | 2,556 | 57 | 2,613 |
| 강원 | 1 | 15 | - | 16 | 1 | 210 | - | 211 | - | 78 | - | 78 | 1 | 53 | - | 54 | 3 | 356 | - | 359 |
| 충북 | 1 | 27 | - | 28 | 2 | 203 | - | 205 | 2 | 93 | - | 95 | 3 | 63 | 2 | 68 | 8 | 386 | 2 | 396 |
| 충남 | 1 | 39 | - | 40 | 1 | 313 | - | 314 | 1 | 128 | 9 | 138 | 1 | 98 | 4 | 103 | 4 | 578 | 13 | 595 |
| 전북 | - | 12 | - | 12 | 2 | 216 | - | 218 | - | 70 | 5 | 75 | 1 | 41 | 2 | 44 | 3 | 339 | 7 | 349 |
| 전남 | - | 28 | - | 28 | 1 | 256 | - | 257 | - | 136 | 3 | 139 | - | 82 | 3 | 85 | 1 | 502 | 6 | 509 |
| 경북 | - | 9 | - | 9 | 1 | 314 | 2 | 317 | - | 124 | 20 | 144 | - | 73 | 28 | 101 | 1 | 520 | 50 | 571 |
| 경남 | - | 28 | - | 28 | 2 | 375 | 2 | 379 | 1 | 168 | 19 | 188 | 1 | 110 | 14 | 125 | 4 | 681 | 35 | 720 |
| 제주 | - | 4 | - | 4 | 1 | 59 | - | 60 | 1 | 28 | - | 29 | 2 | 18 | - | 20 | 4 | 109 | - | 113 |
| 계 | 3 | 544 | 4 | 551 | 18 | 5,096 | 7 | 5,121 | 9 | 2,282 | 87 | 2,378 | 16 | 1,668 | 134 | 1,818 | 46 | 9,590 | 232 | 9,868 |

*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29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3, 경기 22, 충북 3)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015년 4월 현재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3.7명, 초등학교 4.2명, 중학교 5.1명, 고등학교의 경우 6.9명임

<표 3·9>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단위 : 명)

| 시·도 | 특수학교 | | | | 특수학급 | | | | 계 | | | |
|-----------|------------|------------|------------|------------|------------|------------|------------|------------|------------|------------|------------|------------|
| | 유 | 초 | 중 | 고 | 유 | 초 | 중 | 고 | 유 | 초 | 중 | 고 |
| 정원 | 4 | 6 | 6 | 7 | 4 | 6 | 6 | 7 | 4 | 6 | 6 | 7 |
| 서울 | 4.2 | 4.9 | 6.3 | 6.9 | 4.4 | 4.1 | 4.9 | 7.3 | 4.3 | 4.3 | 5.5 | 7.1 |
| 부산 | 4.1 | 4.4 | 5.4 | 6.3 | 3.9 | 3.8 | 5.0 | 7.3 | 4.0 | 3.9 | 5.2 | 6.7 |
| 대구 | 3.4 | 4.5 | 5.5 | 6.8 | 2.9 | 3.7 | 4.8 | 7.4 | 3.0 | 3.9 | 5.1 | 7.1 |
| 인천 | 4.1 | 4.2 | 6.5 | 8.0 | 3.9 | 5.2 | 5.8 | 7.4 | 3.9 | 5.0 | 6.0 | 7.7 |
| 광주 | 2.8 | 4.4 | 5.2 | 6.5 | 3.1 | 4.0 | 4.6 | 6.4 | 3.0 | 4.2 | 4.8 | 6.5 |
| 대전 | 3.1 | 4.6 | 7.2 | 8.7 | 4.2 | 4.9 | 5.2 | 7.8 | 3.9 | 4.8 | 5.8 | 8.3 |
| 울산 | 2.8 | 3.8 | 4.6 | 6.8 | 4.5 | 4.7 | 4.7 | 6.0 | 4.0 | 4.4 | 4.7 | 6.4 |
| 세종 | - | - | - | - | 2.3 | 3.4 | 3.3 | 4.8 | 2.3 | 3.4 | 3.3 | 4.8 |
| 경기 | 3.4 | 5.1 | 5.9 | 6.9 | 3.4 | 4.3 | 4.7 | 6.5 | 3.4 | 4.4 | 5.0 | 6.6 |
| 강원 | 2.9 | 3.5 | 5.2 | 6.8 | 3.9 | 3.5 | 4.8 | 6.4 | 3.6 | 3.5 | 4.9 | 6.7 |
| 충북 | 3.6 | 4.1 | 5.6 | 7.1 | 4.0 | 3.9 | 5.1 | 6.9 | 3.8 | 3.9 | 5.2 | 7.0 |
| 충남 | 4.1 | 3.9 | 5.3 | 6.7 | 4.0 | 3.9 | 4.7 | 6.0 | 4.0 | 3.9 | 4.8 | 6.3 |
| 전북 | 3.5 | 3.7 | 6.6 | 8.5 | 3.9 | 3.4 | 5.1 | 8.1 | 3.7 | 3.5 | 5.7 | 8.3 |
| 전남 | 3.1 | 5.5 | 6.9 | 8.4 | 3.1 | 4.1 | 4.2 | 6.2 | 3.1 | 4.4 | 4.8 | 7.1 |
| 경북 | 3.5 | 4.5 | 5.6 | 7.5 | 3.2 | 3.7 | 4.2 | 6.2 | 3.4 | 3.9 | 4.6 | 6.9 |
| 경남 | 3.3 | 4.2 | 5.0 | 7.0 | 3.8 | 4.1 | 4.5 | 6.5 | 3.6 | 4.1 | 4.7 | 6.7 |
| 제주 | 1.3 | 4.3 | 4.1 | 6.1 | 4.8 | 3.9 | 4.1 | 7.4 | 3.3 | 4.0 | 4.1 | 6.6 |
| 평균 | 3.7 | 4.5 | 5.8 | 7.1 | 3.7 | 4.1 | 4.8 | 6.7 | 3.7 | 4.2 | 5.1 | 6.9 |

* 유치원에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에 전공과 포함

□ 향후 과제

-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감안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과정별 교육연계성 보장을 위한 균형적 특수학급 설치 추진
- 중·고등학교 특수학교(급)의 급당 학생정원 감축을 위한 학급 신·증설

2)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 특수학교 학생

- 2015년 4월 현재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25,531명으로 2014년의 25,288명에 비해 243명이 증가하여 소규모 증가를 보임
 - 최근의 특수학교 학생의 감소 또는 소규모 증가 추세는 통합교육 확대에 따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를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에 기인함

<표 3·10>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 연도 | '72 | '77 | '82 | '87 | '92 | '97 | '00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
| 학생수 | 5,188 | 7,342 | 10,679 | 17,373 | 20,680 | 22,789 | 24,196 | 23,291 | 22,963 | 23,400 | 23,606 | 23,776 | 24,580 | 24,720 | 25,138 | 25,288 | 25,531 |

-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설립분포의 차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별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음

<표 3·11> 시·도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 시·도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정신 지체 | 지체 장애 | 정서행동 장애 | 자폐성 장애 | 의사소통 장애 | 학습 장애 | 건강 장애 | 발달 지체 | 소계 |
|----------|--------------|------------|---------------|--------------|------------|--------------|-----------|-----------|-----------|------------|---------------|
| 서울 | 354 | 385 | 2,207 | 850 | 53 | 721 | 2 | - | 3 | 71 | 4,646 |
| 부산 | 95 | 56 | 1,012 | 306 | 4 | 301 | 3 | - | 3 | 99 | 1,879 |
| 대구 | 84 | 67 | 870 | 221 | 3 | 258 | 7 | - | 1 | 1 | 1,512 |
| 인천 | 125 | 58 | 798 | 184 | - | 170 | 5 | - | 2 | - | 1,342 |
| 광주 | 109 | 17 | 519 | 219 | - | 119 | 7 | 2 | - | 3 | 995 |
| 대전 | 109 | 30 | 574 | 103 | - | 213 | 1 | 1 | - | - | 1,031 |
| 울산 | 19 | 60 | 466 | 81 | 3 | 96 | - | 1 | - | 1 | 727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 31 | 59 | 2,743 | 533 | 11 | 917 | 14 | 2 | 29 | 38 | 4,377 |
| 강원 | 95 | 13 | 597 | 72 | 2 | 147 | 6 | - | 6 | 3 | 941 |
| 충북 | 189 | 119 | 638 | 194 | 3 | 167 | 6 | - | 1 | 15 | 1,332 |
| 충남 | 5 | 9 | 621 | 141 | - | 110 | 1 | 1 | - | 11 | 899 |
| 전북 | 43 | 24 | 846 | 197 | 6 | 149 | 8 | 1 | - | 15 | 1,289 |
| 전남 | 72 | 20 | 698 | 77 | 69 | 76 | 14 | - | - | 10 | 1,036 |
| 경북 | 6 | 22 | 1,145 | 140 | - | 190 | 8 | - | 1 | 7 | 1,519 |
| 경남 | 14 | 9 | 950 | 286 | 30 | 272 | 3 | 5 | 1 | 8 | 1,578 |
| 제주 | 3 | 4 | 207 | 103 | 15 | 94 | - | - | 1 | 1 | 428 |
| 계 | 1,353 | 952 | 14,891 | 3,707 | 199 | 4,000 | 85 | 13 | 48 | 283 | 25,531 |

- 설립별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국립학교 856명(3.4%), 공립학교 13,087명(51.2%), 사립학교 11,588명(45.4%)임
 - 사립특수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장애영역별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시각장애학교 1,298명, 청각장애학교 1,430명, 정신지체학교 18,659명, 지체장애학교 2,785명, 정서장애학교 1,359명으로 정신지체학교의 학생비율이 전체 73.1%로 가장 많음

<표 3·12>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 명)

| 구분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장애 | 소계 |
|----------|--------------|--------------|---------------|--------------|--------------|---------------|
| 국립 | 216 | 119 | 184 | 165 | 172 | 856 |
| 공립 | 202 | 236 | 11,297 | 1,176 | 176 | 13,087 |
| 사립 | 880 | 1,075 | 7,178 | 1,444 | 1,011 | 11,588 |
| 계 | 1,298 | 1,430 | 18,659 | 2,785 | 1,359 | 25,531 |

※ 학생 개인의 장애영역이 아닌,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학생수 임

- 사립특수학교에 위탁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 45.4%임

<표 3·13> 시·도별 및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 명, %)

| 시·도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사립학교 위탁비율 |
|----------|---------------------|-------------------------|-------------------------|------------------------|-------------|
| 서울 | 500 | 1,413 | 2,733 | 4,646 | 58.8 |
| 부산 | - | 1,302 | 577 | 1,879 | 30.7 |
| 대구 | - | 721 | 791 | 1,512 | 52.3 |
| 인천 | - | 864 | 478 | 1,342 | 35.6 |
| 광주 | - | 712 | 283 | 995 | 28.4 |
| 대전 | - | 680 | 351 | 1,031 | 34.0 |
| 울산 | - | 453 | 274 | 727 | 37.7 |
| 세종 | - | - | - | - | - |
| 경기 | 356 | 1,899 | 2,122 | 4,377 | 48.5 |
| 강원 | - | 743 | 198 | 941 | 21.0 |
| 충북 | - | 354 | 978 | 1,332 | 73.4 |
| 충남 | - | 702 | 197 | 899 | 21.9 |
| 전북 | - | 742 | 547 | 1,289 | 42.4 |
| 전남 | - | 511 | 525 | 1,036 | 50.7 |
| 경북 | - | 351 | 1,168 | 1,519 | 76.9 |
| 경남 | - | 1,390 | 188 | 1,578 | 11.9 |
| 제주 | - | 250 | 178 | 428 | 41.6 |
| 계 | 856 (3.4) | 13,087 (51.2) | 11,588 (45.4) | 25,531 (100) | 45.4 |

(2) 특수학급 학생

- 2015년 4월 현재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46,351명으로 2014년의 45,803명에 비해 548명이 증가함
- 최근 통합교육의 확산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비해 251개의 특수학급이 증가함

<표 3·14>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 명)

| 연도 | '71 | '82 | '86 | '91 | '96 | '00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
| 학생수 | 30 | 7,655 | 30,876 | 28,795 | 26,087 | 26,627 | 32,506 | 35,340 | 37,857 | 39,380 | 42,021 | 43,183 | 44,433 | 45,181 | 45,803 | 46,351 |

- 학교과정별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유치원 2,039명, 초등학교 20,991명, 중학교 11,312명, 고등학교 12,009명(전공과 포함)임

<표 3·15>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 시·도 | 유치원 | | | | 초등학교 | | | | 중학교 | | | | 고등학교* | | | | 전체 | | | |
|-----|--------|---------|-----|--------|-----------|----|--------|------------|------------|------------|------------|--------------|-------|--------|-----|--------|----|----|----|---|
|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 서울 | 228 | 238 | 10 | 2,738 | 2748 | 12 | 1,428 | 1,440 | 20 | 1,388 | 134 | 1,542 | 42 | 5,732 | 134 | 5,938 | | | | |
| 부산 | 70 | 70 | 5 | 1,219 | 1,224 | | 628 | 628 | 10 | 539 | 70 | 649 | 15 | 2,485 | 70 | 2,571 | | | | |
| 대구 | 39 | 43 | 6 | 811 | 817 | 7 | 461 | 468 | 10 | 524 | | 534 | 23 | 1,835 | 4 | 1,882 | | | | |
| 인천 | 210 | 210 | 6 | 1,333 | 1,539 | | 654 | 2,656 | | 649 | 53 | 702 | 6 | 3,016 | 55 | 3,077 | | | | |
| 광주 | 40 | 40 | 4 | 530 | 534 | 5 | 311 | 2,318 | 14 | 292 | 40 | 346 | 23 | 1,173 | 42 | 1,238 | | | | |
| 대전 | 151 | 151 | | 745 | 745 | | 357 | 21,388 | | 315 | 52 | 367 | | 1,539 | 73 | 1,632 | | | | |
| 울산 | 50 | 50 | | 545 | 545 | | 233 | 233 | | 239 | | 239 | | 1,128 | | 1,128 | | | | |
| 세종 | 23 | 23 | | 98 | 98 | | 49 | 49 | | 48 | | 48 | | 213 | | 213 | | | | |
| 경기 | 580 | 11,591 | 591 | 5,213 | 18,523 | 18 | 5,231 | 2,296 | 119 | 3,055 | 165 | 3,479 | 165 | 12,218 | 313 | 12,531 | | | | |
| 강원 | 57 | 63 | 5 | 729 | 734 | | 373 | 373 | 7 | 339 | | 346 | 18 | 1,448 | | 1,516 | | | | |
| 충북 | 108 | 111 | 10 | 785 | 785 | 6 | 474 | 480 | 13 | 447 | 9 | 499 | 32 | 1,814 | 9 | 1,855 | | | | |
| 충남 | 158 | 161 | 2 | 1,237 | 1,239 | 5 | 618 | 35,646 | 3 | 538 | 22 | 623 | 13 | 2,336 | 57 | 2,666 | | | | |
| 전북 | 47 | 47 | 9 | 743 | 732 | | 361 | 18,379 | 12 | 336 | 8 | 356 | 21 | 1,497 | 26 | 1,534 | | | | |
| 전남 | 88 | 88 | 5 | 1,039 | 1,034 | | 533 | 23,588 | | 501 | 22 | 523 | 5 | 2,211 | 47 | 2,233 | | | | |
| 경북 | 29 | 29 | 1 | 1,155 | 24,118 | | 515 | 87,602 | | 450 | 181 | 631 | 1 | 2,149 | 232 | 2,442 | | | | |
| 경남 | 105 | 105 | 6 | 1,324 | 14,154 | 4 | 778 | 71,853 | 12 | 715 | 86 | 813 | 22 | 3,122 | 171 | 3,315 | | | | |
| 제주 | 19 | 19 | 5 | 230 | 235 | 4 | 115 | 119 | 24 | 123 | | 147 | 33 | 487 | | 530 | | | | |
| 계 | 12,202 | 15,2039 | 74 | 20,861 | 56,20,991 | 43 | 10,889 | 380,11,312 | 125,11,042 | 842,12,009 | 254,44,804 | 1,233,46,351 | | | | | | | | |

*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186명(대구 11명, 인천 33명, 경기 123명, 충북 19명) 고등학교에 포함

(3) 일반학급 학생

- 2015년 4월 현재 일반학급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총 1.3%로 2014년 대비 0.1%로 증가함

<표 3·16> 시·도별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 시·도 | 일반학교 학생수 | | | | | 특수교육대상자수 | | | | |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 | | |
|-----|----------|-----------|-----------|-----------|-----------|----------|--------|--------|--------|--------|------------|-----|-----|-----|-----|
| | 유 | 초 | 중 | 고 | 계 | 유 | 초 | 중 | 고 | 계 | 유 | 초 | 중 | 고 | 계 |
| 서울 | 97,191 | 451,953 | 263,819 | 308,602 | 1,121,565 | 1,039 | 4,895 | 3,128 | 4,084 | 13,146 | 1.1 | 1.1 | 1.2 | 1.3 | 1.2 |
| 부산 | 45,175 | 154,283 | 95,020 | 109,773 | 404,251 | 587 | 2,330 | 1,321 | 1,784 | 6,022 | 1.3 | 1.5 | 1.4 | 1.6 | 1.5 |
| 대구 | 36,951 | 129,583 | 80,982 | 95,199 | 342,715 | 232 | 1,708 | 1,110 | 1,460 | 4,510 | 0.6 | 1.3 | 1.4 | 1.5 | 1.3 |
| 인천 | 42,423 | 157,066 | 89,298 | 98,712 | 387,499 | 570 | 2,240 | 1,175 | 1,600 | 5,585 | 1.3 | 1.4 | 1.3 | 1.6 | 1.4 |
| 광주 | 23,741 | 91,866 | 56,562 | 63,960 | 236,129 | 115 | 1,003 | 708 | 958 | 2,784 | 0.5 | 1.1 | 1.3 | 1.5 | 1.2 |
| 대전 | 25,660 | 89,464 | 52,215 | 58,598 | 225,937 | 267 | 1,202 | 760 | 1,065 | 3,294 | 1.0 | 1.3 | 1.5 | 1.8 | 1.5 |
| 울산 | 19,253 | 66,159 | 39,040 | 46,112 | 170,564 | 122 | 942 | 564 | 829 | 2,457 | 0.6 | 1.4 | 1.4 | 1.8 | 1.4 |
| 세종 | 4,137 | 13,587 | 6,232 | 5,078 | 29,034 | 24 | 97 | 49 | 48 | 218 | 0.6 | 0.7 | 0.8 | 0.9 | 0.8 |
| 경기 | 191,279 | 737,432 | 410,052 | 446,826 | 1,785,589 | 1,065 | 7,579 | 4,665 | 6,014 | 19,323 | 0.6 | 1.0 | 1.1 | 1.3 | 1.1 |
| 강원 | 17,389 | 78,410 | 48,069 | 54,835 | 198,703 | 169 | 1,050 | 790 | 998 | 3,007 | 1.0 | 1.3 | 1.6 | 1.8 | 1.5 |
| 충북 | 18,305 | 85,290 | 50,707 | 56,227 | 210,529 | 257 | 1,304 | 972 | 1,447 | 3,980 | 1.4 | 1.5 | 1.9 | 2.6 | 1.9 |
| 충남 | 27,136 | 115,468 | 65,212 | 74,235 | 282,051 | 265 | 1,675 | 955 | 1,181 | 4,076 | 1.0 | 1.5 | 1.5 | 1.6 | 1.4 |
| 전북 | 25,127 | 100,206 | 62,442 | 71,577 | 259,352 | 160 | 1,305 | 881 | 1,212 | 3,558 | 0.6 | 1.3 | 1.4 | 1.7 | 1.4 |
| 전남 | 20,006 | 94,657 | 59,061 | 68,727 | 242,451 | 145 | 1,485 | 945 | 1,110 | 3,685 | 0.7 | 1.6 | 1.6 | 1.6 | 1.5 |
| 경북 | 38,663 | 129,745 | 77,584 | 90,238 | 336,230 | 134 | 1,866 | 1,201 | 1,661 | 4,862 | 0.3 | 1.4 | 1.5 | 1.8 | 1.4 |
| 경남 | 50,770 | 188,616 | 108,308 | 120,228 | 467,922 | 264 | 2,399 | 1,577 | 2,028 | 6,268 | 0.5 | 1.3 | 1.5 | 1.7 | 1.3 |
| 제주 | 5,547 | 38,164 | 22,051 | 22,984 | 88,746 | 71 | 511 | 307 | 403 | 1,292 | 1.3 | 1.3 | 1.4 | 1.8 | 1.5 |
| 계 | 688,753 | 2,721,949 | 1,586,654 | 1,791,911 | 6,789,267 | 5,486 | 33,591 | 21,108 | 27,882 | 88,067 | 0.8 | 1.2 | 1.3 | 1.6 | 1.3 |

※ 연도별 비율 : 2010(1.0%), 2011(1.1%), 2012(1.2%), 2013(1.2%), 2014(1.2%), 2015(1.3%)

※ 특수교육대상자수 유치원 과정은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 과정은 전공과 학생 포함

(4)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 2015년 4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 장애영아 학급수는 55학급이며, 장애영아수는 563명임
- 연령별로 1세 미만 13명, 1세 149명, 2세 401명이며, 교육유형별로 센터지원 영아수는 438명, 순회지원 영아수는 125명임

<표 3·17>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단위 : 명)

| 시·도 | 센터설치 장애영아 학급수 | 연령별 지원영아 수 | | | | 교육 유형별 영아수 | | |
|----------|---------------|------------|------------|------------|------------|------------|------------|------------|
| | | 1세 미만 | 1세 | 2세 | 계 | 센터지원 영아수 | 순회지원 영아수 | 계 |
| 서울 | 11 | 5 | 94 | 206 | 305 | 304 | 1 | 305 |
| 부산 | - | - | - | - | 0 | - | - | 0 |
| 대구 | 8 | - | - | 14 | 14 | 14 | - | 14 |
| 인천 | - | 1 | 9 | 29 | 39 | 38 | 1 | 39 |
| 광주 | - | - | - | - | 0 | - | - | 0 |
| 대전 | 4 | - | 1 | 13 | 14 | 14 | - | 14 |
| 울산 | - | - | 4 | 17 | 21 | 5 | 16 | 21 |
| 세종 | - | - | - | - | 0 | - | - | 0 |
| 경기 | 24 | 5 | 21 | 55 | 81 | 29 | 52 | 81 |
| 강원 | - | - | 3 | 15 | 18 | - | 18 | 18 |
| 충북 | - | 1 | 3 | 7 | 11 | 2 | 9 | 11 |
| 충남 | 4 | - | - | 11 | 11 | 6 | 5 | 11 |
| 전북 | - | - | - | - | 0 | - | - | 0 |
| 전남 | - | - | - | 3 | 3 | - | 3 | 3 |
| 경북 | - | 1 | - | 5 | 6 | - | 6 | 6 |
| 경남 | 2 | - | 9 | 13 | 22 | 12 | 10 | 22 |
| 제주 | 2 | - | 5 | 13 | 18 | 14 | 4 | 18 |
| 계 | 55 | 13 | 149 | 401 | 563 | 438 | 125 | 563 |

3)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5년 4월 현재 유아특수교육기관은 유치원 과정 운영 특수학교가 118개교 247학급(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9개교 67학급 포함),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이 480개교 551학급으로 총 598개교 798학급이 운영되고 있음

<표 3·18>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 교, 급)

| 구 분 | 특수학교 유치원 | | 유 치 원 특수학급 | 계 |
|-----|----------------|---------------------------|------------|-----|
| | 전체 특수학교 유치원(A) |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 | |
| 학교수 | 118 | 9 | 480 | 598 |
| 학급수 | 247 | 67 | 551 | 798 |

- 2015년 4월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내 유치원에 883명(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269명 포함), 유치원 특수학급에 2,039명, 유치원 일반학급에 1,822명으로 총 4,744명임

<표 3·19> 유아특수교육기관 학생 수 (단위 : 명)

| 구 분 | 특수학교 유치원 | | 유치원 특수학급 | 유치원 일반학급 | 계 |
|-----|-----------------|---------------------------|----------|----------|-------|
| |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 (A) |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 | | |
| 학생수 | 883 | 269 | 2,039 | 1,822 | 4,744 |

- 2015년 현재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공립 유치원 1,788명, 사립유치원 1,466명으로 총 3,254명이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음
- 1인 월 교육비 최고지원액 평균은 공립유치원 107천원, 사립유치원 341천원임

<표 3·20> 공·사립 일반유치원 특수교육 대상 유아 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 시·도 | 공립유치원 | | | 사립유치원 | | |
|----------|--------------|--------------|-------------|--------------|--------------|-------------|
| | 신청자수 | 지원자수 | 1인 최고지원액(월) | 신청자수 | 지원자수 | 1인 최고지원액(월) |
| 서울 | 71 | 71 | 146 | 159 | 159 | 384 |
| 부산 | 85 | 85 | 110 | 350 | 350 | 361 |
| 대구 | 3 | 3 | 90 | 112 | 112 | 361 |
| 인천 | 260 | 260 | 110 | 226 | 226 | 361 |
| 광주 | - | - | - | 64 | 64 | 361 |
| 대전 | 170 | 170 | 110 | 44 | 44 | 361 |
| 울산 | 74 | 74 | 110 | 23 | 23 | 380 |
| 세종 | 23 | 23 | 110 | - | - | - |
| 경기 | 779 | 779 | 27 | 167 | 167 | 42 |
| 강원 | 44 | 44 | 150 | 10 | 10 | 361 |
| 충북 | - | - | - | 22 | 22 | 361 |
| 충남 | 203 | 203 | 110 | 42 | 42 | 361 |
| 전북 | 10 | 10 | 90 | 82 | 82 | 361 |
| 전남 | - | - | - | 11 | 11 | 311 |
| 경북 | 54 | 54 | 110 | 49 | 49 | 361 |
| 경남 | 11 | 11 | 90 | 82 | 82 | 361 |
| 제주 | 1 | 1 | 137 | 23 | 23 | 361 |
| 계 | 1,788 | 1,788 | 107 | 1,466 | 1,466 | 341 |

-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및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또는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배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 함

<표 3·21> 의무교육 가능 학교 및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¹⁾ 현황 (단위 : 교)

| 특수학교 유치원 ²⁾ | 교육부 | | 소 계 | 보건복지부 | | | 소 계 | 합 계 |
|------------------------|-------------------|-----------------|--------------|-----------|-----------|---------|--------------|--------------|
| | 유치원 ³⁾ | | | 장애전담 어린이집 | 장애통합 어린이집 | 일반 어린이집 | | |
|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 | | | | | | |
| 118 | 480 | 1,221 | 1,819 | 174 | 872 | 1,634 | 2,680 | 4,499 |

1)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 '14.12.31. 기준

2) 유치원 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

3)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유치원

□ 향후 과제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홍보 및 배치
- 일반 유치원 배치 희망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 의무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특수학급 증설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3세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3세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거나 순회교육을 제공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건강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장애영아 담당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은, 2015년 4월 현재 특수학교 43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55학급, 총 98학급의 장애영아 학급이 설치되었음
- 특수학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179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563명으로 총 742명의 장애영아가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음
- 연령별 현황은 1세미만 22명, 1세 200명, 2세 520명으로 총 742명임

<표 3·22>

시·도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단위 : 명, 급)

| 시·도 | 연령별 지원영아 수 | | | | 특수학교 | | 특수교육지원센터 | | | | 합 계 | |
|----------|------------|------------|------------|------------|-----------|------------|-----------|------------|------------|------------|-----------|------------|
| | 1세 미만 | 1세 | 2세 | 계 | 영아 학급수 | 지원 영아수 | 영아 학급수 | 지원 영아수 | | | 영아 학급수 | 지원 영아수 |
| | | | | | | | | 센터지원 영아수 | 순회지원 영아수 | 계 | | |
| 서울 | 6 | 107 | 239 | 352 | 10 | 47 | 11 | 304 | 1 | 305 | 21 | 352 |
| 부산 | 5 | 9 | 41 | 55 | 16 | 55 | - | - | - | - | 16 | 55 |
| 대구 | - | 2 | 14 | 16 | - | 2 | 8 | 14 | - | 14 | 8 | 16 |
| 인천 | 3 | 11 | 32 | 46 | 3 | 7 | - | 38 | 1 | 39 | 3 | 46 |
| 광주 | 1 | - | 1 | 2 | 1 | 2 | - | - | - | - | 1 | 2 |
| 대전 | - | 10 | 20 | 30 | 3 | 16 | 4 | 14 | - | 14 | 7 | 30 |
| 울산 | - | 6 | 19 | 25 | 1 | 4 | - | 5 | 16 | 21 | 1 | 25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 5 | 24 | 65 | 94 | 1 | 13 | 24 | 29 | 52 | 81 | 25 | 94 |
| 강원 | - | 3 | 15 | 18 | - | - | - | - | 18 | 18 | - | 18 |
| 충북 | 1 | 9 | 15 | 25 | 3 | 14 | - | 2 | 9 | 11 | 3 | 25 |
| 충남 | - | 1 | 20 | 21 | 3 | 10 | 4 | 6 | 5 | 11 | 7 | 21 |
| 전북 | - | 4 | 4 | 8 | 2 | 8 | - | - | - | - | 2 | 8 |
| 전남 | - | - | 3 | 3 | - | - | - | - | 3 | 3 | - | 3 |
| 경북 | 1 | - | 5 | 6 | - | - | - | - | 6 | 6 | - | 6 |
| 경남 | - | 9 | 14 | 23 | - | 1 | 2 | 12 | 10 | 22 | 2 | 23 |
| 제주 | - | 5 | 13 | 18 | - | - | 2 | 14 | 4 | 18 | 2 | 18 |
| 계 | 22 | 200 | 520 | 742 | 43 | 179 | 55 | 438 | 125 | 563 | 98 | 742 |

□ 향후 과제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장애영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장애영아 조기중재를 위한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편성·확대

5)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운영 강화

□ 관련 법규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은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하고 출석인정을 하는 제도임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5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병원학교는 33개교로 이 중 서울지역의 10개 병원은 교육청과 협약을 토대로 하여 교육청에서 행·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병원 자체운영 체제이며, 23개 병원학교는 교육청 소속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파견학급으로 운영됨

<표 3·23> 병원학교 현황 (단위 : 교, 명)

| 학교수 | 월평균 학생수 | 교사 및 담당자수 | 병 원 명 | |
|-----|---------|-----------|---|--|
| | | | 교육청 소속 병원학교 (23개) | 교육청과 병원간 협약 및 병원자체 운영 병원학교 (10개) |
| 33 | 680 | 43 |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영남대의료원병원, 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공주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진북대학교병원, 국립나주병원, 화순진남대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부곡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서울병원, 한국원자력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서울고대구로병원 |

- 2015년 병원학교에 43명의 담당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 학생수 중 건강장애학생은 659명, 월 평균 이용 학생수는 680명임
- 병원학교에 배치된 학생에게 교과교육, 체험활동, 방과후활동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학교교육 지원

<표 3·24> 병원학교 운영 현황 (단위 : 명)

| 시·도 | 병원명 또는 병원학교명 | 월평균 이용 학생수 | 전체 학생수 | | | 담당 특수교사 수 | 보조 인력 수 |
|-----|--------------|------------|--------|-----|-------|----------------|---------|
| | | | 건강장애 | 기타 | 계 | | |
| 서울 | 국립서울병원 | 32 | - | 49 | 49 | 사회복지사1, 특수교사3 | 18 |
| | 서울삼성병원 | 52 | 31 | 50 | 81 | 중등교사1 | 35 |
| | 서울대병원 | 67 | 108 | 0 | 108 | 평생교육사1, 중등교사1 | 27 |
| | 서울성모병원 | 71 | 128 | 112 | 240 | 사회복지사1 | 37 |
| | 서울어린이병원 | 4 | - | 4 | 4 | 음악치료사1 | 3 |
| | 서울아산병원 | 33 | 35 | 6 | 41 | 사회복지사1 | 20 |
| | 연세암병원 | 62 | 48 | 81 | 129 | 보건교사1, 중등교사1 | 50 |
| | 한국원자력병원 | 12 | 23 | - | 23 | 간호사1 | 16 |
| | 한양대병원 | 8 | 12 | - | 12 | 간호사1 | 41 |
| | 고대구로병원 | 17 | 15 | 53 | 68 | 사회복지사1 | 14 |
| 부산 | 부산대병원 | 5 | 1 | 3 | 4 | 특수교사 1 | - |
| | 동아대병원 | 6 | 4 | - | 4 | 특수교사 1 | - |
| | 인제대부산백병원 | 15 | 5 | 8 | 13 | 특수교사 1 | 1 |
| | 인제대해운대백병원 | 4 | 4 | - | 4 | 특수교사 1 | 1 |
| 대구 | 영남대의료원병원 | 40 | 50 | - | 50 | 특수교사 1 | 2 |
| | 대동병원 | 10 | 11 | - | 11 | 특수교사 1 | 3 |
| | 경북대병원 | 25 | 16 | 4 | 20 | 특수교사 1 | 2 |
| 인천 | 인하대병원 | 60 | 3 | 25 | 28 | 특수교사 1 | - |
| 대전 | 충남대병원 | 16 | 16 | - | 16 | 특수교사 1 | 1 |
| 울산 | 울산대병원 | 15 | 22 | 1 | 23 | 특수교사1, 순회특수교사1 | 2 |
| 경기 | 국립암센터 | 10 | 10 | - | 10 | 특수교사 2 | - |
| 강원 | 강원대병원 | 1 | 2 | - | 2 | 특수교사 1 | - |
| | 강릉아산병원 | 19 | 1 | 1 | 2 | 특수교사 1 | - |
| 충북 | 충북대병원 | - | - | - | - | 특수교사 1 | - |
| 충남 | 국립공주병원 | 3 | 1 | 2 | 3 | 특수교사 1 | - |
| | 단국대병원 | 2 | 2 | - | 2 | 특수교사 1 | - |
| 전북 | 전북대병원 | 9 | 18 | 1 | 19 | 특수교사 2 | - |
| 전남 | 국립나주병원 | 12 | 4 | 12 | 16 | 특수교사 1 | 1 |
| | 진남대병원 | 17 | 32 | 1 | 33 | 특수교사 2 | 1 |
| 경남 | 경상대병원 | 5 | 5 | - | 5 | 특수교사 1 | - |
| | 국립부곡병원 | 5 | - | 7 | 7 | 특수교사 1 | 1 |
| | 양산부산대병원 | 39 | 48 | 3 | 51 | 특수교사 2 | 1 |
| 제주 | 제주대병원 | 4 | 4 | 1 | 5 | 특수교사 1 | 1 |
| 계 | 33 | 680 | 659 | 424 | 1,083 | 43 | 278 |

- 건강장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해 4개 교육청에서 화상강의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건강장애학생은 1,463명임

<표 3·25> 화상강의 운영 현황

| 시·도 | 기관명 | 사이버 학급수 | 강사수 | 전체 학생수 | | | 월 평균 이용 학생 수 | 개별학생 평균 이용일 |
|----------|---------|------------|------------|--------------|------------|--------------|--------------------|-------------------|
| | | | | 건강 장애 | 기타 | 계 | | |
| 서울 | 풀밭무지개학교 | 53 | 35 | 612 | 157 | 769 | 699 | 18.3 |
| 부산 | 꿈사랑학교 | 47 | 24 | 611 | 305 | 916 | 801 | 109 |
| 인천 | 인천사이버학교 | 12 | 13 | 179 | 0 | 179 | 179 | 20 |
| 충남 | 꿈빛나래학교 | 12 | 63 | 61 | 7 | 68 | 58 | 20 |
| 계 | | 124 | 135 | 1,463 | 469 | 1,932 | 1,737 | 51.3 |

□ 향후 과제

- 건강장애학생의 유급방지 및 학습권 보장
- 자원봉사교사제 활용 및 학생 소속 학교와의 연계 강화
- 병원학교 유관기관 및 관계자간 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지원

6)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제 실시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 교육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함(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5년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 관련 규정을 포함함

<표 3·26>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제 실시 현황

|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등에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 포함 여부 | |
|--|-----|
| 포함 | 미포함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

□ 향후 과제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학습요구 파악 및 평가조정 지원 방안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 학력평가 시 평가조정 지원 내실화
- 평가조정 시행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성취도 제고

7)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정의 세부 이수기준 중 교직소양 영역에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함(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61호, 2008.1.8.)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59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통합교육 연구를 위한 일반교사 연구회는 총 29개에 59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1,609명의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임교원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에 참여함
- 2015년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개발·적용 등을 위해 통합교육 시범학교 31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표 3·27> 시·도별 일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천원)

| 시·도 | 일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수 | 총회원 수 | 지원예산 |
|----------|-----------------|------------|----------------|
| 서울 | 13 | 267 | 66,000 |
| 부산 | 1 | 8 | 3,000 |
| 대구 | 1 | 40 | 3,000 |
| 울산 | 2 | 24 | 6,000 |
| 강원 | 2 | 27 | 4,000 |
| 충북 | 1 | 31 | 3,000 |
| 충남 | 3 | 35 | 3,000 |
| 전북 | 1 | 11 | 3,000 |
| 전남 | 1 | 17 | 3,000 |
| 경북 | 2 | 48 | 7,000 |
| 경남 | 1 | 25 | 3,000 |
| 제주 | 1 | 60 | 3,000 |
| 계 | 29 | 593 | 107,000 |

<표 3·28> 통합학급 담임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단위 : 개, 명, 천원)

| 시·도 |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 | | |
|-----------|---------------------------|--------------|------------|--------------|
| | 1~14시간 | 15시간~29시간 | 30~59시간 | 60시간 이상 |
| 서울 | 873 | 296 | 108 | 122 |
| 부산 | 893 | 151 | 23 | 18 |
| 대구 | 1,289 | 72 | 43 | 16 |
| 인천 | 1,716 | 72 | 3 | 3 |
| 광주 | 559 | 68 | 18 | 10 |
| 대전 | 842 | 42 | 7 | 4 |
| 울산 | 675 | 41 | 35 | 3 |
| 세종 | 54 | 4 | 1 | - |
| 경기 | 4,553 | 399 | 100 | 86 |
| 강원 | 875 | 405 | 23 | 12 |
| 충북 | 907 | 36 | 5 | 1 |
| 충남 | 650 | 243 | 109 | 897 |
| 전북 | 435 | 144 | 18 | 23 |
| 전남 | 144 | 48 | 19 | 10 |
| 경북 | 1,608 | 168 | 24 | 61 |
| 경남 | 1,124 | 99 | 34 | 24 |
| 제주 | 228 | 31 | 3 | 2 |
| 전체 | 17,425 | 2,319 | 573 | 1,292 |

<표 3·29>

시·도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현황

(단위 : 교, 천원)

| 시·도 | 지정별 | | | | 지원예산액 |
|----------|---------|-----------|----------|-----------|----------------|
| | 과정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계 | |
| 서울 | 유, 초, 중 | 11 | - | 11 | 80,000 |
| 부산 | - | - | - | - | - |
| 대구 | 초 | - | 4 | 4 | 4,000 |
| 인천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강원 | 초 | 1 | - | 1 | 25,000 |
| 충북 | - | - | - | - | - |
| 충남 | 초, 중, 고 | 10 | - | 10 | 20,000 |
| 전북 | 유 | 2 | - | 2 | 10,000 |
| 전남 | 초, 중 | 2 | - | 2 | 14,000 |
| 경북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제주 | 초 | 1 | - | 1 | 6,000 |
| 계 | | 27 | 4 | 31 | 159,000 |

□ 향후 과제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협력 통합교육 연구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확대
- 일반교사의 장애학생 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통합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청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의 확대 및 지원강화

8)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강화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무시험검정 기준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과정별(유치원, 초등, 중등, 체육, 직업교육) 전공과목 30학점, 교직과목 20학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무시험검정 기준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과정별(유치원, 초등, 중등, 체육, 직업교육) 38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은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또는 일반 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경우에 부여됨
- 2015년 기준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39개교이고, 승인 인원은 1,853명임

<표 3·30>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단위 : 교, 개, 명)

| 설립별 | 대학명 | 계열 | 학과 및 전공명 | 입학 정원 | 승인 인원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
|----------|-----------|------------------|--------------------|--------------|--------------------------------------|--|
| 국립 | 공주대 | 사범대학 | 특수교육과 | 50 | 50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부산대 | 사범대학 | 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전남대(여수) | 사범대학 |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전공 | 15 | 15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 |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 15 | 15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 15 | 15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전공 | 15 | 15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창원대 | 교육과 | 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한국교통대 | 교육과 | 유아특수교육학과 | 15 | 15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한국체육대 | 교육과 | 특수체육교육과 | 30 | 30 | 특수체육(중등) 정교사(2급) 체육 | |
| 계 | 6 | | 8 | 180 | 180 | |
| 사립 | 가야대 | 교육과 | 초등특수교육과 | 25 | 25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 특수체육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
| | 가톨릭대 | 교육과 | 특수교육과 | 30 | 3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
| | | | 중등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강남대 | 사범대학 | 초등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 초등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건양대 | 교육과 | 초등특수교육과 | 30 | 3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 중등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경동대 | 교육과 | 중등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
| | 경주대 | 교육과 | 특수체육교육학과 | 10 | 1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
| | 광주여대 | 교육과 | 중등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영어 중등학교(중등) 정교사(2급)미술 |
| | | | 초등특수교육과 | 30 | 3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 사범대학 | 중등특수교육학과 | 20 | 20 |
| | 극동대 | 교육과 | 초등특수교육학과 | 20 | 20 | 특수학교(초등)정교사(2급) |
| | | | 중등특수교육학과 | 20 | 2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영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체육 |
| | 나사렛대 | 교육과 | 유아특수교육과 | 40 | 40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 | 중등특수교육과 | 30 | 3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
| | | | 특수교육과 | 40 | 4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남부대 | 교육과 | 인문사회계열 재활학부 인간재활학과 | 50 | 5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
| | | | 유아특수교육과 | 15 | 15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초등특수교육과 | | | 25 | 25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단국대(죽전) | 사범대학 | 특수교육과 | 40 | 4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 유아특수교육과 | 35 | 35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 | 초등특수교육과 | 40 | 4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대구대 | 사범대학 | 특수교육과 | 40 | 4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 초등특수교육과 | 40 | 4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 유아특수교육과 | 35 | 35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계 | 33 | | 62 | 1,844 | 1,673 | |
| | | | | | | 총계 |

| 설립별 | 대학명 | 계열 | 학과 및 전공명 | 입학 정원 | 승인 인원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 |
|-----------|-----------|--------------------|----------------|--------------|---|---|--|
| 국립 | 대구한대 | | 중등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정교사 (2급)영어 특수학교정교사 (2급)정보·컴퓨터 특수학교정교사 (2급)일본어 | |
| | | | 대전대 | 인문예술대학 | 중등특수교육과 | 20 | 20 |
| | 백석대 | 사범학부 | 특수교육과 | 유아특수교육과 | 40 | 40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 | | 특수교육과 | 60 | 6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국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영어 |
| | | | 특수체육교육과 | 40 | 4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 |
| | | | 유아특수교육과 | 40 | 40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 부산장신대 | 교육과 | 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세한대 | 교육과 | 특수교육과 | 35 | 35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
| | 순천향대 | 교육과 | 특수교육과 | 30 | 3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2급) | |
| | 신라대 | 체육계열 | 체육학부 특수체육전공 | 60 | 2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영남대 | 사범대학 | 특수체육교육과 | 30 | 3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 | |
| | | 중등특수교육과 | 30 | 3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영동대 | 교육과 | 초등특수교육과 | 30 | 3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 | 중등특수교육과 | 30 | 3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용인대 | 사범대학 | 특수체육교육과 | 30 | 3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 | |
| | | 유아특수교육과 | 35 | 35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 우석대 | 사범대학 | 특수교육과 | 40 | 40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 |
| | | 유아특수교육과 | 35 | 35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 원광대 | 사범대학 | 중등특수교육과 | 30 | 3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 |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 30 | 3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위덕대 | 교육과 |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 30 | 30 | 특수학교(초등)정교사(2급) | | |
| | |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 30 | 3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이화여대 | 사범대학 | 특수교육과 | 36 | 38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 | 특수교육과 | 30 | 30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전주대 | 사범대학 | 중등특수교육과 | 30 | 3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 | 특수교육과 | 30 | 3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중부대 | 사범계 | 유아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 | | 중등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 | |
| | | 초등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평택대 | 교육과 | 특수체육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 | |
| | | 유아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 한국국제대 | 교육과 | 초등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 | 유아특수교육과 | 20 | 20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 한신대 | 휴먼서비스대학 | 특수체육학과 | 20 | 20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 | |
| | | 특수체육학과 | 40 | 4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 | |
| 계 | 33 | | 62 | 1,844 | 1,673 | | |
| 총계 | 39 | | 70 | 2,024 | 1,853 | | |

III. 2015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 2015년 기준 19개 대학의 교육대학원에서 29개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31>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원)

(단위 : 교, 개)

| 설립별 | 대학원명 | 설립 년도 | 수업 형태 | '15학년도 운영전공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
|------------|-----------|----------|----------|---|---|
| 국립 | 공주대 | 1986 | 계절 | 중등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1999 | | 초등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1997 | | 유아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부산대 | 2001 | 야간 | 유아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 1999 | | 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1999 | | 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서울대 | 1999 | 주간 | 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 | 창원대 | 1997 | 야간 | 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한국교통대 | 2013 | 야간 | 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한국교원대 | 1997 | 계절 | 특수교육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표시과목 |
| 국립계 | 6 | | | 10 | |
| 사립 | 광운대 | 2014 | 야간 | 특수교육전공 | |
| | 단국대(죽진) | 1998 | 야간 | 유아특수교육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 | | 초등특수교육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 | 중등특수교육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표시과목 |
| | 대구대 | 1984 | 계절 | 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표시과목 |
| | 대구한의대 | 2014 | 계절 | 특수교육전공 | |
| | 순천향대 | 1999 | 야간 | 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표시과목 |
| | | 2011 | 야간 | 특수체육교육전공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
| | 이주대 | 2001 | 야간 | 특수교육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 | | | 특수교육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 | | 특수교육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영남대 | 1999 | 계절·주간 | 특수교육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표시과목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용인대 | 1998 | 야간 | 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 | 우석대 | 1986 | 계절 | 특수교육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 | 유아특수교육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이화여자대 | 1993 | 야간 | 특수교육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
| 인제대 | 1998 | 야간 | 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 | | 특수교육전공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
| 조선대 | 1999 | 계절 | 특수교육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표시과목 | |
| 사립계 | 13 | | | 19 | |
| 총 계 | 19 | | | 29 | |

201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2015년 기준 10개의 교육대학교에서 특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32>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현황

(단위 : 명)

| 교육대학명 | 형태 | 수업형태 | '13학년도 입학정원 | '15학년도 운영전공 |
|---------|-------|-------|----------------|----------------|
| 서울교육대학교 | 전문대학원 | 야간 | 10 | 초등 특수교육 |
| 부산교육대학교 | 특수대학원 | 야간 | 8 | |
| 대구교육대학교 | | 계절·야간 | 총정원제 운영 | |
| 경인교육대학교 | 전문대학원 | 계절·야간 | 30 | |
| 광주교육대학교 | 특수대학원 | 야간 | 총정원제 운영 | |
| 춘천교육대학교 | | 계절·야간 | | |
| 청주교육대학교 | | 계절 | 11 | |
| 공주교육대학교 | | 계절 | 총정원제 운영 | |
| 전주교육대학교 | | 야간 | | |
| 진주교육대학교 | | 야간 | 15 | |

□ 향후 과제

-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강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일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과정의 교육과정 강화 및 전공 교수 확보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교원에 대하여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직연수는 국립 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산하기관인 시·도 교육연수원 포함) 및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출석(집합)연수 혹은 원격교육연수를 통해 특수교사 자격 연수(유·초등·부전공과목), 직무연수, 해외연수 및 기타 일반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은 특수교사 자격연수(초·중등)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시·도별 특수학교(급)의 전체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율은 특수학교가 97.8%, 특수학급이 98.6%로 전체 98.3%로 나타남

<표 3·33>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단위 : 명, %)

| 시·도 | 특수 학교 (센터 포함) | | | | 특수 학급 | | | | 합 계 | | | |
|------------|------------------|--------------|------------|-------------|---------------|---------------|------------|-------------|---------------|---------------|------------|-------------|
| | 현원 | 소지자 | 미소지 | 자격 소지 비율 | 현원 | 소지자 | 미소지 | 자격 소지 비율 | 현원 | 소지자 | 미소지 | 자격 소지 비율 |
| 서울 | 1,434 | 1,417 | 17 | 98.8 | 1,256 | 1,256 | - | 100.0 | 2,690 | 2,673 | 17 | 99.4 |
| 부산 | 639 | 604 | 35 | 94.5 | 559 | 559 | - | 100.0 | 1,198 | 1,163 | 35 | 97.0 |
| 대구 | 483 | 473 | 10 | 97.9 | 408 | 408 | - | 100.0 | 891 | 881 | 10 | 98.9 |
| 인천 | 354 | 351 | 3 | 99.2 | 553 | 553 | - | 100.0 | 907 | 904 | 3 | 99.7 |
| 광주 | 335 | 334 | 1 | 99.7 | 268 | 268 | - | 100.0 | 603 | 602 | 1 | 99.8 |
| 대전 | 297 | 294 | 3 | 99.0 | 310 | 310 | - | 100.0 | 607 | 604 | 3 | 99.5 |
| 울산 | 230 | 230 | - | 100.0 | 229 | 229 | - | 100.0 | 459 | 459 | 0 | 100.0 |
| 세종 | - | - | - | - | 71 | 71 | - | 100.0 | 71 | 71 | 0 | 100.0 |
| 경기 | 1,560 | 1,559 | 1 | 99.9 | 2,915 | 2,910 | 5 | 99.8 | 4,475 | 4,469 | 6 | 99.9 |
| 강원 | 343 | 302 | 41 | 88.0 | 359 | 351 | 8 | 97.8 | 702 | 653 | 49 | 93.0 |
| 충북 | 394 | 383 | 11 | 97.2 | 415 | 389 | 26 | 93.7 | 809 | 772 | 37 | 95.4 |
| 충남 | 294 | 281 | 13 | 95.6 | 578 | 572 | 6 | 99.0 | 872 | 853 | 19 | 97.8 |
| 전북 | 367 | 367 | - | 100.0 | 349 | 347 | 2 | 99.4 | 716 | 714 | 2 | 99.7 |
| 전남 | 311 | 294 | 17 | 94.5 | 509 | 495 | 14 | 97.2 | 820 | 789 | 31 | 96.2 |
| 경북 | 472 | 455 | 17 | 96.4 | 571 | 571 | - | 100.0 | 1,043 | 1,026 | 17 | 98.4 |
| 경남 | 507 | 505 | 2 | 99.6 | 721 | 655 | 66 | 90.8 | 1,228 | 1,160 | 68 | 94.5 |
| 제주 | 157 | 151 | 6 | 96.2 | 114 | 114 | - | 100.0 | 271 | 265 | 6 | 97.8 |
| 총 계 | 8,177 | 8,000 | 177 | 97.3 | 10,185 | 10,058 | 127 | 98.8 | 18,362 | 18,058 | 304 | 98.1 |

- 2015년 현재 특수교육교원 연구회는 217개이며 6,475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표 3·34>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천원)

| 시·도 |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수 | 회원수 | 지원 예산 |
|----------|--------------|--------------|----------------|
| 서울 | 15 | 1,309 | 12,540 |
| 부산 | 6 | 70 | 15,000 |
| 대구 | 12 | 280 | 21,500 |
| 인천 | 12 | 543 | 8,550 |
| 광주 | 17 | 285 | 9,260 |
| 대전 | 4 | 37 | 10,800 |
| 울산 | 1 | 124 | 900 |
| 세종 | 3 | 75 | 4,400 |
| 경기 | 2 | 32 | 10,500 |
| 강원 | 19 | 521 | 14,000 |
| 충북 | 1 | 29 | 1,500 |
| 충남 | 28 | 1,019 | 19,600 |
| 전북 | 11 | 106 | 21,000 |
| 전남 | 28 | 444 | 26,024 |
| 경북 | 22 | 676 | 12,500 |
| 경남 | 30 | 695 | 21,860 |
| 제주 | 6 | 230 | 20,000 |
| 계 | 217 | 6,475 | 229,934 |

□ 향후과제

- 특수교육교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와 연수 주기 단축
-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교과 연수 제공 추진
- 특수교육교원 연수과정의 질 제고 및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연수과정의 개선 및 다양화 추진
- 특수교육교원의 균형적인 자격연수 기회 제공을 위하여 특수교육 회소과목 담당교사의 자격연수는 관련 교과 연수 참여 인정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1) 장애발견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및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

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 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를 시행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진단·평가 시행결과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5년 특수교육 요구 학생의 선정·배치 현황은 29,345명의 신청을 받아 26,949명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하여 91.8%의 배치율을 보임

<표 3·3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단위 : 명)

| 시·도 | 특수학교 | | 일반학교 | | | | 특수교육 지원센터 | | 계 | | 배치 비율 |
|----------|--------------|--------------|---------------|---------------|--------------|--------------|------------|------------|---------------|---------------|-------------|
| | 신청자수 | 배치자수 | 특수학급 | | 일반학급 | | 신청자수 | 배치자수 | 신청자수 | 배치자수 | |
| | | | 신청자수 | 배치자수 | 신청자수 | 배치자수 | | | | | |
| 서울 | 945 | 927 | 1,860 | 1,732 | 942 | 765 | 268 | 244 | 4,015 | 3,668 | 91.4 |
| 부산 | 470 | 439 | 718 | 662 | 721 | 604 | 7 | 4 | 1,916 | 1,709 | 89.2 |
| 대구 | 477 | 477 | 503 | 484 | 471 | 410 | 17 | 16 | 1,468 | 1,387 | 94.5 |
| 인천 | 415 | 386 | 1,181 | 1,133 | 820 | 711 | 43 | 43 | 2,459 | 2,273 | 92.4 |
| 광주 | 64 | 64 | 153 | 145 | 135 | 113 | - | - | 352 | 322 | 91.5 |
| 대전 | 290 | 290 | 657 | 624 | 276 | 231 | 36 | 24 | 1,259 | 1,169 | 92.9 |
| 울산 | 204 | 180 | 445 | 394 | 311 | 244 | - | - | 960 | 818 | 85.2 |
| 세종 | - | - | 166 | 154 | 19 | 19 | - | - | 185 | 173 | 93.5 |
| 경기 | 1,113 | 1,073 | 4,332 | 4,099 | 1,149 | 994 | 139 | 126 | 6,733 | 6,292 | 93.5 |
| 강원 | 62 | 60 | 282 | 267 | 113 | 101 | 31 | 27 | 488 | 455 | 93.2 |
| 충북 | 117 | 117 | 600 | 584 | 340 | 322 | 20 | 20 | 1,077 | 1,043 | 96.8 |
| 충남 | 237 | 234 | 1,184 | 1,040 | 163 | 131 | 10 | 10 | 1,594 | 1,415 | 88.8 |
| 전북 | 181 | 181 | 547 | 493 | 346 | 290 | 2 | 2 | 1,076 | 966 | 89.8 |
| 전남 | 242 | 242 | 756 | 678 | 162 | 141 | 4 | 4 | 1,164 | 1,065 | 91.5 |
| 경북 | 311 | 292 | 893 | 812 | 529 | 460 | 6 | 6 | 1,739 | 1,570 | 90.3 |
| 경남 | 399 | 395 | 1,327 | 1,182 | 681 | 623 | 56 | 44 | 2,463 | 2,244 | 91.1 |
| 제주 | 125 | 125 | 139 | 134 | 122 | 110 | 11 | 11 | 397 | 380 | 95.7 |
| 계 | 5,652 | 5,482 | 15,743 | 14,617 | 7,300 | 6,269 | 650 | 581 | 29,345 | 26,949 | 91.8 |
| 영아 | 131 | 126 | - | - | - | - | 650 | 581 | 781 | 707 | 90.5 |
| 유 | 575 | 531 | 1,857 | 1,649 | 1,832 | 1,465 | - | - | 4264 | 3645 | 85.5 |
| 초 | 1,168 | 1,102 | 6,087 | 5,415 | 2,234 | 1,819 | - | - | 9489 | 8336 | 87.8 |
| 중 | 1,428 | 1,382 | 3,411 | 3,208 | 1,491 | 1,310 | - | - | 6330 | 5900 | 93.2 |
| 고 | 2,350 | 2,341 | 4,388 | 4,345 | 1,743 | 1,675 | - | - | 8481 | 8361 | 98.6 |

- 2015학년도 시·도별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2,302명이며 이 중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아동은 474명(20.6%)임

<표 3·36> 시·도별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현황 (단위 : 명, %)

| 시·도 | 취학유예자 수 | 취학유예 사유 | | | | 취학유예자 중 장애 비율 |
|----------|--------------|-----------|------------|------------|--------------|---------------|
| | | 질병 | 발육부진 | 장애 | 기타 | |
| 서울 | 374 | 20 | 30 | 38 | 286 | 10.2 |
| 부산 | 646 | 16 | 41 | 45 | 544 | 7.0 |
| 대구 | 284 | 5 | 9 | 136 | 134 | 47.9 |
| 인천 | 210 | 4 | 116 | 62 | 28 | 29.5 |
| 광주 | 27 | - | - | 27 | - | 100.0 |
| 대전 | 107 | 4 | 18 | 15 | 70 | 14.0 |
| 울산 | 69 | 4 | 0 | 1 | 64 | 0.01 |
| 경기 | 42 | 2 | 14 | 21 | 5 | 50.0 |
| 강원 | 12 | - | - | 9 | 3 | 75.0 |
| 충북 | 1 | - | - | 1 | - | 100.0 |
| 세종 | 3 | - | - | 3 | - | 100.0 |
| 충남 | 94 | 2 | 12 | 21 | 59 | 22.3 |
| 전북 | 25 | - | 1 | 11 | 13 | 44.0 |
| 전남 | 51 | 3 | 9 | 34 | 5 | 66.7 |
| 경북 | 49 | 1 | 7 | 17 | 24 | 34.7 |
| 경남 | 36 | 5 | - | 31 | - | 86.1 |
| 제주 | 2 | - | - | 2 | - | 100.0 |
| 계 | 2,032 | 66 | 257 | 474 | 1,235 | 20.6 |

- 2015학년도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 474명의 연령분포는 만6세 184명, 만7세 140명, 만8세 이상이 150명임

<표 3·37> 시·도별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 연령 분포 현황 (단위 : 명)

| 시·도 |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수 | 연령 | | |
|----------|---------------|------------|------------|------------|
| | | 만6세 | 만7세 | 만8세 이상 |
| 서울 | 38 | 14 | 16 | 8 |
| 부산 | 45 | 10 | 20 | 15 |
| 대구 | 136 | 55 | 44 | 37 |
| 인천 | 62 | 26 | 17 | 19 |
| 광주 | 27 | 9 | 1 | 17 |
| 대전 | 15 | 7 | 3 | 5 |
| 울산 | 1 | 1 | 0 | 0 |
| 세종 | 3 | - | 3 | - |
| 경기 | 21 | 14 | 6 | 1 |
| 강원 | 9 | 6 | 1 | 2 |
| 충북 | 1 | 1 | - | - |
| 충남 | 21 | 10 | 6 | 5 |
| 전북 | 11 | 5 | 2 | 4 |
| 전남 | 34 | 11 | 4 | 19 |
| 경북 | 17 | 10 | 5 | 2 |
| 경남 | 31 | 5 | 12 | 14 |
| 제주 | 2 | - | - | 2 |
| 계 | 474 | 184 | 140 | 150 |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비율을 보면 특수학교(센터포함) 26,094명 중 24,878명(95.3%), 특수학급 46,351명 중 30,652명(66.1%), 일반학급에 배치된 15,622명 중 7,653명(49.0%)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학생임

<표 3·38>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 명, %)

| 장애영역 | 특수학교 | 일반학교 | | 지원센터 | 전체 |
|----------|---------------|---------------|--------------|------------|---------------|
| | | 특수학급 | 일반학급 | | |
| 지체장애 | 882 | 1,315 | 1,363 | 14 | 3,574 |
| 뇌병변장애 | 3,139 | 3,017 | 1,570 | 118 | 7,844 |
| 시각장애 | 1,337 | 271 | 389 | 7 | 2,004 |
| 청각장애 | 891 | 714 | 1,551 | 12 | 3,168 |
| 언어장애 | 92 | 504 | 213 | - | 809 |
| 지적장애 | 13,656 | 19,370 | 1,888 | 12 | 34,926 |
| 자폐성장애 | 4,275 | 5,018 | 487 | 2 | 9,782 |
| 정신장애 | 421 | 327 | 85 | - | 833 |
| 신장장애 | 4 | 15 | 26 | 1 | 46 |
| 심장장애 | 1 | 32 | 36 | - | 69 |
| 호흡기장애 | - | 13 | 6 | - | 19 |
| 간장애 | - | 6 | 14 | 1 | 21 |
| 안면장애 | 2 | 3 | 10 | - | 15 |
| 장루요루장애 | 1 | 1 | 9 | - | 11 |
| 간질장애 | 10 | 46 | 6 | - | 62 |
| 계 | 24,711 | 30,652 | 7,653 | 167 | 63,183 |

- 전국에 210개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748명의 운영위원이 1,396회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음

<표 3·39>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회)

| 시·도 | 위원회수 | 구 성 원 | | | | | | | | | 운영실적 ('14~'15) |
|----------|------------|------------|------------|-----------|------------|-----------|------------|-----------|------------|--------------|-------------------|
| | | 교장(감) | 특수교사 | 대학교원 | 공무원 | 의사 | 보호자 | 사회복지사 | 기타 | 계 | |
| 서울 | 12 | 10 | 43 | 2 | 38 | 4 | 10 | - | 9 | 116 | 120 |
| 부산 | 6 | 11 | 16 | 7 | 20 | 1 | 4 | 2 | 2 | 63 | 65 |
| 대구 | 5 | 5 | 9 | 4 | 14 | 3 | 5 | - | 3 | 43 | 74 |
| 인천 | 6 | 8 | 15 | - | 19 | 2 | 6 | 3 | 2 | 55 | 79 |
| 광주 | 3 | 4 | 2 | 4 | 13 | 3 | 4 | 1 | - | 31 | 14 |
| 대전 | 3 | 11 | 12 | 7 | 1 | 1 | - | - | 7 | 39 | 21 |
| 울산 | 3 | 3 | 9 | - | 10 | - | 4 | - | 3 | 29 | 38 |
| 세종 | 1 | 2 | 1 | 1 | 6 | - | 1 | - | - | 11 | 2 |
| 경기 | 26 | 43 | 75 | 4 | 45 | 9 | 25 | 5 | 16 | 222 | 283 |
| 강원 | 18 | 21 | 58 | 4 | 29 | 2 | 13 | 6 | 19 | 152 | 134 |
| 충북 | 11 | 14 | 19 | 4 | 19 | 11 | 10 | 10 | 16 | 103 | 87 |
| 충남 | 15 | 22 | 36 | 6 | 37 | 7 | 17 | 5 | 7 | 137 | 77 |
| 전북 | 32 | 30 | 37 | 2 | 19 | 11 | 17 | 4 | 15 | 135 | 81 |
| 전남 | 23 | 35 | 98 | 4 | 20 | 11 | 8 | 6 | 32 | 214 | 102 |
| 경북 | 24 | 32 | 55 | 6 | 53 | 17 | 21 | 6 | 9 | 199 | 102 |
| 경남 | 19 | 27 | 45 | 4 | 21 | 14 | 20 | 8 | 24 | 163 | 92 |
| 제주 | 3 | 4 | 8 | 2 | 11 | 3 | 5 | 1 | 2 | 36 | 25 |
| 계 | 210 | 282 | 538 | 61 | 375 | 99 | 170 | 57 | 166 | 1,748 | 1,396 |

□ 향후 과제

- 진단·평가 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급), 지자체, 병의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 간 조기진단 연계체계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마련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 포함) 등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5년도 8월 기준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에 196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으로는 특수교사 673명, 재활복지·치료교육교사 19명, 기타 교사 24명으로 전체 716명의 교사, 일반직 40명, 치료사와 보조원을 포함한 기타인력 510명으로 모두 1,266명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설비비,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운영비 등 지원예산은 약 966억원

<표 3·4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시·도 | 센터 수 | 교사 | | | | | | | | | | 일반직 | | | 기타 (전체 계약직임) | | | | 전체 | 연간 지원 예산 (총액) |
|----------|------------|------------|------------|-------------|----------|-----------|-----------|------------|------------|------------|-----------|-----------|-----------|------------|--------------|------------|------------|--------------|---------------|---------------|
| | | 특수교사 | | 재활복지·치료교육교사 | | 기타 (일반직임) | | 전체 | | | | | | | | | | | | |
| | | 정규 | 계약 | 정규 | 계약 | 정규 | 계약 | 정규 | 계약 | 계 | 정규 | 계약 | 계 | 치료사 | 사회복무요원 | 기타 | 계 | | | |
| 서울 | 11 | 33 | 37 | - | - | - | - | 33 | 37 | 70 | - | - | - | - | - | 38 | 38 | 108 | 5,268 | |
| 부산 | 6 | 19 | 6 | 2 | - | 2 | - | 23 | 6 | 29 | 8 | - | 8 | - | - | 2 | 2 | 39 | 17,344 | |
| 대구 | 5 | 15 | 21 | - | 3 | - | 8 | 15 | 32 | 47 | 3 | - | 3 | - | 10 | 4 | 14 | 64 | 3,713 | |
| 인천 | 6 | 16 | 14 | - | - | - | - | 16 | 14 | 30 | - | - | - | 6 | 4 | 5 | 15 | 45 | 2,452 | |
| 광주 | 3 | 8 | 6 | - | - | - | - | 8 | 6 | 14 | 1 | 2 | 3 | - | 3 | 9 | 12 | 29 | 793 | |
| 대전 | 6 | 11 | 13 | - | - | 1 | 2 | 12 | 15 | 27 | - | 1 | 1 | 2 | - | - | 2 | 30 | 1,925 | |
| 울산 | 3 | 6 | 17 | - | - | - | - | 6 | 17 | 23 | 1 | - | 1 | 44 | 1 | 7 | 52 | 76 | 5,154 | |
| 세종 | 1 | 1 | 3 | - | - | - | - | 1 | 3 | 4 | - | - | - | 6 | - | - | 6 | 10 | 422 | |
| 경기 | 25 | 45 | 25 | 5 | 1 | - | 3 | 50 | 29 | 79 | - | 8 | 8 | 39 | 1 | 40 | 80 | 167 | 7,663 | |
| 강원 | 18 | 18 | 15 | - | - | - | 2 | 18 | 17 | 35 | - | - | - | 46 | 1 | 3 | 50 | 85 | 4,800 | |
| 충북 | 11 | 12 | 33 | - | 1 | - | 1 | 12 | 35 | 47 | 4 | 4 | 8 | 4 | 5 | 2 | 11 | 66 | 3,641 | |
| 충남 | 15 | 22 | 35 | - | - | - | - | 22 | 35 | 57 | 3 | - | 3 | 46 | 2 | 12 | 60 | 120 | 11,842 | |
| 전북 | 15 | 13 | 33 | 2 | 1 | - | 4 | 15 | 38 | 53 | 3 | 1 | 4 | 14 | - | 5 | 19 | 76 | 3,140 | |
| 전남 | 22 | 19 | 37 | 1 | 3 | - | - | 20 | 40 | 60 | - | - | - | 22 | 1 | - | 23 | 83 | 4,609 | |
| 경북 | 24 | 19 | 47 | - | - | - | - | 19 | 47 | 66 | - | - | - | 6 | 34 | - | 40 | 106 | 4,862 | |
| 경남 | 22 | 25 | 38 | - | - | - | - | 25 | 38 | 63 | 1 | - | 1 | 75 | - | 6 | 81 | 145 | 18,026 | |
| 제주 | 3 | 3 | 8 | - | - | 1 | - | 4 | 8 | 12 | - | - | - | 5 | - | - | 5 | 17 | 974 | |
| 계 | 196 | 285 | 388 | 10 | 9 | 4 | 20 | 299 | 417 | 716 | 24 | 16 | 40 | 315 | 62 | 133 | 510 | 1,266 | 96,628 | |

※ 정규에 파견교사 포함

□ 향후 과제

-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확충 및 전담인력 증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실질적 역할 확대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3)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5년 4월 현재 특수학교 241개 순회·파견학급에서 243명의 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학생수는 총 897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484명, 시설 400명, 병원 13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80명, 초등학교 279명, 중학교 227명, 고등학교 311명임
- 2015년 4월 현재 특수학급 315개의 순회·파견학급에서 457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자의 수는 총 1,507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479명, 시설 817명, 병원 20명, 일반학교 191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 37명, 초등학교 698명, 중학교 407명, 고등학교 365명임

<표 3·41>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수

(단위 : 학급, 명)

| 구 분 | 학 생 수 | | | | | | | | | | 학 급 수 | 교 사 수 |
|--------------|-------|-----|----|-------|-----|---------------|------|-----|------|-----|-------|-------|
| | 기 관 | | | | | 학 교과 정 | | | | | | |
| | 가정 | 시설 | 병원 | 일반 학교 | 계 | 유치원 (장애영아 포함)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 484 | 400 | 13 | - | 897 | 80 | 279 | 227 | 311 | 897 | 241 | 243 |

<표 3·42>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자 수

(단위 : 학급, 명)

| 구 분 | 학 생 수 | | | | | | | | | | 학 급 수 | 교 사 수 |
|-----------------|-------|-----|----|-------|-------|--------|------|-----|------|-------|-------|-------|
| | 기 관 | | | | | 학 교과 정 | | | | | | |
| | 가정 | 시설 | 병원 | 일반 학교 | 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겸임 | 479 | 817 | 20 | 191 | 1,507 | 37 | 698 | 407 | 365 | 1,507 | 315 | 457 |

- 2015년 4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670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대상자는 총 2,837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380명, 시설 104명, 병원 55명, 일반학교 2,298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767명, 초등학교 964명, 중학교 604명, 고등학교 502명임

<표 3·43>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대상자 수

(단위 : 학급, 명)

| 구 분 | 학 생 수 | | | | | | | | | | 교 사 수 |
|----------|-------|-----|----|-------|-------|---------------|------|-----|------|-------|-------|
| | 기 관 | | | | | 학 교과 정 | | | | | |
| | 가정 | 시설 | 병원 | 일반 학교 | 계 | 유치원 (장애영아 포함)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특수교육지원센터 | 380 | 104 | 55 | 2,298 | 2,837 | 767 | 964 | 604 | 502 | 2,837 | 670* |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강사 348명 포함

□ 향후 과제

- 중도·중복장애로 이동이 곤란한 가정·병원·시설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교육 제공을 위한 지원 확대
- 순회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순회교육 전담 특수교육교사 연수 강화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교육감은 가족지원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인력,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 지원 대책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5년 현재 41,092명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44> 치료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 구분 | 치료지원 대상 학생수 | 예산 |
|----|-------------|------------|
| 서울 | 8,683 | 11,268,368 |
| 부산 | 3,885 | 3,409,200 |
| 대구 | 2,687 | 3,628,200 |
| 인천 | 2,838 | 2,189,520 |
| 광주 | 1,881 | 2,126,881 |
| 대전 | 1,065 | 1,223,020 |
| 울산 | 936 | 2,024,968 |
| 경기 | 130 | 142,450 |
| 강원 | 2,852 | 5,711,506 |
| 충북 | 1,979 | 1,557,063 |
| 세종 | 2,694 | 2,948,561 |
| 충남 | 1,506 | 1,559,280 |
| 전북 | 2,323 | 398,666 |
| 전남 | 1,099 | 1,812,123 |
| 경북 | 2,878 | 3,144,000 |
| 경남 | 3,025 | 2,571,719 |
| 제주 | 631 | 978,902 |
| 계 | 41,092 | 46,694,427 |

-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2015년 4월 현재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공공근로 및 사회복지요원 등 무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포함 모두 10,923명이 배치되어 있음
-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8,224명으로 특수학교 2,425명, 특수학급 5,401명, 일반학급에 398명이 배치됨
- 공공근로 및 사회복지요원 등 무급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2,703명이 배치됨

<표 3·45> 시·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수 (단위 : 명)

| 시·도 | 특수학교 | | | | | | 특수학급 | | | | | | 일반학급 | | | | | | 계 |
|-----|--------|--------------|----|--------------|--------|--------------|-------|-----|--------|--------------|-------|-------|--------|--------------|----|--------------|----|-----|--------|
| | 유급 | | | 공공근로·사회복무·무급 | | | 유급 | | | 공공근로·사회복무·무급 | | | 유급 | | | 공공근로·사회복무·무급 | | | |
| | 국고·지방비 |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 기타 | 소계 | 국고·지방비 |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 기타 | 소계 | 국고·지방비 |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 기타 | 소계 | 국고·지방비 |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 기타 | 소계 | | | |
| 서울 | 334 | 3 | - | 337 | 592 | 929 | 652 | 73 | - | 725 | 311 | 1,036 | 36 | 6 | - | 42 | 11 | 53 | 2,018 |
| 부산 | 286 | - | - | 286 | 55 | 341 | 302 | 35 | - | 337 | 14 | 351 | 18 | - | - | 18 | - | 18 | 710 |
| 대구 | 216 | - | - | 216 | 50 | 266 | 290 | 12 | - | 302 | 61 | 363 | 19 | - | - | 19 | 3 | 22 | 651 |
| 인천 | 126 | 13 | - | 139 | 39 | 178 | 448 | 16 | 6 | 470 | 9 | 479 | 11 | 1 | - | 12 | - | 12 | 669 |
| 광주 | 74 | - | - | 74 | 41 | 115 | 152 | 19 | - | 171 | 60 | 231 | 4 | - | - | 4 | 1 | 5 | 351 |
| 대전 | 145 | 4 | - | 149 | 29 | 178 | 280 | 37 | - | 317 | 77 | 394 | - | 3 | - | 3 | - | 3 | 575 |
| 울산 | 91 | - | - | 91 | 37 | 128 | 193 | - | - | 193 | 100 | 293 | 13 | - | - | 13 | 2 | 15 | 436 |
| 세종 | 2 | - | - | 2 | - | 2 | 28 | - | - | 28 | - | 28 | - | - | - | 0 | - | 0 | 30 |
| 경기 | 260 | 13 | 3 | 276 | 207 | 483 | 649 | 214 | 11 | 874 | 464 | 1,338 | 8 | 5 | - | 13 | 4 | 17 | 1,838 |
| 강원 | 53 | - | - | 53 | - | 53 | 226 | 11 | - | 237 | - | 237 | 35 | - | - | 35 | - | 35 | 325 |
| 충북 | 143 | 2 | - | 145 | 11 | 156 | 205 | 3 | - | 208 | 49 | 257 | 14 | - | - | 14 | 6 | 20 | 433 |
| 충남 | 93 | - | - | 93 | 5 | 98 | 310 | - | - | 310 | 20 | 330 | 12 | - | - | 12 | 1 | 13 | 441 |
| 전북 | 128 | - | - | 128 | 10 | 138 | 176 | 9 | - | 185 | 12 | 197 | 87 | 4 | - | 91 | 6 | 97 | 432 |
| 전남 | 64 | - | - | 64 | 29 | 93 | 198 | - | - | 198 | 86 | 284 | 10 | 4 | - | 14 | 5 | 19 | 392 |
| 경북 | 102 | - | - | 102 | 93 | 195 | 307 | - | - | 307 | 84 | 391 | 46 | - | - | 46 | 8 | 54 | 640 |
| 경남 | 167 | - | - | 167 | 33 | 200 | 414 | - | - | 414 | 50 | 464 | 29 | - | - | 29 | 2 | 31 | 695 |
| 제주 | 45 | - | 58 | 103 | 18 | 121 | 97 | 3 | 25 | 125 | 8 | 133 | 28 | - | 5 | 33 | - | 33 | 287 |
| 계 | 2,329 | 35 | 61 | 2,425 | 1,249 | 3,674 | 4,927 | 432 | 42 | 5,401 | 1,405 | 6,805 | 370 | 23 | 5 | 388 | 49 | 447 | 10,923 |

- 교통비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26,089명 중 통학버스 이용학생 16,209명을 제외한 9,880명 중 8,391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61,973명 중 통학버스 이용학생 2,027명을 제외한 59,946명 중 30,115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음
- 교통비 지원예산은 130억원임

<표 3-46>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시·도 | 특수학교(센터 포함) | | | | | 일반학교 | | | | | | |
|----------|---------------|----------------|--------------------|--------------|--------------|----------------|---------------|----------------|--------------------|--------------|---------------|---------------|
| | 전체 학생수 |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수 |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 | | 교통비 지원예산 | 전체 학생수 |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수 |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 | | 교통비 지원 예산 |
| | |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 | |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 |
| 서울 | 4,951 | 2,576 | 61 | 351 | 400 | 306 | 8,195 | - | - | - | 1,964 | 826 |
| 부산 | 1,879 | 1,255 | - | 258 | 380 | 148 | 4,143 | - | - | 420 | 490 | 222 |
| 대구 | 1,526 | 894 | 2 | 208 | 328 | 207 | 2,984 | 69 | - | 364 | 899 | 476 |
| 인천 | 1,382 | 756 | 16 | 49 | 114 | 117 | 4,204 | - | 62 | 164 | 1,021 | 367 |
| 광주 | 995 | 818 | 3 | 40 | 95 | 75.4 | 1,789 | - | 36 | 225 | 576 | 481 |
| 대전 | 1,031 | 639 | 30 | 41 | 149 | 213 | 2,249 | 3 | 107 | 86 | 544 | 461 |
| 울산 | 748 | 479 | 7 | 26 | 146 | 60 | 1,709 | - | 25 | 200 | 578 | 405 |
| 세종 | - | - | - | - | - | - | 218 | 9 | 10 | 8 | 44 | 31 |
| 경기 | 4,458 | 2,932 | 97 | 900 | 1,753 | 1,066 | 14,865 | 337 | 759 | 3,239 | 5,471 | 3,782 |
| 강원 | 959 | 728 | 28 | 16 | 71 | 108 | 2,048 | 25 | 29 | 609 | 854 | 1,014 |
| 충북 | 1,343 | 723 | 17 | 111 | 283 | 281 | 2,637 | 257 | 54 | 536 | 1,035 | 830 |
| 충남 | 910 | 745 | 42 | 49 | 151 | 74 | 3,166 | 382 | 94 | 250 | 1,009 | 470 |
| 전북 | 1,289 | 862 | 5 | 19 | 51 | 87 | 2,269 | 99 | 20 | 443 | 751 | 585 |
| 전남 | 1,039 | 679 | 11 | 110 | 132 | 300 | 2,646 | 320 | 45 | 645 | 1,036 | 856 |
| 경북 | 1,525 | 959 | 16 | 211 | 601 | 327 | 3,337 | 122 | 25 | 792 | 1,678 | 919 |
| 경남 | 1,608 | 878 | 14 | 256 | 627 | 491 | 4,668 | 395 | 23 | 814 | 1,464 | 953 |
| 제주 | 446 | 286 | 2 | 58 | 56 | 63 | 846 | 9 | 2 | 228 | 387 | 343 |
| 계 | 26,089 | 16,209 | 351 | 2,703 | 5,337 | 3,923.4 | 61,973 | 2,027 | 1,291 | 9,023 | 19,801 | 13,021 |

- 2015년 4월 현재 전국 167개 특수학교에서 통학버스 644대를 운영하며 25,531명의 제학생 중 16,221명(61.7%)의 학생을 통학 지원하고 있음

<표 3-47> 시·도별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단위 : 명, 대, %)

| 시·도 | 전체학생수 | 통학버스수 | 이용학생수 | 이용비율 |
|----------|---------------|------------|---------------|-------------|
| 서울 | 4,646 | 103 | 2,576 | 55.4 |
| 부산 | 1,879 | 49 | 1,255 | 66.8 |
| 대구 | 1,512 | 37 | 894 | 59.1 |
| 인천 | 1,342 | 24 | 756 | 56.3 |
| 광주 | 995 | 34 | 772 | 77.6 |
| 대전 | 1,031 | 25 | 639 | 62.0 |
| 울산 | 727 | 23 | 479 | 65.9 |
| 세종 | - | - | - | - |
| 경기 | 4,377 | 119 | 2,853 | 65.2 |
| 강원 | 941 | 26 | 728 | 77.4 |
| 충북 | 1,332 | 34 | 723 | 54.3 |
| 충남 | 899 | 31 | 745 | 82.9 |
| 전북 | 1,289 | 42 | 842 | 65.3 |
| 전남 | 1,036 | 24 | 682 | 65.8 |
| 경북 | 1,519 | 31 | 959 | 63.1 |
| 경남 | 1,578 | 31 | 1,032 | 65.4 |
| 제주 | 428 | 11 | 286 | 66.8 |
| 계 | 25,531 | 644 | 16,221 | 63.5 |

-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26,088명 중 25,105명,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61,973명 중 61,957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 급식비 지원예산은 약 341억원임

<표 3·48>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시·도 | 특수학교(센터 포함) | | | | | | 일반학교 | | | | | |
|-----------|---------------|---------------|----------------|--------------|--------------|---------------|---------------|---------------|----------------|--------------|--------------|---------------|
| | 전체 학생수 | 지원 학생수 |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 | | 급식비 지원 예산 | 전체 학생수 | 지원 학생수 |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 | | 급식비 지원 예산 |
| | |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 | |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 |
| 서울 | 4,951 | 4,646 | 3,118 | 3,118 | 3,118 | 2,752 | 8,195 | 8,195 | 3,150 | 3,150 | 4,062 | 5,610 |
| 부산 | 1,879 | 1,879 | 3,000 | 3,000 | 3,000 | 1,082 | 4,143 | 4,143 | 2,390 | 2,390 | 3,253 | 2,139 |
| 대구 | 1,526 | 1,526 | 3,469 | 3,469 | 3,469 | 1,006 | 2,984 | 2,984 | 2,734 | 2,734 | 3,301 | 1,598 |
| 인천 | 1,381 | 1,260 | 2,200 | 2,200 | 2,200 | 569 | 4,204 | 4,204 | 2,500 | 2,600 | 3,600 | 2,409 |
| 광주 | 995 | 995 | 3,340 | 3,340 | 3,340 | 707 | 1,789 | 1,789 | 2,370 | 3,120 | 3,670 | 1,152 |
| 대전 | 1,031 | 1,031 | 2,700 | 2,700 | 2,700 | 663 | 2,249 | 2,249 | 2,250 | 2,250 | 3,214 | 654 |
| 울산 | 748 | 748 | 2,500 | 2,500 | 2,500 | 336 | 1,709 | 1,709 | 2,500 | 2,300 | 2,600 | 738 |
| 세종 | - | - | - | - | - | - | 218 | 218 | 2,100 | 3,180 | 3,410 | 133 |
| 경기 | 4,458 | 4,021 | 2,900 | 2,900 | 3,510 | 2,417 | 14,865 | 14,865 | 2,400 | 2,880 | 3,700 | 8,665 |
| 강원 | 959 | 959 | 4,000 | 4,000 | 4,200 | 815 | 2,048 | 2,048 | 3,500 | 3,500 | 3,800 | 152 |
| 충북 | 1,343 | 1,332 | 5,247 | 5,247 | 5,247 | 1,227 | 2,637 | 2,637 | 700 | 3,549 | 3,565 | 1,594 |
| 충남 | 910 | 899 | 2,466 | 2,466 | 2,466 | 432 | 3,166 | 3,166 | 1,772 | 3,573 | 2,929 | 1,897 |
| 전북 | 1,289 | 1,289 | 2,700 | 2,700 | 2,700 | 661 | 2,269 | 2,269 | 2,000 | 2,200 | 2,900 | 1,092 |
| 전남 | 1,039 | 965 | 5,058 | 5,058 | 5,058 | 924 | 2,646 | 2,646 | 3,810 | 4,153 | 4,552 | 2,273 |
| 경북 | 1,525 | 1,519 | 2,900 | 2,900 | 2,900 | 836 | 3,337 | 3,321 | 2,300 | 2,700 | 2,800 | 1,737 |
| 경남 | 1,608 | 1,608 | 2,460 | 2,460 | 3,130 | 860 | 4,668 | 4,668 | - | 2,583 | 2,583 | 1,746 |
| 제주 | 446 | 428 | 2,977 | 2,977 | 2,977 | 237 | 846 | 846 | 3,310 | 3,310 | 3,704 | 541 |
| 계* | 26,088 | 25,105 | 3,002 | 3,002 | 3,089 | 15,524 | 61,973 | 61,957 | 2,340 | 2,951 | 3,390 | 34,130 |

* 전체 급식비 보조금은 평균액임

□ 향후과제

- 치료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치료지원 인력, 지원 방법 등 지원대책 강구 및 특수교육대상자별 적합한 치료지원 제공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지속적 배치 및 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한 효율적 지원 추진
- 보조인력의 다양화, 통학지원,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개별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관련서비스 제공

5)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국가는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 외에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한 경우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4조)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2조 1,796억으로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대비 3.9%의 비율을 나타냄

<표 3·49>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 : 천원, %)

| 시·도 |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 특수교육 예산 | | | | | | | | |
|-----------|-----------------------|----------------------|--------------------|--------------------|---------------------------|-------------------|------------------|-------------------|----------------------|------------|
| | | 인건비 | 교급당 운영비 | 시설비 | | 자산 취득비 | 연수비 | 기타 | 계 | 비율 |
| | | | | 전체(A) | 전체(A) 중 장애인편의 시설 예산 | | | | | |
| 서울 | 7,690,091,797 | 198,228,139 | 82,517,944 | 4,549,640 | 3,090,150 | 222,000 | 71,055 | 871,730 | 286,460,508 | 3.7 |
| 부산 | 3,616,406,094 | 60,475,040 | 36,238,383 | 5,334,588 | 1,870,901 | - | 26,746 | 235,307 | 102,310,064 | 2.8 |
| 대구 | 2,635,500,000 | 54,561,193 | 29,209,430 | 11,927,614 | 8,604,173 | 858,856 | 113,094 | 1,110,750 | 97,780,937 | 3.7 |
| 인천 | 2,772,286,057 | 58,197,940 | 31,192,770 | 11,893,707 | 540,932 | 634,488 | 77,238 | 325,564 | 102,321,707 | 3.7 |
| 광주 | 1,692,286,934 | 52,248,310 | 14,486,065 | 2,048,388 | 1,714,388 | 42,330 | 36,800 | 139,468 | 69,001,361 | 4.1 |
| 대전 | 1,715,267,332 | 45,734,618 | 24,070,788 | 2,455,669 | 770,240 | 638,400 | 44,858 | 63,523 | 73,027,856 | 4.3 |
| 울산 | 1,362,457,494 | 33,507,000 | 23,550,091 | 340,574 | 140,914 | 33,000 | 91,994 | 21,770 | 57,544,429 | 4.2 |
| 세종 | 682,108,991 | 5,420,340 | 5,945,400 | 709,650 | 450,000 | 213,765 | 31,800 | 7,140 | 12,328,085 | 1.8 |
| 경기 | 11,764,860,214 | 302,503,936 | 81,426,739 | 31,765,000 | 1,600,000 | 16,733,942 | 348,430 | - | 432,778,067 | 3.7 |
| 강원 | 2,399,500,000 | 61,198,303 | 26,897,645 | 5,044,318 | 3,713,600 | 450,000 | 178,151 | 8,240 | 93,776,657 | 3.9 |
| 충북 | 2,045,160,620 | 57,306,685 | 26,447,140 | 3,967,579 | 538,401 | 124,904 | 33,080 | 56,100 | 87,935,488 | 4.3 |
| 충남 | 2,751,559,604 | 71,722,545 | 29,650,854 | 4,252,186 | 3,098,058 | 40,000 | 2,668,978 | 2,132,470 | 110,467,033 | 4.0 |
| 전북 | 2,631,734,000 | 54,258,005 | 31,784,542 | 2,091,063 | 1,219,975 | 901,739 | 242,836 | 683,804 | 89,961,989 | 3.4 |
| 전남 | 3,411,371,400 | 60,949,422 | 52,116,319 | 53,560,491 | 2,751,910 | 205,483 | 191,060 | 378,060 | 167,400,835 | 4.9 |
| 경북 | 3,846,801,733 | 116,305,793 | 39,843,836 | 8,548,211 | 3,176,520 | 4,299,400 | 349,300 | 535,000 | 169,881,540 | 4.0 |
| 경남 | 3,963,218,432 | 128,747,753 | 48,979,835 | 7,795,745 | 5,780,380 | 994,038 | 1,504,591 | 2,150,690 | 190,172,650 | 4.8 |
| 제주 | 897,636,827 | 21,607,856 | 9,114,590 | 1,687,251 | 793,500 | 923,383 | 114,586 | 2,965,505 | 36,413,171 | 4.1 |
| 전체 | 55,878,247,529 | 1,382,972,878 | 593,472,391 | 157,971,672 | 39,854,042 | 27,335,728 | 6,124,597 | 11,685,121 | 2,179,562,387 | 3.9 |

※ 국고, 지방비,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재원 등을 포함한 총 예산 기준임

- 2015년도 특수교육 총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 2조 1,796억, 국립 특수학교 예산 428억, 국립 특수학급 예산 53억을 합하여 총 2조 2,228억원임

<표 3·50>

특수교육 총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 특수교육 예산 | | | | | | |
|----------|----------------------|--------------------|--------------------|-------------------|------------------|-------------------|----------------------|
| | 인건비 | 교급당 운영비 | 시설비 | 자산 취득비 | 연수비 | 기타 | 소계 |
| 시·도 | 1,382,972,878 | 593,472,391 | 157,971,672 | 27,335,728 | 6,124,597 | 11,685,121 | 2,179,562,387 |
| 국립 특수학교 | 26,718,308 | 12,143,958 | 2,886,497 | 207,180 | 52,620 | 773,338 | 42,781,901 |
| 국립 특수학급 | 2,243,196 | 1,304,421 | 1,657,705 | 2,700 | 2,750 | 83,458 | 5,294,230 |
| 계 | 1,411,934,382 | 606,920,770 | 162,515,874 | 27,545,608 | 6,179,967 | 12,541,917 | 2,227,638,518 |

- 2015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25,29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08천원 증가함

<표 3·5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 천원)

| 연 도 | 특수교육비 | 수혜학생수 | 1인당 특수교육비 |
|-------------|----------------------|---------------|---------------|
| 1998 | 337,070,063 | 48,518 | 6,947 |
| 1999 | 315,782,768 | 50,269 | 6,282 |
| 2000 | 340,225,173 | 54,732 | 6,216 |
| 2001 | 406,310,075 | 51,330 | 7,916 |
| 2002 | 443,073,183 | 54,470 | 8,134 |
| 2003 | 564,394,700 | 53,404 | 10,568 |
| 2004 | 666,840,034 | 55,374 | 12,042 |
| 2005 | 822,051,094 | 58,362 | 14,085 |
| 2006 | 1,051,284,265 | 62,538 | 16,810 |
| 2007 | 1,145,295,143 | 65,940 | 17,369 |
| 2008 | 1,352,939,269 | 71,484 | 18,926 |
| 2009 | 1,545,753,946 | 75,187 | 20,559 |
| 2010 | 1,667,641,925 | 79,711 | 20,921 |
| 2011 | 1,966,284,753 | 82,665 | 23,786 |
| 2012 | 2,138,496,638 | 85,012 | 25,155 |
| 2013 | 2,245,781,336 | 86,633 | 25,923 |
| 2014 | 2,076,048,794 | 87,278 | 23,787 |
| 2015 | 2,227,638,518 | 88,067 | 25,295 |

- 2015년도 특수교육 예산은 2조 2,228억원으로 2014년도에 비해 약 1,516억원 증가된 금액이며, 2015년 9월 현재 교육 예산의 4.0%를 차지함

<표 3·52>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단위 : 천원)

| 연도 | 교육 예산* | 특수교육 예산 | 비율(%) |
|-------------|-----------------------|----------------------|------------|
| | | | |
| 1998 | 18,127,837,527 | 337,070,063 | 1.9 |
| 1999 | 17,456,265,000 | 315,782,768 | 1.8 |
| 2000 | 19,172,027,020 | 340,225,173 | 1.8 |
| 2001 | 20,049,279,000 | 406,310,075 | 2.0 |
| 2002 | 22,278,358,000 | 443,073,183 | 2.0 |
| 2003 | 24,404,401,310 | 564,394,700 | 2.3 |
| 2004 | 26,384,088,000 | 666,840,034 | 2.5 |
| 2005 | 27,438,044,595 | 822,051,094 | 3.0 |
| 2006 | 29,426,304,000 | 1,051,284,265 | 3.6 |
| 2007 | 31,044,748,000 | 1,145,295,143 | 3.7 |
| 2008 | 35,897,425,000 | 1,352,939,269 | 3.8 |
| 2009 | 38,698,867,000 | 1,545,753,946 | 4.0 |
| 2010 | 38,595,975,000 | 1,667,641,925 | 4.3 |
| 2011 | 41,618,722,000 | 1,966,284,753 | 4.7 |
| 2012 | 45,752,654,000 | 2,138,496,638 | 4.7 |
| 2013 | 49,643,947,000 | 2,245,781,336 | 4.5 |
| 2014 | 49,986,533,000 | 2,076,048,794 | 4.2 |
| 2015 | 55,878,247,529 | 2,227,638,518 | 4.0 |

* 전체 교육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 시·도별 사립특수학교 92개교에 재정지원 총액은 3,823억원으로 전체 특수학교 예산의 54.8%임

<표 3·53> 시·도별 사립특수학교 지원 비율

(단위 : 천원)

| 시·도 | 특수학교수 | | | 특수학교 전체예산 | 사립특수학교 지원예산 | | | | | 비율 | |
|----------|----------|-----------|-----------|--------------------|--------------------|-------------------|------------------|------------------|-------------------|--------------------|-------------|
| | 국립 | 공립 | 사립 | | 인건비 | 교·급당 운영비 | 시설비 | 자산 취득비 | 기타 | | 계 |
| 서울 | 3 | 7 | 19 | 160,852,139 | 61,500,681 | 22,791,652 | 181,760 | - | - | 84,474,093 | 52.5 |
| 부산 | - | 8 | 7 | 61,487,310 | 13,601,257 | 1,645,792 | 144,533 | 531,403 | 1,730,396 | 17,653,381 | 28.7 |
| 대구 | - | 3 | 6 | 35,284,345 | 19,156,550 | 8,389,671 | 135,210 | 219,506 | 2,250,383 | 30,151,320 | 85.5 |
| 인천 | - | 3 | 4 | 21,227,359 | 10,081,179 | 3,502,722 | 661,378 | 172,480 | 94,795 | 14,512,554 | 68.4 |
| 광주 | - | 3 | 2 | 29,565,714 | 8,851,922 | 1,847,474 | 96,665 | 36,504 | 861,373 | 11,693,938 | 39.6 |
| 대전 | - | 3 | 2 | 18,429,787 | 8,018,821 | 3,035,245 | 1,011,163 | 72,630 | - | 12,137,859 | 65.9 |
| 울산 | - | 2 | 2 | 31,500,785 | 7,895,275 | 667,663 | 267,876 | 25,200 | 1,502,572 | 10,358,586 | 32.9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 2 | 9 | 21 | 98,620,605 | 62,022,334 | 8,235,799 | 674,329 | - | - | 70,932,462 | 71.9 |
| 강원 | - | 5 | 2 | 39,009,300 | 12,320,000 | 920,948 | 3,113,000 | 320,000 | 60,000 | 16,733,948 | 42.9 |
| 충북 | - | 2 | 7 | 28,172,416 | 20,695,868 | 2,700,538 | - | - | 1,046,920 | 24,443,326 | 86.8 |
| 충남 | - | 4 | 2 | 26,798,779 | 3,523,760 | 2,052,862 | 32,697 | 48,941 | 127,708 | 5,785,968 | 21.6 |
| 전북 | - | 6 | 5 | 36,836,800 | 10,606,263 | 5,432,391 | 399,854 | 314,778 | 3,050 | 16,756,336 | 45.5 |
| 전남 | - | 3 | 5 | 35,369,237 | 14,710,000 | 2,263,503 | 2,045,576 | - | 3,820,357 | 22,839,436 | 64.6 |
| 경북 | - | 3 | 5 | 41,914,468 | 26,274,135 | 3,366,449 | 359,828 | - | 3,229,929 | 33,230,341 | 79.3 |
| 경남 | - | 7 | 2 | 15,966,592 | 3,747,185 | 542,329 | - | - | - | 4,289,514 | 26.9 |
| 제주 | - | 2 | 1 | 16,536,465 | 4,570,202 | 1,504,940 | 37,950 | 22,196 | 159,190 | 6,294,478 | 38.1 |
| 계 | 5 | 70 | 92 | 697,572,101 | 287,575,432 | 68,899,978 | 9,161,819 | 1,763,638 | 14,886,673 | 382,287,540 | 54.8 |

□ 향후과제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의 특수교육 업무 전담화,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에 특수교육 전공자 배치를 확대하여 특수교육 지원 행정의 전문성 강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 2008년부터 특수교육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발전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 관련법규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교육기본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59조)
-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25조)

□ 현황 및 실적

-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190개, 1,796명 위원을 구성·운영함
-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학교·특수학교 4,635개교 모니터링을 실시함

<표 3·54>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수 및 위원 수

(단위 : 개, 명)

| 시·도 |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수 |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위원 수 |
|-----------|---------------|------------------|
| 서울 | 11 | 138 |
| 부산 | 6 | 58 |
| 대구 | 4 | 67 |
| 인천 | 6 | 47 |
| 광주 | 3 | 29 |
| 대전 | 3 | 33 |
| 울산 | 3 | 26 |
| 세종 | 2 | 14 |
| 경기 | 26 | 260 |
| 강원 | 17 | 133 |
| 충북 | 12 | 96 |
| 충남 | 15 | 149 |
| 전북 | 15 | 137 |
| 전남 | 22 | 221 |
| 경북 | 23 | 206 |
| 경남 | 19 | 155 |
| 제주 | 3 | 27 |
| 전체 | 190 | 1,796 |

<표 3·55>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모니터링 학교 수('14년)

(단위 : 개교)

|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모니터링 학교 수 | 298 | 541 | 601 | 582 | 483 | 292 | 453 | 486 | 479 | 420 | 4,635 |

- 장애인 인권이 강화됨으로써 2015년 특수교사 대상으로 전체 직무연수과정은 195개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를 포함한 직무연수과정은 145개임
- 2015년 일반교원의 전체 직무연수과정 4,187개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를 포함한 직무연수과정은 326개임

<표 3·56> 특수교원 대상 연수과정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실시 수

(단위 : 개)

| 시·도 | 특수교사 대상 전체 직무연수과정 수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직무연수과정 수 |
|-----------|---------------------|--------------------------|
| 서울 | 5 | 5 |
| 부산 | 6 | 3 |
| 대구 | 12 | 12 |
| 인천 | 12 | 12 |
| 광주 | - | - |
| 대전 | 1 | 1 |
| 울산 | 2 | 2 |
| 세종 | - | - |
| 경기 | 31 | 14 |
| 강원 | 17 | 17 |
| 충북 | 23 | 15 |
| 충남 | 2 | 2 |
| 전북 | 1 | 1 |
| 전남 | 7 | 7 |
| 경북 | 24 | 21 |
| 경남 | 52 | 33 |
| 제주 | - | - |
| 전체 | 195 | 145 |

<표 3·57> 일반교사 대상 연수과정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실시 수
(단위 : 개)

| 시·도 | 일반교사 대상 전체 직무연수과정 수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직무연수과정 수 |
|-----------|------------------------|-----------------------------|
| 서울 | 307 | 58 |
| 부산 | 641 | 14 |
| 대구 | 470 | 15 |
| 인천 | 147 | 2 |
| 광주 | 165 | 12 |
| 대전 | 79 | 12 |
| 울산 | 476 | 19 |
| 세종 | 27 | 12 |
| 경기 | 159 | 19 |
| 강원 | 26 | 26 |
| 충북 | 60 | 17 |
| 충남 | 89 | 21 |
| 전북 | 227 | 10 |
| 전남 | 207 | 8 |
| 경북 | 407 | 33 |
| 경남 | 35 | 35 |
| 제주 | 665 | 13 |
| 전체 | 4,187 | 326 |

□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이 성폭력 등 각종 폭력 예방을 위해 장애학생 및 교직원 등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 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2) 장애학생 안전 지원 강화

□ 관련법규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인력 제공,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 등을 제공하고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현황 및 실적

- 2015년 8월 현재 전국 167개 특수학교에서 통학 등을 위한 차량 64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장 등 운영자 및 운전자 782명이 안전교육 이수(예정 포함)

<표 3·58>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현황
(단위 : 학교, 대, 명)

| 시·도 | 특수 학교수 | 통학차량 현황 | | | | | | 안전교육 이수 | |
|----------|------------|---------------------|------------|--------------------|------------|---------------|------------|--------------|------------|
| | | 전체 통학 차량 수 | 운영 차종(대수) | | | 운영 형태 (대수) | | 운영자 (학교장) | 운전자 |
| | | | 15인승 이하 | 16인~ 35인승 이하 | 36인승 이상 | 학교 소유 | 임대 | | |
| 서울 | 29 | 103 | 3 | 24 | 76 | 78 | 25 | 29 | 103 |
| 부산 | 15 | 49 | - | 17 | 32 | 46 | 3 | 11 | 43 |
| 대구 | 9 | 37 | 3 | 14 | 20 | 14 | 23 | 9 | 34 |
| 인천 | 7 | 24 | - | 5 | 19 | 9 | 15 | 7 | 24 |
| 광주 | 5 | 34 | - | 11 | 23 | 8 | 26 | 5 | 34 |
| 대전 | 5 | 25 | 3 | 4 | 18 | 13 | 12 | 5 | 25 |
| 울산 | 4 | 23 | - | 11 | 12 | 17 | 6 | 4 | 23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32 | 119 | 5 | 36 | 78 | 93 | 26 | 31 | 115 |
| 강원 | 7 | 26 | - | 8 | 18 | 26 | - | 5 | 26 |
| 충북 | 9 | 34 | 6 | 5 | 23 | 28 | 6 | 9 | 30 |
| 충남 | 6 | 31 | - | 18 | 13 | 16 | 15 | 6 | 31 |
| 전북 | 11 | 42 | 3 | 22 | 17 | 24 | 18 | 10 | 42 |
| 전남 | 8 | 24 | - | 8 | 16 | 20 | 4 | 6 | 23 |
| 경북 | 8 | 31 | 1 | 7 | 23 | 25 | 6 | 8 | 31 |
| 경남 | 9 | 31 | - | 4 | 27 | 22 | 9 | 8 | 31 |
| 제주 | 3 | 11 | - | 3 | 8 | 9 | 2 | 3 | 11 |
| 계 | 167 | 644 | 24 | 197 | 423 | 448 | 196 | 156 | 626 |

□ 향후 과제

- 특수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장애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

3) 장애학생 체육교육 지원 강화

관련법규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현황 및 실적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에 적합한 체육 활동 및 체력 증진을 위해 2015년 전국 167개 특수학교 중 104교에 174명의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스포츠강사 대상 장애이해교육, 성폭력 예방,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하였음

<표 3·59> 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현황

(단위 : 명)

| 시·도 교육청 | 스포츠강사 배치 특수학교 수(교) | 스포츠강사 배치 인원(명) |
|------------|-----------------------|-------------------|
| 서울 | 17 | 24 |
| 부산 | 10 | 21 |
| 대구 | 5 | 8 |
| 인천 | 3 | 5 |
| 광주 | 4 | 8 |
| 대전 | 5 | 10 |
| 울산 | 4 | 4 |
| 세종 | - | - |
| 경기 | 5 | 13 |
| 강원 | 7 | 7 |
| 충북 | 8 | 14 |
| 충남 | 6 | 8 |
| 전북 | 6 | 12 |
| 전남 | 5 | 6 |
| 경북 | 8 | 15 |
| 경남 | 8 | 14 |
| 제주 | 3 | 5 |
| 전체 | 104 | 174 |

향후 과제

- 특수학교 장애학생 체육교육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토요스포츠강사 포함) 지원 시 특수교육 관련 전공자 배치 확대

4)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관련법규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현황 및 실적

- 기존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50,705천원, 초등학교 40,933천원, 중학교 42,649천원, 고등학교 47,082천원임
- 신설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67,596천원, 초등학교 57,645천원, 중학교 60,364원, 고등학교 68,846천원임

<표 3·60>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 시·도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
| | 기존 | 신설 | 기존 | 신설 | 기존 | 신설 | 기존 | 신설 |
| 서울 | 76,849 | 78,215 | 25,456 | 67,412 | 27,563 | 58,373 | 29,496 | 53,801 |
| 부산 | 32,558 | 52,558 | 19,887 | - | 23,143 | - | 25,950 | 45,950 |
| 대구 | 49,464 | 59,464 | 37,459 | 47,459 | 42,291 | 52,291 | 47,230 | 57,230 |
| 인천 | 36,146 | 61,146 | 37,755 | 62,755 | 39,583 | 64,583 | 40,188 | 65,188 |
| 광주 | 58,978 | 80,681 | 46,526 | 67,668 | 49,044 | 69,217 | 56,632 | 68,166 |
| 대전 | 79,078 | 99,078 | 45,267 | 65,267 | 47,336 | 67,336 | 50,660 | 70,660 |
| 울산 | 53,123 | 68,123 | 42,110 | 60,754 | 42,438 | 73,438 | 53,366 | 75,288 |
| 세종 | 34,120 | 64,120 | 40,730 | 70,730 | 47,360 | 77,360 | 20,960 | 50,960 |
| 경기 | 38,945 | 62,120 | 31,846 | 55,021 | 42,156 | 65,331 | 59,740 | 82,915 |
| 강원 | 30,000 | 67,000 | 68,500 | 81,600 | 67,020 | 75,050 | 61,260 | 93,860 |
| 충북 | 46,310 | 76,310 | 32,598 | 62,598 | 32,826 | 62,826 | 37,763 | 67,763 |
| 충남 | 62,583 | 82,583 | 35,067 | 55,067 | 41,822 | 61,822 | 45,059 | 70,059 |
| 전북 | 58,813 | 65,687 | 42,924 | 52,116 | 49,358 | 56,758 | 41,656 | 59,735 |
| 전남 | 31,124 | 41,124 | 31,069 | 41,069 | 31,145 | 41,145 | 31,145 | 41,145 |
| 경북 | 58,228 | 36,124 | 49,112 | 61,488 | 35,114 | 49,522 | 61,387 | 87,539 |
| 경남 | 67,204 | 87,204 | 51,654 | 71,654 | 50,744 | 70,744 | 52,854 | 72,854 |
| 제주 | 48,459 | - | 57,902 | 57,312 | 56,100 | 80,394 | 85,060 | 107,282 |
| 전체 | 50,705 | 67,596 | 40,933 | 57,645 | 42,649 | 60,364 | 47,082 | 68,846 |

* 특수학급 운영비 : 특수학급 기본 운영비 및 장애유아무상교육비, 특수교육 보조인력,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운영 등 국고지원 사업 예산, 특수학급 관련 특별교부금사업, 기타 통학비, 급식비 지원 등 특수학급 예산

향후과제

- 시·도교육청별로 특수학교(급)의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작성 시행
- 시·도교육청 자체 특수학교 경영 평가 시 학교운영 개선 노력 반영

5)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현재 유치원 588명, 초등학교 806명, 중학교 486명, 고등학교 386명 총 2,266명의 학생이 순회교육 지원을 받고 있음

<표 3·6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단위 : 명)

| 사·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서울 | 80 | 56 | 46 | 56 | 238 |
| 부산 | 70 | 12 | 11 | 6 | 99 |
| 대구 | 14 | 23 | 14 | 17 | 68 |
| 인천 | 61 | 33 | 2 | 10 | 106 |
| 광주 | 17 | 12 | 5 | 35 | 69 |
| 대전 | 29 | 12 | 12 | 9 | 62 |
| 울산 | 17 | 17 | 8 | 6 | 48 |
| 세종 | 1 | 3 | - | - | 4 |
| 경기 | 27 | 73 | 27 | 4 | 131 |
| 강원 | 25 | 36 | 58 | 17 | 136 |
| 충북 | 35 | 68 | 48 | 22 | 173 |
| 충남 | 38 | 80 | 35 | 4 | 157 |
| 전북 | 15 | 36 | 20 | 14 | 85 |
| 전남 | 26 | 76 | 51 | 34 | 187 |
| 경북 | 44 | 101 | 73 | 73 | 291 |
| 경남 | 69 | 122 | 64 | 66 | 321 |
| 제주 | 20 | 46 | 12 | 13 | 91 |
| 계 | 588 | 806 | 486 | 386 | 2,266 |

□ 향후 과제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순회교육 등 지원 확대 추진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 강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1항)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3항)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5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 현황 및 추진 실적

-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 설치·운영
 - ※ '15년 현재 교육부 지정 23개 특수학교 학교기업 : 운영(20개), 설치·운영 추진(3개)
 - ('15년 현재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 2개교 운영)

<표 3·62>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 개원연도 | 학교명 | 교육청 | 설립별 | 장애유형 | 사업직종 |
|-----------|-----------|-----|-----|--------------------|--------------------------------|
| 2010 | 대구5교통합 | 대구 | 사립 | 시각·청각·지체·정신지체·정서장애 | 사무용지, 제과제빵, 천연비누, 전사제품 등 |
| | 전주선화학교 | 전북 | 공립 | 청각장애 | 도자기, 천연비누, 천연염색, 체험관 운영 등 |
| 2011 | 한빛맹학교 | 서울 | 사립 | 시각장애 | 공공안마(이료) |
| | 대진해광학교 | 대전 | 공립 | 정신지체 | 카페 운영, 천연비누, 운동화빨래방, 빵과자 등 |
| | 부산해성학교 | 부산 | 공립 | 정신지체 | 도자기, 원예(화분), 천연비누 등 |
| 2012 | 꽃동네학교 | 충북 | 사립 | 정신지체·지체장애 | 제과·제빵, 급식 제품 등 |
| | 미추홀학교 | 인천 | 공립 | 정신지체 | 천연제품, 카페테리아, 조립포장, 체험교육, 전통장 등 |
| | 순천선해학교 | 전남 | 공립 | 정신지체 | 콩나물, 포장충진, 클리닝, 천연제품, 생활자기 등 |
| | 속초청해학교 | 강원 | 공립 | 정신지체 | 배추(포기)김치 |
| | 광주선광학교 | 광주 | 공립 | 정신지체 | 천연비누, 카페테리아, 도자기, DIY제품, 원예 등 |
| 2013 | 천안인애학교 | 충남 | 공립 | 정신지체 | 천연비누, 도예, 원예, 목공, 천연제품, 공예 등 |
| | 성은학교 | 경기 | 공립 | 정신지체 | 원예, 제과제빵, 세차, 공예 등 |
| | 청주맹학교 | 충북 | 사립 | 시각장애 | 천연비누, 생활도예, 건강안마 등 |
| | 울산해인학교 | 울산 | 공립 | 정신지체 | 자동차 부품 조립, 운동화 세탁, 손세차 등 |
| | 창원천광학교 | 경남 | 공립 | 청각장애 | 양파즙, 웰빙푸드, 공예 등 |
| | 공주정명학교 | 충남 | 공립 | 정신지체 | 장갑, 양말, 아로마웰빙, 생활자기, 생활공예 등 |
| | 태백미래학교 | 강원 | 사립 | 정신지체 | 자동차제생물품, 다육, 오이송, 화분, 원예도구 등 |
| | 부천상록학교* | 경기 | 공립 | 정신지체 | 스팀세차, 허브제품, 탈취제, 모기퇴치제 등 |
| | 부천해림학교* | 경기 | 사립 | 정신지체 | 소독 |
| 2014 | 서울맹학교 | 서울 | 국립 | 시각장애 | 점자도서 출판부 |
| | 한국선진학교 | 경기 | 국립 | 정신지체 | 견과류, 농산물 등 소포장, 카페 운영 등 |
| | 대진원명학교 | 대전 | 사립 | 정신지체 | 면장갑, DIY가구, 카페 등 |
| 2015 (예정) | 포항명도학교 | 경북 | 사립 | 정신지체·청각장애 | 체험관 운영, 임가공(자동차 부속품 포장박스 제작) |
| | 안동영광·진명학교 | 경북 | 사립 | 정신지체·정서장애 | 보안문서파쇄, 세탁 등 |
| 2015 (선정) | 소림학교 | 전남 | 사립 | 청각장애 | 생활도자기 전사, 종이제품 포장, 무화과·양파 음료 등 |

*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임

※ 사업직종은 학교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15년 현재 교육부 지정 30교 및 시·도교육청 지정 18교가 운영 중임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3·63>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 시·도 | 지정연도 및 운영학교 | | | | | | 전체 |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서울 | 상암고 | 경복고 | - | (문현고) (서울문화고) | (경기고) | | 2(3) |
| 부산 | 동래원예고* | - | 부산전자공업고 | | | | 1 |
| 대구 | 대구서부공업고 | - | - | | | 대구자연과학고 | 2 |
| 인천 | - | - | 강남영상미디어고 | | | 박문여고 | 2 |
| 광주 | 광주전자공업고 | - | - | | | | 1 |
| 대전 | - | 동대전고 | - | | | | 1 |
| 울산 | - | - | - | | | | - |
| 경기 | 성남방송고 이천제일고 | 안양공업고 은행고 (포천일고) (안성고) | 수원정보과학고 | | | (오산정보고) | 5(3) |
| 강원 | - | - | 영서고 | | | | 1 |
| 충북 | 제천제일고 | - | 청주농업고 | | | | 2 |
| 충남 | 공주생명과학고 | 금산산업고 논산공업고 | 당진정보고 서천고 | (온양용화고), (천안공업고) | (태안고) | 주산산업고 (부여정보고) | 6(4) |
| 전북 | - | - | - | | (이리공업고), (장계공업고), (고창여고**) | (진안제일고) (해리고) (무주고) (합일고) | (6) |
| 전남 | 목포공업고 | - | 전남기술과학고 | | | | 2 |
| 경북 | - | 김천생명과학고 | - | | | | 1 |
| 경남 | - | 아림고, 김해생명과학고 | - | | | | 2 |
| 제주 | 제주고 | 합덕고 | - | (표선고) | | (제주중앙여고) | 2(2) |
| 계 | 9 | 10 | 8 | 6 | 5 | 10 | 30(18) |

* 동래원예고 :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거점학교 이전, **고창여고 : 1년만 거점학교 운영

※ ()안의 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정 거점학교

-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기본 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5교 운영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통하여 장애학생 취업 역량 강화 및 다양한 교육과정 재구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장애학생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 전문기관에 장애학생을 위탁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전문기관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 취업·창업교육을 지원 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 취업·창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11개 기관에서 직업교육 위탁교육 운영, 35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연계 취업·창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2,385명 중에서 취업을 한 학생은 185명으로 취업률은 18.3%임

<표 3·64> 2015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취업 현황
(단위 : 명, %)

| 시·도 | 졸업생수 | 진학자수 | 취업자수 | | | | | | | | | | | | | | 취업률 |
|----------|--------------|--------------|----------|-----------|----------|----------|-----------|-----------|----------|-----------|----------|----------|----------|----------|-----------|------------|-------------|
| | | | 보건·의료 | 제품제조 | 농림어업 | 정보통신기기 | 식품가공·제과제빵 | 의료 | 영업판매 | 청소·세탁 | 식음료서비스 | 문화·예술 | 사무보조 | 사서보조 | 기타 | 소계 | |
| 서울 | 478 | 336 | - | 13 | - | - | 1 | 9 | - | 1 | 1 | 1 | - | - | 5 | 31 | 21.8 |
| 부산 | 145 | 66 | - | 5 | - | - | - | 3 | - | 1 | 1 | - | 1 | - | - | 11 | 13.9 |
| 대구 | 146 | 59 | - | - | - | - | - | 5 | - | - | - | - | - | - | - | 5 | 5.7 |
| 인천 | 127 | 45 | - | 10 | - | - | - | 6 | - | 1 | 1 | - | - | - | 2 | 20 | 24.4 |
| 광주 | 117 | 45 | - | 2 | - | - | 1 | 6 | - | 1 | - | - | 1 | - | 2 | 13 | 18.1 |
| 대전 | 121 | 74 | 1 | 2 | - | - | - | 11 | - | 1 | - | - | 1 | - | - | 16 | 34.0 |
| 울산 | 56 | 46 | - | 1 | -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 325 | 130 | - | 3 | - | - | - | - | - | 2 | 1 | - | - | - | 9 | 15 | 7.7 |
| 강원 | 132 | 77 | - | - | - | - | - | 1 | - | - | 1 | - | - | - | 22 | 24 | 43.6 |
| 충북 | 127 | 86 | - | 3 | - | 2 | - | 8 | - | - | - | - | - | - | 1 | 14 | 34.1 |
| 충남 | 92 | 51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2 | 4.9 |
| 전북 | 110 | 66 | - | 1 | - | 1 | 2 | 6 | - | 1 | 1 | - | 2 | - | - | 14 | 31.8 |
| 전남 | 90 | 40 | - | - | 1 | 2 | - | 2 | - | 2 | - | - | - | - | 3 | 10 | 20.0 |
| 경북 | 137 | 111 | - | - | 1 | 1 | - | - | - | 3 | - | - | - | - | - | 5 | 19.2 |
| 경남 | 142 | 129 | - | - | - | - | 1 | - | - | - | - | - | - | - | 1 | 2 | 15.4 |
| 제주 | 40 | 11 | - | - | - | - | - | - | - | - | 1 | - | 1 | - | - | 2 | 6.9 |
| 계 | 2,385 | 1,372 | 1 | 40 | 2 | 6 | 5 | 57 | 0 | 13 | 7 | 1 | 6 | 1 | 46 | 185 | 18.3 |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 2015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673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767명으로 취업률은 33.6%임

<표 3·65> 2015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취업 현황
(단위 : 명, %)

| 시·도 | 졸업생수 | 진학자수 | 취업자수 | | | | | | | | | | | | | | 취업률 |
|----------|--------------|--------------|-----------|------------|-----------|----------|------------|----------|----------|-----------|------------|----------|-----------|-----------|------------|------------|-------------|
| | | | 보건·의료 | 제품제조 | 농림어업 | 정보통신기기 | 식품가공·제과·제빵 | 의료 | 영업·판매 | 청소·세탁 | 식음료 서비스 | 문화·예술 | 사무보조 | 사서보조 | 기타 | 소계 | |
| 서울 | 530 | 112 | 1 | 35 | 1 | - | 7 | - | 2 | 4 | 33 | 2 | 20 | 7 | 28 | 140 | 29.3 |
| 부산 | 194 | 78 | 2 | 26 | - | - | 2 | - | 1 | 3 | 7 | - | 2 | 1 | 2 | 46 | 39.7 |
| 대구 | 164 | 121 | 1 | 7 | - | - | - | - | 1 | - | - | - | - | - | 2 | 11 | 25.6 |
| 인천 | 195 | 93 | 3 | 8 | - | 2 | 1 | - | - | 1 | 4 | - | - | 3 | 3 | 25 | 24.5 |
| 광주 | 98 | 54 | 1 | 9 | - | - | 4 | - | - | - | - | - | - | - | 1 | 15 | 34.1 |
| 대전 | 129 | 83 | 3 | 8 | - | - | 2 | - | - | 10 | 1 | - | 1 | 1 | - | 26 | 56.5 |
| 울산 | 104 | 80 | - | 3 | - | - | 1 | - | - | - | - | - | - | - | - | 4 | 16.7 |
| 세종 | 11 | 3 | - | - | - | - | - | - | - | 1 | - | - | 1 | 1 | - | 3 | 37.5 |
| 경기 | 971 | 351 | 4 | 67 | 1 | - | 15 | - | 2 | 7 | 52 | - | 27 | 14 | 33 | 222 | 35.8 |
| 강원 | 82 | 40 | - | 2 | 1 | - | 4 | - | - | 2 | 2 | - | - | - | 24 | 35 | 83.3 |
| 충북 | 139 | 44 | - | 13 | - | - | 10 | - | - | 6 | 7 | - | 4 | - | 7 | 47 | 49.5 |
| 충남 | 198 | 62 | 1 | 21 | - | - | 4 | - | - | 7 | 4 | - | 7 | 11 | 9 | 64 | 47.1 |
| 전북 | 107 | 55 | 1 | 3 | 3 | 2 | 5 | - | - | 1 | 3 | - | 4 | - | - | 22 | 42.3 |
| 전남 | 251 | 47 | - | 6 | - | - | 1 | - | - | 4 | 1 | - | 1 | - | 1 | 14 | 6.9 |
| 경북 | 186 | 96 | - | 11 | - | - | - | - | 1 | 3 | 4 | - | 1 | 3 | - | 23 | 25.6 |
| 경남 | 207 | 65 | 5 | 11 | 1 | - | 3 | - | 1 | 3 | 7 | - | 11 | - | 8 | 50 | 35.2 |
| 제주 | 47 | 7 | - | 3 | 6 | - | 2 | - | - | - | 8 | - | - | - | 1 | 20 | 50.0 |
| 계 | 3,673 | 1,391 | 22 | 233 | 13 | 4 | 61 | 0 | 7 | 53 | 133 | 2 | 79 | 41 | 119 | 767 | 33.6 |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 2015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1,053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99명으로 취업률은 21.0%임

<표 3·66> 2015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생 취업 현황
(단위 : 명, %)

| 시·도 | 졸업생수 | 진학자수 | 취업자수 | | | | | | | | | | | | | | 취업률 | | | | | |
|----------|--------------|------------|----------|-----------|----------|----------|------------|----------|----------|----------|-----------|----------|----------|----------|-----------|-----------|-------------|---|---|------|------|------|
| | | | 보건·의료 | 제품제조 | 농림어업 | 정보통신기기 | 식품가공·제과·제빵 | 의료 | 영업·판매 | 청소·세탁 | 식음료 서비스 | 문화·예술 | 사무보조 | 사서보조 | 기타 | 소계 | | | | | | |
| 서울 | 81 | 43 | - | 1 | - | 1 | 1 | - | - | - | - | - | - | - | - | 1 | - | - | 1 | 5 | 13.2 | |
| 부산 | 78 | 53 | - | 2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5 | 20.0 |
| 대구 | 90 | 50 | - | 3 | - | 1 | - | - | - | - | - | - | - | - | - | 2 | - | - | 2 | 8 | 20.0 | |
| 인천 | 67 | 29 | - | 1 | - | 1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5 | 13.2 | |
| 광주 | 30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0 |
| 대전 | 46 | 30 | 1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1 | 3 | 18.8 | |
| 울산 | 52 | 36 | - | 1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3 | 18.8 | |
| 세종 | 2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 216 | 112 | 1 | 2 | - | - | - | - | - | 1 | 1 | 3 | 1 | - | - | 4 | - | - | 4 | 13 | 12.5 | |
| 강원 | 32 | 12 | - | - | - | - | - | - | - | 2 | 3 | - | - | - | - | 5 | - | - | 5 | 10 | 50.0 | |
| 충북 | 86 | 40 | - | 9 | - | 1 | 2 | - | 1 | - | - | - | 1 | - | 1 | - | - | 1 | 1 | 15 | 32.6 | |
| 충남 | 12 | 5 | - | - | - | - | - | - | - | - | - | - | 1 | - | - | 1 | 1 | - | - | 3 | 42.9 | |
| 전북 | 44 | 26 | - | 4 | - | - | 2 | - | - | 1 | - | - | - | - | - | - | - | 1 | 8 | 44.4 | | |
| 전남 | 22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10.0 | | |
| 경북 | 90 | 57 | - | 4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5 | 15.2 | |
| 경남 | 91 | 47 | 1 | 6 | 1 | - | - | - | - | - | - | 1 | - | 1 | - | 2 | - | - | 2 | 12 | 27.3 | |
| 제주 | 14 | 10 | - | 1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3 | 75.0 | |
| 계 | 1,053 | 582 | 3 | 34 | 1 | 4 | 5 | 0 | 3 | 6 | 12 | 4 | 6 | 1 | 20 | 99 | 21.0 | | | | | |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 2015년 2월 전공과 이수자 1,868명 중 659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35.5%임

<표 3·67> 2015년도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단위 : 명, %)

| 시·도 | 이수자수 | 진학자수 | 취업자수 | | | | | | | | | | | | | | 취업률 |
|----------|--------------|-----------|-----------|------------|----------|----------|------------|----------|----------|-----------|-----------|----------|-----------|-----------|------------|------------|-------------|
| | | | 보건·의료 | 제품제조 | 농림어업 | 정보통신기기 | 식품가공·제과·제빵 | 이료 | 영업·판매 | 청소·세탁 | 식음료서비스 | 문화예술 | 사무보조 | 사서보조 | 기타 | 소계 | |
| 서울 | 229 | 4 | - | 16 | 1 | - | - | 3 | - | 1 | 3 | 2 | 1 | - | 13 | 40 | 17.5 |
| 부산 | 126 | - | - | 12 | - | - | 2 | - | - | 3 | - | - | 1 | - | 4 | 22 | 17.5 |
| 대구 | 78 | 3 | 1 | 26 | - | 1 | 10 | - | - | 5 | 1 | - | - | 1 | 4 | 49 | 62.8 |
| 인천 | 102 | - | - | 18 | - | - | 2 | 3 | - | 3 | 7 | 1 | 4 | 7 | 1 | 46 | 45.1 |
| 광주 | 65 | - | 5 | 4 | - | - | - | 1 | - | 2 | 4 | - | - | 1 | 5 | 22 | 33.8 |
| 대전 | 93 | - | 4 | 4 | - | - | 4 | - | - | 2 | 3 | 1 | 4 | - | 14 | 36 | 38.7 |
| 울산 | 61 | - | 2 | 14 | - | - | - | - | 2 | 1 | 1 | - | 3 | 2 | - | 25 | 41.0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 388 | 3 | - | 38 | - | - | 14 | - | 4 | 10 | 26 | - | 13 | 10 | 34 | 149 | 40.5 |
| 강원 | 79 | - | - | 12 | - | - | 1 | - | 1 | 5 | 5 | 1 | - | 1 | 42 | 68 | 86.1 |
| 충북 | 110 | - | - | - | - | - | 5 | - | - | 20 | 3 | - | - | - | 1 | 29 | 26.4 |
| 충남 | 108 | - | 1 | 15 | 1 | - | 3 | - | - | 7 | 1 | - | 1 | 1 | 22 | 52 | 48.1 |
| 전북 | 61 | - | - | 3 | - | - | 3 | - | - | 1 | 2 | - | 1 | 1 | 6 | 17 | 27.9 |
| 전남 | 68 | - | 2 | 10 | - | - | - | - | - | 2 | - | - | - | - | 3 | 17 | 25.0 |
| 경북 | 150 | 3 | - | 20 | 3 | - | 3 | - | - | 5 | 1 | - | 1 | - | 2 | 35 | 23.3 |
| 경남 | 158 | - | 2 | 22 | - | - | 1 | - | - | 6 | 1 | - | 5 | 1 | 5 | 43 | 27.2 |
| 제주 | 12 | - | - | 1 | - | - | - | - | - | 5 | 1 | - | - | - | 2 | 9 | 75.0 |
| 계 | 1,868 | 13 | 17 | 215 | 5 | 1 | 48 | 7 | 7 | 78 | 59 | 5 | 34 | 25 | 158 | 659 | 35.5 |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 일반학교 전공과 이수자 49명 포함

- 2015년 4월 현재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는 모두 127개교 493학급임
 - 2015년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학교는 2014년에 비해 6개교 증가했음
 -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184명, 청각장애 147명, 정신지체 3,433명, 지체장애 261명, 정서장애 249명 총 4,274명임
- 2015년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일반학교 19개교에 전공과 29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186명의 학생과 52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음

<표 3·68>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단위 : 교, 학급, 명)

| | 장애별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장애 | 계 |
|------|-----|------|------|-------|------|------|-------|
| 특수학교 | 학교수 | 9 | 6 | 92 | 13 | 7 | 127 |
| | 학급수 | 28 | 15 | 384 | 37 | 29 | 493 |
| | 학생수 | 184 | 147 | 3,433 | 261 | 249 | 4,274 |
| | 학교수 | 학교수 | | 학생수 | | 교사수 | |
| 일반학교 | 19 | 29 | | 186 | | 52 | |

□ 향후 과제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와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과성 확대를 위한 연차적 지정·운영 확대 및 내실화 도모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공과 설치 확대 및 운영 강화
-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관련부처(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 체제 구축
-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의 효율적 지원
- 취업자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직업유지 도모

2)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대학에 특별지원위원회를 두어 장애학생 지원 계획수립,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을 수행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 지원, 편의제공,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을 담당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학습보조기기 등 물적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 인적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5년 2월 특수교육대상자 고등부 졸업생 7,111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이 57.5%, 특수학급 졸업생은 37.9%,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졸업생이 55.3%이며 전체 진학률은 47.0%임

<표 3·69> 2015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단위 : 명, %)

| 시·도 | 졸업생수 | | | | 진 학 자 수 | | | | | | | | | | | | | 진학률 |
|-----|-------|-------|-------|-------|---------|-------|-------|-------|-------|-------|-------|-------|-------|-------|-------|-------|-------|------|
| | | | | | 전문과 | | | 전문대학 | | | 대학교 | | | 계 | | | | |
| | 특수 학교 | 특수 학급 | 일반 학급 | 계 | 특수 학교 | 특수 학급 | 일반 학급 | 특수 학교 | 특수 학급 | 일반 학급 | 특수 학교 | 특수 학급 | 일반 학급 | 특수 학교 | 특수 학급 | 일반 학급 | 소계 | |
| 서울 | 478 | 530 | 81 | 1,149 | 235 | 17 | 4 | 4 | 31 | 10 | 37 | 64 | 29 | 336 | 112 | 43 | 491 | 42.7 |
| 부산 | 145 | 194 | 78 | 417 | 61 | 44 | 1 | 1 | 27 | 17 | 4 | 7 | 35 | 66 | 78 | 53 | 197 | 47.2 |
| 대구 | 146 | 164 | 90 | 400 | 47 | 77 | 2 | 5 | 30 | 32 | 7 | 14 | 16 | 59 | 121 | 50 | 230 | 57.5 |
| 인천 | 127 | 135 | 67 | 389 | 36 | 75 | 2 | 2 | 11 | 10 | 7 | 7 | 17 | 45 | 93 | 29 | 167 | 42.9 |
| 광주 | 117 | 98 | 30 | 245 | 26 | 37 | - | 5 | 10 | 5 | 14 | 7 | 13 | 45 | 54 | 18 | 117 | 47.8 |
| 대전 | 121 | 129 | 46 | 296 | 64 | 71 | 1 | 5 | 8 | 11 | 5 | 4 | 18 | 74 | 83 | 30 | 187 | 63.2 |
| 울산 | 56 | 104 | 52 | 212 | 45 | 59 | 1 | 1 | 20 | 20 | - | 1 | 15 | 46 | 80 | 36 | 162 | 76.4 |
| 세종 | - | 11 | 2 | 13 | - | 3 | - | - | - | 1 | - | - | 1 | - | 3 | 2 | 5 | 38.5 |
| 경기 | 325 | 971 | 216 | 1,512 | 126 | 235 | 4 | 3 | 41 | 38 | 1 | 45 | 70 | 130 | 351 | 112 | 533 | 39.2 |
| 강원 | 132 | 82 | 32 | 246 | 72 | 23 | 8 | - | - | - | 5 | 17 | 4 | 77 | 40 | 12 | 129 | 52.4 |
| 충북 | 127 | 139 | 86 | 352 | 81 | 30 | 3 | - | 13 | 18 | 5 | 1 | 19 | 86 | 44 | 40 | 170 | 48.3 |
| 충남 | 92 | 198 | 12 | 302 | 51 | 49 | - | - | 6 | - | - | 7 | 5 | 51 | 62 | 5 | 118 | 39.1 |
| 전북 | 110 | 107 | 44 | 261 | 59 | 42 | 6 | - | 6 | 9 | 7 | 7 | 11 | 66 | 55 | 26 | 147 | 56.3 |
| 전남 | 90 | 251 | 22 | 363 | 39 | 23 | 3 | - | 21 | 5 | 1 | 3 | 4 | 40 | 47 | 12 | 99 | 27.3 |
| 경북 | 137 | 186 | 90 | 413 | 110 | 62 | 8 | 1 | 24 | 22 | - | 10 | 27 | 111 | 96 | 57 | 264 | 63.9 |
| 경남 | 142 | 207 | 91 | 440 | 129 | 34 | 4 | - | 22 | 26 | - | 9 | 17 | 129 | 65 | 47 | 241 | 54.8 |
| 제주 | 40 | 47 | 14 | 101 | 9 | 3 | 1 | 1 | 4 | 5 | 1 | - | 4 | 11 | 7 | 10 | 28 | 27.7 |
| 계 | 2,385 | 3,673 | 1,053 | 7,111 | 1,250 | 914 | 48 | 28 | 274 | 229 | 94 | 203 | 305 | 1,372 | 1,391 | 582 | 3,345 | 47.0 |

-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15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실시 대학은 전문대학 23개교와 4년제 대학교 98개교로 모두 121개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전문대학 23개교 54명, 대학 98개교 753명으로 총 121개교 807명임

<표 3·70>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학생 수
(단위 : 교, 명)

| 학년도 | 전문대학 | | 대학교 | | 합계 | |
|-------------|---------------|-----------|---------------|------------|-----------------|------------|
| | 실시대학 | 학생 | 실시대학 | 학생 | 실시대학 | 학생 |
| 1996 | 2 | 16 | 16 | 201 | 18 | 217 |
| 1997 | 6 | 42 | 30 | 234 | 36 | 276 |
| 1998 | 6 | 57 | 39 | 298 | 45 | 355 |
| 1999 | 6 | 47 | 40 | 349 | 46 | 396 |
| 2000 | 9 | 55 | 48 | 313 | 57 | 368 |
| 2001 | 11 | 61 | 43 | 360 | 54 | 421 |
| 2002 | 15 | 194 | 46 | 420 | 61 | 614 |
| 2003 | 14 | 117 | 47 | 310 | 61 | 427 |
| 2004 | 24 | 115 | 49 | 309 | 73 | 424 |
| 2005 | 11 | 45 | 53 | 344 | 64 | 389 |
| 2006 | 10 | 31 | 63 | 388 | 73 | 419 |
| 2007 | 9(7) | 79 | 71(71) | 439 | 80(78) | 518 |
| 2008 | 8(7) | 100 | 74(65) | 460 | 82(72) | 560 |
| 2009 | 10(10) | 74 | 80(70) | 498 | 90(80) | 561 |
| 2010 | 19(12) | 51 | 80(75) | 601 | 99(87) | 652 |
| 2011 | 14(14) | 60 | 89(77) | 574 | 103(91) | 634 |
| 2012 | 16(16) | 97 | 90(84) | 566 | 106(100) | 663 |
| 2013 | 25(17) | 185 | 97(89) | 649 | 122(106) | 834 |
| 2014 | 23(16) | 84 | 98(80) | 637 | 121(96) | 721 |
| 2015 | 23(18) | 54 | 98(84) | 753 | 121(102) | 807 |

※ 괄호는 최종 등록기준 학교수

- 2015년 7월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은 360명이며, 2015년도에 103명의 장애학생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으로 입학함

<표 3·7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장애학생 재학 및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현황
(단위 : 교, 명)

| 구분 | 교육대학 | 국·공립사대 | 사립사대 | 계 |
|--------------------|------|--------|------|-----|
| 재학생 중 장애학생수 | 210 | 41 | 109 | 360 |
|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 수(15) | 70 | 12 | 21 | 103 |

- 2015년 7월 현재 대학(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도우미는 221개 대학에 3,339명을 배치하여 지원함

<표 3·72> 대학(원) 장애학생 도우미 영역별 지원 현황
(단위 : 교, 명)

| 구분 | 학교수 | 도우미수 | | | | |
|-------------|-------------------|--------------|---------------|--------------|--------------|--------------|
| | | 1~3급 장애학생 지원 | 4급 이하 장애학생 지원 | 구분 없음 | 계 | |
| 일반 도우미 | 대학(원) | 133 | - | - | 2,591 | 2,591 |
| | 전문대학 | 71 | - | - | 492 | 492 |
| | 원격대학 | 3 | - | - | 116 | 116 |
| | 소계 | 207 | - | - | 3,199 | 3,199 |
| 전문 도우미 | 대학(원) | 29 | 84 | - | - | 84 |
| | 전문대학 | 9 | 12 | - | - | 12 |
| | 원격대학 | 3 | 19 | - | - | 19 |
| | 소계 | 41 | 115 | - | - | 115 |
| 원격교육 전문 도우미 | 대학(원) | 30 | - | - | - | - |
| | 전문대학 | 6 | - | - | 25 | 25 |
| | 원격대학 | 4 | - | - | - | - |
| | 소계 | 40 | - | - | - | - |
| 계 | 221(중복 제외) | 115 | - | 3,224 | 3,339 | |

- ※ 영역별 도우미 유형 : 일반도우미(학내이동 및 강의 등 대필지원), 전문도우미(수화통역사, 속기사 등에 의한 교수·학습지원), 원격교육전문도우미(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 내용 수화통역 및 문자통역 지원)
- ※ 원격교육지원 시스템 : 교수 강의 내용을 웹 카메라와 스피커를 통하여 원격교육지원시스템(한국복지대학교) 내의 원격강의 지원센터에 접속하여, 전문도우미(수화통역사 및 속기사)가 내용을 전달 받으면 실시간으로 수화와 텍스트로 전환하여 학습자(청각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시스템

□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장애학생의 교내활동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법적기구 설치 확대 및 내실화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장애학생의 정보이용과 정보화교육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 확대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내실화 만족도 제고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및 평가

□ 관련 법규

-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제2항)

□ 현황 및 실적

- 대학의 자체적인 진단과 개선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유도를 위해 2014년도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실시 및 2015년 2월 결과 발표
- 평가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4년제 및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 평가분야는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의 3개 영역으로 평가함

<표 3·73>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가 영역(4년제 및 전문대학)

| 영역 | 부문 | 항목수 | |
|----------------|-----------------------------|-----|-----|
| | | 부문별 | 영역별 |
| 선발 (10%) | 1.1 전형(6%) | 4 | 7 |
| | 1.2 정보제공(4%) | 3 | |
| 교수·학습 (48%) | 2.1 학습권 보장 자체발전계획(5%) | 3 | 29 |
| | 2.2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14%) | 6 | |
| | 2.3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활용(6%) | 3 | |
| | 2.4 학습지원(12%) | 6 | |
| | 2.5 평가지원(2%) | 1 | |
| | 2.6 장학지원(2%) | 1 | |
| | 2.7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6%) | 4 | |
| | 2.8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만족도(1%) | 5 | |
| 시설·설비 (42%) | 3.1 매개시설(9%) | 7 | 34 |
| | 3.2 내부시설(12%) | 8 | |
| | 3.3 위생시설(8%) | 3 | |
| | 3.4 안내 및 기타시설(5%) | 4 | |
| | 3.5 강의실(1%) | 1 | |
| | 3.6 도서관(1%) | 1 | |
| | 3.7 강당(1%) | 1 | |
| | 3.8 식당(1%) | 1 | |
| | 3.9 체육관(1%) | 1 | |
| | 3.10 기숙사(2%) | 2 | |
| | 3.11 장애대학생 시설·설비 만족도(1%) | 5 | |

<표 3·74>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가 영역(사이버대학)

| 영역 | 부문 | 항목수 | |
|----------------|-----------------------------|-----|-----|
| | | 부문별 | 영역별 |
| 선발 (10%) | 1.1 전형(6%) | 4 | 6 |
| | 1.2 정보제공(4%) | 2 | |
| 교수·학습 (58%) | 2.1 학습권 보장 자체발전계획(6%) | 3 | 30 |
| | 2.2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14%) | 5 | |
| | 2.3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활용(6%) | 2 | |
| | 2.4 학습지원(21%) | 9 | |
| | 2.5 평가지원(3%) | 1 | |
| | 2.6 장학지원(2%) | 1 | |
| | 2.7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5%) | 4 | |
| | 2.8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만족도(1%) | 5 | |
| 시설·설비 (32%) | 3.1 매개시설(9%) | 7 | 23 |
| | 3.2 내부시설(12%) | 8 | |
| | 3.3 위생시설(8%) | 3 | |
| | 3.4 안내 및 기타시설(2%) | 1 | |
| | 3.5 장애대학생 시설·설비 만족도(1%) | 4 | |

- 평가대상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에 이어 현지 방문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산출함
- 평가방법은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의 4단계 등급으로 평가함

□ 향후 과제

- 2017년에는 교육환경 변화 및 모든 대학유형을 고려하여 2016년에 개정한 평가 지표로 평가 실시
 - 4년제 및 전문대학, 사이버 대학으로 평가 지표를 구분하여 평가 실시
-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권고하기 위하여 2015년에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음

(3) 장애성인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령기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전국 44개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야학)에서 537명의 교사가 1,352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은 총330개임
-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야학) 지원 예산은 24억원임

<표 3·75>

장애성인교육(야학)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시·도 | 설립형태 및 기관수 | 교사수 | 학생수 | 운영 프로그램수 | | | | | 지원예산 |
|----------|---------------------------|------------|--------------|------------|-----------|-----------|-----------|------------|--------------|
| | | | | 문해 | 교양 | 직업 | 기타 | 계 | |
| 서울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2 | 26 | 77 | 5 | 6 | 2 | 1 | 14 | 420 |
| 부산 | 민간단체 1 | 7 | 30 | 1 | - | 2 | 3 | 6 | 17 |
| 대구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 | 15 | 32 | 6 | 3 | 4 | - | 13 | 100 |
| 광주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3 | 37 | 79 | 38 | 2 | 2 | 8 | 50 | 205 |
| 대전 | 법인 1 | 29 | 48 | 1 | 1 | - | 2 | 4 | 31 |
| 울산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2 | 21 | 41 | 7 | 9 | 1 | 11 | 28 | 168 |
| 경기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1 | 135 | 335 | 12 | 44 | 3 | 25 | 84 | 330 |
| 강원 | 민간단체 1, 사단법인 2 | 25 | 96 | 4 | 3 | 3 | 12 | 22 | 64 |
| 충북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2, 민간단체 1 | 43 | 116 | 8 | 5 | 1 | 6 | 20 | 69 |
| 충남 | 법인 1 | 16 | 17 | 7 | 1 | - | 1 | 9 | 48 |
| 전북 | 법인 2, 민간단체 2, 개인 1 | 60 | 352 | 14 | 17 | 3 | 17 | 51 | 50.3 |
| 경남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9 | 132 | 35 | 9 | - | - | - | 9 | 810 |
| 제주 |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1, 법인 1 | 21 | 94 | 5 | 3 | - | 2 | 10 | 65 |
| 계 | 44 | 567 | 1,352 | 117 | 94 | 21 | 88 | 320 | 2,377 |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178개의 기관에서 56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지원예산은 13억원임

<표 3·76>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시·도 | 평생교육기관 | | | 특수학교 | | | 특수교육지원센터 | | | 계 | | |
|----------|------------|------------|----------------|-----------|-----------|-------------|----------|-----------|-----------|------------|------------|----------------|
| | 기관수 | 프로그램수 | 예산 | 학교수 | 프로그램수 | 예산 | 센터수 | 프로그램수 | 예산 | 기관수 | 프로그램수 | 예산 |
| 서울 | 76 | 83 | 148.6 | 2 | 2 | 2 | 1 | 1 | 2 | 79 | 86 | 152.6 |
| 부산 | 1 | 7 | 110 | - | - | - | - | - | - | 1 | 7 | 110 |
| 대구 | 8 | 18 | 9 | - | - | - | - | - | - | 8 | 18 | 9 |
| 인천 | 6 | 24 | 42.2 | 1 | 6 | 3.5 | - | - | - | 7 | 30 | 45.7 |
| 광주 | 3 | 3 | 6 | - | - | - | 1 | 4 | 29 | 4 | 7 | 35 |
| 대전 | - | - | - | 2 | 5 | 3 | - | - | - | 2 | 5 | 3 |
| 울산 | 2 | 28 | 168 | - | - | - | 1 | 1 | 2 | 3 | 29 | 170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 5 | 6 | 15 | 3 | 4 | 30 | - | - | - | 8 | 10 | 45 |
| 강원 | 5 | 115 | 151 | - | - | - | - | - | - | 5 | 115 | 151 |
| 충북 | 3 | 24 | 61 | - | - | - | - | - | - | 3 | 24 | 61 |
| 충남 | 12 | 115 | 221.5 | - | - | - | - | - | - | 12 | 115 | 221.5 |
| 전북 | 1 | 22 | 80.4 | - | - | - | 1 | 7 | 56 | 2 | 29 | 136.4 |
| 전남 | 21 | 55 | 42 | - | - | - | - | - | - | 21 | 55 | 42 |
| 경북 | 4 | 9 | 10 | 4 | 14 | 16 | - | - | - | 8 | 23 | 26 |
| 경남 | 7 | 1 | 2 | 1 | 7 | 35 | 1 | 1 | 2 | 9 | 9 | 39 |
| 제주 | 6 | 6 | 75 | - | - | - | - | - | - | 6 | 6 | 75 |
| 계 | 160 | 516 | 1,141.7 | 13 | 38 | 89.5 | 5 | 14 | 91 | 178 | 568 | 1,322.2 |

□ 향후 과제

-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및 확대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관련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계의 연구·개선, 특수교육 교원의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 현황 및 추진실적

- ‘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력검사 개정(KNISE-BAAT II, 1/2년)’은 개발된 지 10년 경과로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워 읽기, 쓰기, 수학 소검사 3종에 대한 전면 개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졸업 후의 생활상태 조사도구 시안 개발 연구’는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서비스 종료 후 생활상태 중 진학 부문, 취업 부문, 주거 부문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특수교육 중단연구(패널관리)’는 특수교육 실태조사 교육성과 부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중단 연구 반복 참여를 위한 패널의 유지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특수교육 정책연구는 장애 유형·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교 시설·설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 시설·설비 안전기준 지침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의 수화능력 신정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역량 강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화능력 인증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6월,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세미나를 계획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으로 2학기로 연기하여 운영할 계획임
- 2015년 7월, 특수교육 교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고취 및 우수 논문 발굴 공개를 위해 「특수교육연구」 제22권 1호를 발간하여 특수교육 관련 연구기관 등 560개 기관에 배부함
- 2015년 3월과 6월, 특수교육 현장 사례 및 정책 홍보를 통한 통합교육 여건 조성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특수교육 제22권 1호, 2호」를 발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유·초·중·고 특수학급 등 9,500개 기관에 배부함

<표 3·77>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예산 |
|-------------------|--|-----|
| 특수교육 실태조사 후속조치 | - 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력검사 개정(1/2년) - 장애학생 졸업 후의 생활상태 조사도구 시안 개발 - 특수교육 종단연구 패널 관리 | 710 |
| 특수교육 정책연구 | - 특수학교 시설·설비 안전기준 지침 마련 -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화능력 인증 방안 연구 | 33 |
| 특수교육 학술교류 및 홍보 | - 제22회 국내세미나 및 국제세미나 - 장애학생 안전교육 세미나 -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 현장특수교육 제22권 발간 (연4회) - 특수교육연구 제22권 발간 (연2회) - 국립특수교육원 홍보 사업 | 172 |
| 기타 | -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협의회 운영 - 2015년 특수교육통계 및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17 |
| 계 | 연구 5건, 사업 7건, 행사 2건 | 932 |

□ 향후 과제

-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공표에 따른 개선과제의 2016년 국가통계 발전 기본 계획 반영 및 점검
- 특수학교 시설·설비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장애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메뉴얼 개발
-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의 수화능력 인증방안 마련을 위한 청각장애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포커스 그룹 면담 등을 통해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수화 인증 방안 마련
- 국제세미나 등 국제 협력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한 특수교육 관련 정보 및 연구 동향 등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
- 특수학교(급) 담당교사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안전교육 세미나 개최를 통한 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현장특수교육 제22권 3호, 4호」 및 「특수교육 연구 제22권 2호」 발간을 통하여 특수교육 현장에 최신 특수교육 정보 제공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현황 및 추진실적

- 국가·사회적 요구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 연구진 협의회 11회, 전문가 포커스그룹 면담 및 특수교육계의 현장의견 수렴, 국가수준의 교과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하는 각종 개발을 수행하고자 19개 교과 정책연구 공모 실시, 각종 연구책임자 협의회 3회 및 전체 연구진 워크숍 2회 실시, 19개 교과군별 연구진 협의회 7회 실시함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하는 교과용도서 개발(74책 30종)을 위해 전국 특수학교(급)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요구조사(기간 : 2015. 4. 8. ~4. 24, 응답인원 : 초등부(453명), 중등부(249명), 고등부(231명))를 실시하였고, 교과용도서 내·외적 체제 분석,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협의 및 편찬준거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2회 실시함
 -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초등학교 국어과 보조교과서 개발(학생용 4책, 교사용 매뉴얼 2책, DVD 6종)을 위해 편찬기관 선정, 심의회 구성 및 집필세목 심의 실시함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개발 기초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13)를 기반으로 국가 수준 교과 교육과정의 수행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하여 6개 생활기능 중 ‘자립생활’ 영역 총 4종(신변자립 I, 신변자립 II, 안전과 건강, 자기결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해 개발기관 선정, 심의회 구성 및 집필세목 심의 실시함
- ※ 연차개발 : ('14)의사소통→('15)자립생활→('16)탐구→('17)신체활동→('18)여가·진로활동
- 교육과정적 통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초등학교 3~4학년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8종)에 이어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교과의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8종과 DVD 8종 개발을 위해 편찬기관 선정, 심의회 구성 및 집필세목 심의 실시함

- 시각장애학생에게 우수한 품질의 점자 교과서를 적기 공급하기 위해 점자 교과서 품질관리위원회 실시, 점자 교과서 제작 단가 산정 연구 및 업무 추진, 시·도 교육청별 점자 교과서 발행·공급 지원 업무 위탁 여부 조사 및 현황 조사 실시함
- 특수교육 나이스 기능 개선 및 추가 개발 사항 질 관리를 위한 연수 실시, 현장 안정화 지원, 완료 보고 및 나이스 기능 개선에 따른 특수학교(급)의 개별화 교육계획 현장 점검 실시(8개 시도),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및 현장 배부함
- 각급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관리 점검 및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8개 시·도의 특수학교(급) 방문함

<표 3·78>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사업내용 | 예산 |
|----------|--|-------|
| 교육과정 개정 |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2종) | 400 |
| |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4종) | 75 |
| 교과용도서 | - 기본 및 공통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개발(1/4) | 1,805 |
| | - 특수교육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개발(1/2) | 621 |
| 교수·학습 자료 | - 청각장애학생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국어과 보조교과서 개발(4종) | 255 |
| | - 중도·중복장애학생 자립생활 교수·학습 자료 개발(4종) | 300 |
| | - 초등학교 5~6학년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8종) | 379 |
| 현장지원 | - 점자 교과서 발행·공급 지원 업무 (점자 교과서 제작 단가 산정 연구 1종) | 0 |
| | - 특수교육 나이스 프로그램 기능 개선 사업 | 0 |
| | - 개별화교육지원팀 지원 업무 | 0 |
| 계 | - 연구 7종, 교과용도서 74책 30종, 자료개발 16종 | 3,835 |

□ 향후 과제

- 2015년 8월~12월,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연구자 협의회 및 총론 시안 작성, 각론 교과군별 협의회 및 시안 작성, 현장적합성 검토 및 공청회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추진(총론 교육부 9월 고시, 각론 11월 고시 예정) 이후 연구보고서 작성 완료 및 보급을 통해 특수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역량 강화
- 2015년 8월~12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편찬 기관 선정, 계약 체결 및 1차 편찬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 선정, 연구·집필진 및 심의위원 대상 교과용도서 개발 방향 및 집필·심의 기준 워크숍 개최, 집필세목 실시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고 교육현장의 적합성을 제고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 2015년 8월~12월, 청각장애학생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국어과 보조 교과서에 대한 심의 3회 실시, 현장적합성 검토 및 외부 전문가 검토, 감수를 바탕으로 총 3종(읽기, 문법, 문학)을 개발 완료하여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보조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공통 교육과정 접근을 쉽게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학업성취도 향상 도모
- 2015년 8월~12월, 중도·중복장애학생 자립생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심의 3회 실시, 현장적합성 검토 및 외부 전문가 검토, 감수를 바탕으로 총 4종을 개발 완료하여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의 수행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교수·학습 지원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2015년 8월~12월, 초등학교 5~6학년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8책(국어, 사회, 수학, 과학) 및 DVD 8종 개발에 대한 심의 3회 실시, 현장적합성 검토 및 외부 전문가 검토, 감수를 바탕으로 개발 완료하여 통합학급에서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일반교사의 교육과정적 통합 지원을 통한 교과 수업 참여 증진 및 학업성취도 향상
- 2015년 8월~12월, 점자 교과서 발행·공급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실시, 점자 교과서 발행·공급 기관 선정, 2016학년도 점자 교과서 품질관리 위원회 구성, 점자 교과서 제작으로 우수한 품질의 점자 교과서 적기 공급

- 2015년 8월~12월, 특수교육 나이스 프로그램 기능 개선을 위해 서울 외 8개 시·도 나이스 기능 개선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현장 점검 및 요구 사항을 통해 개별화 운영 나이스 구축에 대한 질 관리 및 현장의 안정적으로 정착화 시키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각급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내실화를 위한 9개 시도의 현장의견 수렴하여 개별화교육의 내실화 강화

3)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학교(급) 교원, 일반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경찰위원 등을 대상으로 집합연수 25개 과정 1,597명, 원격교육연수 48개 과정, 15,644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운영하고 있음
- 2015년 8월말 현재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집합연수 7개 과정에 566명, ‘장애 학생 이해와 통합학급 운영’,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등 원격연수 20개 과정에 9,125명이 참여하여 수료함

<표 3·79>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단위 : 명)

| 구 분 | 과 정 명 | 이수 인원 | 기간 | 대 상 |
|-------|----------------------------------|-------|-----|-----------------------|
| 자격 연수 | 특수학교(유치원) 1급 정교사 과정 | 49 | 15일 | 특수학교(유치원) 1명 자격연수 대상자 |
| | 특수학교(초등) 1급 정교사 과정 | 100 | 15일 | 특수학교(초등) 1명 자격연수 대상자 |
| 직무 연수 | 유치원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장학 및 지원 | 46 | 3일 | 유치원 원장(감), 교육전문직 |
| | 초등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장학 및 지원 | 88 | 3일 | 초등학교 교장(감), 교육전문직 |
| | 교육정책 고위관리자 | 29 | 2일 | 시·도 교육연수원장 및 교육장 |
| 전문 교육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경찰위원 장애이해 과정 1기 | 119 | 2일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경찰위원 |
|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경찰위원 장애이해 과정 2기 | 135 | 2일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경찰위원 |
| 계 | | 566 | - | - |

<표 3·80>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단위 : 명)

| 구분 | 과 정 명 | 이수인원 | 기간 | 대 상 |
|-------------------------|----------------------------|-------|----|--------------------|
| 교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국어과 교수-학습 지도 | 130 | 3주 | 교원 및 교육전문직 |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학과 교수-학습 지도 | 97 | 3주 | |
| | 장애학생 이해와 통합학급 운영1,2 | 184 | 6주 | |
| | 장애학생 이해와 통합학급 운영1,2(특별과정) | 5,859 | 6주 | 해당 시·도 교육청 통합학급 교사 |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과 교수-학습 지도 | 75 | 3주 | 교원 및 교육전문직 |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과학과 교수-학습 지도 | 50 | 3주 | |
| | 치료교육 표시과목 변경 직무연수 | 6 | 4주 | 치료교육 표시과목 미변경자 |
| | 장애학생 이해와 통합학급 운영 | 95 | 4주 | 교원 및 교육전문직 |
| |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신규) | 168 | 4주 |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관련법규의 이해 | 115 | 3주 | |
| 특수교육관련 검사도구의 사용법 | 128 | 3주 | | |
| 특수교육교원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연수 | 53 | 3주 | | |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30시간) | 129 | 3주 | | |
| 특수교육 보조인력 |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기초과정 | 630 | 3주 | 특수교육보조인력 및 관련인력 |
| |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심화과정 | 680 | 3주 | |
| 학부모 | 학부모가 알아야 할 특수교육개론 | 84 | 3주 | 학부모 및 관련인력 등 |
| 기타 | 수화기초과정 | 173 | 2주 |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
| | 시각장애학생 보행훈련 | 163 | 2주 | |
| | 장애학생의 인권과 성교육 | 165 | 2주 | |
| |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지원능력 개발 | 141 | 2주 | |
| 계 | | 9,125 | - | - |

□ 향후 과제

- 통합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일반교과교육 연수의 지속적 추진
- 통합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개설 및 지속적 추진
-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행동지원, 교육지원/교육과정 수정, 개별화교육, 진단·평가 등) 및 장애유형별 지도 연수의 지속적 추진
- 시·도 교육청의 환경변화에 따른 연수운영의 효율성 강화, 시·도에 대한 연수 정보 제공 확대 및 현장수요에 따른 다양한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지원을 위해 콘텐츠 개발 등 2건의 연구·자료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15년 3월 18일(수)에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특수학교(급)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를 위해 전국 상설모니터단 담당자 246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교육 지도 역량 강화 세미나를 실시하였음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성폭력·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국 190개 상설모니터단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기점검표 제작·보급 및 17개 시·도교육청 상설모니터단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 유관기관과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공동 주최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있음

<표 3·81>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예 산 |
|------------------|--|-----|
| 인권보호 관련 연구·자료 개발 | - 특수학교(급)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연구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유·초등용) | 109 |
| 현장지원 사업 | - 장애학생 인권교육 지도 역량 강화 세미나 - 상설모니터단 운영 지원 - 장애인식개선 및 통합교육 관련 사업 | 6 |
| 계 | 연구·자료 개발 2건, 현장지원 사업 3건 | 115 |

□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자료 개발
-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및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 상설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자 연수 및 상설모니터단의 지속적인 학교 점검 및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 사례 발굴·보급 확대

5)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3종), 장애학생 진로캠프 및 직무훈련(2건), 직무연수(4개 과정), JOBable(장애학생 진로·직업정보시스템) 운영,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등 총15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15년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공동으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창업 지원 확대 워크숍’을 개최하여, 진로·직업교육 유관 기관 사업 안내, 분과별 협의회를 통한 사업 추진 방안 협의, 학교기업 생산품 전시 및 진로·진학 정보 제공 등 현장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시·도교육청 전문직 및 특수교사, 유관기관 담당자 등 총 318명이 참석하였음
- 2015년 6월, ‘초등 특수학급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모형 연구’와 관련하여 초등 특수교사 416명, 일반교사 631명, 학부모 4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2015년 1월~7월, ‘장애학생 직업훈련 실습교구(사서보조)’를 개발하기 위해 교구 개발 구성안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1차 시안을 제작하여 교육현장에서 사서보조 직무훈련과 연계하여 현장 적합성 검토를 실시함
- 2015년 7월, 장애학생 학부모의 자녀 진로·직업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대구지역 학부모 30명에게 ‘장애학생

- 학부모 진로·직업교육 과정’ 연수를 제공하였고, 특수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특수학교(급) 담당교사 직업실기 과정’ 직무연수를 운영하여 스마트앱 개발 및 귀금속 보석공예에 대한 직무능력을 함양함
- 2015년 1월~7월,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간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효과적인 진로·직업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창업 진흥원 등 유관기관 협의회 17회,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협의회 7회, 교육부와의 업무 협의회 2회 등 총 26회의 협의회를 개최함
- 2015년 4월~6월, ‘특수학교 학교기업 연계 직무훈련’을 위해 공모를 통해 5개 학교기업을 선정하고, 직무훈련 참가 교사 53명을 모집함
- 2015년 1월~7월, ‘JOBable(장애학생 진로·직업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운영위원 4명, 자유기교 인력 29명을 선정하고,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

<표 3·82>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예산 |
|-------------------|---|-----|
| 연구 및 콘텐츠 개발 | - 초등 특수학급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모형 개발 - 장애학생 직업훈련 실습교구(사서보조) 개발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용 콘텐츠 개발 | 250 |
| 장애학생 진로 캠프 및 직무훈련 | - 2015년 장애학생 진로캠프(청각장애) - 특수학교 학교기업 연계 직무훈련 | 60 |
| 직무 연수 | - 특수학교(급) 담당교사 직업실기 과정 - 중등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 과정 - 초등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 과정 - 장애학생 학부모 진로·직업교육 과정 | 32 |
| 정보 시스템 운영 | - JOBable(장애학생 진로·직업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23 |
| 진로·직업교육 현장지원 | - 제2회 전국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 교수·학습 자료 공모전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세미나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창업 지원 확대 워크숍 - 학교기업 및 거점학교 담당자 워크숍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협의회 운영 | 48 |
| 계 | 연구·개발 3종, 캠프 및 직무훈련 2건, 직무연수 4개 과정, 시스템 운영 1건, 현장지원 사업 5건 | 413 |

□ 향후 과제

- 2015년 8월, ‘중등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 과정’ 및 ‘초등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 과정’의 직무연수를 통해 전국 80여명의 특수교사들에게 진로·직업교육 관련 최신의 정보 및 교육 방법, 직업실기 등의 연수 운영
- 2015년 8월,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전공과 담당교사 88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및 취업·창업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해 ‘특수학교 학교기업·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창업교육의 실천적 방안 모색
- 2015년 9월, 장애학생 학부모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가족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상남도교육청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90여명의 학부모들에게 ‘장애학생 학부모 진로·직업교육 과정’ 연수 운영
- 2015년 8~11월, ‘장애학생 직업훈련 실습교구(사서보조) 개발’을 통해 전국 100곳의 특수학교(급)에 교구 보급 및 활용 안내·홍보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2015년 8~11월,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사서보조, 바리스타, 금융기관 이용에 대한 모바일 기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용 콘텐츠’ 3종을 개발하여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
- 2015년 8~11월, 장애학생의 직무능력 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함양을 목적으로 전국 100명의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총 2차에 걸쳐 ‘장애학생 진로캠프’를 개최하여 체험 및 현장 중심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강화
- 2015년 8~11월, 특수학교 학교기업 5개 기관과 연계하여 인근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자료집 제작 및 배부를 통해 학교기업의 우수 직무를 확산하여 통합된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도모
- 2015년 8~11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장지원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사 및 학부모 150여명에게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학생의 자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직업교육 공동체의 지원역량을 강화

- 2015년 8월~12월, ‘JOBable(장애학생 진로·직업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 2015년 8월~12월, ‘제2회 전국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모전’의 입선작을 선정하여 ‘2015 비즈쿨 페스티벌(11월, 창업진흥원 주관)’ 전시를 통하여 우수 교수·학습자료를 적극 홍보하고 일반화 도모

6) 교육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보장 및 정보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콘텐츠 개발, 정보화 대회, 웹 접근성 평가 등 장애학생e러닝 지원 사업 9건과 행사 1건을 추진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사이트는 총 3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운영 결과 이용자 만족도 79점(목표 79점)과 접속횟수 930,000회(목표 800,000회)로 목표 초과 달성

<표 3·83>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 사이트 명 | 지원 내용 | 주 이용자 |
|------------------------|--|-----------------------|
| 에듀에이블 (eduable.net) | <에듀에이블>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지원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수학습 자료 - 사진 및 이미지, 시·도교육청 우수 수업자료 <교수·학습센터(TLC)> · 디지털북 및 수업 자료 제공 · 디지털북 저작도구 및 수업 콘텐츠 탑재 | 학생, 학부모, 교원 등 |
| 이압 (blind.knise.kr) | · 교과서, 참고서 점역 및 디지털 파일 탑재 · EBS 수능 교재 점역 파일 및 동영상 강의 |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 등 |
| 장애이해 (edu.knise.kr) | ·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탑재, 관련 정보제공 - 대한민국 1교시, UCC 탑재 및 홍보 |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인 등 |

-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콘텐츠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언제 어디서나 장애학생에게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기반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디지털북 콘텐츠 8종, 프로그램 1종 등 총 9종을 개발 중에 있으며 장애학생 교수·학습센터(tlc.knise.kr)를 통해 지원 예정임

-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활용 능력 신장을 위해 특수학교(급) 학생정보경진대회, 장애학생e스포츠대회, 특수교육 정보화 컨퍼런스, 특수교육 산업홍보전, 문화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2015. 9. 8(화)~9. 9(수)까지 약 1,500명의 학생, 교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개최 예정임
- 특수학교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은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신규 설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사용자 및 전문가 평가, 담당자 대상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임
- 특수교육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 전문가(외부)로 구성된 심의위원의 자문을 통해 정보화 사업 추진의 적합성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 전국 장애이해 사진 및 UCC 공모전은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전국 교원 및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진과 UCC를 공모·포상하며, 수상작은 국립특수교육원 운영 사이트, 제작 앱, 발간물 등에 활용하고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와 딱섬전망문화콤플렉스를 통해 홍보
- 시각장애학생과 교사를 위한 대체자료 개발 및 보급은 '15년 12월까지 디지털도서, 점자도서, 확대도서 등 약 300책의 대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시각장애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지원하고자 EBS 방송교재 160책과 전년도 기출 문제를 점역하여 시각장애학생 지원 사이트(blind.knise.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 민·관 협력 사업으로, 특수학교 2개교에 장애학생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여가문화체험관 개설(넷마블게임즈(주) 지원), 장애학생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경기도 관내 초등 특수학급에 언어혼련 프로그램 146개 보급(LG 복지재단 지원), 특수학교 학생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급) 배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강사 배치(한국정보화진흥원 지원) 등 추진

<표 3·84>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예산 |
|--------------|---|-------|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 특수교육기관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컨설팅 -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 대회 - 특수교육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 580 |
| 시·청각 장애학생 지원 | - 시각장애학생 및 교사를 위한 대체자료 개발 -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EBS 방송교재 집역 지원 | 422 |
| 기타 | - 장애이해 사진 및 UCC 공모전 - 학술정보관 운영 - 전산실 운영 | 290 |
| 유관기관 협업 | - 장애학생 방문 정보화교육 강사 지원(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학생 e클래스 여가문화체험관 구축(넷마블게임즈(주)) - 장애학생 언어훈련 프로그램 보급(LG복지재단) | - |
| 계 | | 1,292 |

□ 향후 과제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에 대한 웹접근성 지침 준수와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한 사이트 고도화 추진
-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에 일반학교 재학생인 시각·청각장애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확대 방안 마련 및 예산 증액 필요
-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에 장애인식개선 및 통합교육 확대를 위해 일반학교 학생 등의 참가 확대 방안 모색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및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학습보조도구 및 보조공학기기 등 보조공학 관련 기초·정책 연구 필요

7)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장애성인 평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3개의 연구와 3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 심층분석’은 2014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7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전년도 본 평가를 받은 대학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음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컨설팅단 구성·운영’은 2014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의 후속조치로서, 전국의 개선요망 대학 및 평가불참 대학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집합컨설팅을 실시하였음
-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지원 및 생활 지원 가이드북 개발’은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로서, 지난 7월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업무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음
-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준비과정 분석’은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로서, 2015년 7월 현재, 전국의 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의 문항을 구성하였음
- ‘장애학생 고등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은 장애학생 고등교육과 관련된 국가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비정기적 회의로서, 교육부,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과 협력하여 2015년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 발생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 ‘장애성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은 장애성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가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비정기적 회의로서,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협력하여 2015년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 발생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표 3·85>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 고등·평생교육팀 연구 및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예산 |
|-------------------------|--|-----|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후속조치 |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 심층분석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컨설팅단 구성·운영 | 100 |
|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연구 | -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지원 및 생활 지원 가이드북 개발 -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과정 분석 | 50 |
| 유관기관 협력 | - 장애학생 고등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 장애성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 - |
| 계 | 연구 3종, 사업 3건 | 150 |

□ 향후 과제

- 2015년 9월~11월, 개선요망 대학의 신청을 받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컨설턴트를 파견하는 개별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건 개선 유도
- 2015년 12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결과 심층분석’,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지원 및 생활 지원 가이드북 개발’,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 과정 분석’ 연구를 종료하고 연구보고서 보급

부 록 I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117
- 부산광역시교육청 / 128
- 대구광역시교육청 / 138
- 인천광역시교육청 / 148
- 광주광역시교육청 / 158
- 대전광역시교육청 / 170
- 울산광역시교육청 / 18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194
- 경기도교육청 / 205
- 강원도교육청 / 218
- 충청북도교육청 / 229
- 충청남도교육청 / 240
- 전라북도교육청 / 251
- 전라남도교육청 / 260
- 경상북도교육청 / 271
- 경상남도교육청 / 28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292

서울특별시교육청

I. 2015년도 서울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2015년도 서울 특수교육 추진 방향

- 가. 장애학생 책임교육을 통한 특수교육 역량 강화
- 나.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 다. 더불어 함께하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 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2. 중점 추진 과제

- 가.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 나. 현장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확대
- 다. 통합교육 내실화 및 장애학생 인권신장
- 라. 능동적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역량 제고

3. 중점 과제별 추진 계획

- 가.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 1) 유·초·중·고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 운영
 - 2) 장애영아 조기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교실 운영
 - 나) 장애영아 치료지원비 지원(군센카드 지급)
 - 3)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철저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편성·운영 지침 개발·보급 및 학교급별 교육과정 반영
 - 나) 장애학생 예술 체육 교육 활동 지원
 - 다)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지원
 - 4) 치료지원 질 제고
 - 가) 자체 계획에 따라 치료지원 기관 수시 지도
 - 나) 치료지원 비용 군센 카드로 지급

- 5)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운영 강화
 - 가) 병원학교 운영지원
 - 나) 화상강의시스템(꽃맛무지개학교) 운영
- 나.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 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실시
 - 3) 특수교육대상자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설 및 기기 확충 지원
 - 4)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 가) 특수학교(급)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 스포츠 강사 배치 및 지원
 - 나) 체육관련 행사 실시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5)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전문화·특성화 신장
 - 가) 시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나) 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다)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지원 중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6)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가)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 나) 사회복지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활용
 - 다)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7) 특수학교(급) 종일반·방과후학교·토요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 나)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다) 토요프로그램 운영
- 다. 통합교육 내실화 및 장애학생 인권신장
 - 1) 통합교육활성화 지원
 - 가) 통합교육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한 통합교육중점학교 운영
 - 나)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교육력 제고 연구팀제 운영
 - 다) 장애학생 문제행동 경감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
 -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 나)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다) 장애학생 자기결정능력 신장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3) 장애이해교육 강화

- 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순회음악회 공연 : 25개교
- 나) 일반교과시간의 장애이해교육자료 제작·배포 및 활용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운영 내실화

라.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추구
 - 가)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나)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교사 대상 진로·직업교육 연수 실시
 - 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취업 지원
 - 라) 장애학생 직능별 진로직업거점학교 운영
 - 마)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바) 특수교육대상자 직업위탁교육 실시
- 2)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 가)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정보 및 수험편의 제공 강화
 - 나)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제고

가. 특수학급 신·증설 현황

| 구분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합계 | |
|--------|-----|-----|------|-----|-----|-----|------|-----|-----|-------|
| | 학교수 | 학급수 | 학교수 | 학급수 | 학교수 | 학급수 | 학교수 | 학급수 | 학교수 | 학급수 |
| 2014 | 48 | 48 | 410 | 678 | 197 | 287 | 84 | 236 | 739 | 1,249 |
| 2015 | 53 | 54 | 410 | 667 | 200 | 291 | 84 | 244 | 747 | 1,256 |
| 전년대비증감 | 5 | 6 | · | -11 | 3 | 4 | · | 8 | 8 | 7 |

나. 장애영아 조기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실 운영 등 장애 영아교육 지원 확대

| 년도 | 청명 | 동부 | 서부 | 남부 | 북부 | 중부 | 강동 | 강서 | 강남 | 동작 | 성동 | 성북 | 합계 |
|------|-----|----|----|----|----|----|----|----|----|-----|----|----|-----|
| 2014 | 학생수 | 22 | 11 | 26 | 21 | 9 | 50 | 26 | 29 | 38 | 17 | 18 | 267 |
| 2015 | 학생수 | 30 | 42 | 22 | 24 | 8 | 59 | 30 | 29 | 25 | 19 | 17 | 305 |
| 증감 | 학생수 | 12 | 31 | -4 | 3 | -1 | 9 | 4 | · | -13 | 2 | -1 | 38 |

2)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에 대한 치료지원비 지원(군센카드 지급)

다.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철저

- 1) 서울특별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총론) 개발 및 보급
- 2) 장애학생 예술·체육 교육활동 지원
 - 가) 음악 순회 강사 지원 : 중·고등학교 21개교 운영
 - 나) 체육 순회 강사 지원 : 중·고등학교 20개교 운영
 - 다) 향후 계획 : 2016학년도 80개 학교 지원 예정
- 3) 특수학교(급) 컨설팅장학 실시
 - 가) 특수학교 29교 연중 1회 이상 실시
 - 나) 특수학급 설치교 중 신청학교
 - 다) 신청 영역

| 영역 | 하위 영역 |
|-------------|--|
| 교수학습 | o 특수학급, 통합학급 교과별 수업 지원 |
| 생활지도 | o 통합학급 생활지도 o 특수학급 생활지도 o 부적응행동 등 |
| 교육과정 | o 교육과정 : 초등 교육과정, 중등 교육과정 수정, 특수학급 교육과정 o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
| 통합교육지원 학교경영 | o 학교 경영 : 통합교육 계획 수립 o 지역 사회 : 지역사회 연계 교육 o 방과후학교 :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o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방법 o 현장체험활동 및 진로직업교육활동 |

라.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운영 강화

- 1) 병원학교 설치 운영 지원: 10개 병원학교 755명
- 2) 화상강의시스템(꼴맞무지개학교) 운영
 - 가) 꼴맞 무지개 학교 운영 : 53학급 769명
 - 나) 4개 시·도교육청 위탁 운영(대전, 경기, 강원, 충북)

2.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가.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음악·체육 순회교사 지원

- 1) 정규 교육과정 중 음악·체육 전문강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수업 실시

- 2) 지원학교 : 41교(특수학급 설치 중·고등학교 41교)
- 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 1) 특수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 강사 배치
 - 스포츠강사(13교), 토요일스포츠강사(13교) 배치
 - 2)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체육행사 실시 : 장애학생 체육대회 실시(5월)
- 다. 교육지원청별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및 영아교육 지원
 - 1)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순회특수교사 43명 배치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영아교육) 담당 강사 28명 배치
 - 3) 특수학급 미설치교(유·초·중·고) 순회교육 239명 지원, 장애영아교육 305명 지원
- 라.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지원
 - 1) 지원방법 : 보조공학센터 적합성 검토 및 보조공학기기 선정협의회
 - 2) 지원기기 : 청각장애 FM송수신기, 저시력 확대기기, 지체장애 이동기기 등
 - 3) 지원학생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183명
- 마.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확대 배치
 - 1) 특수교육실무사
 - 2011년 925명→2012년 957명→2013년 974명→2014년 992명→2015년 992명
 - 2) 장애학생지원 사회복지요원 530여명 배치
 - 3) 특수교육실무사 및 사회복지요원 원격직무연수(30시간) 및 집합연수(연2회) 실시
- 바.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전문화·특성화 신장
 - 1) 시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중부·강남)
 - 가) 시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지원
 - (1) 일반학교 배치 시각장애학생 지도교사 간담회 및 연수 : 1회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시각장애 지원 담당자 연수 : 1회
 - (3) 시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 및 시각장애 정보지 제작 배포
 - (4) 시각장애학생 학습지원 도구 타이포스코프 제작 배부
 - 나)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교실' 운영
 - (1) 학교로 찾아가는 교사 협의회 : 6교
 - (2)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상담 : 7교
 - (3)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상담 : 10교

- 다) 시각장애이해교육 실시
 - (1) 찾아가는 '배리어-프리' 영화 체험 : 17교 2,399명
 - (2) 어둠속의 대화 관람 : 일반교사, 특수교사 143명
 - (3) 통합학급 및 교직원 대상 시각장애 이해교육 실시 : 6교 130명
- 라) 시각장애학생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 (1) 클레이애니메이션 제작 동아리 운영 : 시각장애 중·고생 5명
 - (2) 학교로 찾아가는 예체능 프로그램 지원 : 5명
- 2) 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동작관악·성북)
 - 가)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지원
 - (1)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청각장애 컨설팅 실시 : 62교
 - (2) 교육지원청 단위 청각장애 컨설팅 실시 : 3개 교육지원청
 - (3) 통합학급교사를 위한 청각장애이해 안내서 제작·배포
 - (4)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담당자 워크숍 실시(연 1회)
 - 나) 청각장애학생 및 학부모 정체성 찾기 지원
 - (1) 어머니 수화 합창단 운영(연중)
 - (2) 청각장애인 멘토 강연회 개최(총 6회)
 - (3) 청각장애학생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운영(방학중)
 - (4) 청각장애학생 진로체험프로그램(메이크업아티스트, 사진작가) 운영(주1회, 토요일)
 - (5) 진로탐방 프로그램 운영 : 나사렛대학교 방문(입학 설명회, 청각장애대학생 선배와의 대화)
 - (6) 청각장애학생 가족 대상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연 2회)
- 다) 비장애인 대상 청각장애 인식개선 지원
 - (1) 비장애학생 수화 동아리 운영 지원(연중)
 - (2) 통합학급학생 대상 사랑 나눔 수화교실(45학급)
 - (3) 일반교원 대상 수화 직무연수 실시(방학중, 30시간, 2회)
- 3)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지원 중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반 지역사회연계 취업·창업교육 지원
 - 나) 운영센터 : 동부, 남부, 북부, 강동송파, 강서, 성동광진
- 4)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특수교육복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특수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나) 부모상담, 가족지원, 영아가족 기능강화, 진로 및 전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 다) 운영센터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동송파, 강서, 성동광진
- 5) 학부모의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및 감정코칭 연수 실시 (170명, 4회기~8회기 지원)
- 6) 장애학생 참여 문화예술활동 지원 센터 운영
 - 가) 장애학생 참여 문화예술활동 및 우수 예술동아리 등 발굴·지원
 - 나) 운영센터 : 동부, 서부, 성동광진

3. 통합교육 내실화 및 장애학생 인권신장

가. 통합교육 내실화 지원

- 1) 통합교육중점학교
 - 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통합교육 질 제고
 - 나) 통합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한 학교를 위한 맞춤형 지원
 - 다)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일반화
 - 라) 추진 실적 : 8교 65,000,000원 지원(초등-5교, 중학-3교)
- 2) 학교교육력(통합교육) 제고 연구교원(팀) 운영
 - 가)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학교교육력 제고 연구활동을 통한 통합교육 활성화
 - 나)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협력수업 및 보편적 학습 설계 모형 구안
 - 다) 추진 실적 : 2팀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장학 실시 (유치-1팀, 초등-1팀)
- 3) 통합교육컨설팅단 운영
 - 가)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활동 지원
 - 나) 통합교육중점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 16회 지원
 - 다) 학교교육력(통합교육) 제고 연구교원 컨설팅 지원 : 2회 지원
- 4) 특수교육대상학생 문제행동 경감을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단 운영
 - 가) 보편적·개별적 지원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긍정적인 학교 문화 도모
 - 나) 구성 : 교수, 교사, 사회복지사, 문제행동·의사소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특수학교 지원 1단, 일반학교 지원 3단, 전문가 지원 1단 등 총 5단 구성·운영

- 다) 장애인복지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단 운영
- 라) 학교 단위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특수학교 5교, 일반학교 개별지원 12교
- 5)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 중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나. 장애학생 인권신장 강화
 - 1) 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운영
 - 가) 정기 및 특별모니터링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107교, 7.1. 현재)
 - 나) 일반학생 대상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연 2회 실시
 - 2) 장애학생 안전지원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 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활용한 성교육 및 상담활동 강화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가.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1) 학교별 운영 현황

| 학교명 | 경북교 | 상암교 | 문현교 | 경기교 | 서울문화교 |
|-----|------|---------------|--------------|------|-------|
| 직종 | 바리스타 | 제과, 바리스타, 빨래방 | OA, 바리스타, 제과 | 바리스타 | 바리스타 |

- 2) 운영내용 : 현장실습장 개발, 인근학교 학생 직업 훈련
- 3) 예산지원 : 급당 45,160천원 ~ 60,160천원 지원

나. 장애학생 위탁교육기관운영(한국제과학교)

- 1) 현황 : 제과제빵 위탁 직업 훈련
- 2) 예산지원 : 23,000천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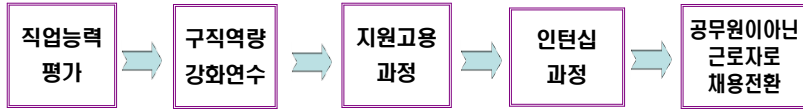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한빛맹학교)

- 1) 현황 : 효정안마원 운영
- 2) 예산지원 : 28,000천원 지원

라.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지원 중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5센터)

- 1) 운영센터 : 동부, 남부, 중부, 강동, 성동
- 2) 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반 지역사회연계 취업·창업교육 지원
- 3) 예산지원 : 1센터당 10,000천원 지원

- 바.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1) 대상 : 특수학교(급) 고3·전공과 대상
 2) 희망일자리 추진 절차



- 가) 직업능력평가
 나) 구직역량강화 연수
 (1) 운영기간 : 3일
 (2) 대상 : 직업능력평가 기준 통과 학생
 다) 지원고용 프로그램(공단 지원고용 프로그램 적용)
 (1) 실시장소 :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교 및 도서관, 특수교육지원센터
 (2) 운영기간 : 3주(주5일 1일 4시간 기준)
 (3) 대상 : 취업준비 프로그램 평가 통과 학생
 (4) 실시직종 : 기사보조, 사무행정보조, 급식보조, 사서보조 등
 라) 인턴십 프로그램(서울시교육청 자체 프로그램 적용)
 (1) 실시장소 :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교 및 도서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2) 운영기간 : 2개월(주5일 1일4시간 기준)
 (3) 대상 : 지원고용 프로그램 평가 통과 학생
 (4) 실시직종 : 기사보조, 사무행정보조, 급식보조, 사서보조 등
 3) 고용전환 실시 : 1년간의 훈련을 마친 학생들 대상 일반 고용전환

Ⅲ.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 교육기회 확대
 -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 1) 특수학교 과밀, 원거리 통학 해소,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 2)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용 계획에 따른 특수학급 신·증설 이관 추진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예술계, 과학계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별전형 시행
2.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 가. 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추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 운영, 직업평가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장애학생 진로직업 거점학교 확대 운영
 - 노인요양사, 컴퓨터 자격 인력 양성 거점학교 등
 다.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 지속적 추진
 - 1) 특수학교(급) 고3·전공과 학생 대상 직무훈련 과정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실시
 - 2) 장애학생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업무 협력 확대
3. 현장중심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
 - 가. 특수교육 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 특수학교(급) 컨설팅 지속 실시
 - 나. 전문강사 지원을 통한 중·고 특수학급 음악·체육교육 활성화
 - 1) 특수체육·음악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전문강사 확대
 - 2) 특수교사·전문강사의 협력수업을 통한 음악·체육 교육 내실화
 다. 장애학생 문제행동 경감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
 - 1)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한 학교문화 개선 : 5개 특수학교 운영
 - 2)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한 문제행동 개선 : 12교 일반학교 개별학생지원
 라. 통합교육중점학교 발표회 및 일반화
4.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수교육 질 제고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전문화·특성화 신장
 - 1) 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
 - 가) 통합교육을 지원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 나) 장애·비장애 학생 수화 동아리 운영
 다)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수화연수 실시
 라) 청각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실시
 마) 청각장애학생 및 학부모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지원
 - 2) 시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

부산광역시교육청

- 가)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교실’ 운영
- 나) 일반학교 통합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예체능 프로그램 지원
- 다) 시각장애 이해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가) 진로직업교육 협의체 구성
 - 나) 특수교육 기반 지역사회 연계 취업·창업교육 지원
 - 다)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지원
- 4)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특수교육복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특수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나) 부모상담, 가족지원, 영아가족 기능강화, 진로 및 전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 다) 운영센터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동송파, 강서, 성동광진
- 나. 가족지원을 통한 학부모 역량 강화
 - 1) 가족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전문 인력 배치
 - 2) 학부모의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감정코칭 연수 실시
 - 3) 가족 여행, 캠프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I. 부산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기본방향 :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
2. 추진방향
 - 가. 교육공동체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나.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으로 교육의 질 향상
 - 다. 배움과 보람이 있는 행복한 학교생활 실현
3. 중점 추진과제
 - 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강화
 - 3)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계절학교 운영 지원
 - 4) 특수교육 교실수업개선
 - 5) 특수학교(급) 컨설팅장학 지원
 - 6) 특수교육 연구활동 지원
 - 7)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8) 장애학생 안전강화
 - 9) 특수교육 교육활동 지원
 - 10)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나.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1)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2)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지원
 - 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배치
 - 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5)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내실화
 - 6)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 7)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8) 통학지원

- 9)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10)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 11)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12)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지원
- 다.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2) 장애인식개선 ‘世올림’ 교육활동
- 라.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1) 희망찬 내일을 여는 My JOB Project

- 2)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특수학급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477교(558학급)
 - 나) 특수학급 지구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42지구
 - (1) 지구별 수업발표 및 수업평가
 - (2) 주제 및 사례발표 각 1회 이상 실시
 - (3) 지구별 연합활동(체험 및 체육행사) 실시
 - 다) 특수학급 현장지원장학 : 연간 30학급(유·초·중 25학급, 고 5학급)
 - 라) 장애인체육회 연계 전문 체육지도자 지원 : 32교
- 3)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가)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실적 교육지원청 평가 지표에 반영
 - 나) 일반학교 학교교육계획에 장애이해교육 등 통합교육 관련 계획 포함
 - 다) 통합교육 협의회 운영 : 학기별 1회 이상 운영
 - 라)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 : 유치원 2개원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1)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학교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1)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여건이 반영된 학교교육과정 편성
-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현장지원(15교) : '15. 3월

다) 특성화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1) 특수학교 전공과 현장실습중심 특성화 지원 : 9교(37학급)
- (2)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지원 : 1교(운영비 지원)

라) 인성교육을 반영한 학교교육계획 수립

- (1) 인성교육 중심 수업 실천 및 교내 자율연수 계획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 (2) 생활지도 및 문제행동 중재와 연계한 인성교육 실천
- (3) 인성교육 집중 실천 주간 운영 : 1차('15. 4월), 2차('15. 9월)

마) 특수학교 문화·예술·체육활동 내실화 지원

- (1) 문·예·체 학생 동아리 활동 내실화
- (2) 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 13교(교육청 및 국민생활체육회 지원 등)
- (3) 특수학교별 장애학생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나.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강화

- 1)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편성·운영
-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적절한 교육 제공
- 3)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를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
- 4) 개별화교육 지원 컨설팅 : 학교컨설팅지원센터(<http://counsuiting.pen.go.kr>) 운영

다.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 운영 지원 : 특수학교(급) 445강좌

-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3) 수업공개를 통한 학생·학부모·교사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라. 특수교육 교실수업 개선

1) 교실수업개선의 학교교육계획 반영

- 가) 공개 횟수·일시·내용 등이 포함된 수업공개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 나) 수업공개 연중 수시 운영(연 2회 이상)

2) 수업공개를 통한 학생·학부모·교사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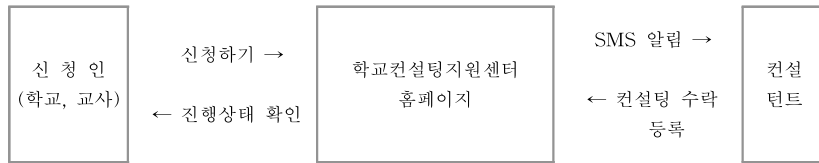
- 가) 수업공개 일정을 학교 알리미 및 학교홈페이지 게시
- 나) 경력교사와 신규 교사 간 수업 멘토링제 운영
- 다) 수업 동영상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수업공개 방법 다양화

3) 특수(통합)교육 수업연구발표대회

- 가)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담당교사 57명 참가
- 나) 수업 발표 : '15. 9월~11월(본선대회)

마. 특수학교(급) 컨설팅장학 지원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컨설팅지원센터(<http://counseling.pen.go.kr>) 운영
 - 가) 수업, 교육과정, 학교경영, 생활지도 영역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나) 컨설팅의 자율성 보장 및 편의성 제공
- 2)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신청 절차



바. 특수교육 연구활동 지원

- 1) 특수학교 교내 자율 교과교육연구회 조직·운영
 - 가) 교과교육 연구활동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 나) 교실수업개선, 교육과정 운영, 학교 특색사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운영
- 2) 특수학급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를 통한 연구활동 지원
 - 가) 주제발표 및 사례발표 : 연 2회 이상
 - 나) 수업발표를 통한 수업분석 및 협의
- 3) 특수(통합)교육 교과교육 연구회 운영
 - 가) 지정과제형 3팀 운영
 - (1)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방안 연구 : 특수학교(급) 교사 15명
 - (2) 기본교육과정 교과서 디지털북 활용 방안 연구 : 특수학교 교사 12명
 - (3) 특수학교 장애 영·유아 교육방안 연구 : 특수학교 교사 11명
 - 나) 정책연구 수업연구회 2팀 운영
 - (1) 통합교육 수업연구회 : 특수(통합)학급 교사 8명
 - (2) 전공과 교사 수업연구회 : 특수학교 직업교사 13명
 - 다) 청각장애 교육연구회 : 1팀, 특수학교(급) 교사 11명

사.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 가) 통합학급 교사 배치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직무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 나) 특수교육 직무연수 개설 확대 및 통합학급 교사 연수 참여 독려
- 2) 모든 연수과정(직무연수, 자격연수 등)에 특수교육관련 강좌 개설 독려
- 3) 통합학급 담당 교사에게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 이상(15시간 이상 누계)을 우선하여 이수토록 하고, 모든 교사에게 확대 실시 안내

아.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특수학교(급) 학생 안전사고 예방활동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 나) 장애학생 등·하교 시 보호자와 학생 안전 사항 인수인계 철저
 - 다) 학교 주변 통학로 장애학생 보호 인력 배치 운영
 - 라) 특수학교(급) 조리 및 가사실습 시 안전사고 예방 지침 안내
- 2)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 가) 7대 안전교육 표준안(51차시)에 따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 ※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반영
 - 나) 아동학대, 가정폭력, 실종·유괴 예방 철저
 - 아동학대 예방의 날 및 예방 주간 운영
 - 특수학교별 전담창구 설치 운영
 - 신고 의무자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다) 특수학교별 안전종합대책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운영
 - 라)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통학 환경 개선
 - 마) 특수학교(급) 관할 경찰서와 MOU를 통한 안전드림터 운영
 - 바) 특수학교 안심알리미 사업 지원
 - 특수학교 재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림
 - 위치추적 단말기 및 이용료 지원 : 14교 828명

자. 특수교육 교육활동 지원

- 1) 특수학교 선도 협의회 운영 지원
 - 가) 특수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 자율협의회로 운영
 - 나) 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 및 처리에 대한 정보공유
 - 다) 교내 생활지도 사례 발표 및 선도협의 등 현안사항 협의
- 2) 특수학교 치과진료 운영 지원
 - 가) 특수학교 내 치과진료실 구축, 지역사회 보건소 및 의사회와의 MOU 체결
 - (1) 지역 보건소 지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 2교
 - (2) 교육청 지원 치과진료실 운영 : 1교

- 나) 특수학교 구강검진 및 초기 치과질환 치료 지원
- 3) 장애학생 체육대회 지원
 - 가)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운영 지원 : '15. 5월
 - (1) 부산장애인체육회와 연계 장애 학생선수 발굴 및 부산선수단 육성
 - (2)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운영 지원 : 부산선수단(14종목 200여명)
 - 나) 부산광역시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 운영
 - (1) 장애학생 선발 및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개최 : '15. 10월
 - (2) 정식종목(육상, 수영, 볼링, 실내조정 등) 및 뉴스포츠 종목 운영
 - (3) 입상한 장애학생 선수 육성하여 전국대회 출전 기회 제공
- 차.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특수학교 내 장애영아 순회학급 설치 및 운영 : 2교(2학급)
 - 2) 특수학교(급) 학급 증설 : 특수학교 11학급, 특수학급 4학급 신·증설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가.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배치 : 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2) 특수교육 거점 유치원 지정 운영 : 유치원 2개원
 - 3)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안내자료 단위학교에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지원
 - 1) 특수교육대상 영아학급 운영 : 특수학교 7교(16학급)
 - 2) 특수교육대상 영아 지원체제 구축 및 상담 실시
- 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배치
 - 1) 진단·평가팀 구성 및 운영 : 6팀(시교육청 1, 교육지원청 5)
 - 2) 진단·평가 담당자 연수 : '15. 3월
 - 3)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수요조사 : '15. 6월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체제 개선
 - 가) 순회교사 2원화 운영으로 수업 전문성 신장 : 수업전담(17명), 업무겸임(7명)
 - 나) 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직 배치로 행정업무지원
 - 다)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업무담당 전문직 배정으로 책무성 강화

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구분 | 서부 지원센터 | 남부 지원센터 | 북부 지원센터 | 동래 지원센터 | 해운대 지원센터 | 시교육청 지원센터 |
|------|------------|------------|------------|------------|-------------|--------------|
| 특색사업 | 부모교육지원 | 장애이해교육지원 | 성교육지원 | 시각장애지원 | 청각장애지원 | 행정지원 |

※ 감각장애 특성화지원센터 운영 : 시각(동래), 청각(해운대)

- 3)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지원 기능 강화
 - 가) 특수교육 순회교사 공모 : 24명
 - 나) 특수교육 순회교사 전문성 신장 : 연수활동 강화 및 연수비 지원
- 마.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내실화
 - 1) 수업전담 순회교사 공모를 통한 우수교사 충원 : 공모 17명
 - 2) 수요자중심의 순회교육 지원 : 방문교육, 통신문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등 125명 지원
- 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병원학교(4교, 월평균 23명)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1교, 월평균 130명)
 - 2) 건강장애학생 지원 담당교사 연수 실시 : '15. 3월(87명)
- 사.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지원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기타 관련서비스 지원
 - 2) 지원방법(대상자 수) : 치료지원카드시스템(마중물카드)을 통한 지원(3,600명)
 - 3) 치료지원기관 현장점검 및 지원 강화 : 치료지원 전담팀 운영(6팀, 15명)
- 아. 통학지원
 - 1) 대상 :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부모 동반 학생과 학부모
 - 2) 방법 : 1일 최대 2회, 수업일수 140일 이내 지원
 - 3) 단위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자 선정
- 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1) 교수학습활동, 개인육구, 문제행동관리 지원 등
 - 2) 지원인력 : 총 707명(교육청 지원 606명, 자활센터 지원 35명, 사회복지무요원 66명)
- 차.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 1) 장애영역별 거점센터 운영 : 시교육청(시·청각 이외의 장애영역), 동래(시각), 해운대(청각)
 -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대여시스템 운영

카.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1) 교육정보지원 시스템 안내 : 국립특수교육원(에듀에이블, 이얍), 교육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페이지
 - 2) 이용자 편의제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인인증서 이용 로그인 방식 활용
- 다.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연수 : '15년 7월(진학정보 및 취업·창업지원 연수)

3.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상설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총 6단(시교육청 1, 지원청 5), 학교 모니터링 실시(월1회)
- 2)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지원 : '15. 3월(성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자료 안내, 매학기 1회 실시)

나. 장애인식개선 '세울림' 교육 활동

- 1) 장애인식개선 '세울림 인형극' 실시 : 유치원 대상 33회 실시
- 2)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강사 인력풀 구성 및 활동 : 29기관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가. 희망찬 내일을 여는 My Job 프로젝트

- 1)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
 - 가) 학교기업 운영지원 : 부산혜성학교(꿈이름)
 -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지원 : 부산전자공고
 - 다) 직업교육 중점 특수학교 시범 운영 : 부산해마루학교
- 2) My Job 프로젝트
 - 가) 직업평가 : 고교 특수교육대상자 3학년 53명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형 직업교육 : 35교, 245명
 - 다) 기관연계 직업교육(20개 기관) : 고교 특수교육대상자 2, 3학년, 202명
 - 라) 직업과정 위탁교육(부산직업능력개발원) : 일반고 특수교육대상자 3학년 15명

Ⅲ.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개선

가.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장지원

- 1)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리단계 현장지원 : '15. 11월
- 2)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회 개최 : '15. 12월

나.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현장지원

- 1)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현장지원 : 학교급별 5교 지원
- 2)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42개 지구

다.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1) 통합학급 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 '15. 9월
- 2)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관리자 연수 실시 : '15. 9월

2. 특수교육 교실수업개선 지원

가. 특수(통합)교육 수업연구발표대회 심사

- 1) 수업발표 : '15. 9월~11월
- 2)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부문별로 심사
- 3) 입상자 수업 지도안 및 동영상 탑재를 통한 일반화

나. 특수학교(급) 수업컨설팅 지원

- 1) 학교컨설팅홈페이지를 통한 수업컨설팅 지원 : 학기중 수시
- 2) 수업컨설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결과 분석 : '15. 12월

3. 특수교육 연구활동 지원

가.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전문가 양성 및 컨설팅

- 1)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전문가 직무연수 : '15. 8월
- 2) 장애학생 문제행동 현장연구위원 위촉 : 연수 이수자 30명
- 3) 문제행동 중재 컨설팅 및 사례 수집 : '15. 9월부터

나. 정책연구 수업연구회 수업 발표 및 보고회

- 1) 통합교육 수업연구회 : '15. 11월
- 2) 전공과 교사 수업연구회 : '15. 12월

대구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2015년도 대구 특수교육 추진 방향

| 4대 전략 | 중점 과제 |
|---------------------------|---|
| 1. 학생의 5대 역량을 기르겠습니다 | 11. 건강·체력 중심 신체적 역량 계발 12. 긍정·도전 중심 정서적 역량 계발 13. 소통·배려 중심 사회적 역량 계발 14. 정직·자율 중심 도덕적 역량 계발 15. 통합·창조 중심 지적 역량 계발 |
| 2. 역량 기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21. 역량 기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22.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강화 23. 배움 중심 수업의 질적 향상 24. 꿈과 끼 자람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25. 돌봄과 배움의 유아특수교육 26. 통합과 자립의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
| 3.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31. 장애학생을 위한 안전한 배움터 정착 32. 미래 지향적 특수교육 기반 조성 33. 행복특수교육 지원 교육행정 구현 |
| 4. 신뢰와 행복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 41.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 4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43.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개선 44.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구현 |

4.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홍보 및 각종 연수 실시

- 1) 장애영아 무상교육 제도 홍보 : '15. 10월(전동차 스크린도어 및 내부 광고란 활용)
- 2)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담당자 연수 : '15. 9월
- 3) 건강장애학생 지원 담당자 워크숍 : '15. 9월
- 4)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지원 : '15. 10월(가족캠프), '15. 11월(진로 및 취업·창업연수)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질 개선

- 1) 운영결과 만족도 조사 : '15. 12월중(학부모 및 특수교사 대상)
- 2) 만족도 결과 분석 : '16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시 참고

5.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학생 인권 보호 : 지속적인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교육 강화

나. 장애인식개선 '세울림' 교육활동 전개

- 1) '세울림 인형극' 실시 : '15. 9월~12월(17개 유치원)
- 2) '세울림 사생대회' 실시 : '15. 9월(중, 고 대상 500명)

6.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가. 진로 및 취업·창업 관련 연수 실시

- 1) 대상 : 학생 및 학부모
- 2) 시기 : '15. 7월, 9월~11월

나. 장애학생 진학과 취업 후 사후관리 체제 구축

- 1) 사후관리 매뉴얼 개발 : '15. 11월
- 2) My Job 프로젝트 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 '16. 2월초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제고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의무교육 연한의 확대에 대한 홍보 및 절차 안내를 통한 정착
- 2) 장애영·유아 교육 실시를 위한 유아 학급 운영
- 3)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속적 지원
- 4)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소속 직원 연수 4개 지원청 53명 실시

나.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1) 장애영아 무상교육 제도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홍보
- 2) 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한 홍보 및 대상자 파악
- 3) 장애영아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유아학급 8학급 편성 및 순회 교육 실시
- 4) 치료지원비 1인 월 12만원 지원(행복카드) 및 조기진단비 1인당 25만원 지원
- 5)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유아 담당 교원 및 의무교육인정 기관 어린이집 교사 대상 연수 실시

다.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특수학교(급) 학급 및 전공과 신(증)설 현황

| 과정 | 초 | 중 | 고 | 특 | 합계 |
|-----|---|---|---|----|----|
| 학급수 | 9 | 3 | 6 | 14 | 32 |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1) 중증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시설 9학급, 재택 순회 3학급, 병원학급 3학급 운영
- 2) 자료제작 및 구입, 여비, 운영비 지원 등 순회교육 지원 범위 확대
- 3) 1학급 5명 이내의 무학년제 편성 운영, 학생 1인당 주 2회 이상 방문 교육 실시

마.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운영 강화

- 1) 병원학교 운영 3학급(영남대의료원, 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체 학생수 81명 및 월평균 75명 학생 이용

- 2) 병원학교별 정규 특수교사 1명 및 특수교육실무원 1명 배치(대동병원)
- 3)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과지도를 위한 교과 전담교사 지원 및 특기·적성 교육 실시

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철저

- 1)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성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안전한 생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도

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 1) 학기초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2)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통한 교수·학습 및 관련서비스 지원
- 3) 전체 특수학교 나이스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초·중·고 특수학급으로 점차 확대

아.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제 실시

-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독려
- 2) 특수교육대상자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3) 평가조정제 지원 명문화 : 대구시학업성적관리지침에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제 포함

자. 일반교원 및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이수: 1,029명
- 2)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에 특수교육관련 강좌 개설 및 학교 자체 교육 실시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1)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 정착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강화 : 전문성을 갖춘 진단·평가팀 구성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요구를 판단하는 진단·평가 수행 (74명 위원 위촉)
-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를 통한 선정·배치 : 1,387명 배치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협력 체제 구축

2)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 5개소(교육지원청별 1개소, 세명학교 부설 특수교육지원센터)

나) 전문인력 확보

| 구 분 | 순회·전담교사 | 영·유아학급교사 | 순회강사 | 체육·직업강사 | 실무원 | 합계 |
|-------|---------|----------|------|---------|-----|----|
| 인원(수) | 16 | 8 | 8 | 18 | 12 | 62 |

3) 센터별 장애학생 성폭력 모니터링단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4) 특수교육지원 메뉴얼과 개발 및 핸드북 보급

다.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제9회대구특수교육정보화대회 개최 : 329명 참가, 전국대회 출전(종목별 최우수상 40명)

2) 장애학생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정보취약계층의 인터넷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웹 접근성 지침을 홈페이지 제작 활용 지도

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치료지원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월 12만원 범위 내 지원

2) 가족지원 : 보호자 교육, 상담활동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3) 통학지원 : 학생 및 학부모 교통비 지원

마.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1) 인력 지원 현황

| 구 분 | 특수교육실무원 | 통합교육보조원 | 사회복무요원 | 합 계 |
|--------|---------|---------|--------|-----|
| 인원수(명) | 526 | 12 | 117 | 655 |

2) 연수 실시

| 구분 | 신규집합연수 | 원격연수(30시간) | 전체 집합연수 |
|-----|--------|------------|---------|
| 인원수 | 124 | 156 | 655 |

바.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1)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모든 학교에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100% 설치 완료 및 기타 편의시설 완료 예정

- 특수학교 편의시설 설치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시행

2)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시설안전 점검 년1회 이상 실시 및 지도 강화

사.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토요프로그램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

1) 종일반 운영 : 특수학교 30학급

2) 방과후학교 운영

| 구 분 | 프로그램수 | 참가학생수 |
|------|-------|--------|
| 특수학교 | 139개 | 941명 |
| 특수학급 | 240개 | 1,325명 |

3) 장애학생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운영(특수학교): 26개 프로그램 196명 참가

4) 여름방학 계절제학교 운영

- 특수학교 : 9개교, 73학급 개설, 441명 참가(2주간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5개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 450명 참가

아.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1) 특수학교(급) 운영지도 및 컨설팅 장학 실시(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격년제)

2) 특수교육 전담 장학요원 확충 : 특수초등 수석교사 1명

3) 특수학급 재정 지원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비 : 급당 400만원

- 중·고 특수학급 직업훈련비 : 급당 200만원

-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비 : 급당 1,000만원

4)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지원 : 특수학교 통학버스 37대 운영 및 통학비지원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방안 수립

2) 특수교육지원센터내 상설모니터단 운영 강화 : 매월 최소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

3) 교사, 비장애학생,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나. 장애학생 안전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 운영 : 특수학교 9교 안전지킴이, 안심 알림서비스 제공
- 2)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다. 장애학생 체육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2) 체육전담인력 전면 배치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8명 배치

라.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1) 학교별 교사, 비장애·장애 학생 대상 장애인해교육 실시
- 2)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장애학생 댄스경연 대회 지원
- 3) 『성보학교 맑은소리 하모니카 연주단』을 통한 일반학교 대상 순회 연주를 통한 교육기부 및 능동적 장애인식 개선 사업 시행
- 4) 아구노리등 장애체험활동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추진 및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와의 자매결연 권장

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 1) 학교시설개방을 통한 지역주민과 장애인의 여가활동 지원
- 2) 특수교육관련실무원 활용 및 관리 강화,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확대
- 3) 특수교육 이해증진을 위한 장애인해교육 실시, 특수교육관련실무원 활용 및 관리 강화

바.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인근 특수학급 교사의 관리 지원
- 2)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확대 : 순회교육대상자 수요 파악 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의 지원 확대
- 3) 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시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대구광명학교), 청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대구영화학교)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1)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2)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 3)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5개 특수학교 연합(대표 보명학교), 행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시행,
- 4) 학교기업 성산의 영역 확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교육청 산하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직업훈련, 독립생활, 사회참여훈련을 위한 실습장 활용
 - 『cafe we』 학교점, 시교육청점, 대구대점, 대구교육연수원점 총 4개점 운영
- 5)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2개교 운영
 - 서부공업고등학교,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2015년 지정)
- 6) 전공과 운영 내실화 : 전공과 24학급(2015년 신·증설 8학급) 226명 재학, 학교 특성과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7) 지역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 학교내 일자리 참여

나.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 2)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추진
- 3) 학교형태의 장애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III.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 성과 제고 및 교육력 제고

가. 유치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지원현황 : 공립유치원(월 90,000원 정액), 사립유치원(월 361,000원 범위 내 지원)
- 2) 완전 취학 실현을 위한 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

나.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계획

- 1)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홍보 및 기초조사 실시
- 2) 영·유아 특수교육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확대 실시
- 3) 만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장애진단비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유아반 설치 및 순회교육 지원

다. 특수교육기관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정원의 법적 정원 확보
- 2) 과정별 균형적 교육기회 제공을 특수학급 신·증설
- 3) 연도별 특수학교(급) 신·증설 계획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특수학교 | · | · | · | 1 |
| 특수학급 | 18 | 37 | 20 | 17 |

라. 초, 중, 고등학교 지원 강화

- 1) 의무교육비 지원 : 입학급, 수업료, 교과용 도서(교과서 보완자료)대금, 학교급식비
-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교통비, 치료지원비, 급당 교육과정운영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마. 일반교원 및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관리자 특수교육 직무연수 확대
- 2) 특수교육 교원의 책무성 강화
- 3) 통합학급 담당 일반학교 교사 특수교육 연수 강화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인원수(명) | 1,029 | 1,300 | 1,500 |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가.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배치 체계 마련

- 1)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내용 선정
- 2)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적 진단 및 전문적 치료 의뢰
- 3) 발견된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기적 관계 형성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 1) 취학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지원 확대
- 2) 장애학생 성폭력 방지 상설모니터단 확대 운영
- 3) 채택 중증장애학생 및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1) 지원 내용 :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방과후학교, 계절제 학교, 토요프로그램
- 2) 지원 계획

(단위 : 천원)

| 구분 | 대상 | 예산(천원) | |
|-------|------------------|-----------|-----------|
| | | 2015년 | 2016년 |
| 치료지원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 4,030,000 | 5,000,000 |
| 통학비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 682,385 | 700,000 |
| 계절제학교 | 특수학교 | 240,000 | 280,000 |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전개

- 1)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활동 전개
- 2)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예술행사 추진(연2회)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대상 인권교육 강화
- 2) 장애학생 안전지원 강화 지속적 추진
- 3)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 구분 | 2015년 | 2016년 |
|---------------------------------|-------|-------|
| 특수학교설치비율(%) | 100 | 100 |
| 장애인 편의시설(%) 특수학급설치교비율(초,중,고) | 100 | 100 |
| 특수학교소프트즈강사 배치(명) | 8 | 9 |
| 특수학교 안전지킴이배치 및 안심알림서비스 제공(교) | 9 | 9 |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1)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일반화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 2) 각종 연계 복지 일자리 확대 운영
- 3)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기반 확대

| 구분 | 2015년 | 2016년 |
|--------------------------------|-------|-------|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교) | 2 | 2 |
| 학교기업 『성산』 운영(곳) (특수학교5교 연합) | 1 | 1 |
| 커피전문점 『cafe Wee』 운영 지원(곳) | 4 | 4 |
| 전공과 운영 학급(학급) | 24학급 | 30학급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
- 2)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교 운영 매뉴얼 개발
- 3) 학교기업 운영 매뉴얼 개발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기본방향

장애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특수교육 실현

2. 추진방향

- 가.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확대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
- 다. 예방중심 지원체제 구축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폭력 예방
- 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취업 및 자립능력 향상

3. 중점 추진과제

- 가.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및 교육지원 내실화
 - 장애영아 교육 및 치료지원
 - 장애유아 의무교육 내실화
- 나.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충실
 -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 지원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다. 장애학생 담당교사의 전문성 강화
 -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수업중심 학교 문화 형성
 - 특수교육 장학 지원으로 특수교사 전문성 제고
- 라.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법 다양화
 - 종일반운영, 방과후교육활동 및 치료지원
 - 장애학생 통학비 및 보조인력 지원
- 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체제 구축
 -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급)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마.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현장중심 위드잡,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각급기관(학교)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 사. 연계·협력 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지역사회유관연계 특수교육 복지서비스 지원
 - 장애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강화
 - 1) 병원학교를 활용한 건강장애 특수교육 지원
 - 가) 병원학교: 인천연일학교 인하대병원학교 병원학교 운영
 - 나) 사이버학교
 -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사이버학교 운영
 - 화상강의179명(초27, 중39, 고113) 지원
 - ⇒ 학습 및 심리, 정서 지원으로 학교생활 적응도도
-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철저
 - 1) 인천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
 - 가) 인천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및 보급
 - 나)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침 개발
 - 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모형(안) 개발 및 보급 예정
 - 2)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확대 및 평가조정제 시행
 - 가)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조정 방안 관리자 연수 실시
 - 3) 장애학생 예술활동 및 동아리 지원
 - 가) 장애학생 예술활동 및 동아리 지원: 초4교, 중 2교, 고4교 지원
 - 4)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성과 제고 및 교육력 강화

가. 장애 영·유아교육 지원

| 사업내용 | 2015년 추진실적 및 계획 |
|------------------|--|
| ◦ 장애영아 교육 및 치료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치료지원 장애영아 39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교육 지원 15명 - 복지관 위탁 치료지원 24명 ◦ 장애영아 발견·교육 홍보자료 보급 ◦ 장애영아 학급운영 가이드북 개발 보급 |
| ◦ 장애유아 특수교육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아 210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장애유아 92명 순회교육 실시 - 특수학교 유치원 9학급 36명, 특수학급 45학급 174명 특수교육 지원 ◦ 장애유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개발 보급 |
| ◦ 장애유아 통합교육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아 통합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아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2개원) -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애유아 담당교원 통합교육 전문성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개별지도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연수 지원 |

| 사업내용 | 2015년 추진실적 및 계획 |
|--------------------|--|
| ◦ 특수교육장학위원 역량강화 연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장학위원 46명 대상 역량강화 연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컨설팅 실제' 외 5개 과정 총 15시간 실시 ⇒ 특수학교(급) 수업의 질 제고 |
| ◦ 통합학급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를 통합학급 담당교사 자격기준으로 운영지침에 명시 ◦ 개인별 연수 이수 |
| ◦ 특수교육 수업컨설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멘티가 만나는 특수교육 수업컨설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4, 초10, 중6, 고13 학급, 특수학급 교사 33명 대상 실시 |

| 사업내용 | 2015년 추진실적 및 계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 수업연구발표 대회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은 학교 만들기 특수학교 컨설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2교 대상 외부전문위원 컨설팅 지원 ⇒ 특수학교(급) 수업의 질 제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수업중심 강화를 위한 수업연구 발표대회 운영 |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배치체제 확립

1)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체계 확립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강화

가)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기능 강화

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진단·배치 체계 확립 및 홍보

2) 진단·평가 도구 보급 확대

가) 지능·언어·정서행동·학습·영유아 발달 검사 등 334종 진단평가도구 확보

나.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 2015년 추진실적 및 계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프로그램 : 3,041명 - 학교별 프로그램 : 203개, 1,218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 배치 : 13명 - 전자카드 발급 : 2,724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학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비 지원 : 1,426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학차량 지원 : 25인승 1대 |

| 사업내용 | 2015년 추진실적 및 계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일반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 돌봄 및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유·초등학생대상 총 31교 49학급 운영 · 365일 운영 학교(급) : 13교 27학급 · 275일 운영 학교(급) : 18교 22학급 ⇒ 방과후 보육 및 교육으로 교육기회 확대 및 부모 사회활동 참여 원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총 53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중·고 : 453명 - 특수학교 : 80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 5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보조공학기기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특성 및 교육적 요구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센터 352종 906보유, 평균 45회 지원 ⇒ 교수·학습접근 완화로 물리적 환경제약해소 및 교수·학습 질 향상 |

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

| 사업내용 | 2015년 추진실적 및 계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급 신(증)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급 총 32개 학급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 12학급, 초 10학급, 중 3학급, 고 6학급, 전공과 1학급 ⇒ 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교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공립 특수학교 설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 특수학교(3교) 설립 기본계획안 수립 - 남동구, 남구, 서구에 2016~2019년 설립 추진 - 2개 특수학교 지방교육재정투융자심사 통과 ⇒ 특수학교과밀 해소 및 지역별 균형 설치 |

3.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

| 사업내용 | 2015년 추진실적 및 계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상설모니터단 47명 위원 구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중·고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총 412교중 97교 대상, 월 1회 이상, 1~3교 모니터링 - 관심대상 학생 1314명 인권침해 미연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학교·성폭력 예방 - 사안 발생 시 특별 모니터링 현장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존재인식 및 자기결정력신장 위한 특수학급 대상성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29교, 중25교, 고23교 총 543명 ⇒ 자기이해 및 자기보호능력 향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 교육 및 성교육 연수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사 대상 성상담전문과 과정 원격연수 2개(기초과정, 심화과정)과정 운영 특수교사대상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호 이해 교육 연수 통합학급 담당교사 대상 장애인권보호 의식 함양 연수 운영 (6회, 1,100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대상 장애학생 인권 교육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대상 장애학생 성 발달 이해 및 지도 방법 맞춤지원 가정에서의 장애학생 성교육 연수 운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 인권교육 우수 사례발표대회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자체 인권교육 프로그램 자체 계획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중·고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서 진행 ⇒ 학교에서 실행한 프로그램 10월 인천우수사례 발표 대회, 11월 전국대회 참가 |

나. 통합환경에서의 장애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지원

1) 청각장애 특성화지원센터

가) 청각장애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10명, 10회)

나) 청각장애학생 담당 일반학교 교원 연수 운영

다) 청각장애학생 수화·문자통역 원격지원 서비스 지원(2명)

2) 시각장애 특성화지원센터 운영

가) 시각장애학생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자료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나) 시각장애학생 학습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20명, 17회)

다) 시각장애 학부모 상담지원(10회)

4. 장애학생 사회참여 역량강화

가. 현장중심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2015년 추진실적 및 계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 교육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특수학급 현장중심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교 92학급 총 669명 참여 - 지역사회기관 연계 장애수준별 맞춤교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교 장애유형별 직업 교육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교 현장중심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특수학교 747명 지원 - 지역사회연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업교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학교 2교(강남영상미디어고, 박문여고) - 인근 특수학급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직업교육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고등학교 특수학급 35학급 246명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형 직업전환교육지원 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 농촌 직업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도우리마을' 위탁 체험프로그램 운영 - 양계, 원예, 콩나물재배 등의 일일체험, 2박3일 프로그램 25교 180명 운영 |

| 사업내용 | 2015년 추진실적 및 계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기업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미추홀학교) 학교기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민간기업 교내 유치 실습지원 · 특수학교(급) 학생 112명 실습지원 - Job-school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비누, 제과제빵 생산 판매 · 카페운영을 통한 예절훈련, 서비스훈련, 바리스타 양성 및 카페 취업 지원 |

- 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연계 여름방학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5회, 44명)
- 나)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연계 여름방학 직업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8회, 20명)
- 다) 부평장애인복지관 연계 청소년 직업전환학습 프로그램 운영(2회, 22명)
- 라)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연계 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5회, 42명)

III. 향후 추진 계획

나. 장애학생 취업지원

- 1) 현장실습 취업연계사업 운영
 - 가) With-Job 사업 운영
 - 참여 업체 개발 위한 산업체 방문 및 협의
 - 특수학급 교사 대상 사업 설명 1회
 - ⇒ 산업체 인턴제 운영으로 장애학생 안정적 취업률 제고
 - 2) 각급학교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 가) 각급학교 연계협력 일자리 사업 운영
 - 1일 4~8시간, 주5일 근무
 - 장애인 76명 지원
- 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학생 사회참여역량강화
 - 1)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제 네트워크 구축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 협력기관(복지관, 의료기관, 상담심리기관)이 지원 네트워크 구축
 - 나) 특수교육 복지서비스 포켓북제작 발간
 - 2) 장애학생 가족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가) 장애엄마 힐링프로그램운영, 15명, 10회
 - 나) 장애형제자매 마음만지기 프로그램 운영, 15명, 4회기
 - 3) 장애학생 전환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 초등학생 체험프로그램 운영, 40명, 10회
 - 나) 중학생 전환프로그램 운영, 18명, 10회
 - 4) 장애학생 방학 중 전환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가. 장애 영·유아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장애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유아 특수학급 운영 가이드북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 2) 장애 유아 통합교육 내실화, 2017년 까지 유치원 특수학급 100개 확충
 -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NEIS 반영
 - 2)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 다. 특수교육교원 및 통합학급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 1) 특수교육교원 장애인권 직무연수: 2회, 30명
 - 2) 특수교육교원 경력개발 기회 확대
 - 라.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학활동 지원
 - 1) 특수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1교당 연 3회 이상 지원(외부전문위원지원강화)
 - 2)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컨설팅 장학 지원: 멘토-멘티가 함께 하는 수업코칭 장학지원
 - 3)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 교과연구회 지원: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가. 특수교육 진단·배치 체제 고도화
 - 1) 진단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 2) 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진단평가 전문화
 - 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광주광역시교육청

- 1)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치료지원 제공
 - 2) 특수교육 보조인력 다양화 및 관리 체계 개선
 - 3) 특수교육 보조인력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학생 지원교육 강화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위한 인력 확충
 - 1)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2) 특수교육관련서비스 기능 및 전문성 강화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전문성 강화 연수 확대
 - 4) 청각장애 및 시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
 - 라.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특수교육·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실시
 - 1) 지역사회 기반 특수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
3.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시스템 내실화
 - 1) 상설모니터단 운영강화 및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체계 수립
 - 나. 장애학생 자기보호, 일반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자기보호 및 일반학생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연 50교 지원
 - 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예술동아리 활성화, 연 10교 지원
 - 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장애학생 사회참여 역량 강화
- 가. 지역사회기관 연계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 1) 특수학교 진로직업 체험교실 운영, 연 450명
 - 2) 현장실습-취업연계사업(위드잡)운영, 연 110명
 - 나.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지역별 균형 설치·운영
 - 1)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 연 5교
 - 다.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
 - 1)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운영, 연 61명
 - 라.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 1) 장애인 고용공단 연계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 2)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I. 광주특수교육 추진 방향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

추진 방향

- 특수 및 일반 교원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 국가 책무성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복한 학교생활 실현

중점 추진 과제

-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II. 2015년도 추진 계획

| 분 야 | 내 용 | 세부 내용 |
|---------------------|---------------------------------|--|
|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1-1. 유지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 이행 철저 · 일반유치원 배치 희망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속적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 | 1-2.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제도 홍보 실시 및 실태 파악 · 특수교육대상영아 교육 실시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개발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체제 마련 · 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 연구회 운영 |
| | 1-3.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의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급) 학생 법정 정원 충족 학급 확대 · 특수학교 신설 시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 적극 고려 · 합리적 기초자료에 근거한 특수교육대상자 증장기 수용 계획 마련 |
| | 1-4.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무상교육 혜택 제공 · 건강장애학생 위탁교육 실시 ·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보호자교육 강화 |
| | 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철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실태 점검·지도 ·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학년 유의 운영 |

| 분 야 | 내 용 | 세부 내용 |
|----------------|---------------------------------|--|
| | 1-6.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 | 1-7. 특수교육대상자 학업 성취도 평가 조정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정착 ·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 | 1-8.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신장 ·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강화 개설 ·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의 처우개선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 부장교사 배치 확대 · 특수교육 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 추진 · 특수학급 담당교사 자율장학 협의회 운영 |
|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2-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배치 체계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 | 2-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 모니터단 설치·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전문인력 확보를 통한지원기능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 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지역교육청별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 | 2-3.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교육 지원 범위 ·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

| 분 야 | 내 용 | 세 부 내 용 |
|-----|-------------------------------------|--|
| | 2-4.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정보 접근권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적극 활용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활용) |
| | 2-5.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지원 · 가족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지원 · 통학지원 ·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 | 2-6. 특수교육 지원 인력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실무사 운영 강화 · 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 강화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지요원 활용 내실화 |
| | 2-7.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지(교육시설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강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 ·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 | 2-8.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토요프로그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급) 유치원방과후과정 및 돌봄 교실 운영 · 토요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방학프로그램 운영 |
| | 2-9.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지도 강화 ·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실시 · 특수교육 전담 장학요원 확충 ·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특수학급 재정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지원 · 특수학교(급)에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선 배치 |

| 분 야 | 내 용 | 세 부 내 용 |
|---------------------------|-------------------------------------|---|
| | 3-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성교육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상설모니터단'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교육 강화 |
| | 3-2. 특수교육대상자 안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특수교육대상자 보호를 위한 불법 중·정차 단속, 통학환경 개선 ·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 | 3-3. 특수교육대상자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육 전담 인력 전면 배치 ·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전면 실시 및 운영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스포츠강사·토요스포츠 강사 등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 3.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3-4.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교육 충실 · 연2회 이상 장애인해교육 실시 ·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 개최 · 장애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추진 ·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캠프 운영 |
| | 3-5.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의 운영 개선 ·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
| | 3-6. 통합교육 담당 교원 전문성 제고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통합학급 담임교사 및 관리자 통합학급 운영 · 관리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확대 · 통합학급 담임교사 처우개선 및 지원 강화 |

| 분 야 | 내 용 | 세 부 내 용 |
|----------------------------|-----------------------------------|--|
| 4. 특수교육 대상자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4-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 취업·창업 교육 지원 ·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다양한 진로 정보 및 특수교육교원의 직업 교육 역량 강화 |
| | 4-2.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편의 제공 강화 ·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 |

Ⅲ. 2015년도 추진 실적

1.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제고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취학을 위한 취학 절차 안내 및 홍보 실시(연중)
- 2)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실시 학생 및 배치 현황 파악(연중)
- 3) 유치원 의무교육 업무 담당자 배치·상담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사회복지사
- 4)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81명

나.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1) 장애영아 무상교육 제도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연중)
- 2) 장애영아 무상교육 제도 학부모 상담을 위한 상담전담교사 지정 운영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다.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학교급 | 유 | | 초 | | 중 | | 고 | | 계 | |
|-----|----|----|----|----|----|----|----|----|----|----|
| 유형 | 신설 | 증설 | 신설 | 증설 | 신설 | 증설 | 신설 | 증설 | 신설 | 증설 |
| 학급수 | 2 | 0 | 3 | 0 | 1 | 1 | 1 | 3 | 7 | 4 |

라.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병원학교를 활용한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위탁교육 실시
 - 가) 병원학교 : 전남교육청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국립나주병원
 - 나) 화상강의 : (사)더불어하나회의 '꿈사랑학교' 활용

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철저

- 1) 특수학교(급) 컨설팅장학 운영
 - 가) 시교육청 : 특성화고 특수학급 및 신설 특수학급
 - 나) 지역교육지원청 : 특수학교, 유, 초, 중 특수학급

바.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강화

- 1)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 지도 : 1회
- 2)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서 작성·운영 현황 지도 : 1회
- 3) 보호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적극 권장

사. 일반교원,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통합학급 담당 교사에 대한 특수교육 직무연수 실시
- 2) 특수교육 담당 보조인력의 연수 실시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자 범죄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구성·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운영 : 총3개 팀 구성·운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모니터링 실시

- 2) 장애학생 범죄예방 및 장애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 배치 : 3명

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 1,881명(1인 월100천원, 12개월)
- 2) 장애학생 교통비 지원 : 491명

3)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지원 : 특수학교(급) 230명
- 장애학생활동지원 공익근무요원 배치 : 특수학교(급): 89명
- 특수학교(급) 수화통역사 배치 : 4명

다. 특수학교(급) 방과후과정, 토요프로그램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

- 1)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운영 : 12급
- 2) 특수학교(급) 돌봄교실 운영 : 11학급
- 3)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 교내 113개 강좌 운영
 - 개별지원 : 월80천 원 범위 내 11개월 지원
- 4) 특수교육대상자 방학 중 계절학교 및 통합캠프 운영
 - 특수학교(1교), 비영리 민간기관 위탁(3기관)
 - 통합캠프 운영(2기관) : 100명 내외

라. 특수학교(초등)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 공립 특수학교 : 3교, 162명, 6,804천원
- 사립 특수학교 : 2교, 116명, 4,872천원

3.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강화 추진

-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및 인권교육 실시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 연2회 이상 의무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교사에 의한 찾아가는 현장 중심 인권교육 지원
- 2) 성교육 코너 자료 탑재 및 활용: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
- 3) 성교육 관련 장학자료 개발 및 우수 자료 보급: 1종, 특수학교(급) 대상

나. 전체 학교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1) 장애이해교육 실시 횟수 학교평가에 반영(연2회 이상)
- 2) 일반학생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예술행사 실시 : 2회
- 3) 장애학생 통합캠프 지원 : 2단체(민간 공모)
- 4) 통합교육 실천 프로그램 운영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 교육 내실화 추진
-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운영: 3교 10학급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1교(광주선광학교)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1교(광주전자공고)
- 나. 진로·직업교육연구회 운영: 3팀
- 다.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 특수학교 5교(교당3,000천 원)
 - 특수학급 49교(급당 1,000천 원)

IV.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가.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1)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실시 홍보 연중 실시
 - 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안내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 2)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유아
 - 공립유치원 월 90천원, 사립유치원 월 361천원 범위 내 실비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 강화

-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지도 : 특수학급 설치 및 미설치교 전체
-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및 프로그램, 자료 개발·활용 강화

다.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급 컨설팅장학 지원

- 1)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급 컨설팅장학위원 구성 : 장학관(사), 교사 등 5명
- 2)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급 컨설팅장학 실시

라. 특수학교(급) 교원, 통합학급 교원, 특수교육 관련 담당자 연수 추진

- 1) 특수교육담당교사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추진 : 총3회
- 2) 특수교육실무사 및 특수교육 관련 담당자 연수 추진 : 1회
- 3) 총4회, 1,000명, 42,610천원

마. 특수교육 실천사례발표대회 추진

-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전체, 1회(11월), 950천원, 우수사례 등급표창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1)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중심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특수교육 관련 수요자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참여
 - 특수교육 정책 및 현안 등 협의
 -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 소위원회 및 정책 소위원회 구성·운영
 - 본청 : 당연직 및 위촉직 총13명, 정기회 2회(임시회 수시)
 - 지역청 : 동부-3회 개최 8,220천원, 서부-3회

나. 특수학교(급) 방과후보육교실 운영

- 1) 특수학교 방과후돌봄교실 운영 : 5교 11학급
- 2) 특수학교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 2학급
- 3) 특수학교 방과후돌봄,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 4) 유치원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운영 : 7학급 운영

다.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 1)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5교
- 2)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강좌 및 개별교육 지원
 - 특수학교 및 고특수학급 : 강좌지원
 - 유, 초, 중 특수학급
 - 강좌지원 : 특수학교 월 550천원, 특수학급 월 500천원 범위 내, 11개월 지원
 - 개별지원 : 월 90천원 범위 내, 11개월 지원

라. 장애학생 방학학교 운영

- 1) 장애학생 방학학교 운영 지원 : 특수학교(급)학생
 - 민간기관 및 특수학교 지원
 - 지역교육청 운영

마. 장애학생 교통비 및 무상교과서 지원

- 1) 장애학생 교통비 지원
- 2) 장애학생 무상교과서 지원

바.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 1) 치료지원 요구자에 대한 진단·평가 실시 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1인 월 100천원, 12개월 지원

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지원

- 1)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 특수학교 66명
 - 특수학급 139명
- 2) 장애학생활동지원 공익근무요원 배치·운영 : 106명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교) 54명
 - 동부 특수학급 25명
 - 서부 특수학급 27명
- 3) 청각장애학생 수화통역사 지원 : 5명

아. 특수학급 신·증설

- 1) 법적 급당 인원에 맞는 학급 편성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2) 학교(급) 및 지역 간 균형적인 특수학급의 운영

3.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1) 장애학생의 인권교육 실시 : 전체 학교, 연2회 이상
- 2)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학교 전체, 매학기 1회 이상
- 3) 인권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학교 전체
- 4) 상시 관리체계 확립 : 상설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수시 및 정기, 특별모니터링 실시

나. 통합교육 강화

- 1) 장애이해교육 의무 실시 : 전체 학교, 연2회 이상
- 2) 일반학생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예술행사 실시
- 3) 장애학생 통합캠프 지원
- 4)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안) 수립
- 2)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전문상담사 배치 1명
- 3) 장애학생 대상 진로·직업 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 배치 1명
- 4) 장애학생의 진단·평가 지원을 위한 임상심리사 배치 1명
- 5)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3개, 연중

- 6)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체계 구축 및 상담활동 강화
 - 각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전문적 진단평가체계 구성 2팀
 - 특수교육대상자 관리를 통한 적절한 교육적 배치 및 지원
- 7) 장애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 모니터단 구성·운영
 - Wee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상시 관리체제 확립
 - 장애학생 성폭력 및 범죄예방 교육, 상담활동 지원
- 4.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가.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 1) 교육청 단위의 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 산업체 등과의 협약 체결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강화
 - 장애인고용공단,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 지원 강화
 - 3)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 특수학교 5교, 특수학급 48학급
 -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광주전자공고)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광주선광학교)
 - 특수학교 직업교육 여건 개선 지원 : 5교
 - 나.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참가
 - 1) 장애학생들의 직업 관련 기능 및 능력 개발 지원
 - 특수학교(급) 감각장애 학생 및 지도교사 40명, 1회
 -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들의 직업 관련 분야 참가
 - 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박람회 개최
 - 1) 지역사회 기업 및 유관 기관 간 연계를 방안 모색
 - 2) 장애학생들의 진로 다양화 및 취업률 제고
 - 특수학교(급) 학생 및 교사
 - 라. 전국특수교육정보화경진대회 참가
 - 1)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여가활용 능력 개발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초, 중, 고 학생 및 지도교사 50명
 - 데이터처리, 워드프로세서, 한글타자 등 12개 종목
 - 마.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 1)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
 -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고등부 3학년, 전공과 학생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
 - 가. 추진 방향
 - 1) 특수 및 일반교원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2)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 3) 책무성 강화로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실현
 - 나. 중점 추진 과제
 - 1) 특수교육 성과 제고 및 교육력 제고
 -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 참여 역량 강화
 - 다. 역점 시책
 - 1) 특수교육 기회 확대
 - 2)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충실
 - 3)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내실화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강화
 -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의무교육 전면 시행 철저
 - 가)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사 확대 배치·순회교사 확보
 - 신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권고 및 일반학급 배치 장애유아 대상 순회교육 확대
 - 나)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다)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실시 유아 및 배치 현황 파악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

- 마)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교육 지원
 - 순회교육 실시,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영·유아 순회학급 4학급 운영
-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 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 2) 일반유치원 배치 희망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속적 지원
 - 가)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자체 지침에 의해 지원
 - 나)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특수학급 증설
 - 특수학급 증설 및 교원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 3)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 1)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제도 홍보 실시 및 실태 파악
 - 가) 병원, 보건소, 기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아에 대한 정보를 부모 동의하에 수집하여 그 실태 파악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아 수 파악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부모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적극 홍보
 - 2) 특수교육대상영아 교육 실시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개발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편성, 가정 순회교육 등 실시
 - 3)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원, 행정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제도, 교육지원 절차, 교육지원 방법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실시
 -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에 대해 순회교육 제공
 - 4)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영아의 조기교육을 위한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가) 특수교육대상영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시·구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영아 진단, 부모교육 및 상담 운영
- 나) 무상교육 지원
 - 학기 중 무상교육 지원 요청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경우 수업일수 12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다) 특수교육대상영아학급 설치·운영, 순회교육 등 제공
- 다.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추진
 - 장애유형·정도에 관계없이 원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특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 내 특수학교 신설 계획: 정신지체·지체장애 영역
 - 특수학급 16학급 신·증설: 영·유(2), 초(8), 중(5), 고(1)
 - 2) 유·초·중·고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운영
 - 가) 장애학생이 거주지 인근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 비율 대비 학교 구(군)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
 - 나) 공·사립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3) 특수학교 신설 시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 적극 고려
 - 가) 특수학교의 학교 운영과정을 다양하게 조정·개편 방안 모색
 - 지역교육청별 특수학급의 학급정원, 급당 평균인원 등에 대한 실태 파악 후 특수학급 확충 자체 계획 수립
- 라.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화상강의 운영 강화
 - 1) 건강장애 선정 및 무상교육 혜택 제공
 - 가)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어 연간 수업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유급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학교생활 및 학습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을 선정
 - 나) 선정 절차를 신속 처리하여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화상강의시스템(꽃밭무지개학교)의 입학 및 퇴교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처리
 - 다) 병원 혹은 가정에서의 개별적인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 2)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 지원 내실화
 - 가) 병원학교 소속병원의 주책임 의료진에 대해 ‘명예교장’ 역할 부여 및 병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나)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연간 계획 수립 및 내실화 도모
- 다)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중심 화상강의 운영 방안 강구
- 3) 건강장애학생 원적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보호자 교육 강화
 - 가)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원적 학교 담임교사 연수 연1회 실시·운영
 - 나)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철저
 - 1)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과 창의성, 학생의 요구·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편성·운영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포함 편성·운영
 - 3)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학년 유의하여 운영

【5학년도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 학년】

| 구분 | 적용 학년 |
|----------------|-----------------------|
| 2010 특수교육 교육과정 | 고3 |
|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 유치원, 초1~6, 중1~3, 고1~2 |

※ 그 외의 개정 교육과정(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신설 지침 및 교과 적용 학년

- 학교스포츠클럽 : 중1~3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관련 : 초1~고3
- 집중이수제 개선 : 중1~고3
- 고등학교 영어 : 고1~고3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

- 매 학년 시작일 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학기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 계획 송부
 - 나) 개별화교육계획 포함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 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
 - 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실시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결과 통보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가) 교과 및 단원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 나) 학생요구 및 학교 실정에 따라 협력교수 등 다양한 교사 조직 활용 및 보조인력 활용 확대
 - 3) 학교급별·교과별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활용 적극 지원
 - 가) 교사자율연구회 운영 지원,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수업대회 개최 등
- 사.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확대 및 평가 조정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가)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유형에 따른 평가조정 방안 마련
 - 나)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업성취 평가 방법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등 명시
 - 다) 성적부진학생이 학습장애로 선정되지 않도록 '학습장애 선정 조건 및 절차 준수
- 아.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특수교육 직무연수 확대
 - 가) 통합교육 실시학교 관리자 직무연수 독려
 - 나) 통합학급 교사 및 일반교사에게 특수교육 직무연수 개설 연수 기회 확대

- 다) 대전교육연수원에 특수교육 관련 원격 연수 개설 연수 기회 확대
- 라)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
- 2)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에 특수교육관련 강좌 개설
 - 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수과정(직무연수, 자격연수 등)에 특수교육 관련 강좌 개설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배치 체계 확립

- 1)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가) 특수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 보건소, 병의원, 유치원, 보육시설,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에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각종 혜택과 정책에 대한 홍보
 - 홈페이지, 리플릿, 책자,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수행 및 그에 따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나)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각 종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아 조기발견 및 의무·무상교육 지원 제공
- 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에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포함
 - 가)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의 효율적인 방법 모색
- 4)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5)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기관 지정·배치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기회 부여
 -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순회학급, 병원학교 등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및 능력, 거주지 등에 적합한 학교 지정·배치
 - 근거리 배정 원칙 준수, 보호자 의견 반영
- 6)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가) 취학의무 대상 특수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나) 만 3~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 다)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취학의무 유예 혹은 면제 받은 대상이 취학 할 경우 의무교육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에 의해 조치
 - 7) 특수교육대상자의 전학 절차
 - 초등학교 전학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중·고 전학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89조 제2항에 의거 하여 추진
 -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배치 결정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팀 구성하여 운영
 - 2) 장애학생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설치·운영 기능 강화
 - 가)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및 상시 관리체계 확립
 - 나) 상설모니터단 구성
 -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성교육전문가, 학부모 또는 민간단체 인력, 지역 경찰서 성폭력 전담팀장, Wee센터 관계자 각 1명 필수 포함하여 구성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활성화
 - 직업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감각장애교육지원거점센터 등 운영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및 대상자 실태 파악
 - 일반학급 순회학급: 10학급, 복지시설 파견학급: 4학급, 병원 파견학급 3학급 운영
 - 2) 순회교육 대상 학생 선정·지원 확대
 - 3)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 라.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2)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정보 접근권 강화
 - 3)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 마.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1) 치료지원 : 물리치료, 작업치료
 - 2) 가족지원

- 3)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지원
- 4) 통학지원
- 5)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 치료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행훈련, 심리·행동적 훈련 등의 관련서비스를 방과후교육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1) 특수교육실무원 적정 배치
 - 2)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파견 특수교육실무원 등 보조인력 활용 내실화
 - 3)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추진 :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 사.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철저
 - 1)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강화
 -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
 -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아.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학교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
 - 1) 유치원 방과후 학급 운영
 - 2) 특수학교 방과후 학급 운영
 - 3)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4)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
- 자.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1) 특수학교(급) 운영지도 강화
 - 2)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실시
 - 3)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 4)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5)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지원
-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상설모니터단' 운영
 - 3) 일반학생에게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연2회 의무 실시
 - 4) 장애학생 대상 연2회 이상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 5)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을 두도록 지도
- 나. 장애학생 안전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등·학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2)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 3)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
- 다.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장애학생 체육교육 강화 계획 수립
 - 체육전담 인력 전면 배치 :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체육 비전공 특수교사의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지원
 -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 강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지원
 - 3)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현장학습을 통한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제공
- 라.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1)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2)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 개최
- 마. 통합학급 운영·관리 강화
 - 1) 통합교육 실시학교 관리자의 연수 지원
 - 2)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학습활동 지원
 - 일반학급 저시력학생·청각장애학생 현황 파악 및 확대교과서, FM송수신기 보급·지원
 - 3)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연수 지원
 - 통합학급 담당교사 직무연수(60시간) 추진
 - 통합학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이수 시 전보 가산점 부여
 - 4) 통합학급 장애학생 도우미 봉사활동 활성화
- 4.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1)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선택 다양화를 위한 진로 정보 제공

- 3)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 체제 구축
- 4)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5)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6)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7)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나.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 2)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

Ⅲ.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학교 신설 1교
 - 1) 학령기 중심 특수학교 1교(정신지체·지체장애)
- 나. 특수학급 신증설 : 거주지 분포를 고려하여 1교 1특수학급 설치 원칙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 가.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의 효율성 제고
- 나. 거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 특수교육 중심 네트워크 구축

- 가. 시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체 마련
- 나. 장애학생 진로 관련 지역사회 협의체 마련
- 다. 대학 등 특수교육 관련 협의체 마련
- 라. 학부모 및 장애인단체와의 협의체 마련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목표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

2. 추진내용

- 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나.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다.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라.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3. 중점추진과제

- 가. 내실 있는 개별화교육 운영
- 나. 예방중심의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다.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Ⅱ. 2015년도 추진 계획 및 실적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과정 운영 : 97명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 2)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소속 지원 연수
 - 3)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센터 운영부장)
 - 4)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가) 취학예정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파악
 - 나) 초등학교 입학·진학 상담
-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 1) 장애영아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 가) 강남·북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 담당 인력 배치
- 나) 장애영아의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21명 지원
- 다)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실 운영
- 라) 장애영아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 7명
- 마) 장애영아학급 1학급 운영 : 메아리학교
- 2) 장애영아무상교육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가) 일반 교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연수 실시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장애영아 순회교육 지원
 - 다) 장애영아교육에 대한 홍보 실시 : 장애영유아 리플렛 400부 제작 및 유치원, 어린이집 배부 및 홍보
- 다. 특수학교(급) 학생 법정정원 준수
 - 1) 특수학급 신·증설 : 10학급(특수학급2, 특수학교8)
 - 2) 특수학급 설치 현황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계 | |
|-----|-----|------|-----|-----|-----|------|-----|-----|-----|
| 학교수 | 학급수 | 학교수 | 학급수 | 학교수 | 학급수 | 학교수 | 학급수 | 학교수 | 학급수 |
| 9 | 11 | 81 | 117 | 41 | 56 | 30 | 45 | 161 | 229 |

- 라.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화상강의시스템 이용 학생 지원 : 총 이용자 70명(6월말 현재 59명)
 - 2) 병원학교 운영

| 병원학교명 | 위치 | 인력 현황 | | | 이용학생 |
|--------------------------|----------|-------|---------|----------|------|
| | | 교사 | 센터 순회강사 | 특수교육 실무원 | |
| 다습병원학교 (설치년도 : 2007년) | 울산대학병원 내 | 1명 | 1명 | 2명 | 25 |

- 마.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철저
 - 1)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과 창의성, 학생의 요구와 특성을 살린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2) 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교육감 승인 후 적용
 - 3)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4)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통합교육협의회 구성
- 5) 시·청각장애 등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6) 특수교육도움자료개발팀 선정을 통한 장애학생 성교육자료 개발
-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 1) 개별화교육 자체점검 실시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영아 및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 2,489명(5.1.기준)을 대상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보호자 참여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여부 점검
 - 나) 점검결과 작성중인 9명을 제외한 2,480명 작성 완료
 - 2) 교과 및 단원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성화.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 연수 내용 | 실적 | 비고 |
|---|--------------|----|
| 교원 및 전문직 대상 특수교육 원격직무연수 2과정(60시간, 15시간) | 1,000명 | |
| 국립특수교육원 교원 대상 집합 직무연수 | 24명 | |
| 교원 및 일반직 대상 장애인식개선 원격직무연수(15시간) | 500명 | |
| 일반교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및 성폭력 예방 연수 | 566명 | |
| 특수교원 역량강화 연수 | 50명 | |
| 관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학생 인권교육 연수 | 247명 | |
| 통합학급 및 방과후 강사 대상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학생 인권교육 연수 | 319명 | |
| 학부모대상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학생 인권교육 연수 | 304명 | |
| 학교별 직원연수 시 특수교육 관련 연수 | 학교별 1회 이상 | |
|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원연수 | 연 1회 이상, 19명 | |
| 진단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 6월, 12명 | |
| 유·초등 특수교사 직무연수 | 26명 | |
|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 및 장애인권교육 | 523명 | |
| 진로직업교육 학부모 연수 | 48명 | |
| 센터 치료지원 연수 | 46명 | |
| 강남·북지원센터 직원 및 보육시설 담당자 연수 | 100명 | |

2) 책무성 강화를 위한 노력

-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원과의 협력적인 학생지도 강화
- 학생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사의 다양한 노력

아. 특수교육 장학활동 지원

1) 특수학급 컨설팅 장학 실시

- 강북교육지원센터 : 15명, 강남교육지원센터 : 13명

2) 특수학급 지구별 자율장학 실시

가) 유치원 1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순회학급 1개 지구 조직 및 협의회

나) 지구별 자율장학 계획 수립 및 실시

- 동구, 중구, 북구 지구별 11회, 무거 지구 등 9개 지구 28회

3) 특수교육 요람 제작 및 전 초·중·고·특수학교 배부 : 1,000부

4) 상설모니터단 운영 : 43교 모니터링(상반기) 실시

-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 15교 모니터링
-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 14교 모니터링
-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 14교 모니터링

5)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대상의 특수교육컨설팅 장학 21회 실시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배치 체계 확립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229명
- 3)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홍보 : 2015 탁상용 달력 제작 및 배부,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 리플릿 400부 제작 홍보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현황

| 구 분 | 장학관 | 장학사 | 순회교사 | 계약직강사 | 임상심리사 | 직업재활사 | 치료사 | 계 |
|---------------|-----|-----|------|-------|--------------|-------|-----|----|
|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 1 | 1 | 2 | 3 | 1 | 3 | 6 | 17 |
|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 · | · | 2 | 7 | 3 (심리상담사) | · | 16 | 28 |
|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 · | · | 2 | 7 | 2 (심리상담사) | · | 17 | 28 |
| 계 | 1 | 1 | 6 | 17 | 6 | 3 | 39 | 73 |

2) 시설 현황

| 구 분 | 센터 공간 확보 현황 | | | | | | | | | |
|---------------|-------------|-------|-----|----|-------|----|-----|------|-------|----|
| | 사무실 | 진단평가실 | 치료실 | | 직업교육실 | | 연수실 | 학부모실 | 조기교육실 | 기타 |
| | | | 센터내 | 거점 | 센터내 | 거점 | | | | |
|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 2 | 1 | · | · | 6 | · | 2 | 1 | · | 3 |
|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 1 | 1 | · | 12 | · | 4 | · | · | · | · |
|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 1 | 1 | 3 | 3 | 2 | · | 1 | 1 | 1 | · |

3)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다.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1) 완전통합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1학기)

- 가)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2명, 센터전담강사 1명(고등 6명)
- 나)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9명(유치 3명, 초등 4명, 중등 2명)
- 다) 총 67명(영아 7명, 유치원 26명, 초등 26명, 중등 8명) 순회교육 지원

라.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1) 여가문화체험실 운영

-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내 1개소
- 활용 :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현장학습 등

2) 홈페이지 배너로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홍보(에듀에이블, 이얏)

3)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을 위한 태블릿 PC 대여

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등의 지원(대여)

- 가) 보조공학기기(시각, 지체, 청각, 의사소통장애) 81종 406개
- 나) 진단·평가 도구 41종 231개
- 다) 교재·교구 486종 1,573개
- 라) 도서 20종 3,785권
- 마) 직업훈련교구 4종 29개
- 바) 성교육자료 10종 63개
- 사) 장애이해교육자료 12종 168개
- 아) 신체운동활동자료 54종 386개
- 자) 컴퓨터활용 CD자료 23종 716개

2) 가족지원

- 가) 부모상담 WITH 프로그램 운영
 - 4월~12월, 1~4기 신청 접수 및 개인별 8회 실시, 매회 50분 지원
 - 1기 4명, 2기 5명 상담 실시
- 나) 가족 상담지원 : 총 20명(개별상담으로 8회기 운영)
- 다)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복지서비스 가족지원 실시 :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3) 치료지원

- 총 779명(물리 80명, 작업 171명, 언어 423명, 심리상담 105명)

4)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 특수교육실무원 및 사회복지무원 지원

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운영

- 1) 치료사 배치 : 3개 지원센터, 4개 특수학교 81명 (시간제 포함) 배치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실(거점치료실 포함) 운영

| 구분 | 물리치료실 | 작업치료실 | 언어치료실 | 계 |
|------------|-------|-------|-------|----|
|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 1 | 6 | 12 | 20 |
|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 2 | 4 | 4 | 10 |
| 계 | 3 | 10 | 16 | 29 |

3) 특수학교 치료실 운영

| 구분 | 물리 치료실 | 작업 치료실 | 언어 치료실 | 청능 치료실 | 감각,운동 훈련실 | 기타 | 계 |
|--------|--------|--------|--------|--------|-----------|----|----|
| 울산혜인학교 | 1 | 5 | 3 | . | 1 | . | 10 |
| 울산행복학교 | 1 | 2 | 1 | . | 1 | . | 5 |
| 태연학교 | 1 | 1 | 2 | . | . | . | 4 |
| 메아리학교 | . | . | 1 | 4 | . | 3 | 8 |
| 계 | 3 | 8 | 7 | 4 | 2 | 3 | 27 |

4) 치료 지원 학생 수

| 구분 | 유치원 | 초등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학생수 | 66 | 358 | 173 | 239 | 836 |

사.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1) 특수교육보조인력 현황

| 구분 | 특수교육실무원 | 특수교육통학실무원 | 사회복무요원 |
|-------|---------|-----------|--------|
| 2015년 | 299 | 21 | 136 |

2) 특수교육실무원의 단계적 확대 배치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특수교육실무원 | 222 | 245 | 259 | 268 | 269 | 299 |

3)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 가) 특수교육보조인력 신규 채용자 : 30시간이상 직무연수
- 나) 특수교육보조인력 계속 채용자 : 연 2회 이상 직무교육
- 다) 특수학교 보조인력 연수를 위한 연수비 지원 : 4개교 3,200천원

아.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 1) 교육 분야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동법 제14조)
-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에 따른 홍보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상설모니터단 현장 모니터링 시 안내 및 점검

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 1) 방과후교육활동 강좌 개설
 - 가) 개설강좌 : 19기관 51개 강좌
 - 나) 지원학생 : 초·중·고등학교과정 139명
- 2) 방과후교육활동 개인 지원비 지원
 - 가) 지원학생 : 초·중·고등학교과정 1,546명
 - 나) 지원내용 : 월 100천원 내에서 실제 교육비 지원
- 3) 특수학교 토요일봄교실 설치·운영
 -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 공립2실, 사립1실, 총3실 지원 (각각15,000천원)
- 4)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차. 특수교육대상자 종일반 운영

- 1) 특수학교 및 유치원 : 13개반 66명
- 2) 특수학교 방과후과정반(종일반)운영비 지원 : 3개교 각각 25,231천원 지원

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1) 통학차량 이용 : 학생 479명
- 2) 통학비 지원 : 특수학교 727명, 일반학교 1,730명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2) 특수학급 급당 5회기 이상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 3) 상설모니터단 운영
 - 가) 상설모니터단 구성 : 3개 상설모니터단 설치·운영
 - 나) 학교 현장 점검 : 상설모니터단 운영 : 월1회 1교이상의 정기모니터링 실시
 - 다) 사안발생에 따른 상설모니터단의 특별모니터링 실시
- 4) 학기별 1회 이상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
- 5) 일반학생 대상 장애 인권동아리 운영 : 초, 중, 고 16개 동아리 지원

나.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학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2)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강화

- 3)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 4) 특수학교 어린이통학차량안전 현장점검 완료

다.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 1)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의 스포츠강사 직무연수(국립특수교육원) 지원
- 2)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전면 실시 및 운영 강화
- 3) 전 특수학교 교기 운영으로 체육활동 강화

| 학교명 | 울산혜인학교 | 울산행복학교 | 태연학교 | 메아리학교 |
|-------|--------|--------|------|------------|
| 교기 종목 | 볼링 | . | 육상 | 수영, 역도, 스키 |

- 4) 장애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 장애청소년 문화공연팀 지원 및 미술 작품 전시회

라.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 1) 연2회 이상 학생,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체험 도구 구비
- 3) 외부강사 초빙 장애인식개선 연수 : 3월, 유·초·중·고 관리자 및 업무 담당교사
- 4) 장애인식개선 관련 행사 실시
- 5) 유관기관 협력 체제 구축 : 시각장애인복지관 암흑카페 장애체험행사 참여

마.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업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학급 학습활동 지원 : 통합학급당 연간 15만원 지원
- 2) 각급학교별로 교내 연수 시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3) 건강장애학생 담임교사 연수회 운영 : 10월, 50명 내외
- 4) 장애학생 1인에 대하여 2~3명의 비장애학생 또래도우미 선정 및 역할 부여
- 5) 통합수업연구회 구성 및 운영 : 1개 연구회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1) 특수학교 학교기업(울산혜인학교)의 효율적 운영 및 특수학교 전공과 (4개교 30학급) 운영
- 2)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에너지고, 무룡중 등)
- 3) 특수학교 전공과교사 수업 연구회 1개팀 선정 및 지원

- 4) 고등학교 특수학급(45학급) 및 특수학교 전공과(24학급) 현장체험활동 및 직업교육 지원
- 5) 유관기관 지원체제 구축 및 연계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 가) 업무 협약체결 및 직업능력평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 실시 : 특수학교(급) 고3 중 취업희망 학생 대상
 - 나)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 특수학급(고3) 11개교 20명(9개 공공기관, 1개 베이커리 근무)
 - 특수학교 4개교 45명(특수학교 내 일자리 실습)
 - 다)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6명
- 6)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 직업훈련교실 운영
 - 특수학급(교) 30개교 고1,2,3학생 247명
 - 주1회 2시간(학기당 32~36시간)
 - 나) 맞춤형 현장 실습장 프로그램
 - 특수학급(교) 7교 고2,3학생 15명
 - 1일 8시간, 80시간 : 맞춤형사업장(조양산업, 대현기업, 다원텍)
 - 다) 취업희망교실
 -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학생 및 학부모 희망자 80명
 - 장애인작업활동 유관기관(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희망드리보호작업장) 및 장애학생 진학관련 기관(대구미래대학교) 현장 견학 연수 실시
 - 라) 직업평가 실시
 - 특수학급 고1 학생 102명 대상, 4월~7월 실시
 - 특수학급 고3 학생 취업희망자 대상, 10월 예정
 - 마) 중학교 진로직업교육 : 4개 거점 직업훈련실 운영 및 41개교 지원
 - 바) 학부모 진로·직업 교육 집합 연수 : 특수학교(급) 학부모 48명(4월9일)
 - 사) 사전훈련 : 취업(현장실습) 전 사전교육 2회 실시, 18교, 35명
- 7) 「진로·직업교육 연구회」 운영 : 5개 연구회 지원
- 8) 직업교육 자료 활용 : “현장 적용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활용
- 나.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1) 방송통신고등학교 장애학생 지원 : 9명
 - 2) 교육청 등록 평생교육기관 지원 : 2개 기관

Ⅲ. 향후 추진 계획

- 1. 특수교육 성과 및 교육력 제고
 -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의무교육 지원 및 홍보 강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강사 순회교육 강화
 - 3)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 원아 방과후과정반(종일반)의 확대 실시
 - 나.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1) 지원방식 : 1시간(40분 수업, 20분 상담)씩 주 2회 수업, 센터 내방 또는 가정 방문
 - 2)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수립 및 시행
 - 3) 지원현황: 영아담당 강사 3명이 센터 5명, 가정 5명, 총 10명 지원
 - 4) 부모상담 및 형제·자매 지원(상담), 교재교구 대여 등
 - 다.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구 분 | 2015 | 2016 | 2017 |
|--------|------|------|------|
| 특수학급 수 | 229 | 237 | 243 |

-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 1)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활성화
 -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의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마. 일반교원 및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책무성 강화
 - 1)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연수 이수 강화
 - 2) 특수교육 교원의 교과교육 직무연수 : 30명
 - 3) 특수교원대상 생활지도 직무연수 : 50명
 - 4) 학교별 직원 연수 시 특수교육 관련 연수 : 학기별 1회 이상
- 바. 장학활동 지원
 - 1)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 특성화고 컨설팅 장학 지원 : 연 18회(학기별 9회)
 - 2) 특수학급 미설치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 연 16회(학기별 8회)
 - 3) 특수학교 유치원 컨설팅 지원 : 연 6회(학기 3회)
 - 4) 초·중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 강남·북 2개 교육지원청 별도 계획 추진
 - 5) 교내 자율장학 지원 활성화 : 단위학교 자체계획 및 추진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1) 2016학년도 진학 희망학생 진단·평가 실시 : 7~8월 진단평가 실시
- 2)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3) 정확한 진단평가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연수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강화
- 2)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교수학습 및 상담 전문성 강화

다.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제14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제12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투대회
울산예선 실시 및 전국대회 참가, 상위성적 획득

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대여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기기 구입 및 대여
- 2) 가족지원 :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수시 운영

마.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1)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장애학생 지원 능력 제고
-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 운영 및 근무 여건 개선
- 3) 사회복지요원 교육 강화(성교육 및 안전교육, 장애학생 지원 교육 등)
: 신규 사회복지요원 및 기존 대상 직무교육 3회 실시

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1) 연중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 2)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 4교, 여름 및 겨울방학 운영비 지원
- 3) 달팽이학교(여름 및 겨울 방학학교) : 보조인력 지원
- 4) 특수교육대상자 종일반 운영에 따른 학생 안전 철저

사.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1)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지원 절차 준수
- 2) 특수교육대상자 차량이용 등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2) 고등학교 특수학급 급당 5회기 이상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 3) 관심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 4) 상설모니터단 운영 : 3개 센터 상설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실시
- 5) 상설모니터단의 월 1기관 학교현장 이상 정기모니터링 및 특별모니터링 실시
- 6) 장애학생인권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실시
- 7) 장애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연구모임 조직 및 운영 지원

나.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 1) 특수학교 교기 운영으로 체육활동 강화
- 2) 1교 1종목, 1인 1운동 시범학교 운영
- 3) 특수학급 학생의 체육기능 강화 교육

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 1)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 개최
- 2) 학생 작품 전시회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1) 직업생활 훈련 강화 : 특수교사 중심의 직업훈련교실(6강좌 이상) 운영
- 2)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 가)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지원고용 실시
 - 나) 맞춤형 현장 실습 프로그램 : 맞춤형사업장에서 현장 직무지도 실시
 - 다) 카페실습장 운영 : 교육청 내 카페를 이용한 카페실습 직무지도 실시
 - 라) 특수교육-복지연계 장애인 일자리 사업 : 공공기관 내 일자리 직무훈련
 - 마) 각급학교 내 현장실습 사업지원 : 학교 내 일자리 직무훈련
 - 바) 장애인 채용 기업체 현장 견학 연수 : 취업희망교실 연1회 실시
 - 사) 장애학생 진로 탐방 : 장애학생 진학대학 탐방 연1회 실시
 - 아) 취업 후 적응지도 : 월1회 이상 장애학생 취업기관 방문 지도
- 3) 진로 및 직업교육 기반 구축 및 직업교육 실무팀 운영
 - 가)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 및 훈련 지원 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 다) 지역사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의 맞춤형 사업장 구축
 - 라) 장애유형·장애정도에 적합한 직업능력 개발
 - 마) 정보공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연구회 운영 강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나.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 가)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진학상담 및 대학생 멘토 네트워크 지원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의 진학상담 업무 담당자 역할 강화
- 2)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 가) 학력인정 문자해독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방송통신고 활용한 교육 서비스 지원
 - 나) 교육청 지정 평생교육 시설에 장애인 참여 확대 및 홍보
 - 다) 유관기관 협력 강화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의 추진방향

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제고

-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2)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3) 세종누리학교(특수학교) 개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4)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5)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철저
- 6)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강화
- 7)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및 평가 조정 지원 강화
- 8)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나.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근무인력 인센티브 지원
- 3)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4)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6)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 7) 각 급 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 8) 특수학급 종일반·방과후 학교 운영
- 9)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다.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2) 장애학생 안전 강화
- 3) 범국민대상 장애인식 개선 사업 추진
- 4) 통합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2) 장애인 대학교 입학안내 및 평생교육 지원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증설 추진
 - 2015년 상반기에 유치원 특수학급 4학급 증설(총 10학급 운영)
- 2)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에 유아교육 관련 상담 교사 배치
- 3)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된 2명의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 4) 장애유아 보호자에게 의무교육에 대한 고지 및 초등학교 진학관련 정보 제공

나.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설치 추진
 - ※ 2015년 상반기에 세종 시 관내에 특수교육대상영아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영아 발생 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영아학급 설치 추진
-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유아특수전담교사 1명 배치
- 3) 장애영아의 조기교육과 치료지원을 위한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체계 안내
- 4) 상반기에 관내 주민 센터,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에 장애영아 교육 안내에 대한 홍보 자료 배포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생 법정정원 준수

- 1) 15년 7월 현재, 특수학급 법정정원 준수율은 100%임
 - 특수학급 신증설
 - 2015.03.01.자 : 15개 학급 증설(유4, 초5, 중4, 고2)
 - 2015.04.01.자 : 1개 학급 증설(초1)
 - 특수교육대상학생 추가 발생·전입에 따른 특수학급 수여 발생 시 특수학급 설치를 통한 법정 정원을 100% 유지 노력

라.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꿈빛나래학교'에 건강장애학생 6명 위탁교육 실시

마.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철저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활용
 - 2015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마련

- 2) 특수교육 '수업공개의 날' 운영 : 연2회

- 3) 특수교육 컨설팅 장학실시

바.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강화

-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강화
- 3) 학교 급별·교과별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활용 적극 권장
- 4) 세종시 특수교육의 환경을 고려한 개별화교육지원 매뉴얼 개발 추진
- 5) 세종시교육청 소통장학시스템을 활용한 개별화교육 컨설팅 실시

사.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및 평가 조정 실시

- 1) 세종시교육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후 학업성취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 조정 내용 규정 및 시행 조치

아.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특수교사 선발이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수화, 점자 등)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추진
- 2)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요원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 교육 총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 우선 전보 및 전보가산점 제도 실시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1)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 장애영역별·학교 급별 진단·평가팀 구성 : 2개 팀 24명
 -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지원기능 강화
 - 특수교육전문직(장학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및 센터 업무 전담
- 2) 특수교육전공자의 순회교사 채용 및 순회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3명의 순회교사(유, 초, 중)를 선정 배치
- 3)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2개의 상설모니터단 조직 및 운영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및 우수·미담 사례 수집·홍보
- 장애학생 인권보호 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전문가로 위원 구성 및 정기·특별 모니터링 실시
- 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지원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한 시설·인적 개선 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 세부 추진 계획」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 사업으로 구교육청 내 위치한 센터를 종촌동 소재 ‘세종종합복지지원센터’ 내 일부 공간으로 이전
- 5)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보상
 - 전보가산점 부여, 성과급 반영, 우수교원 포상 및 해외연수 우선 기회 제공
- 6)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YWCA, 세종지역자활센터, 세종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부모회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조
- 7) 세종시 특수교육에 적합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단층교육청 구조의 세종시교육청 특성에 따라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직접 지원 내용 강화
- 다.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1) 순회교육 지원 확대 : 9명 지원(유3, 초5, 고1)
 - 2) 순회 교육 지원 전담 교사 배치 : 3명(유치1, 초등1, 중등1)
- 라.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1) 스마트 러닝 지원
 - 세종스마트교육연구회 운영
 - 스마트기기 지원
 - 2) 정보 통신 활용 교육 강화
 - 3) 특수교육 e-러닝 시스템 활용 : 화상강의시스템 ‘꿈빛나래학교’ 위탁교육 실시
 - 4) 2015 제3회 세종특수교육정보화대회 개최 : 2015. 6. 24.(수)~6. 26.(금)
 -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학교별로 분산 개최하여 실시하였으며,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학교별로 감독관을 파견하여 대회의 공정성을 기함
 - 5) 특수교육 홈페이지 구축(<http://special.sje.go.kr>)
- 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치료지원 및 관련 서비스 지원 : 140명, 239,950천원

- 2) 통학편의 제공 : 100명, 96,300천원
 - 3) 장애학생 가족 지원
 - 가족지원 행사실시(20,000천원) 및 단체 지원(3,000천원)
 - 4) 특수교육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연간 10,000천원
 - 바.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 1) 배치현황 : 유급 특수교육 실무원 30명
 - 2)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강화 : 신규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직무연수 30시간 실시 및 재계약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센터 자체 교육실시
 - 3)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예산 : 1,010,340천원
 - 사. 각 급 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 1) 2015.06월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현황 조사 및 지원금 배부 : 350,000천원
 - 2) 조치원대동초병설유치원에 유아 특수학급 시설 증축비 지원 : 150,000천원
 - 아. 특수학급 중일반·방과후학교 운영
 - 1) 특수교육기관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313,920천원
 - 2)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 79,010천원
 - 3)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16개 강좌 : 40,000천원
 - 여름 계절학교 8개 강좌 19,000천원
 - 겨울 계절학교 8개 강좌 21,000천원 계획
 - 자.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1) 통학편의 지원 학생 관리 철저
 - 월별 학교 출석확인 및 대중교통 이용 내역 조사 후, 교통비 지급
 - 2)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 교육청 예산에서 환경개선비 책정 및 학교 요구조사를 통한 환경개선비, 교구·설비 확충비 지원(2015.07)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2)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상설모니터단’ 운영 : 초·중 2개단 운영
 - 3)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운영 계획 수립(2015.03)

- 4) 장애학생 인권 보호 관련 상시모니터링 실시
 - 2015.08월까지 29개교 학교 정기모니터링 및 1개교 특별모니터링 실시
- 5) 세종 YWCA 및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연계한 장애인권 교육 및 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 성 폭력 예방교육 : 23개교 80시간, 예산 4,850천원
 - 일반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 22개교 88시간, 8,400천원
 - 일반 학부모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 2개교 2시간
 - 일반교사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 10개교 10시간

나.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각 급 학교에 장애학생 등·하교 등 안전 지원을 위해 특수학급과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체 운영
- 2) 특수학급과 학교담당 경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 안전보호, 교통 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추진
- 3) 학교별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시, 장애학생이 우선 대피할 수 있는 조치 계획 포함

다. 장애인식 개선 사업 추진

- 1) 관내 모든 학교에서 연2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및 장애체험 활동 실시 : 연 2회
- 2) 교육청 직원 및 관내 교장단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2015.03.23.)
 - 강사 : 김은숙(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
- 3)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장애이해교육 지원 : 초1개교, 중1개교

라.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교육연구회 조직 시 일반교사 참여 : 특수교사 72명, 일반교사 15명
- 2)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원적 담임교사의 의견 적극 반영
- 3) 일반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교육 강화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 참여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1)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한 장애인 고용 창출효과 기대

- 2014년 3명의 졸업자 및 2명의 졸업예정자를 인턴으로 채용하고, 2015년에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5명 정식 채용
- 2015년 하반기에 총 10명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 채용 예정
 - ※ 9월 1일 개교하는 세종누리학교(특수학교)에 장애인일자리 사업 및 청소용역 계약 시 장애인 우선 채용 권고
- 3)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및 각 급 학교 일자리 참여 적극 홍보
- 4)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연구회 조직 및 운영 : 1팀
- 5) 특수 진로·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 예산 82,100천원

나. 장애인 대학교 입학안내 및 평생교육 지원

-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 가) 고등학교 장애학생 대상 대학입학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학 정보 제공 강화
- 2)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인프라 구축
 - 가) 교육청 내 평생교육연구원의 성인프로그램 참여 권장
 - 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인프라 구축

Ⅲ.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제고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조기 정착

- 1) 의무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지속
 - 법정 정원을 100% 유지 계속
- 2)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 대상학생 및 교육 기관 현황 파악
- 3) 일반유치원 배치 희망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속적 추진
- 4) 연도별 추진 계획

| 추진 내용 | 연도별 추진 목표(단위 : 명) | | | | 비고 |
|-----------------|-------------------|------|------|------|----|
|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순회전담 유치원특수교사 배치 | 1 | 1 | 1 | 1 | |

나.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1) 장애영아 무상교육 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 홍보 실시

- 2) 장애 영아 실태 조사 실시
- 3)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확대
- 4) 장애영아 무상 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5) 연도별 추진 계획

| 추진 내용 | 연도별 추진 목표(단위 : 학급) | | | | 비고 |
|------------|--------------------|------|------|------|----|
| | 2015 | 2016 | 2017 | 2018 | |
| 장애영아 교실 운영 | 1 | 1 | 1 | 1 | |

다. 특수교육기관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세종누리학교(특수학교) 설립 추진
 - 목적 : 중도·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으로 세종특수 교육 발전
 - 개교예정일 : 2015. 9. 1.
 - 설립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1지역
 - 부지면적(건축연면적) : 11,581㎡
 - 소요예산 : 230억원(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장애영역 : 중증 중도·중복장애(정신지체 포함)
 - 완성 학급수 및 학생수 : 35학급, 221명

| 구 분 | | 중도·중복 장애(정신지체 포함) | | | | | 계 |
|-------|-----|-------------------|-------------------|-------------------|-------------------|-----|-----|
| | | 유 | 초 (학년별 2학급) | 중 (학년별 3학급) | 고 (학년별 3학급) | 전공과 | |
| 2015년 | 학급수 | 1 | 6 | 3 | 3 | - | 13 |
| | 학생수 | 4 | 36 | 18 | 21 | - | 79 |
| 2016년 | 학급수 | 1 | 12 | 6 | 6 | 2 | 27 |
| | 학생수 | 4 | 72 | 36 | 42 | 14 | 154 |
| 2017년 | 학급수 | 1 | 12 | 9 | 9 | 4 | 35 |
| | 학생수 | 4 | 72 | 54 | 63 | 28 | 221 |

- 2) 장애영역별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제공
- 3)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과밀학급 해소

- 4) 특수학급 교원 부족 충원 : 특수교육 교원 정원 충원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배치
- 5)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세부 사업 내용 | 연도별 추진 목표(단위 : 교, 급) | | | | 비고 |
|----------|----------------------|------|------|------|----|
| | 2015 | 2016 | 2017 | 2018 | |
| 특수학급 | 12 | 41 | 25 | 13 | |
| 특수학교 | 0 | 1 | 0 | 0 | |

라.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 1)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화상강의시스템 '꿈빛나래학교' 위탁 교육 강화 : 초4명, 중 1명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1) 순회교육 지원 확대
- 2) 특수교육 대상자 순회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신장 강화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전환)교육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지원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 강화
- 3) 학교 급별·교과별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활용 적극 권장

사.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 1)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력평가 실시 방법 개발·보급
- 2) 장애특성에 따른 평가조정제의 도입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가.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1) 특수학급 설치교의 승강기 설치 지원
- 2)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확대
- 3) 연도별 추진 계획

| 추진 내용 | 연도별 추진 목표(단위 : 백만원) | | | | 비고 |
|-----------------|---------------------|------|------|------|----|
|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일반학교 편의시설 설치 확대 | 500 | 200 | 200 | 200 | |

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1)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특수교사 배치 확대
- 2) 통합학급 교재·교구 지원
- 3) 연도별 추진 계획

| 추진 내용 | 연도별 추진 목표(단위 : 명) | | |
|--------------|-------------------|------|------|
| | 2015 | 2016 | 2017 |
| 순회특수교사 배치 확대 | 3 | 3 | 3 |

※ 2015.09월 개교예정인 특수학교 내에도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제도 검토

3.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

- 1) 일반학교 학생의 장애이해·체험교육 연 2회 이상 추진
- 2) 장애인 인권 교육 및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
 - 전국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 3) 연도별 추진 계획

| 구분 | 2015 | 2016 | 2017 |
|--------------------|------|------|------|
| 전체 학교수(예정) | 96 | 110 | 120 |
| 연1~2회 장애이해 교육실시학교수 | 96 | 110 | 120 |
| 실시학교비율 | 100% | 100% | 100% |

나. 통합학급 운영 강화

- 1)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연수 강화(원격직무연수, 맞춤 직무 연수)
- 2) 모든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 기회 확대
 - 일반교원 연수과정 편성 시 특수교육강좌개설 100% 추진
 - 특수학급 수업 참관 및 협력교수 확대
 - 통합교육연구회 지원 및 통합학급 실천 모형 및 자료 개발

| 추진 내용 | 연도별 추진 목표(단위 : 개) | | |
|---------|-------------------|------|------|
| | 2015 | 2016 | 2017 |
| 통합교육연구회 | 2 | 2 | 2 |

※ 유·초등 통합교육연구회 1개, 중등통합교육연구회 1개

다.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일반학교교육과정 연수 강화
- 2)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관련 연구 기회 확대
- 3) 직업교육 연수 강화
- 4) 특수교육 원격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 및 전환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2)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직업교육-직업훈련-취업알선」 연계 체제 구축
- 4) 고등학교 특수학급 통합형 직업 중심 거점학교 지정 운영
- 6) 지역사회 밀착형 현장 실습 강화
- 7) 직업교육 연구회 운영 지원 확대
- 8) 연도별 추진 계획

| 추진 내용 | 연도별 추진 목표(단위 : 교) | | |
|--------------------------|-------------------|------|------|
| | 2015 | 2016 | 2017 |
| 특수학급 「통합형 직업 중심 거점학교」 운영 | 0 | 1 | 1 |
| 직업교육 연구회 지원 | 1 | 1 | 1 |

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1) 특수교육관련 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2) 장애성인의 요구를 파악하여 평생교육기관에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 추진
- 3) 연도별 추진 계획

| 추진 내용 | 연도별 추진 목표(단위 : 기관 수) | | | 비고 |
|-------------------------|----------------------|------|------|----|
| | 2015 | 2016 | 2017 | |
| 평생교육 운영 관련기관수 (평생교육연구원) | 1 | 1 | 1 | |

※ 세종시교육청 소속 '평생교육연구원'이 2015년부터 '교육연수원'으로 명칭 및 기능이 변경되어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업무 공조 계획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 제기

경기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경기특수교육의 약속

-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학생이 그 어떤 경우에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혁신을 통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혁신학교를 넘어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혁신을 이루어 장애학생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한 학생중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학생 개개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학생들이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중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펼쳐 가정이 편안하고 학생들이 행복하며,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교원이 열정을 갖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은 교육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전문가입니다. 교육 전문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본질을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학교는 장애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 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수교육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하여 함께 참여하고 의사결정하는 공간이 되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학교 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은 학교가 학생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정책의 출발점을 학생과 학교로 옮기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2. 경기특수교육 중점정책

- 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 나. 학교혁신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
- 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한 학생중심교육
- 라.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 마.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한 지원체제
- 바.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
- 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 아. 학교 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행정

3. 운영 방침

- 가. 「경기특수교육 기본계획」은 경기특수교육의 중점정책과 세부사업을 설정한 것으로서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지침 역할을 한다.
- 나.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는 「경기특수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과 지역 조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한다.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혁신교육
 - 1)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
 - 2) '혁신공감학교' 운영
-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특수학급 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편성·운영

- 나)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다) 영아 및 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 학교교육과정 다양화
 - 가)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활성화
 - 나) 방학분산제를 통한 4분기제 교육과정 운영 권장
- 3) 배움중심수업의 강화
 - 가) 교사 간의 공동수업개발과 수업성찰 문화 조성
 - 나) 토의·토론수업, 협력수업, 프로젝트수업 활성화
- 나. 개별화교육 강화
 -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가)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나) 통합교육협의회와 연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다) 개별화교육계획의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
- 다. 평가방법의 다양화
 - 1) 다양한 평가도구와 방법으로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
 - 2) 개별화교육계획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 개선 사례 발굴 및 홍보
 - 나) 평가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3) 장애학생 학력평가 관련 평가조정제 운영
- 라. 교원 전문성 신장과 연구 환경 구축
 - 1) 지역·학교 단위 학습공동체 운영
 - 가) 학습공동체 사례 발굴 및 공유
 - 나) 교사학습동아리와 교과연구회 활성화 지원
 - 2)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교원 연수의 내실화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 나) 특수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 제공
- 마.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1) 장애 조기발견 체제 구축
 - 2)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진단·배치 체계 확립 및 홍보

- 3) 진단·평가 내용 체계화를 통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가) 진단·배치·관련서비스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나) 취학의무 면제, 유예자 및 과령자에 대한 선정·배치 유의
- 바.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강화
 - 1) 장애영아 무상교육 강화
 - 가) 장애가 의심되는 영아의 정보를 수집·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아 실태파악
 - 나)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무상교육 홍보 및 지원
 - 2) 장애영아 담당교사 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
- 사.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의무교육 전면 시행 철저
 - 가) 만 3세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무교육 홍보 및 이행 철저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 운영
 - 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라) 일반학급 배치 장애유아 대상 교육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가)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관리자 및 담당교사 연수
 - 나)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다) 학부모 및 통합학급 교사 지원
- 아. 순회교육 내실화
 - 1)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 철저
 - 나) 안전 및 성교육 강화
 - 2) 순회학급 운영
 - 가) 특수학급과 동일한 운영비, 급당경비 등 예산 지원
 - 나) 순회학급 담임 역할 수행 지원
 - 다)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 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 가)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우선 교육 지원 가능
 - 나) 화상강의(꽃밭무지개학교) 등 다양한 교육 지원

- 다) 개별적인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 라) 원격학급 담임교사 연수 및 출결 등 학적관리 철저
- 2) 병원학교 운영 지원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1)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2) 치료지원 다양화 및 내실화
- 3)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등의 지원
 - 가) 특수교사의 보조공학기기 활용능력 향상 연수
 - 나) 보조공학기기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4)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 5)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지원
 - 가) 운전원과 보조인력 대상 통학안전 연수 실시
 - 나)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나.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 1)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및 자유수강권 운영
- 2)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 3) 늘해랑학교 운영
- 4) 토요일봄교실, 토요일방과후교실, 토요일스포츠데이 운영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1) 경기특수교육 정보자료실(kysenet) 운영
- 2) 스마트러닝 지원으로 수업 개선
 - 가) 스마트러닝 기기 대여 및 활용
 - 나) 스마트러닝 연구회 운영 및 수업사례 발굴

라.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특수학급 설치를 통한 의무교육 지원 강화
 - 가) 일반학교 설립 계획 시 특수학급 설치 계획 포함
 - 나) 특수교육 교원의 연차적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확보
- 2) 특수학교 설립의 다양화·특성화·전문화
- 3) 장애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 1) 장애학생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기능 강화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바. 현장 중심 교육행정 강화

- 1)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로 특수학급 운영경비 확보 철저
- 2) 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 집행 유의

사. 특수교육정책협의회 운영

- 1)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정책협의기구 마련
- 2) 정책제안, 모니터링, 현장반응 피드백 등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 3) 특수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학생 안전지원 강화로 안전한 학교 여건 조성

- 1)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 지원
- 2)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3) 관할 경찰서 협의체 운영 지원

나.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로 인권존중 분위기 조성

- 1)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로 인권존중 분위기 조성
 - 가) 일반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및 장애학생 폭력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나) 장애학생 자기결정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다) 교직원 대상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관련 연수 및 홍보
- 2)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교육 학기당 1회 이상 실시
 - 나) 일반학생 성교육 시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다. 장애이해교육 활성화로 장애인식 개선

- 1) 장애이해교육 실시
 - 가) 교육과정 연계한 장애이해교육 실시
 - 나)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 2)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문화 조성
 - 가) 특수교육 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나) 다양한 통합동아리 활동 운영

라.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1) 통합교육 여건 개선 및 지원 강화

가) 학생 수준에 맞는 통합교육 수업 참여계획 수립

나) 통합교육협의회 연 1회 이상 개최

다)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2)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마.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교원 역량 강화

1) 각급학교 관리자의 통합교육 운영 역량 강화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방안 모색

3) 통합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바. 중도 정서·행동문제 조기 개입 및 지속적 중재

1) 전문적 중재 지원

가) 중도 정서·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지원단 구성

나) 중도 정서·행동문제 중재 지원

2) 문제행동 중재 능력 향상

가) 중도 정서·행동장애 지도 직무연수 실시

나) 가정과 연계하는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학부모 연수 실시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가.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1)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2) 진로·직업교육 정보 공유

3)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4) 진로·직업교육 평가도구 활용

나. 진로·직업교육의 다양화로 취업지원 강화

1)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 활성화

2) 전공과 및 특수학교 학교기업 효율적 운영

3) 다양한 일자리 개발

4)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가) 각급학교 내 일자리 사업 운영 내실화

나)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 확대

다. 특수교육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마련

1)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2)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3) 교육과정 운영 시 지역의 교육 자원과 인프라 활용

라. 특수교육 마을공동체 시범 운영

1)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품앗이

2) 예·체능 교육기부 활성화

가) 도 단위 교육기부 협약 추진

나)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예·체능 영재학생 발굴 및 지원

3) 지역사회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활용

4) 진로직업교육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2015년도 추진 실적 중간점검>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과제 | 추진사항 | 우수사례 | 보완 및 개선 사항 |
|------------------|---|---|---|
| 장애 영유아 교육의 내실화 | · 개별화가족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영아의 발달, 정서적, 치료 지원에 관하여 가정과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 지원함 · 장애영아학급 교육과정 점검 및 연수 | · 2015.3.1.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학급 신설로 가정 순회교육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영아교육 지원 | · 장애영아학급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지침 및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므로 장애영아 교육과정 개발 필요 |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마련 · 경기도교육과정을 반영한 2015 경기도 특수교육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개정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4-233호) ·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실시 (2014년 ~2015년) · 장애영아학급 23개, 전공과 교육과정 37교 점검 및 승인 · 장애 유아특수학급 교사 대상 교육과정 운영 역량강화 연수 실시(2015년, 25명) · 특수교육 컨설턴트 역량강화 연수 (128명, 30시간, 3,000천원) · 교육과정 컨설팅 장학 (연중 1,082교, 총 1458회) | · 2015 경기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교과별 핵심역량에 따른 교과별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방법 제시, 중도중복 교육과정 교과별 지도내용 제시 ·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문가 연수 실시 (2015년 70명, 10,000천원) · 학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하여(93.8%) 교사의 교육과정 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 ·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19,000여명 중 11,000명(참여율 58%) · 2015년 교육부 지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 · 국립특수교육원 차원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문가 연수,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를 통한 전문가 양성 필요 |
|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확보 | ·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 연수 - 컨설턴트 역량강화연수 (128명, 30시간, 3,000천원) -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210교 394회) - 저 경력 기간제 교사 SOS멘토링 · 일반교원 대상 특수교육연수 - 통합학급담당 원격직무연수 연 3,340여명 - 원격 수화연수 개발 및 운영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장애이해 연수 (2015년 787명) - 공익근무요원, 실무사 직무연수 실시 (2014년 18,000천원, 600명) - 모든학교 전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실시(2,330교) · 특수교육교원 경력개발 및 사기진작 -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형직업교육거점 학교 교사 승진가산점 부여(월 0.012점) | · 저 경력 기간제 교사 SOS 멘토링 실시(교육지원청별 경력교사와 저경력교사 1:10 비율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특수학급 운영 지원 · 원격 수화연수 개발,운영 - 한국교원연수원 : 2015년 787명 - 경기도교육연수원 : 2015년 부터 2년동안 800명 연수 추진, 30,000천원 · 장애영아학급 인가(23학급) 및 기간제교사(23명)로 전환 |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 부장교사 배치 추진 · 특수학교 과정보별 복수교감 배치 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우개선 방안 마련(부장교사 접수 및 수당 부여, 3년 이상 경력 시 승진가산점 제한 폐지 등) ·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교사 치우개선 방안 마련 (거점학교 근무 특수교사 전원에게 승진가산점 부여) |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과제 | 추진사항 | 우수사례 | 보완 및 개선 사항 |
|-----------------------------|--|---|---|
| 특수교육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 · 관계 법령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지침을 근거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배치 업무 처리 · 진단 평가를 위한 병원 및 유관기관과 협약 체결(25개 교육지원청), 협력 관계 유지 개선 |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을 위해 진단 평가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탑재 및 시청, 주민센터 등 기관과 연계 하여 홍보 강화 | ·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취학의무 대상 특수교육대상아동의 적정연령 취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 | · 2015 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치료지원대상자 9,608명 10,682,427천원 지원 방과후학교 11,000 공경하고 절차에 맞게 처리함 · 바우처 전자카드(핀e카드) 사용으로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및 교육 이력 관리 · 치료사 89명 치료교육 지원(2,189,934천원) · 진단평가 2,000명, 200,000천원 지원 | ·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가족 지원 등의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약 체결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전문성 강화 · 방과후학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 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함 · 방과후학교 종류가 다양하나 방과후교실 외에 지원대상 소수사 사업 통합 필요 |
| 특수교육 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 | · '19년까지 특수학교 7개교 설립 추진, 471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 · 연 2회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로 특수교육수요 부응 | · 특수학교 부지 주변 민원해소 방안 강구(주민 설명회, 주민편의 시설 설치 등) |

3.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 과제 | 추진사항 | 우수사례 | 보완 및 개선 사항 |
|---------------------|---|---|---|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 · 관심대상 장애학생 조사,관리 · 장애학생 문제행동중재 지원체제 구축 하여 실시 예정('15년 거점센터 2개, '16년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처방, 중재 프로그램 실행하는 전문가팀 운영) | ·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컨설팅 실시('15년 5.12) · 장애학생 인권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15년 5~10월) · 장애학생 문제행동중재 지원 체제 구축하여 실시 예정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처방, 중재 프로그램 실행하는 전문가팀 운영) | · 일반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 보호 교육 강화 필요(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장애 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장애학생 담당 교원의 인권 보호 연수 강화 필요(연 2회 이상 실시) · 장애학생 거주 생활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 필요 |

| 과제 | 추진사항 | 우수사례 | 보완 및 개선 사항 |
|-----------------------|--|--|--|
|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방법 안내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협력 지원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 교육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시간을 활용한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학급 담임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컨설팅 지원 ·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매뉴얼 배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자, 특수교사,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중요성 합의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연수, 예산, 인센티브 등 지원 필요 |
| 특수교육 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까지 특수학교 7개교 설립 추진, 471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로 특수교육수요 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부지 주변 민원해소 방안 강구(주민 설명회, 주민 편의 시설 설치 등) |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과제 | 추진사항 | 우수사례 | 보완 및 개선 사항 |
|--------------------------------------|---|---|---|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7교, 학교기업 3교,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5개 운영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373명 고용 · 직무위탁교육 - 2014년 4교, 25명 - 2015년 2교, 2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각급학교내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100명 선발 예정 (총 473명 고용) · 2014 직무위탁교육 시범운영 결과 14명 취업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확대(7교->8교) 오산정보고 신설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지원 직업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진로직업시스템 구축으로 제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 · 경기도교육청 내 장애학생 바리스타카페 운영(2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이후 각급학교내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계속 추진 검토 |

| 과제 | 추진사항 | 우수사례 | 보완 및 개선 사항 |
|----------------------|---|--|---|
|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계자 장애인 평생교육 마인드 함양 및 전문성 제고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성과 공유를 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지원 근거 마련(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11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1개소 관계자 직무 연수를 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마인드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 지식 공유 · 2015년 3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성과 사례집을 발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를 마련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유도하여 11개소 중 10개소가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1개소에 대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변경등록을 하여 지원근거 마련 |

III. 향후 추진 계획

1. 교육과정 지원 강화

가. 2015 경기도교육과정 수립

- 경기 혁신교육 철학을 반영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수립
- 특수교육 교육과정 각 교과별 핵심 역량에 따른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보완

나. 장애영아교육과정 운영 지침 마련

- 장애영아 교육과정 운영 지침 및 사례 제시
- 장애영아교사 대상 교육과정 연수 실시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 토요연수를 통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추진
- 특수학교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평가

강원도교육청

2. 특수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가. 순회학급 재구조화

- 1) 순회학급 내실화 방안 마련
- 2) 순회학급을 특수학교로 재배치하여 장학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나. 장애학생의 교육과 체험, 취업, 여가를 연계할 수 있는 특수교육 마을공동체 구축

다. 특수교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3. 특수교육지원 서비스 고도화

가.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나. 특수학급 지원 방안 마련

다. 장애학생 문제행동중재 지원 시범 교육청 운영

4.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가. 각급학교 내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나. 지자체와 연계한 장애학생 일자리 신규직종 발굴

다. 일자리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추진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강원특수교육 지표

모두가 행복한 특수교육

2. 강원특수교육의 기본 방향

가. 특수교육 균형발전 도모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다. 국가 책무성 강화로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추구

3. 강원특수교육 주요시책 및 구현중점

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제고

나.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다.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라.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강화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규모(1인 기준 월 공립 150천원, 사립 361천원)

· 초등학교 취학유예 후 유치원교육을 받을 경우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2)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현황 및 배치 유아현황 파악 (연중)

3)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17센터)

4) 지역교육청 단위로 해당 지역의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소속 직원 연수 희망조사 및 실시(년 1회이상)

5)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순회교육 실시,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계획 마련

나. 장애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 1)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영아 무상교육에 대한 홍보 및 실태조사
- 2)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영아 진단, 부모교육 및 상담 연중 운영
·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지도사 배치

다.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단위 : 학급)

|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2015 | 1 | 6 | 9 | 5 | 21 |

라.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운영 강화

- 1) 병원학교 2학급 운영 지원 : 강원대병원학교, 강릉아산병원학교
- 2)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화상강의 시스템 “꽃밭무지개 학교” 활용
- 3) 건강장애학생 원격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연수 : 년1회

마.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강화

- 1) 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연구회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연중)
- 2) 컨설팅장학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적용 강화 전달

바. 일반교원 및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지역교육청별로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직무연수 실시(연1회)
- 2) 통합학급 담임교사 대상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 이수 : 연 700명
- 3) 특수교육 직무연수 개설 확대 및 통합학급 교사 연수 참여
·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등
- 4) 일반학교 교원 연수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강화 교육과목 포함 요청
- 5) 국립특수교육원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일반학교 유·초·중·고등학교 교사·교감 및 교장 연수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 (연 60명)
- 6) 특수교육 교원 연수 기회 확대
· 특수교육 1정 자격 연수 : 유2명, 초8명, 중13명 총 23명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1)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진단·평가 의뢰 안내 홍보 : 17개 지역청, 1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의무·무상교육 등 홍보 리플렛 배부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지침 연수 : 1회, 50명(장학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구성 운영 : 18개팀 운영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구성 : 본청 1, 지역청 17개 운영
- 기능
 -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사항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 설치현황 : 도특수교육지원센터 1, 17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총 18센터
- 설치장소 :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내, 또는 인근학교의 별도공간 확보
- 시설활용내용
 - 지역사회 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홍보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상시 개방으로 장애인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
- 지역별 여건에 따른 진단인력 배치
 - 정규 순회특수교사 : 18명
 - 정원의 기간제교사(순회교육담당) : 17명
 - 치료사 : 53명

· 역할

- 상담·홍보활동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및 진단·평가 지원
- 특수교육활동 지원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통합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지원
- 장애학생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구분 | 특수학교 순회교육 | | 특수학급 순회과건교육 |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학생수 |
|------|-----------|-----|-------------|-----|------------------|
| | 학급 | 학생수 | 학급 | 학생수 | |
| 2015 | 5 | 12 | 1 | 1 | 429 |

라.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설 및 기기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별 보조공학기기 배치 및 지원
- 특수교육 교원의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연수 지원 및 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의무 실시(연1회)
 -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도 포함

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치료지원 현황

-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1,000명
- 지원기준 : 100천원*10개월, 연1,000천원(1인 기준)
- 시기 : 연중
- 치료지원 내용 : 물리·작업·언어·음악·미술치료 등

2) 가족지원 현황 : 지역센터별 가족캠프운영(년1회)

3) 통학지원

- 특수학교 통학차량 : 25대
- 통학비 지원기준 : 1,508명, 1189백만원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1)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현황

- 지원학교 :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유·초·중·고등학교 255학급

2)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현황

- 특수교육실무원 : 314명
-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지사 : 70명
- 자치단체지원 : 11명

마.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1)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 모든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산 확보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

- 편의시설 관련 규정 안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각급학교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 마련

사.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토요프로그램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

1) 특수교육대상학생 토요방과후프로그램 운영

- 지원기준 : 10천원*30주 연300천원(1인 기준)
- 운영학교 : 7교, 150명

2) 특수교육기관 방과후학교 운영

- 지원기준 : 100천원*10개월, 연1,000천원(1인 기준)
- 지원학생수 : 2,270명

3) 특수교육대상학생 방학중학교 운영

- 대상 : 유·초·중·고·특 특수교육대상학생 1,680명
- 지원기준 : 3,500천원*2회(여름·겨울방학), 7,000천원
- 운영프로그램 : 특기적성 및 체험활동, 현장학습 등

아.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1)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 대상 : 특수학급 356학급(유 15, 초210, 중 78, 고 53)
- 지원기준 : 특수학급 당 4,000천원(신설특수학급 25,000천원)
- 용도 : 교재교구구입, 학습자료제작, 도서구입, 특수학급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지도 강화
 - 특수학교의 장애유형별,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 지도
 - 특수학교 경영평가 실시를 통해 특수학교 교육의 질 제고 및 선도적인 학교경영 모형 제시
 - 3)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실시
 -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특수학교(급)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장학 실시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 도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연2회)
 - 유·초·중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비장애학생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일반학교 중심(연2회)
 - 일반학교 고등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비장애학생 : 도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연2회
 -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상설모니터단' 운영
 -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대상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상설모니터단」 설치·운영
 - 매월 1회 이상 지역내 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초·중·고 학생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연2회 의무 실시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 나. 장애학생 안전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2)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강화
- 다.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화
- 1)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2)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육전담인력 전면 배치
 - 특수학교에 체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전면 배치(교당1명)
- 라.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1) 모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 : 연2회 이상 실시
 - 2)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식 개선 행사 실시
 - 3)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이해 내용 지도 자료 활용
 - 4) 학교급별 장애체험 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추진
- 마. 특수학급 및 특수학급 운영 개선
- 1) 특수학교 운영 개선 : 학교시설개발을 통한 지역주민과 장애인의 여가활동 지원, 특수교육관련보조원 활용 및 관리 강화,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확대
 - 2) 특수학급 운영 개선 : 특수교육이해증진을 위한 장애이해교육실시, 특수교육관련 보조원 활용 및 관리 강화
- 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업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 2) 통합학급운영비 지원 : 급당 130천원, 총1,575학급 지원
 - 3)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관리자 통합학급 운영·관리 역량 강화
 - 4) 일반학교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5)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확대
 - 6)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7) 교육지원청별 학년 초 통합학급 담당교사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워크숍 실시
 - 8)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9) 통합학급담당교사의 연수 지원 : 직무연수 60시간, 550명지원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전문기관에 위탁교육 기회 확대화
 - 지역 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폴리텍 대학 등 직업교육전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분석, 협력 추진

- 2) 전문대학 연계 장애학생 및 학부모 취업·창업교육 지원
- 3)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사 연수 활성화
- 4)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역사회체와 MOU체결
- 5)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2개교(태백미래학교, 속초청해학교)
- 6)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효율적 운영 : 영서고등학교
- 7)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전공과 : 21학급
 -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 거점형으로 4개 센터 운영
- 8)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 9)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나.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 2) 교육문화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5개 교육문화관
- 3) 장애인 평생교육 설치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

Ⅲ.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강화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인원(68명), 지원규모(1인 기준 월 공립 150천원, 사립 361천원)
- 2) 특수학급 증설 및 순회교사 확보 등 만3세 이상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이행 철저
- 3)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학부모, 교사 지원을 통한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청별 계획 수립

나. 장애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 1)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 2)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담당 연수 및 부모 교육 제공
- 다.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유·초·중·고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운영

(단위 : 학급)

| 추진내용 | | 연차계획 | | 비고 |
|------|---|------|------|----|
| | | 2015 | 2015 | |
| 특수학급 | 유 | 1 | 8 | |
| | 초 | 6 | 2 | |
| | 중 | 9 | 3 | |
| | 고 | 5 | 3 | |
| | 계 | 21 | 16 | |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추진내용 | | 연차계획 | | 비고 |
|-------------------------------|---------------------|------|------|----|
| | | 2015 | 2016 | |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지원 | 일반학급 배치 순회교육대상자수 | 429 | 440 | |
| | 지원교사수 | 35 | 35 | |

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 확대 운영

| 추진내용 | | 연차계획 | | 비고 |
|------|------|-------------|-------------|----|
| | | 2015 | 2016 | |
| 치료지원 | 학생수 | 1060 | 1070 | |
| | 지원예산 | 1,030,000천원 | 1,050,000천원 | |

다.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1)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른 설비·비품을 우선 확보

-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
 -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운영비’에 반드시 편성·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집행지침에 포함
- 라.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토요프로그램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
- 1) 특수교육대상 부모 보육부담 경감 및 사회 참여 확대
 - 2) 방과후 및 방학중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

| 추진내용 | | 연차계획 | | 비고 |
|----------------------------------|---------------|-------|-------|----|
| | | 2015 | 2016 | |
| 특수학교(급)방과후· 토요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 토요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 200 | 200 | |
| | 방과후학교 지원학생수 | 2500 | 2500 | |
| | 방학중학교 과정수 | 230과정 | 230과정 | |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안전 강화

- 1)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교정을 두도록 지도
- 2) 지역교육청 설치 상설모니터단 활동 확대 지원 및 연수 실시
- 3)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나.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및 일반교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다.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1)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

라.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업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교육 내실화 및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와의 협업을 위한 지원 강화
- 2) 통합학급관리자 장애이해 연수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연찬회 실시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1)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우수업체·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연계운영,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운영 다양화 및 활성화 지원
- 2)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인근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지원
- 4)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 설치·운영의 다양화 추진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으로 특성화하여 전공과 운영
- 5) 다양한 진로 정보 및 특수교사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
 - 특수교사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직업교육 역량 강화

나.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진학상담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2) 장애인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인프라 구축
- 3) 평생교육 담당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공유 및 홍보

충청북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충북특수교육 지표

가. 함께 행복한 특수교육 실현

2. 충북특수교육의 기본방향

가. 특수교육 선진화를 위한 책무성 강화

나. 교육적·물리적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 실현

다. 유관기관 간 협력, 학문간 융합에 기반한 전문성 강화

3. 충북특수교육 중점 추진과제

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나.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다.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라.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1) 의무교육 시행

가)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등 홍보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 : 11센터

다)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순회교육 실시 및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1) 특수교육대상영아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교실 운영 및 순회교육 제공

3) 특수학교 영아학급 운영 : 2교, 3학급

다.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특수학교(급) 학생 법정정원 충족 학급 확대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학생 법정정원 준수 노력

2) 2015학년도 특수학교(급) 및 전공과 신·증설

가) 특수학교(급) 및 전공과 신·증설 : 28학급

| 구분 | | 영·유아 | 초 | 중 | 고 (전공포함) | 계 | 비고 |
|------|----|------|----|---|-------------|----|---------------------------------|
| 특수학급 | 신설 | 6 | 11 | 1 | 3 | 21 | 유7, 초11, 중5, 고5 계 : 28학급(순증) |
| | 증설 | 1 | 3 | 5 | 2 | 11 | |
| | 폐지 | | 3 | 1 | | 4 | |
| 특수학교 | 증 | 2 | 2 | 2 | 4 | 10 | |
| | 감 | 2 | 4 | 2 | 2 | 10 | |

라.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교육 지원

가) 병원학교 운영 : 1교(충북대병원학교)

나) 풀밭무지개학교 위탁 화상강의 교육비 지원

마.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철저

1)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학교의 특수성, 장애학생의 요구와 특성을 살린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나) 특수교육교재·교구비 지원 : 특수학교 9교, 31,500천원

다) 특수교사 수업연구발표대회 실시 : 4명 입상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일반학교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 수립하여 편성·운영

3)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가) 시·청각장애 등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바.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강화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가) 단위학교별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나) 학업성취도 평가 : 매 학기별, 평가계획 수립·이행

- 다) 평가결과 통보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 사.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확대 및 평가 조정 실시
-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참여 권장
 - 2) 장애학생이 학교단위 평가 참여
 - 가) 장애유형에 따른 평가 조정 방안 시행 안내 : 1회
 - 나)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 장애학생 평가 시행
- 아.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특수교사 교수 능력 신장을 위한 수업 컨설팅 실시 : 특수학교 4교
 - 2) 특수교육교원의 교과지도 및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원격연수 : 1회
 - 3) 충북특수교육교과연구회 운영 : 1팀, 29명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1)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안내 및 진단·평가 실시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객관성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청 별 다양한 진단·평가 팀 구성·운영 : 11센터
 - 나) 교육지원청 별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병·의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3)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인 요구와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배치 확대
 - 4)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가) 교육지원청 별 취학의무 대상 아동 적령 취학 독려 : 팜플렛, 홈페이지 활용
 - 나) 장애조기 발견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영아 관리 및 교육서비스 제공
 - 다)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출석 독려를 통한 학교 복귀 유도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지원 확대
 - 가) 교육지원청 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업 추진 지원 및 실적 관리 : 10센터
 - 나) 순회교육의 질 향상 및 상설모니터단 운영 : 11센터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 인센티브 반영
 - 라) 진단·평가, 상담, 치료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인력 배치 : 11센터
 - 마)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교수·학습 지원 :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활용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건강보험공단 충북지사, 병원 및 보건소 등 의료기관, 복지관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활용
 - 나) 지자체 연계 복지 프로그램 활용 : 주민센터, 시·군·구별 장애인복지관 등
 - 다)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의 인적자원과 연계한 인력 활용
 - 라) 교육지원청 Wee센터와의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10센터
 - 마) 홈페이지 운영 : 10센터
- 다.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실시 : 총 248명 (일반학교 138명, 가정 66명, 병원 1명, 시설 43명)
- 라.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가)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설 및 기기 지원
 -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별 보조공학기기 배치·지원
 - 2)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정보 접근권 강화
 - 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홈페이지의 정보 접근권 지원 실태 점검 및 구축
- 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치료지원 : 치료지원이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 연간 1인당 월10만원 범위 내 지원
 - 2) 가족지원
 - 가) 대 상 :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 나) 내 용 : 가족상담, 학부모 연수, 가족캠프, 비장애 형제 지원
- 다) 지원비 : 35,000천원
- 3) 감각장애학생 지원
- 가) 감각장애 특성화 지원센터 운영 : 2센터(청주·충주교육지원청)
- 4) 통학지원
- 가)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강화
- 1) 유급 특수교육 실무원 운영 강화
- 가) 지원대상
-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실무원 배치가 필요한 학생을 선정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나) 지원인력 : 362명
- 2) 사회복지요원 등 보조인력 활용 내실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별,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요원 배치
- 나) 학교별 자체 연수 실시
- 장애학생 인권보호, 일상생활 보조 방법, 복무규정 등
 - 시각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건강장애학생 등 장애특성별 관리 방법
- 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재교육 및 추가연수
-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연수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과정’ 사이버 연수 활용
- 사.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 1)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 가) 학교별 홍보 및 예산 확보 안내 : 관리자 연수 시 전달
-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
- 가) 편의시설 관련 규정 안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나) 특수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 : 8교, 2억3,800만원
-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특수학교(급)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특수학교 안전점검 : 9교

- 아.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토요프로그램 운영
- 1) 종일반 운영
- 가) 방과후학교 종일반 운영
- 43학급(특수학교 24학급, 특수학급 19학급) : 인건비, 운영비 지원
- 2) 토요프로그램 운영
- 가) 토요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한 토요스포츠클ubs 강사 배치 : 특수학교 8교
- 나)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특수학교별 프로그램 당 250만원 지원
- 3) 방학프로그램 운영
- 가)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방학프로그램 운영 : 9교, 1센터
- 4) 특수교육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 가)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방과후학교
- 재능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 수요자 중심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료 및 운영비 지원
 - 1인당 연 120만원 이내 지원 : 3,135명(35억84,495천원)
- 자.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지도 강화
- 가) 특수학교의 장애유형·학교급 별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 지도
- 나) 특수교육 유공교원 표창 실시 : 1회
- 2)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실시
- 가) 특수학교 컨설팅 장학 실시 : 4교
- 나) 특수학급 교육과정 평가
- 충청북도교육청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활용 안내
- 3)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가) 특수학교시설·설비 기준령에 따른 설비·비품 우선 확보 안내
- 4) 특수학급 재정 지원 : 특수학급 운영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편성·집행 지침 안내
- 5)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지원
- 가) 통학버스 운영 : 특수학교 9교
- 나) 특수학교(급) 대중교통, 자가용 통학생의 통학비 지원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장애학생 대상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
 - 특수(통합)학급 교원 대상 장애학생 성교육 지도 연수 지원 : 113회
- 나) 성교육 프로그램 및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knise.kr) 탑재 자료 활용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상설모니터단' 운영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상설모니터단」 설치·운영 : 11센터
- 나) 학기별 1회 이상 지역별 협의회 : 본청 및 10개 교육지원청
- 다) 매월 1회 이상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93교
- 라) 학교별 찾아가는 성교육 113회, 학교폭력 예방교육 11회
- 마) 인권보호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컨설팅 실시 : 1회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가) 일반학교 초·중·고 학생 장애이해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연 2회 의무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인권교실 콘텐츠, 인권문화마당 자료 활용
 -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교육 : 학교 자체 교육 실시
-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인권보호 교육
 - 인권보호 연수 : 3회
 - 관심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운영

나.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가) 특수학교(급)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나)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지도
- 2)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예방
- 가) 특수학교(급)와 관할 경찰서 협력을 통한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 실시

3)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 가) 재난대응 매뉴얼 재정비 및 점검 : 특수학교 9교

다.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1)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수립 시 체육교육 강화계획 구체화

2)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육전담인력 배치

- 가)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배치 : 특수학교 9교, 각 1명

3)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가) 특수교사,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과 연계 운영

라.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1) 장애이해교육 실시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연 2회 이상 실시

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개선

- 1) 특수학교(급)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작성
- 2) 수업공개를 통한 학생·학부모·교사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 3) 특수교사 수업연구 발표대회 참여
- 4) 특수학교(급) 컨설팅장학 지원

바. 통합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

- 1)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관리자 특수교육 직무연수 실시(단계교육연수원과 연계)
- 2) 일반학교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성화지원센터 운영(2센터)
- 3) 통합교육 운영지원 : 수화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운영 등 지원
- 4) 통합교육 수업연구회 운영 : 1팀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1) 특성화고 직업교육전문기관에 위탁교육 기회 확대

- 가) 직업교육전문기관 연계 장애학생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 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책무성 공유
- 다) 제1기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 꽃동네학교('09년)
- 라) 교육부지정 진로직업정책 연구학교 운영 : 제천제일고, 청주맹학교
- 마) 제3기 특수학교 학교기업 : 청주맹학교('11년)

2)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가) 예산 운영을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 나) 학교기업 운영 담당 교원의 업무 경감 및 인력 지원 방안 추진
- 다) 학교기업의 지원·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 인력 배치
- 3)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가)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 나) 거점학교 내 일반교사와 협업하여 전문 직업교육 지원
 - 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지원
 - 라)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제1기 2010년(제천제일고), 제3기 2012년(청주농업고)
- 4)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 설치 확대 운영
 - 나) 일반학교 전공과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다) 진로·직업교육 연구회 운영 : 2팀(꽃동네학교, 제천청암학교)
 - 라) 전공과 교사 연구회 운영 : 1교, 청주성신학교
 - 마) 전공과 직업교육지원 : 34학급 운영
 - 바)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자립생활 훈련 및 직업재활훈련으로 전공과 운영
- 5)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실시
 - 가) 각급학교 내 장애인일자리 참여 확대
 - 직무 개발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기관 내 장애인 고용 창출
 - 장애인일자리 참여 일반학교 교원에 대한 장애인해 교육 실시 : 31명
- 6)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가)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지원고용 실시
 - 나) 고등부 진로·직업교육 지원 : 60학급
 - 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 협력수업 등 협업체제 구축 강구
 - 라) 현장실습 등을 학칙에 정하여 수업으로 인정
 - 마)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 1교(청주혜원학교)
- 7) 다양한 진로 정보 및 특수교육교원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
 - 가) 진로·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직업교육 역량 강화
 -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강화
- 8) '어울림방 카페' 운영
 - 가) 실습대상 : 고3, 전공과 1,2학년 재학생

- 9)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기여, 현장실습 기회 제공
- 나.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1) 장애성인 문자해독 프로그램 참여 유도
 - 2)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원
 - 가) 평생교육 담당자와의 협업으로 지자체간 유관단체 협력

Ⅲ.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철저
 - 가)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통합 편성·운영
 - 나) 특수학교 컨설팅장학 실시 : 5교
 - 다)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회 운영 : 1팀
 - 라) 특수교육홍보자료 제작 : 1,000부
 - 나.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기회 확대
 - 1)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력
 - 2) 특수학급 교원 정원 확충 노력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가.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1) 보조인력 활용 확대
 - 가)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운영 : 90명
 - 개인 교육기부 자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특수교육 관련 교육기부 문화 확산
 -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서비스 확대
 - 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화 지원 강화
 - 1) 전국 장애학생 정보화대회 충북예선대회 : 1회, 29명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상설모니터단 운영 : 매월 최소 1교 이상 방문

충청남도교육청

- 2) 사안 발생 시 특별모니터링 실시
 - 3) 상설모니터단 운영 협의회 : 2회
 - 4) 상설모니터단 우수사례집 보급 : 200부
 - 5)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컨설팅 실시 : 1회
 - 6) 상설모니터단 우수사례 발표회 : 10월중
 - 7)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유공교원 표창 : 12월중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 교육 강화
 - 가) 각급학교 내 장애인일자리 참여 확대 : 30명
 -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워크투게더센터와 협조체제 구축 연계
 - 2)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가) 참여 학교 : 꽃동네학교, 청주맹학교
 - 나)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 : 10월중, 거점학교 및 기업형 학교 참여
 - 3)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가) 제천제일고, 유관기관 협력 5기관
 - 나) 청주농고, 유관기관 협력 6기관
 - 4) 다양한 진로 정보 및 특수교육교원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
 - 가) 진로, 직업 교과연구회 운영 : 2팀(꽃동네학교, 제천청암학교)
- 나. 장애학생 자립·자활 능력 신장을 위한 대회 참여
- 1) 전국장애학생정보화대회 및 e-스포츠대회 : 9월중, 서울
 - 2) 2015.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 10월중, 강원도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꿈과 끼를 키우는 생애 공감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사회참여 실현

2. 기본 방향

가. 특수교육의 균형 발전 도모

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다.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로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추구

3. 중점 추진 과제

가.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2)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강화

3) 특수교육기관의 신(중)설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

4)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운영 강화

5)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6)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7)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확대 및 평가 조정 실시

8)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

9)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

10) 특수교육 연구학교 및 교사 연구회 운영

나. 현장 맞춤 특수교육 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및 배치 내실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3) 6개 영역 특성화 특수교육지원거점센터 운영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강화

5)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6)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내실화
- 7)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8)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 9) 특수학교(급) 중일반·방과후학교·토요프로그램 운영
- 10) 특수교육 컨설팅장학 활성화

다.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정착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2) 장애학생 안전지원 강화
- 3)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
- 4)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5) 통합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학생 사회 참여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2)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 3)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안내

4. 특수교육 특색·역점 사업

가. 꿈 키움! 끼 펼침! 체육·문화 예술교육

- 1) ‘꿈! 키움’ 기초체력증진 체육활동 지원
 - 기초체력 및 건강 평가: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PAPS-D)개발 자료 활용
 -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를 활용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활성화
 - 특수교육 전문체육교육 직무연수 운영: 30시간
- 2) ‘끼! 펼침’ 감성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문화·예술 중점 거점학교 운영
 - 장애특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학교별 예술 동아리 조직 및 영화·연극 관람 등 현장학습기회 확대
 - 지역축제와 연계한 ‘끼 펼침’ 문화·예술동아리 발표회 운영

나.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단 운영

- 1) 현장 중심 컨설팅장학을 위한 분야별 특수교육 지원단 구성 운영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 3)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및 현장 문제해결에 대한 전문적 지원
- 4) 현장 지원 내용 : 4개 영역(교육과정, 문제행동중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장갈등 중재)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15센터 15명)
- 3)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여건을 갖춘 어린이집’ 소속 직원 연수 (연 1회 이상 의무)
- 4) 특수교육대상 유아교육 거점특수학교 운영 : 나사렛새꿈학교(3학급)
- 5) 특수교육대상 유아교육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2센터(서산, 금산)

나.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1) 장애영아 교육: 특수학교 3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4개소 : 아산, 서산, 논산·계룡, 금산)
- 2) 장애영아 무상교육 제도 홍보 실시
- 3) 장애영아 실태 조사 및 장애영아교육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4) 장애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체제 마련

다.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운영 강화

- 1) 화상강의시스템 운영(꿈빛나래학교, 63명)
- 2) 병원학교 2교 운영(단국대학교병원학교, 국립공주병원학교)

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충청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보급
- 2)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 추진(31시간 40명, 15시간 30명)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전환)교육 강화

-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연 2회 추진)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강화

- 3) 학교급별·교과별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활용 적극 지원
-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확대 및 평가 조정 실시
 - 1) 특수학교 6교, 특수학급 595학급 평가조정제 시행
 - 2)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조정제 시행 컨설팅 지원
- 사.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직무연수(30시간 707명)
 - 2)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에 특수교육관련 강좌 개설
- 아.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
 - 1) 특수교육 교원 연수기회 확대
 - 특수교육 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기회 확대(유 5명, 초 4명, 중 7명)
 - 특수교사 직무연수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연구회, 교육지원청 주관
 - 충남 특수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 연 1회(14개 교육지원청별 추진)
 - 특수교육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2) 특수교육 교원 직업교육 연수 강화
 - 중·고등학교(급), 전공과 특수교육 교원의 직업교육 직무연수 기회 확대
 - 중등특수교육연구회 연계 직무연수 운영(연 1회)
- 자. 특수교육 연구학교 및 교사 연구회 운영
 - 1) '행복나눔학교(충남형 혁신학교)' 운영학교 내 특수학급 운영 지원
 - 2) 교육부 요청 정책 연구학교 운영 : 2교(기존 1교, 신규 1교)
 - 3)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 6교, 일반학교 17교)
 - 4)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연구회 운영(23개 연구회 597명, 6,800만원 지원)
 - 5) 취업·창업교육 연구회(1개 연구회, 3,000천원 지원), 통합교육 및 전공과 수업연구회 운영(2개 연구회, 600만원 지원), 초·중등 특수교육연구회(초 150명, 중 200명)

2. 현장 맞춤 특수교육 지원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및 배치 내실화
 - 1)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실시 및 우수교원, 의사, 치료사 등으로 장애영역별·학교급별 진단·평가팀 구성 운영

- 2) 진단·평가 업무담당자 연수회 실시(2015. 7. 1. / 30명)
- 3)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아 조기발견 및 의무·무상 교육 제공
- 나. 특수교육기관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가칭 '논산나래학교' 설립 추진(2018. 3. 1. 개교 예정)
 - 2) 특수학급 신(증)설: 32학급(유 5학급, 초 13학급, 중 5학급, 고 9학급)
 - 3) 특수교사 정원 확보 노력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대 배치를 통한 지원 기능 강화
 - 전담인력 배치
 - (123명: 센터장 15명, 전담교사 22명, 순회교사 35명, 치료사 51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 인력 배치(본청 1명, 지역 2명)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협력 체제 구축
 - 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사설교육실, 복지관, 직업 훈련학교,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등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Wee 센터 등 교육지원청내 센터 간 업무 협력체계 구축
 - 3) 6개 영역 특성화 특수교육지원거점센터 운영
 - 감각장애지원, 장애영유아교육지원, 긍정적행동지원, 직업·전환교육지원, 가족지원, 순회교육지원
-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강화
 - 1) 찾아가는 순회교육 지원(320명)
 - 2) 순회교육 지원 전담 및 겸임교사 배치(111명)
 - 3) 순회학급 운영(전담 9학급, 시설 파견 3학급)
- 마.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 2)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웹접근성 강화
 - 3)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 4) 2015 충남특수학교(급)학생 정보경진 및 e스포츠대회(2015. 7. 11. / 317명)
 - 5) 충남특수교육 앱(APP) 운영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충남특수교육 ON'적극 활용

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치료지원(언어치료사 51명 채용, 1,506명 지원)
- 2)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너 휠체어 4명), 수화통역 지원(4명), 속기서비스 지원(4명)
- 3) 통학편의 지원(학생 및 학부모 1,595명)
- 4)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지원(8개 장애인부모회 시·군지회)

사.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1) 특수교육 보조인력 441명 배치(특수교육실무원 302명, 학습지원시간제 교사 108명, 사회복지무원 26명, 희망일자리 5명)
-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93명, 30시간)

아.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 1) 각급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3,098천원)
-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 및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자. 주 5일 수업에 따른 대비 교육과정 운영 철저

- 1)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나홀로 가정' 장애학생 돌봄 지원
- 2) 스포츠 강사 등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위한 담당인력 배치 : 특수학교 6개교 배치

차. 특수교육기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1) 종일반 및 돌봄 교실 운영 지원 확대(특수학교 종일반 강사 19명 배치)
- 2) 특수교육기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3,464명)
- 3) 방학중 계절학교 운영(313명)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정착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강화

-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
- 2) 학년별 성교육 시수 15시간 이상 의무 실시
- 3)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인권보호 교육 실시
- 4)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15단 운영(모니터위원 149명 위촉)
 - 월 1회 이상 지역내 학교 방문 모니터링, 교육 및 연수, 상담, 홍보
 - 관심대상 장애학생 '1·1·1(1일 1회 1제자) 관심 더 갖기 운동' 활성화
- 5)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원격직무연수(충남교육연수원, 2회 441명)

6)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9월 예정)

나. 장애학생 안전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성폭력 피해 예방
- 2)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3)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안전 점검 연 1회 이상 의무)
- 4) 경찰서와 연계한 통학시간대 순찰 강화 통학지원 '길벗 동행 서비스' 실시

다.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

- 1) 특수학교별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체육교육 강화 세부 계획 포함
 - 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6명 배치: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 2) 맞춤형·통합형 체육활동 자료 활용
 -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PAPS-D)개발 자료 활용
 - 일반학생과 함께하는 통합형 체육활동 자료 보급
 - 3)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연수 강화
 - 특수교사 대상: 특수체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
 -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 4)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통합교육 지원
 - 장애유아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2개원(명천유, 서산서림유)
 - 장애학생 '꿈 펼침, 감성중심 장애인식개선' 지원(초 5교, 중 4교, 고 1교 / 2,000만원)
 - 장애학생 참여 문화·예술활동 지원: 2기관(천안교육지원청, 보령정심학교)
 - 5) 장애학생 체육대회 지원
 - 2015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 2015. 9. 4.
 - 제 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015. 5. 19.~5. 22. / 제주도
- 라.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1) 교과서의 장애 관련 내용 교육 충실
 - 2) 연 2회 이상 모든 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
 - 3) '장애인식 개선 행사' 개최: 작은 음악회, 콘서트, 연극, 사물놀이 등
 - 4) 장애이해·체험활동, 통합캠프, 통합교육 연찬회 등의 장애 인식 개선 행사 개최

마. 통합교육 지원 강화

-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통합학급당 운영비 30만원 편성 권장)
- 2) 교육지원청 통합교육 연수 연 1회 이상 추진
- 3)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과정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인근 특수학교(급) 교사의 순회교육 실시
 - 일반학급 재학 저시력학생·청각장애학생 확대교과서·FM 보청기 보급
- 4) 통합학급당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정 배치 및 일반학생 수 감축
- 5)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지원
 - 학교-센터-유관기관 간 통합교육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별 통합교육 네트워크 모형 개발'자료 활용
(2015 충남교육청 보급자료)

4. 장애학생 사회 참여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창업교육 내실화

- 1) 유연성 있는 현장 맞춤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교 6교, 특수학급 241개 학급)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선택 다양화를 위한 진로 정보 제공
 - 생애주기별 장애학생 '꿈·꿈·꿈' 진로교육 실시
(인성적성교육-진로탐색 및 결정-직업준비 및 태도-직업기능 및 현장실습)
 - 취업창업교육 연구회 1개 운영, 직업교육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 3) 특수학교 '학교기업' 효율적 운영 : 2개교 운영(공주정명학교, 천안인애학교)
- 4)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교 운영(공주생명과학고, 금산산업고, 논산공업고, 당진정보고, 서천고, 온양용화고, 천안공업고, 태안고, 주산산업고, 부여정보고)
 - 직업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7교 운영(특수학교 5교, 고등학교 2교)
- 5)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내실화 : 5교 24학급
- 6)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 일자리 창출 사업' 운영(3개 사업 149명)
 -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참여 55명
 - 교육행정기관 희망일자리 74명, 직업재활시설 연계 보호일자리 20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워크투게더 사업 참여(131명)

7) 지역사회 연계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지원

- 장애학생 직업교육 전문기관 직무 위탁교육 운영
(공주대·백석대, 20명 참여)
- 지역사회 취업·창업교육 운영(5개 센터 : 천안, 서산, 논산, 청양, 예산)

8) 2015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참가 : 2015. 10. 1.~10. 2. / 강원도

나.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 1) 지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청,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및 지역 경제단체 등과 협력체제 구축
- 2)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시장형 일자리 사업체(대형마트), 요양관련기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다.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실시

-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성인야학 및 평생교육(한빛회)
- 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간 연계 체계 구축

III.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가. 진로·직업교육 중점 특수학교 설립 추진

- 1) 천안 동남구 지역(고·전공과, 12학급, 2018. 3. 1. 개교 목표)
- 2) 내포권역(중·고·전공과 8학급, 2018. 9. 1. 개교 목표)

나. 특수학급 신(중)설 추진

| 연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2019 | | | | | | | | |
|-----|------|---|---|----|----|------|---|---|---|----|------|----|---|---|---|------|----|----|---|---|---|---|----|----|
| | 유 | 초 | 중 | 고 | 전공 | 계 | 유 | 초 | 중 | 고 | 전공 | 계 | 유 | 초 | 중 | 고 | 전공 | 계 | 유 | 초 | 중 | 고 | 전공 | 계 |
| 학급수 | 4 | 3 | 3 | 10 | 2 | 22 | 3 | 3 | 3 | 10 | 2 | 21 | 2 | 8 | 9 | 11 | 7 | 37 | 1 | 2 | 5 | 6 | 2 | 16 |

다. 장애영아 교육 내실화

- 1) 특수학교(나사렛새꿈학교 3학급)
- 2) 특수교육지원센터(4개소 : 아산, 서산, 논산·계룡, 금산)

2.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가. 201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수립 시행(7~9월)

- 1) 선정·배치 관련 지침서 제작 활용, 구비 서류 간소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내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1) 순회교육 지원 강화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2015 순회교육 운영계획 사항
 - 순회교육 운영 가이드북 활용(2014 특수교육 장학자료)
- 3) 특수교육 대상자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 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교사 연수 지역별 추진

다.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운영

- 1) 병원학교 운영 지원 내실화(국립공주병원학교, 단국대병원학교)
- 2) 화상강의시스템 ‘꿈빛나래학교’ 운영 내실화
- 3) 건강장애 관련 연수 및 교육 강화
 -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이용 매뉴얼 상시 비치, 안내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정착

가.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1) 상설모니터단의 전문성 확보 및 상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매뉴얼 개발 전국 보급(9월)

나.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

- 1) 일반학교 학생의 장애이해·체험교육 연 2회 이상 추진
- 2)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
- 3)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 규정 수립
-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우수자료 공모전 개최(10월)
- 5) 장애학생 자기주장 발표대회: 교육지원청별 추진

4. 장애학생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가. 지역사회 연계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 1) 장애학생 직업교육 전문기관 직무 위탁교육 운영 내실화

2) 지역사회 취업·창업교육 운영 내실화

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직업교육-직업훈련-취업알선’ 연계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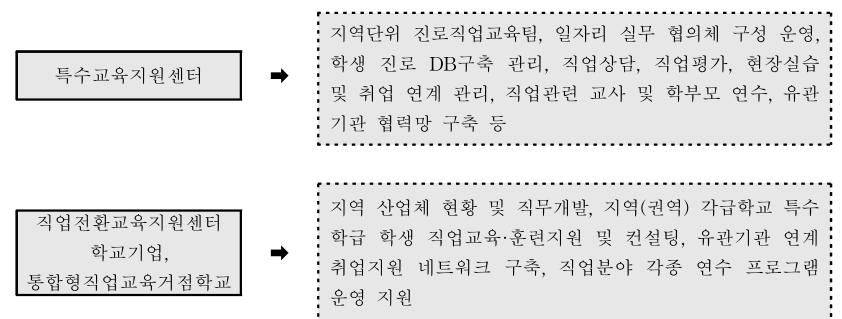
다. 중증장애학생 ‘희망 일자리’ 관리 철저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의한 무기계약 대상으로 6개월 인턴(수습) 후 전환 평가를 통해 계속 근무 결정

라. 복지연계형 일자리 확대 및 행정도우미 취업률 고취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거점학교) 연계 지원



바.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운영 사업 현장 컨설팅(9~11월)

전라북도교육청

I. 2015 전북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 추진 방향

- 가.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 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적 통합 환경 조성
- 다. 특수교육협력체제 강화

2. 중점 추진 과제

가.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

-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3) 건강장애 및 화상강의 수강학생 지원
- 4)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 5) 특수교육 연수 지원
- 6)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 교육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 1)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체계 확립
-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3) 순회교육 운영지원
- 4)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5)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 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다. 장애학생 인권 우호적 분위기 조성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교육 강화
- 2)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라.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2)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지원
 - 가) 영아학급 3학급 운영 : 전주유화학교
 - 나) 지원내용: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및 순회교육 지원, 홍보 및 학부모연수
- 2)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가) 유아 특수학급 26급 운영
 - 나) 지원내용 : 공립 월 90천원, 사립 월 361천원 지원
 - 다) 지원대상 : 공·사립 유치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유아
- 3)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 2교, 10,000천원
- 4) 장애영유아 대상으로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실시
- 5)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연수 연2회 이상 운영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색있는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설명회 실시 : 2015.2.3.(화), 400명
- 3) 교육과정 지원 컨설팅 실시
 -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 개별화교육 수립 컨설팅
 - 나) 신설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컨설팅
- 4) 중도·중복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학교 1교 운영: 전주은화학교
- 5) 전공과 교육과정 연구회 운영: 1팀, 3,000천원 지원

다. 건강장애 및 화상강의 수강학생 지원

- 1) 병원학교 운영 현황

(단위 : 명)

| 학년 성별 | 초등 | | | | | | | 중등 | | | | 고등 | | | | 총 계 |
|----------|----|---|---|---|---|---|----|----|---|---|---|----|---|---|---|--------|
| | 1 | 2 | 3 | 4 | 5 | 6 | 계 | 1 | 2 | 3 | 계 | 1 | 2 | 3 | 계 | |
| 남 | · | 1 | 1 | 1 | 3 | 1 | 7 | 1 | · | 1 | 2 | 3 | · | · | 3 | 12 |
| 여 | 1 | 1 | 1 | 1 | 1 | 2 | 7 | · | · | · | · | · | · | · | · | 7 |
| 계 | 1 | 2 | 2 | 2 | 4 | 3 | 14 | 1 | · | 1 | 2 | 3 | · | · | 3 |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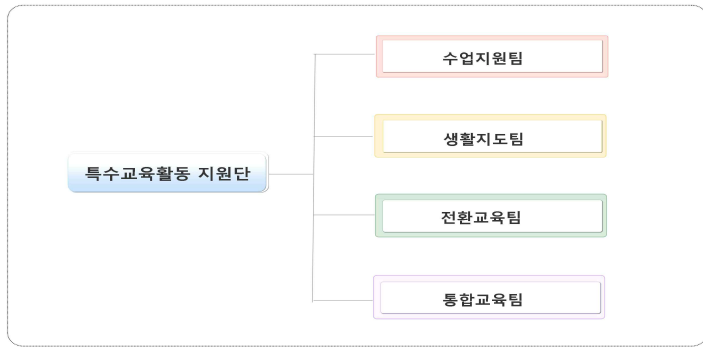
2) 화상강의 운영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학생수(명) | | | |
|----------|--------|----|----|----|
| | 초 | 중 | 고 | 계 |
| 꿈사랑사이버학교 | 25 | 27 | 28 | 80 |

라. 특수교원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특수교육활동지원단 구성·운영



2) 지원방법

| 대상 | 주요활동 |
|-------|---|
| 특수 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학교정책의 현장 적용·안착 지원 및 학교정책 시행의 문제점 해결 지원 ·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 지원·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추진방안 협의 · 수업공개시 지원담당 장학사 참관 |
| 특수 교사 | <p><신규교사 지원을 위한 '행복동행'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요청 권장·초임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운영 <p><전문성 신장 희망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하는 영역(주제)별 희망지원·교사가 요청한 영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 |

마. 특수교육 연수 지원

1) 특수교육이해를 위한 일반학교 관리자 연수 실시

- 가) 대상 : 일반학교 교장, 교감 총 1,800여명
- 나) 내용 :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이해, 안전 및 편의시설 관련
- 다) 시기 : 2회 실시(상반기, 하반기)

2) 통합학급 담당 교사에 대한 특수교육연수 실시: 1,003명, 25,000천원 지원

3) 자격연수, 직무연수(60시간 이상)에 의무적으로 특수교육강좌 2시간 개설

| 연수명 | 일시 | 내용 | 대상 | 참여인원 |
|-------------------|-------|------------------|--------------------------|-------|
| 2015 전북 특수교육설명회 | 1월중 | 2013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 학교장,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 400명 |
| 특수교육이해를 위한 관리자 연수 | 3월/9월 | 통합학급 운영관리 책무성 강화 | 유초중고등학교 교감, 교장 | 1800명 |
| 장애학생 이해 및 통합학급 운영 | 5월중 | 통합학급 운영 | 통합학급 교사 | 800명 |
| 특수교육보조인력 | 8월 | 보조인력의 역할 | 특수교육보조인력 | 400명 |
| 건강장애학생 지원연수 | 9월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담임 및 평가담당교사, 학부모 | 150명 |

2. 특수교육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가.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체계 확립

-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진단평가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2) 201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메뉴얼 제작 보급
- 3) 연 4회 이상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4)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진)학 설명회 및 개별상담 실시
 - 가) 고등학교 진학 안내 자료 제작
 - 나) 6월~10월 학부모 및 담당교사대상 개별상담 주간 운영

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보조인력(392명), 가족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2,246명) : 치료사 및 유관기관 활용
- 3) 교재·교구 및 보조 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감각장애 거점센터 운영
 - 청각장애학생 수화 속기 원격지원 20,000천원 지원
 - 시·청각장애학생 교재·교구 및 보조 공학기기 50,000천원 지원
- 4)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학기별 2회 실시
- 5) 특수학교 영유아 학급 종일반 운영비 지원: 급당 15,000천원 지원

다. 순회교육 운영지원

1) 재택 순회교육현황(특수학교)

| 순 | 학교명 | 재택학생 수(명) | | | | | 담당교사수(명) |
|---|--------|-----------|---|---|---|---|----------|
| | | 유 | 초 | 중 | 고 | 계 | |
| 1 | 군산명화학교 | · | 2 | 2 | 1 | 5 | 2 |
| 2 | 동암개발학교 | · | · | 3 | 2 | 5 | 1 |
| 3 | 전북푸른학교 | · | · | 1 | 4 | 5 | 1 |

2) 순회교육(특수교육지원센터)

| 학생 수 | | | | | | | | | | | 교사수 |
|------|----|----|-------|----|-------|-----|------|-----|------|----|-----|
| 기 관 | | | | | 학교 과정 | | | | | | |
| 가정 | 시설 | 병원 | 일반 학교 | 계 | 장애 영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13 | 2 | 0 | 67 | 82 | 1 | 13 | 32 | 21 | 15 | 82 | 42 |

라.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추진

|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공과 | 계 |
|------|-----|------|-----|------|-----|----|
| 특수학교 | 0 | 0 | 0 | 3 | 2 | 5 |
| 특수학급 | 3 | 10 | 2 | 2 | 0 | 17 |
| 계 | 3 | 10 | 2 | 5 | 2 | 22 |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수 감축

(단위 : 명)

| 항목 | 특수학교 | | | | 특수학급 | | | | 계 | | | |
|------|------|-----|-----|-----|------|-----|-----|-----|-----|-----|-----|-----|
| | 유 | 초 | 중 | 고 | 유 | 초 | 중 | 고 | 유 | 초 | 중 | 고 |
| 법정정원 | 4 | 6 | 6 | 7 | 4 | 6 | 6 | 7 | 4 | 6 | 6 | 7 |
| 전북 | 3.4 | 4.0 | 6.9 | 7.4 | 2.7 | 3.5 | 5.2 | 7.7 | 3.1 | 3.8 | 6.1 | 7.6 |

마. 특수교육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체제 확립

- 가) 도특수교육지원센터를 포함한 18개의 센터 운영
- 나)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단' 운영
- 다) Wee 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협력을 통해 기능 운영 효율성 강화
- 라) 장애 영유아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마) 상설모니터단 운영 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3) 직업전환중심 특성화 센터 운영

- 가) 권역별 지원체제 구축 3개소(전주, 군산, 익산) 운영
- 나) 장애학생 직업관련평가 지원(담당인력 및 평가도구 지원)
- 다) 직업체험 박람회 권역별로 실시

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자료 개발 보급

3. 장애학생 인권우호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인권보호 및 학교폭력(성폭력)예방 상설모니터링 실시

- 1) 장애인권보호를 위해 매월 1회, 1교이상 방문 모니터링 실시
- 2) 장애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강사단 운영 : 40명
- 3) 장애인권교육 교사 동아리 운영 : 2팀, 3,000천원
- 4) 장애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컨설팅 및 연수 실시
- 5) 전북 및 전국 장애학생 인권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 실시

나.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1)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순회서비스 지원 : 164교, 30,000천원지원
- 2) 통합교육연구회 및 특수교육정보화 연구회 운영: 2팀, 6,000천원 지원
- 3) 모든 학교 연 2회 장애이해 교육 실시
- 4) 특수교육대상학생 예능발표회 : 1회
- 5)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 14개 교육지원청 운영, 100,000지원
- 6) 학부모와 함께하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 가) 대상 : 학생 및 학부모 30가족(60명)
 - 나) 장소 : 홍콩
 - 다) 예산 : 연2회 89,000천원
- 7)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이행모니터링(장애인 편의시설) 실시: 50기관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강화

가. 진로 직업 교육 지원

- 1)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동아리 6팀 운영
- 2) 직업교육 거점학교 11교 운영: 특수학교 5교, 고등학교(특수학급) 6교
- 3)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3개소 운영
- 4) 교육기관 내 직업실습생 운영 30명
- 5) 전주선화학교 학교기업 운영지원
- 6)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지원 11교
- 7)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 협약
 - 나) 전라북도도청, 특수학교, 사회적 기업 등과 진로 직업 협의체 구성
- 8) 대학과 연계한 취업창업교육 위탁기관 운영: 우석대, 원광대, 전주기전대학
- 9) 도교육청 1층 장애학생 직업체험을 위한 북카페 운영 활성화 및 지역으로의 점차 확대

나.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인프라 강화

- 1)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을 위한 대입정보 제공 및 장애학생 수험 편의 제공
- 2) 시·청각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3개소 운영 및 권역별 지원을 통한 학습 지원 다. 민간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순 | 사업명 | 기관명 | 내 용 | 지원액 (천원) |
|----|------------------|----------------|-------------------|-------------|
| 1 |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지원 | 장애인교육권연대전북지부 | 중증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 80,400 |
| 2 | 성인장애인 스포츠교육 | (사)다운복지센터 | 장애성인 스포츠프로그램 | 7,300 |
| 3 | 성인장애인 학습지원 |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 문해교육지원 | 16,000 |
| 4 | 성인장애인 문해교육 | (사) 사랑의 손길 새소망 | 문해교육지원 | 9,000 |
| 5 | 성인여성장애인 컴퓨터교육 | (사)등불야학교 | 컴퓨터 교육 | 8,000 |
| 6 | 장애인 문해교육 | 장애인샘골야학교 | 문해교육지원 | 10,000 |
| 합계 | | | | 130,700 |

Ⅲ. 향후 추진계획

1. 특수교육 및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가. 특수교사 전문성 함양 연수
- 나.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운영을 통한 신규 및 저경력 교사 지원방안 모색
- 다. 일반교원 대상 통합교육 연수 확대
- 라. 장애이해교육 (모든 학교)
- 마. 인권교육 강사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바. 장애인권교육 교사동아리
- 사. 장애인권교육 자료 제작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노력

- 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 재원확보 노력
- 나.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을 준수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점검 강화

- 3.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추진 지속
-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질적 확보를 위한 해당 기관별 모니터링 실시
- 5.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확대 배치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매뉴얼 제작
 - 다.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제작
 - 라. 진단평가위원과 운영위원 연수
- 6.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 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 나. 진로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다. 특수교사 진로직업교육 전문성향상 연수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 1. 2015년 특수교육 추진 목표
 - 가. 특수 및 일반교원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 다. 국가 책무성 강화로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실현
- 2. 중점 추진 과제
 - 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나.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다.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 라.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가. 장애 영유아 교육의 내실화
 - 1) 의무교육 이행 철저
 - 가) 교수-학습프로그램 및 3~4세 장애유아 교사용 지도서 활용
 - 나) 특수교육대상 영아 및 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에 대한 적극 홍보
 - 다) 특수학급 미설치에 대한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 라) 의무교육을 위한 단설 및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배치
 - 마)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전원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절차 안내
 - 지원 단가(월 311천원) 및 지원 내용(교과용 도서대,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 활동비)

- 2)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 교육 지원
 - 가)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 나)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체제 마련
 - 3) 특수학교(급) 학생 법정정원 준수
 - 가) 의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급) 학생 법정정원 충족 학급 확대
 - 나) 합리적 기초자료에 근거한 특수교육대상자 증장기 수용 계획 마련
 - 4)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가)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무상교육 혜택 제공
 - 나)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지원 내실화
 - 다) 병원학교 및 꿈사랑학교(화상강의) 위탁교육 절차 안내
-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가)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 개별화교육 NEIS반영 연수
 - 나)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 2)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강화
 - 가) 개별화교육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나)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자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3)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 조정 지원 강화
 - 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정착
 - 나) 장애학생이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확보
-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각종 연수기회에 참여
 - 나) 특수교사의 책무성 강화
 - 다) 특수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연구 기회 확대
 - 라) 특수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통합교육 관련 축전 참여
 - 마)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확대
 - 2)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의 처우개선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 부장교사 배치
 - 가)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부장 배치
 - 나) 센터 근무교원의 처우개선(각종 수당 동일화)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가. 특수교육 진단·평가 배치 및 체계확립
- 1)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 나)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다)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지원기능 강화
 - 나)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다)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라)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가) 치료지원, 가족지원
 - 나)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등의 지원
 - 다) 특수교육대상자 취학편의를 위한 통학지원
 - 라)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 마)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 2)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 가)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
 - 나)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 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
 - 라) 특수교육대상자 방학프로그램 운영
- 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
- 1)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 가) 특수학급 신·증설(유, 초, 중, 고, 특)
 - 나)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 다)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지도 강화
 - 2) 특수교육 행·재정적 지원 확대
 - 가) 특수학급 재정 지원
 - 나) 특수교육 여건 개선
 - 다) 특수교육 전담인력 확충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 교육 강화

1) 장애학생 인권보호

- 가)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운영
- 다)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라)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 피해 예방

2) 장애학생 인성교육 강화

- 가)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 나)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라) 장애체험활동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나.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개선

- 가) 특수학교의 인근학교와 통합교육 개선
- 나) 특수학급의 통합교육 강화
- 다)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강화

2) 통합교육 담당 전문성 제고 및 통합 교육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수업참여 및 교내외 교육활동 차별 금지
-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다) 통합교육을 학습권 보장 및 적극 참여
- 라)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장애교육 연수 참여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 참여 역량 강화

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가)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대상자 취업·창업교육 지원
- 나)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운영
- 라)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마) 각급학교내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2) 장애학생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 가)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나) 장애학생의 취업 후 사후지도 강화
- 다) 특수교원의 진로직업교육 연구회 운영
- 라) 직업교육 연수 참여

나.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 인프라 강화

1)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 가)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 나)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참여 확대

2) 장애학생 교육 인프라 강화

- 가) 특수학급의 신증설
- 나) 여건의 맞춰 특수학교 신설 예정

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1)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 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 나)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 지자체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참여

2) 장애성인 지원 인프라 구축

- 가) 상황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검토
- 나) 지역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 다)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비 지원 확대

Ⅲ. 2015년도 추진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실적)

가. 장애 영유아 교육의 내실화

- 1) 교수-학습프로그램 및 3~4세 장애유아 교사용 지도서 활용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학급 및 어린이집 보급)
- 2)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전원
 - 지원 단가(월 311천원×12개월), 희망자 전원 11명
 - 지원 내용(교과용 도서대,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 활동비)

- 3) 유치원 특수학급 25학급에서 28학급으로 증가
 - 유아특수 자격교사 배치
- 4)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무상교육 혜택 제공
 - 병원학교 위탁교육 운영(49명) 국립나주병원(느티나무 16명, 화순전남대 병원(여마사랑 33명)
 - 꿈사랑학교(화상강의) 운영지원(24명)

5) 22청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 개별화교육 NEIS반영 연수 실시
 - 2015. 3. 10.(화) 130명 연수 참여
- 2)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강화
 - 개별화교육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3)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 조정 지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정착(2015. 6. 23.(화), 은광학교)

다.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확보

- 1) 특수교육교원의 수업 선도교사 참여(이화학교, 선혜학교 등 각1명)
- 2) 교육지원청 특수전문자격 소지자 전문직 배치
- 3) 순천동산초(2/2), 여수여천중(2/2)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 4) 장애이해인식 관리자과정 연수 참여(2015.6.29. 30명)
- 5) 장애이해인식 통합교육 연수 참여(120여명 참여)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가. 특수교육 진단·평가 배치 및 체계확립

- 1) 진단평가 위원 국특원 연수 참여
- 2) 투명한 진단평가 실시
- 3) 학습부진아 진단평가 제외
- 4)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확보
 - 순회교사 22명(초등11명, 중등11명)배치
 - 순회전담강사 배치(23명, 무기계약직)
 - 순회기간제 교사(15명)배치
 - 치료사 배치 22명 배치

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 1) 유급 보조인력지원 272명(특수교육실무사 248명, 통학차량실무사 24명)
 - 장애학생보조 사회복지요원 122명(2015.5.30.)
 - 통학지원 1,957명(학생1,482명, 학부모475명)
- 2)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 종일반 20학급(69명), 보육교실(49학급) 247명
 - 교내방과후 185학급(초18급, 중34급, 고43급, 특90급)
 - 교외방과후학교 1,520명 지원

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

- 1)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 유 3학급, 초11학급, 중15학급, 고11학급 신증설(계40학급)
 - 전공과 2학급 신증설
- 2) 특수교육 행·재정적 지원 확대
 - 특수학급 운영비 513학급, 순회여비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확충 82명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 교육 강화

- 1) 전국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연수 실시(2015.5.27.(수)~5.29.(금) 230명)
- 2) 장애학생 예술동아리 5팀 지원
- 3)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유,초,중,고 1학기 1회 이상)

나.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 1) 지원청 거점특성화센터 감각장애 3청 운영
- 2)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초1교, 중1교)
- 3) 통합교육 제고를 위한 전국 제1회 어울림 축전개최(2015.4.17.(금)~4.19.(일))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 참여 역량 강화

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 1)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대상자 취업·창업교육 지원 5청
- 2)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선혜학교, 소림학교)
- 3)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운영 지원(목포공업고, 전남기술과학고)
- 4) 장애학생 직업교육 위탁교육 지원(전남직업능력개발원 3명)

- 5) 각급학교내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지원 100명
- 6) 특수교원의 진로직업교육 연구회 지원 4개
- 7) 학교기업 직업훈련실 이용 교원 연수 참여(2교 20명)

나.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 인프라 강화

- 1)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을 인근학교 배치
- 2) 장애학생 소속학교 편의시설 설치(엘리베이터)
- 3) 장애학생 교육 인프라 강화(특수학급의 신증설)

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 1)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 2)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업(21개 공공도서관)
- 3)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비 지원(21개, 37,800천원)

5. 2015년 향후 운영 계획

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1) 장애 영유아 교육의 내실화
 - 가)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자 영유아 학부모 교육 실시
 - 다) 장애학생 학부모 가족지원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 일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여부 확인
 - 나) 완전통합학급 장애학생 관리
 - 다) 완전통합학급교원 연수 참여
- 3)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확보
 - 가) 지속적인 특수교사의 자기 연찬 강화
 - 나) 중등 특수교사의 직업교육 연수 참여 확대

나.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1) 특수교육 진단·평가 배치 및 체계확립
 - 가) 진단평가 거부시 학생의 평가 분위기 조성 및 일정 변경 실시 계획
 - 나) 진단평가 의뢰시 학부모의 의견 확인(인지능력)
 - 다) 미선정자 재평가시 일정기간 지난 후 재의뢰
-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 가) 치료지원 개선책 마련(지자체 실시 지원 요구)

- 나) 보조인력 지원 예산 확보
 - 다) 각종 방과후 교육 예산 지원 및 확보
- 3)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
- 가) 2016학년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 구분 | 유 | 초 | 중 | 고 | 전공과 |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 계 |
|-----|---|---|---|---|-----|------------------|----|
| 학급수 | 2 | 2 | 3 | 3 | 2 | 1 | 13 |

나) 특수학교 교수학습 스마트 연구학교 갤럭시 탭 구입비 지원

다.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 교육 강화
 - 가) 전국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연수 평가회 11월 예정
 - 나) 장애인식 개선 콘서트 11월 초 예정(1청)
 - 다) 장애학생 인권친화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점검(초3, 중1, 고1)
 - 2)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 가) 지원청 거점특성화센터 3청 운영 점검
 - 나)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발표회2/2(초1교, 중1교)
 - 다)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3개원) 운영 점검
- 라.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 참여 역량 강화
- 1)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 가)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대상자 취업·창업교육 지원 5청 점검
 - 나)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 성과보고회(선혜학교, 소림학교)
 - 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운영 성과보고회(목포공업고, 전남기술과학고)
 - 라) 장애학생 직업교육 위탁교육 실시(전남직업능력개발원)
 - 마) 각급학교내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예산 지원 100명
 - 바) 특수교원의 진로직업교육 연구회 발표(4개)
 - 사) 장애학생 워크투게더 지원 사업 참여 (8교, 78명)
 -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 인프라 강화
 - 가)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을 위한 인근학교 배치(진로진학센터)
 - 나) 2015년 장애학생 소속학교 편의시설 설치 계획
 - 201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014. 7. 1. 현재)
 - 유·초·중·고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전체 설치율
 - (공립 84.23%, 사립 47.5%, 전체 75.6%)

3) 2015. 예산 반영 세부 내역(교육지원청별 반영내역)

(단위 : 천원)

| 교육지원청 | 대상교 | 예산액 | 세부 사업내용 |
|-------|-----|-----------|--|
| 목포 | 4교 | 124,000 | 주출입구 접근로(1), 장애인주차구역(1), 주출입구높이차이 제거(1), 출입문(1), 복도(3), 계단실(4), 대변기(3), 소변기(2) |
| 여수 | 6교 | 332,000 |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2), 복도(2), 승강기(2), 계단실(1), 대변기(3), 소변기(2), 점자블럭(1), 유도및안내설비(3), 경보및피난시설(3) |
| 순천 | 6교 | 353,000 | 주출입구 접근로(1), 장애인주차구역(1),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2), 출입문(1), 승강기(2), 계단실(3), 대변기(2), 소변기(3), 점자블럭(1), 유도및안내설비(3), 경보및피난시설(5) |
| 나주 | 4교 | 88,000 | 주출입구 접근로(2), 장애인주차구역(1),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3), 출입문(2), 복도(2), 계단실(3), 대변기(3), 소변기(2), 점자블럭(2), 유도및안내설비(2), 경보및피난시설(3) |
| 광양 | 10교 | 478,000 | 주출입구 접근로(2), 장애인주차구역(3),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6), 계단실(7), 대변기(5), 소변기(6), 점자블럭(7), 유도및안내설비(3), 경보및피난시설(7) |
| 곡성 | 2교 | 51,000 | 주출입구 접근로(1),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1), 계단실(1), 대변기(1), 소변기(1), 점자블럭(1), 유도및안내설비(1), 경보및피난시설(1) |
| 고흥 | 4교 | 105,000 | 주출입구 접근로(2), 장애인주차구역(2),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2), 출입문(2), 복도(2), 대변기(2), 소변기(2), 점자블럭(2), 유도및안내설비(2), 경보및피난시설(2) |
| 보성 | 8교 | 322,000 | 주출입구 접근로(4), 장애인주차구역(3),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4), 출입문(5), 복도(4), 승강기(1), 계단실(4), 대변기(5), 소변기(5), 점자블럭(5), 유도및안내설비(1), 경보및피난시설(3) |
| 화순 | 4교 | 237,000 | 주출입구 접근로(2), 장애인주차구역(2),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2), 출입문(2), 대변기(2), 소변기(2), 점자블럭(2), 유도및안내설비(2), 경보및피난시설(2) |
| 장흥 | 3교 | 89,000 | 주출입구 접근로(1), 장애인주차구역(1),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1), 출입문(1), 복도(2), 대변기(2), 소변기(2), 점자블럭(1), 유도및안내설비(1), 경보및피난시설(2) |
| 해남 | 2교 | 75,000 | 주출입구 접근로(1), 장애인주차구역(1),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2), 출입문(2), 복도(2), 계단실(2), 대변기(2), 소변기(2), 점자블럭(2), 유도및안내설비(2), 경보및피난시설(2) |
| 영암 | 4교 | 106,000 | 주출입구 접근로(2),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2), 출입문(2), 계단실(2), 대변기(2), 소변기(2), 점자블럭(2), 유도및안내설비(2), 경보및피난시설(2) |
| 무안 | 2교 | 49,000 | 장애인주차구역(1),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1), 출입문(1), 계단실(1), 대변기(1), 소변기(1), 유도및안내설비(1), 경보및피난시설(1) |
| 영광 | 4교 | 65,000 | 출입문(1), 계단실(3), 유도및안내설비(2) |
| 장성 | 6교 | 129,000 | 주출입구 접근로(2), 장애인주차구역(1),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2), 출입문(3), 계단실(1), 대변기(4), 소변기(4), 점자블럭(3), 유도및안내설비(3), 경보및피난시설(3) |
| 완도 | 3교 | 80,000 | 주출입구 접근로(1), 장애인주차구역(1),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1), 출입문(1), 복도(2), 대변기(2), 소변기(2), 점자블럭(1), 유도및안내설비(1), 경보및피난시설(2) |
| 신안 | 7교 | 200,000 | 주출입구 접근로(6), 장애인주차구역(1),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5), 출입문(5), 계단실(5), 대변기(6), 소변기(5), 점자블럭(5), 유도및안내설비(6), 경보및피난시설(6) |
| 강진 | 1교 | 147,000 | 장애인주차구역(1),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1), 출입문(1),복도(1), 계단실(1), 대변기(1), 소변기(1), 경보및피난시설(1) |
| 계 | 72교 | 3,030,000 | |

4)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가)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나)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업(21개 공공도서관)

다)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비 지원

| 시도 | 일자 또는 기간 | 유관기관명 | 지원액 (천원) | 협업내용 | 비고 |
|----|----------------|------------|----------|------------------|-------|
| 전남 | 2015.01.01.~현재 | 목포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나주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장성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광양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담양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화순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영광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구례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남평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무안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보성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별교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영암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장흥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진도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해남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함평공공도서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평안평생교육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고흥평생교육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 전남 | 2015.01.01.~현재 | 곡성교육문화회관 | 1,8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

경상북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기본방침

- 가. 특수교육의 균형발전 도모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 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 다. 책무성 강화로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추구
- ### 2. 추진과제
- 가. 특수교육 성과 및 교육력 제고
 - 나.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 다.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라.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성과 제고 및 교육력 제고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1) 목적

-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로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력 향상
- 발달단계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2) 추진 내용

- 가) 의무교육 전면 시행 철저
- 나) 일반 유치원 배치 희망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속적 지원
- 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라) 특수교육대상 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 마)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바)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지정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 지원

1) 목적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하여 2차 장애의 예방 및 발달을 촉진
- 장애가 있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아에 대해 무상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 촉진

2) 추진 내용

- 가) 장애영아 무상교육 제도 홍보 실시 및 실태파악
 - 나) 장애영아 교육 실시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개발
 - 다)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라) 장애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 다. 특수교육 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1) 목적

-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역별·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제공 확대

2) 추진 내용

- 가) 유·초·중·고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운영
- 라. 건강장애 학생 교육 지원 강화

1) 목적

- 만성 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도모 및 치료 효과 증진

2) 추진 내용

- 가) 만성 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무상 교육 혜택 제공
- 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및 성적 관련(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참조)
- 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이용 방법
- 라) 건강장애 학생 교육 지원 방안
- 마) 건강장애 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

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철저

1) 목적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2) 추진 내용

- 가)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나)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다) 개정 교육과정 후속 조치 지원
- 라)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 마)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학년 유의 운영

바.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 교육 강화

1) 목적

-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성과 제고

2) 추진 내용

- 가)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나) 다양한 학생 집단, 교사 조직, 지원 인력 등의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사. 장애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 및 평가 조정 지원 강화

1)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단위 학업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실시로 학업 성취도 향상

2) 추진 내용

- 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독려
- 나)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아.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 목적

-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제고
- 특수교육 교원의 일반교과교육 연수 강화를 통한 통합교육 수행역량 강화

2) 추진 내용

- 가)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의 처우개선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 부장 교사 배치 권장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1)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및 교육욕구 등의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 환경 배치로 개별 학생의 학습권 보장

2) 추진 내용

- 가)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라)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1) 목적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지원

2) 추진 내용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 모니터단 설치·운영 기능 강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기능 강화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
- 라) 감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1)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와 교육욕구에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2) 추진 내용

- 가) 순회교육 지원 범위
- 나)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다)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라.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1) 목적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정보화 지원확대 및 정보통신 활용교육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정보 접근권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학습 자료 보급

2) 추진 내용

- 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정보 접근권 강화
- 다)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활용)
- 라) 경북 특수교육 정보화 대회 및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개최

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 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 접근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 치료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2) 추진 내용

- 가) 치료지원
- 나) 가족지원
- 다)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지원
- 라) 통학지원
- 마)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1) 목적

-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 보조를 담당하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 제고

2) 추진 내용

- 가) 유급 특수교육실무사 운영 강화
 - 나) 자원 봉사자, 사회복지무원 등 보조인력 운영 확대
- 사.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토요프로그램 및 계절학교 운영

1) 목적

- 전일제 교육활동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도모
- 특수학교 주5일 수업에 따른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 예방을 위한 토요방과후 대책 마련, 학생안전 관리·학생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2) 추진 내용

- 가) 특수학교 종일반 · 방과후학교 운영(보육+교육)
 - 나)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학교(특기·적성 교육) 운영
 - 다) 특수학교 토요 사랑교실 운영
 - 라) 방학 프로그램 계절학교 운영
- 자.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1) 목적

- 특수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질 제고

2) 추진 내용

- 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지도 강화
- 나)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실시
- 다) 특수교육 전담 장학요원 확충
- 라)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마) 특수학급 교사 정원 및 재정 지원
- 바)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지원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강화

1) 목적

- 장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등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 안내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강화

2) 추진 내용

- 가)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나) 상설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
- 다)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라)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나.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목적

- 특수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애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및 방과 후 성폭력 피해예방

2) 추진 내용

- 가)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나)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 다)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피해예방
- 라) 특수학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다.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

1) 목적

- 장애유형·장애정도에 적합한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체력증진 및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2) 추진 내용

- 가)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나)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육전담인력 전면 배치
- 다)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전면 실시 및 운영 강화
- 라)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활동 지원
- 바)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라. 범도민 대상 장애 인식 개선

1) 목적

-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2) 추진 내용

- 가) 교과서의 장애 관련 내용 교육 충실
- 나)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교육 실시
- 다) 장애인식개선 행사 개최
- 라) 장애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추진

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1) 목적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

2) 추진 내용

- 가) 특수학교의 운영 개선
- 나)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바.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1) 목적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을 개선을 위한 통합교육 및 순회교육 지원 확대

2) 추진 내용

- 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 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사. 통합학급 운영·관리 강화

1) 목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교육 및 순회교육 지원 확대
- 통합학급의 교재·교구, 교육환경 개선 등 운영지원 확대를 통해 통합교육 내실화 도모
- 지역사회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개별 맞춤형 지원 확대

2) 추진 내용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지원 확대
- 나) 통합학급 설치교 관리자의 통합학급 운영·관리 책무성 강화
- 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운영
- 라)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확대
- 마) 통합학급 담당교사 처우 개선 및 지원 강화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 교육 내실화

1)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 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 지역사회 사업체 및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제고

2) 추진 내용

- 가)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선택 다양화를 위한 진로 정보 제공
- 다)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 라)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마)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바)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지원 강화
- 사)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Ⅲ.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 성과 제고 및 교육력 제고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1) 의무교육 전면 시행 철저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 공립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사립 1인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제 소요 경비를 조사하여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단, 누리과정 교육비 초과금액 이며(종일반은 7만원 추가) 14만 1천원 이내 실제 소요 경비 지원
-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3개 권역)

나.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1) 장애영아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시·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 특수교육대상영아 진단, 부모교육 및 상담 운영, 주민 대상 홍보 실시
- 특수교육대상영아 담당교사 배치 및 연수 실시

2) 특수교육대상영아 학급 설치·운영, 순회교육 등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장애영아 순회교육 제공

다. 특수교육 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일반학교 설립 계획 수립 시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조치
- 2)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신·증설 및 중·장기 확충 계획 수립
- 3) 특수학급의 학급 정원, 급당 평균 인원 등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적극적인 행·재정지원

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 교육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각급학교에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 지도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도 반드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 비치함

마. 장애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 및 평가 조정 지원 강화

- 1) 공통교육과정(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 중 기초교과영역)을 적용받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운영 시 해당학년의 수업(이수)이 가능한 교과목을 표시할 것
-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성적부진학생이 학습장애로 선정되지 않도록 '학습장애 선정 조건 및 절차'준수

바.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특수교육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2)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처우 개선 방안 수립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1) 홍보 자료 제작 활용 및 홍보 강화

- 특수교육법, 동법 시행령 등 특수교육 관련 기초 정보 제공,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 기관 등에 관한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등 유관 기관에 배부

- 2) 선정·배치 관련 지침서 제작 활용
 -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지침을 홈페이지와 일반학교 홍보
- 3)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 전문성을 갖춘 의사, 치료사, 특수교사,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진단·평가팀을 구성 운영 : 학부모 및 담임교사로부터 과도한 서류 요구 금지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 1) 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특색 있는 운영 계획 수립 추진
- 2)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 순회교육 계획, 채용 강사의 인적 사항, 상설모니터단 운영계획, 예산 집행 세부 계획 포함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실적 결과 보고
- 4) 2015년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1) 순회교육 대상은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해 선정하고,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토록 권장
 - ※ 학교교육이 가능한 순회교육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배치
-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재택순회, 학급순회) 지원 계획 수립 추진
-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 예산에서 여비, 교재비 등 지원
- 4) 특수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순회교사에 대한 성추행(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사 배치 결정

라.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1) 경북 특수교육 정보화 대회에 특수학교(급)에서는 사전 대비 철저
- 2)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 대회 및 e스포츠 대회 대비 철저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극대화

1. 추진과제

- 가.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 나. 선진화된 특수교육지원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복지지원 강화
 - 라. 전환교육지원 확대

2. 중점과제

- 가.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3) 교원의 전문성 신장
- 나. 선진화된 특수교육지원

- 1)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체계 확립
-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3)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확대
- 4)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운영 내실화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복지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강화
 - 2) 예·체능활동 지원 강화
 - 3)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강화

라. 전환교육지원 확대

- 1)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영아의 무상교육지원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지원실 운영: 창원, 김해, 거제
 - 나) 영아 순회교육지원: 주당 2시간 이상
- 2)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지원
 - 가)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 추진 :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비 급당 20,000천원 지원
 - 나) 신증설 특수학급 컨설팅 지원
 - 다)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90천원, 사립 월 361천원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장애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자 연수
 -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연구회 및 연수 실시: 권역별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가) 교직원·학부모·학생의 의견 반영
 - 나) 특색있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2)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가) 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편성
 - 나) 장애학생 지원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 3)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가)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간 협력 강화
 - 나) 학생 수준에 맞는 통합교육계획 수립

다. 건강장애학생 지원

- 1) 병원학교 운영 : 경상대학교병원, 국립부곡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4학급
- 2) 꿈사랑학교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 180명 내외

라. 교원 연구활동 지원

- 1) 특수교육 연구대회

가) 특수교사 수업연구발표대회 : 개인 10명, 공동 5팀 선정

나) 특수교육 수업명사제 운영

2) 특수교육 연구회 조직 및 운영

가)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연구회 조직

나)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마. 특수교육 연수 지원

- 1) 특수학급 설치 학교장 연수 : 200명
- 2) 특수학급 설치 교감 연수 : 160명
- 3) 신규임용교사 장애이해 연수 : 600명(초·중등신규임용교사)
- 4) 통합학급 교사 원격연수 : 2,000명
- 5) 건강장애학생 담임교사 연수 : 120명
- 6)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및 치료사 연수 : 200명
- 7) 특수교육보조인력 집합 및 원격연수 : 400명
- 8) 특수학교(급) 학부모 연수 : 190명

바.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강화

-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2) 장학자료 개발 : 연 1건 이상

2. 선진화된 특수교육 지원

가.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체계 확립

-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활성화
 -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강화
 - 나) 진단·평가 체계 강화

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1) 치료지원서비스 운영 내실화
 - 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배치 : 119명
 - 나) 병원 물리·작업·청능훈련 치료지원비 제공 : 월 15만원이내
- 2) 중증 과잉행동장애 학생 지원
 - 가) 대상 : 품행장애, 과잉행동장애, 정서행동장애 특수교육대상자
 - 나) 심리행동치료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

- 3) 가족지원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 나) 경상남도특수교육원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4) 통학 및 기숙사 숙식경비 지원
- 5)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가) 수요자 맞춤형 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나) 대여 및 활용관리 철저
- 다. 순회교육 지원
 - 1) 순회교사 주당 수업시수 : 최소 20시간 이상
 - 2) 순회교육활동비 : 1일 2만원
- 라.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1)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 820명
 - 2) 특수학교 통학버스 실무원 및 기숙사 생활지도원, 간호사 배치
- 마.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확대
 - 1) 특수학급 신·증설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비 지원 : 38학급(급당 20,000천원)
- 바. 공립 특수학교 신설 추진
 - 1) 4개 권역(진해, 밀양, 사천, 거창) 수요조사
 - 2) 지역 실정과 여건 고려하여 설립 추진
- 사. 신·증설 특수학급 컨설팅 지원단 운영
 - 1) 현장방문 및 사이버 컨설팅
 - 2) 신·증설 특수학급 매뉴얼 배부
- 아. 경남특수교육원 운영 내실화
 - 1) 연수 운영 강화 : 특수교원, 일반교원, 보조인력, 학부모, 관리자 연수 등
 - 2) 체험프로그램 운영 : 안전체험, 진로직업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 4) 특수교육정보화 지원 및 특수교육자료, 장애학생 취업·창업정보 개발
 - 5) 청각장애 수화·속기원격지원사업 추진
 - 6) 감각장애 특성화센터 운영 : 보조공학기기 지원
 - 7) 장애인식 개선 문화 사업 및 장애체험활동 운영
-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1)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창원, 김해, 진주, 거제, 사천, 함안
 - 2) 전문인력 전문성 신장 노력 : 정규교사 전보가산점 부여 등

- 3. 특수교육대상학생 복지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 가) 연 2회이상 협의회 개최
 - 나) 매월 1회이상 현장 점검
 - 2) 장애학생 인권보호교육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발표대회 개최
 - 3) 범도민 장애인식 개선 : 연중
 - 나. 예·체능활동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1교 1운동 선정 및 운영
 - 2)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참가 지원
 - 3) 장애학생 예술활동 지원
 - 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월 10만원 이내
 - 2) 방학중 희망나눔학교 및 토요일프로그램 지원
 - 3)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지원
- 4. 전환교육지원 확대
 - 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 1)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지원
 - 가) 학교기업 직업훈련실 운영 : 창원천광학교
 -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김해생명과학고, 아림고
 - 다)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 7개소(특수교육지원센터 6개소, 특수학교 1개교)
 - 2) 현장실습 운영지침 수립
 - 나. 장애인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9개소
 - 2) 현장점검 및 평가 실시
 - 다.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1)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 파악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 등
 -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와 워크투게더센터 협의회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유아 대상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 가) 취학유예 방지를 위한 입학 설명회 개최: 특수교육지원센터
- 2)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방학중 종일반 지원
 - 가)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15학급
 - 나) 종일반 운영에 따른 유치원 특수교사 수당지급: 1일 40천원

| 사업 \ 시기 | 2015 | 2016 | 2017 | 2018 |
|---------------|------|------|------|------|
| 영아지원실 운영 | 3개 | 4개 | 4개 | 4개 |
| 영아담당 교사 지정 | 18명 | 18명 | 18명 | 18명 |
|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 29학급 | 33학급 | 35학급 | 37학급 |
| 입학적응 지원 프로그램 | 40명 | 45명 | 50명 | 50명 |
| 영·유아담당 교원 연수 | 35명 | 40명 | 40명 | 40명 |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평가 관련 연수 실시: 40명
- 2) 특수교육 통계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통계 및 특수교육 관련 정보관리

| 사업 \ 시기 | 2015 | 2016 | 2017 | 2018 |
|-----------------|------|------|------|------|
|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발간 | 1회 | 1회 | 1회 | 1회 |
| 유형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 2건 | 2건 | 3건 | 3건 |
| 평가 관련 연수 | 40명 | 80명 | 100명 | 120명 |
|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운영 | 운영 | 운영 | 운영 |

다. 건강장애학생 지원

- 1) 건강장애담임교사 워크숍 개최: 11월
- 2) 전국병원학교 담당자 워크숍 참가: 9월, 부산

라. 교원 연구활동 지원

- 1) 특수교육 연구대회
 - 가) 특수교사 수업연구발표대회 : 11월, 경남교육연구정보원
 - 나) 특수교육 수업명사 수업공개 및 연수 : 9월~11월
- 2) 특수교육 연구회 조직 및 운영
 - 가)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연구회 운영

마. 특수교육 연수 지원

- 1) 특수교육교원의 직무연수 : 연중(경남특수교육원)
- 2) 특수교육보조인력 집합연수 : 방학중(경남특수교육원)

| 사업 \ 시기 | 2015 | 2016 | 2017 | 2018 |
|---|--------|--------|--------|--------|
| 특수교육 관련 연구활동 지원 (연구대회, 수업연구교사제, 수업명사제 등) | 130명 | 140명 | 150명 | 150명 |
| 특수교육 교원 연수 | 450명 | 450명 | 450명 | 450명 |
| 일반교육 교원 연수 | 3,000명 | 3,000명 | 3,000명 | 3,000명 |

2. 선진화된 특수교육 지원

가.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체계 확립

-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활성화
 - 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9월~11월

| 사업 \ 시기 | 2015 | 2016 | 2017 | 2018 |
|----------------|------|------|------|------|
| 진단·평가 전문인력 양성 | 40명 | 40명 | 40명 | 40명 |
| 진단·평가 매뉴얼 제작 | - | 1회 | 1회 | 1회 |
| 특수교육지원센터 직무 연수 | 200명 | 200명 | 200명 | 200명 |

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1) 치료지원서비스 운영 내실화
 - 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연수 실시: 8월(경남특수교육원)
 - 나) 물리·작업·청능훈련 치료지원비 제공: 월 15만원이내 실비 지급

2) 가족지원

가) 특수교육지원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18개소, 80,000천원

| 사업 | 시기 | 2015 | 2016 | 2017 | 2018 |
|-------------------|----|-------|-------|-------|-------|
| 맞춤형 치료지원 제공 | | 2,000 | 2,000 | 2,000 | 2,000 |
| 치료사 연수 | | 1회 | 1회 | 1회 | 1회 |
|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 경특원 | 경특원 | 경특원 | 경특원 |
| 감각장애 거점센터 운영 | | 4센터 | 3센터 | 3센터 | 3센터 |
| 중증 과잉행동장애 거점센터 운영 | | | 1센터 | 1센터 | 1센터 |

다. 특수교육 자원봉사제 운영

- 1) 인원 : 170명
- 2) 운영 : 하루 3시간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1일 20천원 월 400천원 이내, 공개모집

라.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 1) 선정·배치에 따른 특수학급 신·증설 준비 : 학교지원과
- 2) 2016년도 특수학급 교재교구·환경개선비 예산확보

마. 공립 특수학교 신설 추진

- 1) 진해, 거창지역 : 부지 선정
- 2) 중앙투자심사 준비 및 예산확보

바. 경남특수교육원 운영

- 1) 특수교원 및 일반교원, 보조인력 연수: 연중
- 2)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3)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10월~12월

| 사업 | 시기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설립 | | 본관 개원 | 체험관 운영 | 수련관 신축 | 체험관 신축 | - |
| 체험활동 | | 0명 | 5,000명 | 2,000명 | 2,000명 | 2,000명 |
| 특수교육 연수 | | 3,000명 | 4,500명 | 5,500명 | 6,000명 | 6,500명 |
| 특수교육 관련 자료 개발 | | 1건 | 2건 | 4건 | 4건 | 4건 |

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1) 특수교육지원센터 하계 프로그램 운영 : 21개 센터
- 2) 정규교사 인센티브 부여 방안 : 인사관리기준 및 인사사무지침 개정

3. 특수교육대상학생 복지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 가) 협의회 결과 보고
 - 나) 매월 1회 이상 현장 점검 결과 보고
- 2) 장애학생 인권보호교육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발표대회 개최, 11월

| 사업 | 시기 | 2015 | 2016 | 2017 | 2018 |
|----------------------|----|------|------|------|------|
| 상설모니터단 및 인권보호팀 운영 | | 연중 | 연중 | 연중 | 연중 |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관련 교육 | | 28회 | 28회 | 30회 | 32회 |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우수사례 발굴 | | 1회 | 1회 | 1회 | 1회 |

나. 예·체능활동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1교 1운동 지원 : 연중
- 2)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지원 : 5월
- 3) 장애학생 예술제 개최 : 11월, 경남특수교육원

| 사업 | 시기 | 2015 | 2016 | 2017 | 2018 |
|---------------------|----|------|------|------|------|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 | 9명 | 9명 | 9명 | 9명 |
| 특수학교 1인 1운동 프로그램 운영 | | 연중 | 연중 | 연중 | 연중 |
| 장애학생 예술제 | | 1회 | 1회 | 1회 | 1회 |

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분기별 월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2) 방학중 희망나눔학교 및 토요프로그램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 사업 | 시기 | 2015 | 2016 | 2017 | 2018 |
|-------------------------|----|--------|--------|--------|--------|
| 교내외 강좌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 4,183명 | 4,618명 | 5,053명 | 5,053명 |
| 방학중 희망 나눔학교 운영 지원 | | 134학급 | 144학급 | 154학급 | 154학급 |
| 맞춤형 토요프로그램 운영 | | 120학급 | 130학급 | 140학급 | 140학급 |
| 특수학교, 유치원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 | | 23학급 | 30학급 | 35학급 | 35학급 |

4. 전환교육지원 확대

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1) 현장실습 운영지침 수립(5월)

2)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지원

가) 학교기업 직업훈련실 운영 : 창원천광학교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김해생명과학고, 아람고

다)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 8곳(특수교육지원센터 6개소, 특수학교 2개교)

| 사업 | 시기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전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 8개소 | 8개소 | 9개소 | 10개소 |
|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 | | 80명 | 80명 | 100명 | 100명 |
|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 | | 10명 | 10명 | 11명 | 12명 |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 | 1교 | 1교 | 1교 | 1교 |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 2교 | 2교 | 2교 | 2교 |

나.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9개소

2) 현장점검 및 평가 실시

| 사업 | 시기 | 2015 | 2016 | 2017 | 2018 |
|----------------------|----|------|------|------|------|
| 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 연중 | 연중 | 연중 | 연중 |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 | 9개소 | 11개소 | 13개소 | 15개소 |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평가 | | 연중 | 연중 | 연중 | 연중 |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제주 특수교육 추진 방향

가.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실현

나. 통합교육 성과 제고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다. 특수교육 지원의 내실화

2. 제주 특수교육 중점 추진 과제

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제고

나.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다.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라.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II. 2015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 : 3명

2) 일반 유치원 배치 특수교육대상유아무상교육비 지원 : (62명, 214,824천원)

3)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20명

4)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 교육 지원

1)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제도 홍보 실시 및 실태 파악 : 3회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교육실 설치 : 2실, 유아 특수교사 배치(2명)

3) 장애영아 진단·평가비 및 치료비 지원

: 진단·평가비 1인 130천원, 치료비 1인 월 100천원 이내 지원

- 4)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2015. 3. 26.(목), 제주학생문화원
- 5)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 학생건강 증진센터 전문의 연계를 통한 발달 장애 조기 진단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상담 시스템 구축 방안 협의
- 6) 통합교육거점 유치원 운영 : 공립유치원 1개원(5,000천원)

다.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유·초·중·고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운영 : 특수학급 3학급 증설 (초 1, 중 1, 고 1)
-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유 4명, 초 6명, 중 6명, 고 7명
- 3) 특수교육대상자 추이 변화 등 기초자료에 근거한 장애학생 중장기 수용 계획 수립: 교육행정과

라.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운영 강화

-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무상교육 혜택 제공
- 2) 화상강의 운영 지원 : 48명
- 3)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지정·운영 : 제주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 4)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운영 관리 및 홍보 : 일도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
- 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 및 화상강의 시스템 운영 매뉴얼 보급
- 6) 제주대학교 병원학교 운영 : 1학급(제주영지학교)

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철저

- 1)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 3) 개정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 4)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 5)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학년 유의 운영

바.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지원

- 1)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의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3) 개별화교육결과 평가 및 결과 통지

- 4) 인근 특수학교(급)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관리 강화
- 사.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확대 및 평가조정 실시

-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정착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3) 학교단위 장애유형별 평가참여 및 평가조정 방안 마련
 - 장애학생 평가조정 지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 장애학생 평가조정 지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아. 일반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 1)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수자를 통합학급 담당 교사로 우선 배치
- 2)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통합교육 연찬회 실시 : 500명 (2015. 3. 26.)
 - 주제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 3) 일반 교원 특수교육 직무연수 실시
 - 특수교육 원격 직무연수(60시간) 실시 : 1과정 300명
- 4) 특수교육 교원 통합교육 관련 연수 제공
- 5) 탐라교육원 교원 직무연수 시 특수교육 강좌 개설 운영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선정·배치 심사 강화
-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2015. 7. 1. 기준)

(단위 : 명)

| 구분 | 진단·평가자 수 | 선정자 수 | 배치자수 | 비고 |
|----|----------|-------|------|----|
| 인원 | 397 | 380 | 380 | |

- 4)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취학의무 대상 특수교육 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만3-5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설치·운영 기능 강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지원 기능 강화
 - 지역별 수요 및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 승진 가산점 월 0.009점부여
 - 4) 장애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부모 지원 및 무상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마련
 - 5) 가정, 시설 및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계획 수립 및 순회교육 지원 제공
 - 6) 영역별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배치 : 특수교사 8명, 유아특수교사 4명, 치료사 6명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3)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 지도방법,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지원 방법 등 학교 별 실시
 - 4) 순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유 | 초 | 중 | 고 | 계 |
|----------------|----|----|----|----|-----|
| | | | | | |
| 일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 53 | 66 | 23 | 16 | 158 |
| 계 | 53 | 78 | 30 | 27 | 188 |

- 라.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정보화 지원 확대
 - 2)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정보접근권 강화
 - 3)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 스마트러닝 기기 대여 : 30명
 -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연구회 : 1개 연구회

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치료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특수 학교(급)별 치료지원 운영계획 수립·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458명(월 10만원)
- 2) 가족 지원
 - 학교별·지역교육지원청별로 가족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가족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실시 가능
 - 특수교육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 3교(20,000천원)
- 3)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을 구비하여 각 급 학교에서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등의 이용 여건이 가능한 경우 장애성인의 학습을 위하여 대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4) 통학 지원

(단위 : 명, 천원)

| 구분 | 전체 학생 수 | 학교통학버스 이용 학생 수 |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포함) | | | 교통비 지원 예산 |
|------|---------|----------------|-------------------|-----|--------------|-----------|
| | | | 유치원 | 초 | 중·고 (건공과 포함) | |
| 특수학교 | 446 | 286 | 2 | 58 | 56 | 63,482 |
| 일반학교 | 846 | 9 | 2 | 228 | 387 | 343,000 |

- 5)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324명, 3,691,792천원
 -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125명,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사회복지무원 등 163명
 - 특수교육보조인력 활용 내실화 : 특수교육보조원 연수(30시간, 112명 실시)
- 6) 각 급 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 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중증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구비(특수학교 3교,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
 -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보조기기 구비(특수학교 3교,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
 - 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
 - 장애인편의시설·설비 점검 : 2014년 10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완료된 각 급 학교 편의시설 설치현황 자체 현장 점검 실시
 - 다)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특수학교 3교)
- 바.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 1)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특수학교 3교, 특수학급 107학급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 운영 현황

(단위 : 명, 천원)

| 구분 | | 2015년 | 지원 예산 | 비고 |
|-----------------|----------|-------|---------|--------------------------|
| 방과후학교 참여 인원 | 특수학교 | 142 | 362,300 | 강사비 및 운영비 |
| | 일반 학교 | 328 | 428,000 | |
| 방학 중 계절학교 참여 인원 | 특수학교 | 177 | 176,800 | 특수학교(급), 특수학급 미설치교 학생 대상 |
| | 특수교육지원센터 | 173 | 117,210 | |

- 2)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 토요일스포츠 강사 등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담당인력 배치(특수학교 3교,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
- 사.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1)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실시 : 특수학교 3교, 특수학급 113학급
 - 2) 특수교육 전담 장학요원 확충
 - 3)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및 노후 특수학급 교실환경 개선 지원 : 4학급(100,000천원)

- 4) 특수학급 재정 지원
 -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우선 편성·지출
 -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 무상교육 지원 강화
- 5)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통학거리, 부모 요구 등을 감안하여, 통학버스 운영
 - 특수학교(급) 대중교통, 자가용 통학생의 통학비 지원
 - 원거리 통학편의 임대차량 지원을 통한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 : 2대(138,260천원)
 - 노후 통학버스 차량교체를 통한 안전 확보 : 4대(351,000천원)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가.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 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및 장애학생 인권 보호 지원을 위한 전문 강사 지원
 - 특수학교 3교 : 3,880천원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 96교, 79,800천원
 -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상설모니터단’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구성·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3개소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및 연수 지원, 지역 내 학교 컨설팅 활동
 - 3) 다양한 측면의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 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 연 2회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인권보호 교육
 -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 제주장애인아간학교 위탁 운영(20,000천원)
 - 각 급 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을 두도록 지도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체계 구축
- 나. 장애학생 안전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 3교

-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 2)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피해 예방
 -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체제 구축 : 특수학교 3교
- 3)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 장애영역과 특성을 고려한 장애학생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 제정비 : 특수학교 3교
 - 장애학생 우선 대피를 위한 사전 조치계획을 포함한 위기대응 매뉴얼 제정비 : 특수학급 및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 4)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현장실태를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 5)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학교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다.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 1)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체육교육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 포함 : 특수학교 3교
 - 2)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육전담인력 전면 배치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 특수학교 3교 「토요 Sports Day」 운영
 - 3)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시 : 특수학교 3교
 - 4)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및 스포츠강사·토요스포츠 강사 등 연수 실시
 - 5)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제주장애학생의 날 학생 백일장 실시
 - 제주장애인문화예술제 참가 : 특수학교 3교
 -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 공립초 1교
- 라.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1) 장애인해교육 실시
 - 가) 학교별 연 2회 이상 장애인해교육 실시
 - 나) 제주장애학생의 날 운영 : 비예산
 - 기간 및 장소 : 2015. 6. 5.(금), 학교별 실시

- 내용 : 장애·비장애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대상 장애인해 프로그램 운영
- 다) 장애인식개선행사 지정·운영 : 초 1교, 1,500천원
- 라)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운영 : 1개 기관, 20,000천원 지원
(대상 : 초·중·고 250학급 3,000명)
- 마)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행사 실시 : 5,000천원
 - 주관 : 보성초등학교
 - 내용 : 비장애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대상 문화예술 공연, 전시회, 체험코너 운영

마. 특수학급 운영 개선

- 1)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107학급) : 급당 1,000천원
 - 2) 방과후교육 활동비 지원(110학급) : 급당 4,000천원
 - 3) 신(중)설 특수학급 환경 개선비 지원(2학급) : 급당 30,000천원(초·중), 급당 50,000천원(고)
 - 4) 특수학급 학급당 기본 운영비 학교 자체 확보(학급당 운영비 이상 확보)
 - 5) 학생 수준에 맞는 통합교육 수업 계획 수립
 - 6) 일반학생 및 일반교사의 장애인식·장애학생 인권보호·특수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학기별 1회 이상 연수 실시
 - 7) 통합교육협의회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 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업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지원 확대
 - 통합수업교과연구회 운영 : 회원 수 56명, 3,000천원 지원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 2)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주 2회 실시
 - 순회교육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12명, 순회치료사 5명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특수학급 | 특수학급미설치교 | 계 |
|-------------------|------|----------|-----|
| 일반학급 배치 순회교육대상자 수 | 32 | 89 | 138 |

3) 일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교, %)

| 구분 | 학교(급)수 | 매개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설치(%) | 위생시설 설치(%) | 안내시설 설치(%) |
|-------------------|---------|-------------|------------|------------|------------|
| 특수학급 설치교(초, 중, 고) | 113(학급) | 100 | 100 | 100 | 100 |
| 특수학급 미설치교 | 142(학급) | 100 | 100 | 100 | 100 |

사. 통합학급 운영·관리 강화

- 1)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활동 지원
- 2) 통합학급당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정 배치
- 3)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연수 이수 철저 :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원격 직무연수 운영(탐라교육원)
- 4) 통합교육 협력학교 운영 : 초 3교(광명초, 영평초, 도평초)
- 5)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확대
- 6) 통합학급 담당교사 처우 개선 및 지원 강화 :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유·초등교사 통합학급 담임교사에 대한 전보 가산점 부여)
- 7) 일반학교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8)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제공 확대 및 학년 초 특수교육 관련 연찬회 실시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1)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2)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교육 내실화
- 4)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제주고, 함덕고, 표선고 105,000천원
- 5)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의 내실화 운영 : 3교 6학급, 90,000천원
- 6) 진로·직업교육 연구회 운영 : 3개 연구회, 9,000천원
- 7) 특수교육-복지일자리에 참여 확대 : 9명, 99,039천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역사회에서의 일자리(현장실습)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중심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특수교육·복지일자리에 대한 안내·연수 실시 및 관내 위탁수행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8) 장애학생 취업·창업 교육 지원 : 100,000천원

- 직업교육 위탁교육 시범 운영 : 공모로 선정된 특수학급 설치 고등학교 4교 (학교당 10,000천원)
- 직업교육 위탁교육 시범 운영 : 공모로 선정된 3개 기관(기관 당 20,000천원)

9)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10) 다양한 진로 정보 및 특수교육교원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

나.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성인 야학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 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 2개 기관(20,000천원)
- 3) 장애인 야간학교 지원 : 59,000천원
- 4) 제주농아복지관 지원 : 6,000천원

III.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 성과 제고 및 교육력 제고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홍보 강화 및 조기발견체제 구축
- 2) 지역사회 병·의원과 연계한 진단검사 및 치료지원체제 구축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육지원실 운영
 - 연도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계획

(단위 :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계 |
|---------|-------|-------|----|
| 교육지원 인원 | 29 | 30 | 59 |
| 교사 수 | 2 | 2 | 4 |

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 1) 무상·의무교육의 책무성 강화
 - 교육요건을 갖춘 장애 영·유아 보육시설 실태 조사 : 매년

- 장애등록 영·유아 실태 파악 : 매년
- 2) 특수교육대상학생 무상·의무교육제도 홍보 : 매년
- 3) 일반 유치원에 배치된 장애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 연도별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

(단위 : 명, 천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계 |
|---------|---------|--------|---------|
| 장애 유아 수 | 62 | 65 | 127 |
| 소요 예산 | 214,824 | 230,00 | 444,824 |

다. 특수교육기관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
 - 점진적 감축계획으로 법정 학급당 학생 수 실현
- 2)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 가) 과정별 균형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 나) 연도별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단위 : 학급)

| 구분 | 2015년 | 2016년 | 계 |
|--------|-------|-------|---|
| 특수학급 수 | 4 | 2 | 6 |

라.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 1) 장애특성을 고려한 평가조정제 실시 홍보
- 2) 연차적으로 장애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평가조정 실시

마. 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 가) 특수교육 원격 직무연수(60시간) 실시 : 1과정 300명
 - 나) 연도별 일반교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60시간) 이수 계획

(단위 :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계 |
|---------------------|-------|-------|-----|
|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인원 | 300 | 300 | 600 |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1)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내용 선정
- 2)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적 진단 및 전문적 치료 의뢰
- 3)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주 2회 실시
- 4) 연도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계획

(단위 :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계 |
|-------------------|-------|-------|-----|
| 일반학급 배치 순회교육대상자 수 | 89 | 91 | 180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연차적 시설 및 교구 확충
- 2) 취학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지원
- 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4)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확대 계획

(단위 : 개소,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
| 센터 수 | 3 | 3 |
| 전담 인력 수 | 17 | 20 |

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 1)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확대
 - 연도별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계획

(단위 :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계 |
|-----------------|-------|-------|-----|
|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인원 | 324 | 330 | 654 |

2) 통학비 지원 확대

- 연도별 통학비 지원 계획

(단위 :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계 | |
|--------------------|-------|-------|-----|-------|
| 통학비(학생, 학부모) 지원 인원 | 특수학교 | 118 | 120 | 238 |
| | 일반 학교 | 690 | 700 | 1,390 |

3) 치료지원 확대

- 연도별 치료지원 바우처 제공 계획

(단위 :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계 |
|--------------------------|-------|-------|-------|
| 개인별 치료비(월 10만원 이내) 지원 인원 | 500 | 530 | 1,030 |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

(단위 : %)

| 구분 | 2015년 | 2016년 |
|----------------------|-------|-------|
| 특수학교설치 비율 | 100 | 100 |
| 특수학급 설치교 비율(초, 중, 고) | 100 | 100 |

라.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1)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 운영 계획

(단위 : 명)

| 구분 | | 2015 | 2016 | 계 |
|-----------------|------|------|------|-----|
| 방과후학교 참여 인원 | 특수학교 | 142 | 150 | 292 |
| | 일반학교 | 328 | 335 | 663 |
| 방학 중 계절학교 참여 인원 | 특수학교 | 177 | 200 | 377 |
| | 일반학교 | 173 | 200 | 373 |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전개

1) 학교별 장애이해교육 실시 및 장애체험활동 전개

2)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예술행사 추진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운영

1)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구성·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3개소

2) 다양한 측면의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1)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특수학교 3교 6학급)

2)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3개교

3) 특수교원 직업교과 연구회 운영 : 3개 연구회

4) 연도별 진로·직업교육 지원 계획

(단위 : 교, 천원)

| 구분 | | 2015년 | 2016년 |
|---------------------------|---------|----------|----------|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설치 학교 수 | 3 | 4 |
| | 소요 예산 | 105,000 | 140,000 |
| 직업교육 연구회 | 설치 수 | 3 | 3 |
| | 소요예산 | 90,000 | 90,000 |
| 중학교 특수학급 직업 교육 지원 | | 급당 1,400 | 급당 1,400 |
| 현장체험 실습 운영(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교) | | 급당 1,800 | 급당 1,800 |
|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비 | | 412,789 | 447,789 |

라.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1) 장애성인 야학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3) 연도별 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계획

(단위 : 기관, 천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계 |
|---------|--------|--------|--------|
| 지원 기관 수 | 2 | 3 | 5 |
| 소요예산 | 20,000 | 30,000 | 50,000 |

부 록 I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0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32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33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3.12.30.] [법률 제12127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12.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 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 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활용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목개정 2012.3.21.]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 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4.5.>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둬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제6장 보칙 및 벌칙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③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④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1 장 총 칙

-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부 칙 <제12127호, 201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 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

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 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 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에 따라 실태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특수교육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방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어린이집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12.8]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실을 특수학교에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③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4.20>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4.20>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제목개정 2012.4.20]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성 및 회의 개최 시기 등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1. 49.5제곱미터 이상의 수업실
2.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4. 관리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② 교육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치료지원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3.10.6.] [교육부령 제8호, 2013.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교육과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유치원 교육과정: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2. 공통 교육과정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3. 선택 교육과정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4. 기본 교육과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와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에 관한 교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과정의 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2.20.]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②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0.4.>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8호, 2013.10.4.>

이 규칙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 구 분 | 영 역 | |
|-------------------|---------------------------------------|--|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 |
| 진단·평가 영역 |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
| | 정신지체 |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
| |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
| | 의사소통 장애 |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
| | 학습장애 |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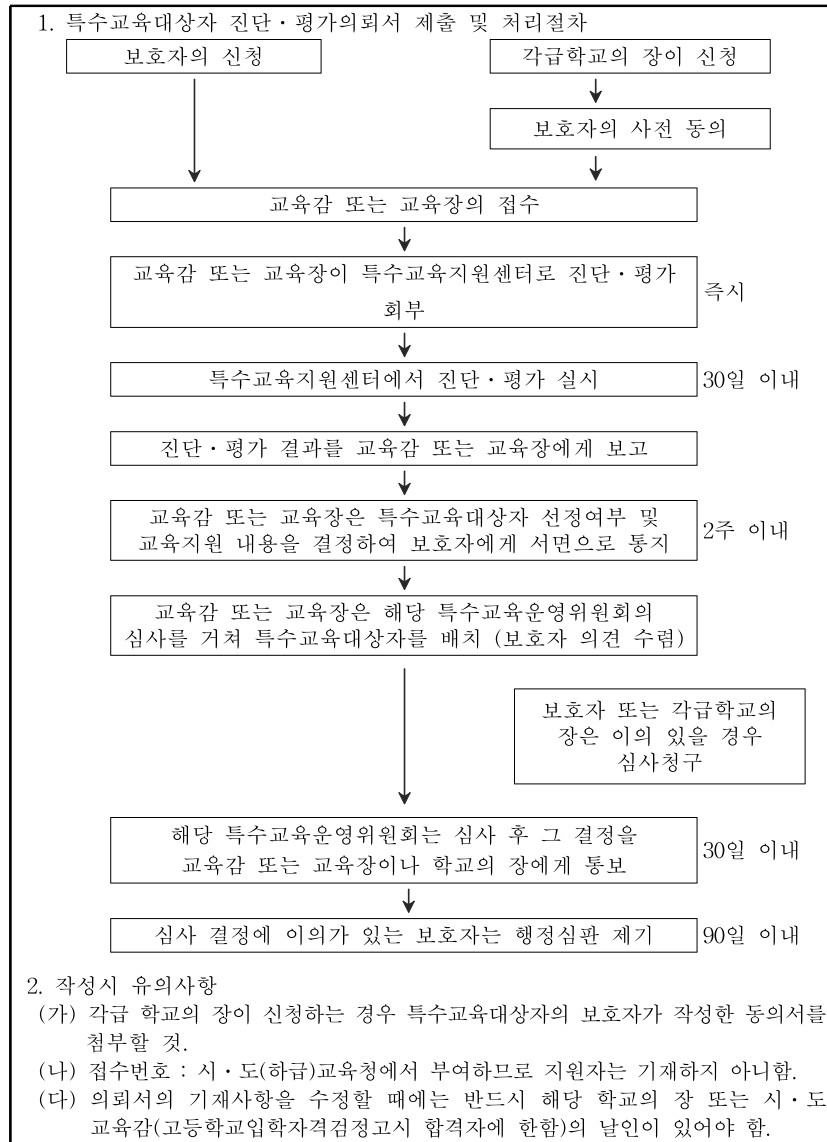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 | | |
|---|--------------|--|-------------|----------|
| 접수번호 | - | | | |
| 대상자 | 성 명 (한 자) | | 성 별 | 남 여 |
| | 주 소 | | | |
| | 소 속 | | | |
| 보호자 | 성 명 | | 대상자와의 관계 | 대상자의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학교장) (인) 시·도교육감(교육장) 귀하 | | | | |

..... (절 취 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고등학교과정이하)접수증
접수번호

| 소 속 | 학 생 명 | 성 별 | 비 고 |
|-------------------|----------------|-------|-----|
| | | | |
|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 | | |
| 접수자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년 월 일 | |
| 시·도교육감(교육장) (인) | | | |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_____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성 명 : _____ 성 별(남, 여)

주 소 : _____

생년월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현재 소속기관 : _____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인)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인)

[별지 제7호서식]

| 심사결과통지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 | | |
|--|---|-----------|----|
| ① 사 건 | | | |
| ② 청구인 | 성명 | | 성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소속 | | |
| ③ 피 청구인 | | | |
|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 | | |
| ⑤ 심사 결과 | | | |
| ⑥ 근거 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 |
| <p>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p> <p>청구인 귀하</p> | | | |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행일 2015년 9월
발행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우편번호 30119
전화 044) 203-6560

인쇄처 디자인 세륜 (02) 2273-5167